

발 간 등 록 번 호

57-3720000-000044-14

Global
Ulsan Bukgu

1997 ~ 2007

蔚山廣域市 北區新設十年史

◀ 議 · 會 · 篇 ▶



蔚山廣域市北區議會

蔚山廣域市

北區新設十年史

◀ 議 · 會 · 篇 ▶





본회의장 전경



초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개원(1997.7.15)



제2대 전반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개원(1998.7.7)



제2대 후반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개원(2000.7.7)



제3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개원(2002.7.9)



제4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개원(2006.7.3)



초대(1997. 7. 15 ~ 1998. 6. 30)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 의장단

강동동(면)



의장 김 성 보

송정동(면)



부의장 윤 두 환

▣ 의원

제10선거구



이 상 원

농소동(읍)



한 성 두

진장동



정 석 수

효문동



이 병 우

양정동



진 한 길

염포동



조 승 수

제2대(1998. 7. 1 ~ 2002. 6. 30)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 의장단

송정동



의장 윤 두 환
전반기 의장

농소3동



의장 박 춘 환
전반기 부의장 및
의장(보궐)

양정동



의장 진 한 길
전반기 부의장(보궐)
및 후반기 의장

강동동



부의장 박 광 식
후반기 부의장

▣ 의원

농소1동



김 수 현

농소2동



강 혁 진

효문동



류 재 권

송정동



김 진 영

염포동



윤 종 오

제3대(2002. 7. 1 ~ 2006. 6. 30)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 의장단

송정동



의장 김 진 영
전반기 의장

염포동



의장 하 인 규
후반기 의장

농소2동



부의장 김 재 근
전반기 부의장

농소1동



부의장 이 재 경
후반기 부의장

▣ 의원

농소3동



김 대 영

강동동



윤 임 지

효문동



류 재 건

양정동



류 인 목

제4대(2006. 7. 1 ~ 2010. 6. 30)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 의장단

효문동, 양정동, 염포동



의장 류 재 건
전반기 의장

농소1동, 강동동, 송정동



부의장 윤 임 지
전반기 부의장

▣ 의원

농소2동, 농소3동



문 석 주

농소1동, 강동동, 송정동



박 병 석

농소2동, 농소3동



이 은 영

효문동, 양정동, 염포동



류 인 목

비례대표



이 영 희

국민을 위한 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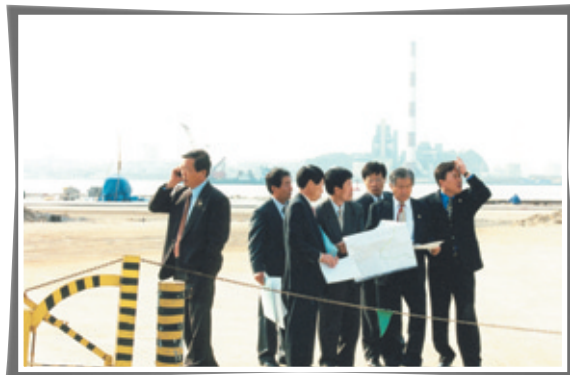


1997.7.15~2007.7.14
의정활동 10년사
사진 모음





초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개원기념(1997.7.15)



염포동 복구 편입 조정에 따른 현장 조사(1997.9.24)



강동동 사무소 현장 침하 현장 확인(1998.3.27)



초대의회 의안심의 활동(1998.6.15)



제2대 전반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개원기념
(1998.7.7)



제17회 정기회 정자 어선 간이수리소 현장 확인(1998.7.29)



현대자동차(주)본사 울산 이전 건의 서울본사 방문
(1999.5.14)



제24회 임시회 동천초등학교 진입로 현장 확인
(1999.8.24)



'99 울산공항 실태조사 현장 활동(1999.10.14)



'99 울산공항 실태조사 현장 활동 타지역공항 점검
(부산 김해공항)(1999.10.28)



제2대 후반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개원기념(2000.7.7)



벼세우기 농촌 일손돕기 지원(2000.9.21)



러시아 사할린스크시 부시장 일행 내방(2000.9.29)



행정사무감사 현장 확인
(염포동 소방도로)(2000.12.3)



행정사무감사 현장 확인
(진장동 침수지역)(2000.12.3)



북구청 신청사 개청 북구의회 문주석 제막(2001.6.22)

97.7.15~2007.7.14

의정활동 10년사 사진모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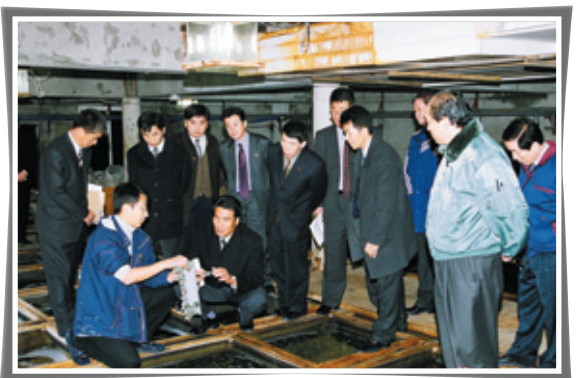
북구청 신청사 개청 축하 내빈 본회의장 방문
(2001.6.22)



북구청 신청사 개청식 테이프 커팅(2001.6.22)



북구청 신청사 임시회 집회기념(2001.6.27)



제49회 제2차정례회 전복육상 종묘배양장 현장 확인
(2001.12.10)



제3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개원기념(2002.7.9)



제3대의원 북구의회 문주석 기념 촬영(2002.7.9)



남해군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 견학(2002.8.30)



행정사무감사 현장 확인
(북구보건소 신축현장)(2002.12.2)



태연재활원 일일봉사 체험(2003.5.9)



북구문화예술회관 개관식 참석(2003.9.25)



음식물자원화시설업체 선정 외3건의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현장 확인(2003.11.4)



행정사무감사(소회의실)(2003.11.26)



행정사무감사 현장 확인
(염포동 하수구 뚜껑 교체공사 현장)(2003.11.29)



생활쓰레기 수거 현장 체험(2004.5.20)



강동동 인구감소에 따른 근본적인 대책 요구 기자회견
(2004.6.9)



제3대 의회 후반기 원구성(2004.7.7)

97.7.15~2007.7.14

의정활동 10년사 사진모음



북구 경로잔치 및 실버가요제(2004.10.15)



초등학생 1일 구정체험의날 본회의장 방문(2004.11.12)



제77회 임시회 양정 생활체육공원 조성공사 현장 확인
(2004.11.24)



행정사무감사 현장 확인
(동천강 수해복구 공사 현장)(2004.12.5)



무룡산 등반 및 산불 예방 캠페인(2004.12.20)



북구의회 의원 및 관계 공무원 특별 연수(2005.2.14)



1일 명예교사 수업 및 1일 구정체험의 날 행사(2005.6.17)



경주시 중·저준위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유치 반대 기자회견
(2005.8.23)



행정사무감사 현장 확인
(원지마을 노인요양 시설 예정 부지)(2005.12.3)



행정사무감사 현장 확인
(효문운동장 조성공사 현장)(2005.12.3)



울산국립대학교 복구 유치 추진단 기자회견
(2005.12.15)



제3대 북구의회의원 이임식, 의회사무과
직원들과 기념 촬영(2006.6.27)



제4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개원기념(2006.7.3)



제4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개원식(2006.7.3)



제91회 임시회 박상진의원사 생가 복원사업 현장 확인
(2006.7.21)



제91회 임시회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2006.7.27)

97.7.15~2007.7.14

의정활동 10년사 사진모음



의원 특별연수 중 거제 대우조선 해양사업장내
종합오수처리장 견학(2006.8.22)



울산광역시 구.군의회 의원 친선 축구대회(2006.9.30)



사회복지시설 방문 추석 위문품 전달(2006.10.4)



북구의회 당면 현안 협의를 위한 의원 간담회(2006.10.17)



재난대비 우수 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고베지진과
방재미래센터' 견학(2006.11.2)



제3회 울산광역시 구.군 선출직 친선 축구대회 참석
(2006.11.12)



행정사무감사 현장 확인(동천강 제전보)
(2006.12.2)



행정사무감사 현장 확인(염포동 불무천)
(2006.12.2)



공명선거 다짐 식목행사 및 등반대회 참가(2007.3.13)



경주방폐장 피해 대책 구.군의회의원 합동 서명운동
(2007.4.7)



중국 상해시 남회구 대표단 방문(2007.6.18)



도시가스 공급의 위법·부당 실태에 대한 기자 회견
(시청기자실)(2007.6.19)



울산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 기공식
(진장유통단지내)(2007.6.22)



행정사무 감사 준비를 위한 현장 확인
(달천동 I-PARK 공사현장)(2007.6.28)



행정사무감사 현장 확인
(공공도서관 신축 현장)(2007.7.13)



행정사무감사 현장 확인
(명춘천 수해복구 현장)(2007.7.13)

목 차

Contents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개원	3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4
의정활동10년사 사진 모음	7
목차	16

제1장 일반 현황 21

제1절 북구의회 연혁	24
제2절 의회 일반 현황	24
제3절 의회의 권한과 지위	25

제2장 초대 북구의회 의정활동 27

제1절 원구성 현황	29
1. 원구성	29
2. 초대 의원 현황	29
3. 초대 북구의회 총평	30
제2절 집회 현황	31
1. 집회 현황	31
2. 회기별 안건 처리 현황	32
제3절 행정사무감사	32
1.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32
2.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33
3.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 평가	33
4.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	34
제4절 기타 의정활동	41
1. 구정 질문	41
2. 북구청사 건립 추진 행정사무 처리 상황 보고	42

제3장 제2대 북구의회 의정활동 43

제1절 원구성 현황	45
1. 원구성	45
2. 제2대 의원 현황	45
3. 제2대 북구의회 총평	46

제2절 집회 현황	48
1. 집회 현황	48
2. 회기별 안건 처리 현황	48
제3절 행정사무감사	49
1.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49
2.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50
3.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	51
4.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55
5.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56
6.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	57
7.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62
8.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62
9.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 평가	63
10.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	64
11.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68
12.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68
13.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 평가	69
14.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	69
제4절 행정사무 조사	72
1. 울산공항 관련 행정사무 조사 배경	72
2. 특별위원회 구성 현황	73
3. 울산공항 현황	74
4. 주민 피해 실태 조사	76
5. 기타 실태 조사	83
6. 실태 조사 검토 및 분석	88
7. 실태 조사 결과 문제점 및 개선 대책	89
8. 문제점 및 개선 사항에 대한 관계 기관 회신 내용	91
제5절 기타 의정활동	92
1. 구정 질문	92
2. 4분 자유발언	117
3. 결의안	120
4. 의회 민원상담실 운영	124
5. 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평가자문위원회 조례 제정	125
6. 북구청사 건립 추진 행정사무 처리 상황 보고	125

제4장 제3대 북구의회 의정활동

129

제1절 원구성 현황	131
1. 원구성	131
2. 제3대 의원 현황	131
3. 제3대 북구의회 총평	132
제2절 집회 현황	134
1. 집회 현황	134
2. 회기별 안건 처리 현황	134
제3절 행정사무 감사	135
1.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135
2.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135
3.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 평가	136
4.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	137
5.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140
6.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140
7.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 평가	141
8.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	142
9.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144
10.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145
11.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 평가	146
12.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	146
13.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150
14.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150
15.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 평가	151
16.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	151
제4절 행정사무 조사	155
1. 음식물자원화시설 업체선정 외3건의 진상 조사 계획	155
2. 음식물자원화시설 업체선정 외3건의 진상 조사 경과	157
3. 음식물자원화시설 업체선정 외3건의 진상 조사 결과	159
4. 음식물자원화시설 업체선정 외3건의 진상 조사 결과 처리 내역	164

제5절 기타 의정활동	166
1. 구정 질문	166
2. 5분 자유발언	168
3. 결의안	174
4. 경주시 방폐장 유치 철회를 위한 의정 활동	178
5. 울산국립대학교 복구 유치를 위한 의정 활동	179

제5장 제4대 북구의회 의정활동 181

제1절 원구성 현황	183
1. 원구성	183
2. 제4대 의원 현황	183
3. 제4대 북구의회 총평	184
제2절 집회 현황	185
1. 집회 현황	185
2. 회기별 안건 처리 현황	186
제3절 행정사무감사	186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186
2.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186
3.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 평가	187
4.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	188
5.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192
6.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193
7.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 평가	193
8.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	194
제4절 기타 의정활동	201
1. 구정 질문	201
2. 5분 자유발언	202
3. 결의안	208
4. 경주방폐장 피해 대책 서명운동	208

부록



북구의회 문주석과 의회마크

구민을 지키는
의회



제1장

일반 현황

- 제1절 복구의회 연혁
- 제2절 의회 일반 현황
- 제3절 의회의 권한과 지위





신뢰할 수 있는 의회





한국의 지방의회는 기관대립형으로서 대표기관, 의결기관, 입법기관, 집행감사 기관의 성격을 갖는다. 그러나 제1공화국 하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정치도구화하고,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을 중앙정부의 지휘와 통제 하에 두어 지방자치는 사실상 유명무실하였다. 제2공화국 하에서는 지방자치법안이 확정되어 자치단체장은 임명제로, 지방의원은 기초의회 의원까지만 직선제로 하였다. 그러다가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지방자치는 중단되었다. 그 후 많은 우여곡절 끝에 제6공화국 하에서 30년 만에 지방자치제가 부활되어 1991년 3월 기초의회 의원 선거가, 6월에는 광역의회 의원 선거가 실시되었다.

지방의회는 지역주민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하는 합의제 기관이다. 그 역할은 지방의회의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다.

한국의 지방의회는 기관대립형으로서 대표기관, 의결기관, 입법기관, 집행감사기관의 성격을 갖는다. 그러나 제1공화국 하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정치 도구화하고,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을 중앙정부의 지휘와 통제 하에 두어 지방자치는 사실상 유명무실하였다. 제2공화국 하에서는 지방자치법안이 확정되어 자치단체장은 임명제로, 지방의원은 기초의회 의원까지만 직선제로 하였다. 그러다가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지방자치는 중단되었다. 그 후 많은 우여곡절 끝에 제6공화국 하에서 30년 만에 지방자치제가 부활되어 1991년 3월 기초의회 의원 선거가, 6월에는 광역의회 의원 선거가 실시되었다.

주민대표 기관인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심의의결기관으로서 조례의 제정 및 폐지, 예산의 심의·확정, 공공시설의 설치 및 처분, 기타 법률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등을 의결한다.

지방의회는 입법권 및 그 외의 광범위한 권한을 가진다는 점에서 국회와 성질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지방의회의 정례회는 매년 2회 개최하며, 의장 1명과 부의장은 광역시도의 경우 2명, 시·군·구·자치구의 경우 1명을 둔다. 의장은 지방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회의의 사무를 감독하며, 의사에서 표결권을 가진다.

한편 지방의회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 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 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가 있다. 지방의원은 지방의회선거법에 기준하여 출마할 수 있으며, 임기는 4년(재임 가능)이다. 1994년 3월 16일에 법률 제4739호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으로 제정하였다가, 2005년 8월 4일에 법률 제7681호로 개정하면서 법명을 <공직선거법>으로 변경하였다. 2006년 3월 2일 법률 제7850호까지 24차례 개정하였다. 전문 278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방의원은 국회의원과 함께 주민의 이익대표체계의 주요한 행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지방의원은 주민의 대표자로서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문제를 해결하고 일부 주민의 이익을 전체 주민의 이익과 통합시키고 지역 전체의 이익을 국가 발전의 틀 속에서 구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지방의원의 본질적인 지위는 그것이 주민의 대표자와 대변자로서의 역할에서 나오는 것으로 지방정부의 주요 의사 결정을 수행하는 지위를 가진다. 따라서 의원 개개인은 지방정부의 정책 형성과 결정 과정에 실질적 권한을 가지고 참여하며 동시에 이러한 권한은 의원으로서 지는 임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일단 결정된 정책들이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가를 꾸준히 감시하고 감독하는 역할도 수행해야 한다.

제1절 북구의회 연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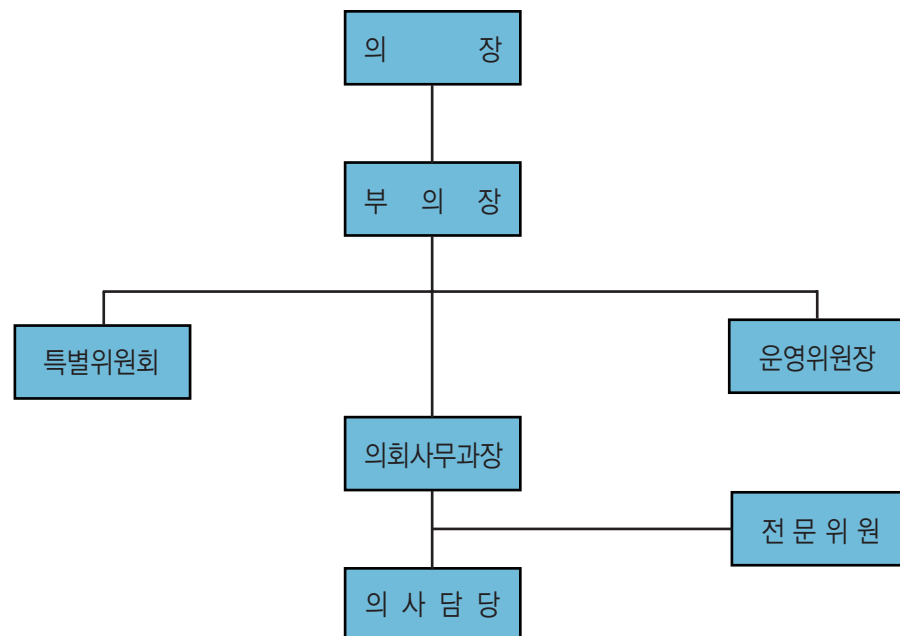
1997년 7월 15일 울산광역시 승격과 함께 북구의회가 설치되었다.
이후 2007년 12월 31일까지의 북구의회 연혁은 다음과 같다.

1. 울산광역시 승격 및 북구의회 설치

- 1997. 7. 15 : 초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개원(7명)
 - 임기 : 1997. 7. 15 ~ 1998. 6. 30
- 1997. 7. 15 : 초대 울산광역시의회 개원(72명)
- 1998. 3. 1 : 동구 염포동 선거구 북구 편입(8명)
- 1998. 6. 4 : 제2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 임기 : 1998. 7. 1 ~ 2002. 6. 30
- 2000. 2. 21 : 송정동의원 사직(7명)
- 2000. 6. 8 : 송정동의원 보궐선거(8명)
- 2002. 6. 13 : 제3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 2002. 7. 9 : 제3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개원(8명)
 - 임기 : 2002. 7. 1 ~ 2006. 6. 30
- 2006. 5. 31 : 제4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실시
- 2006. 7. 3 : 제4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개원(7명)
 - 임기 : 2006. 7. 1 ~ 2010. 6. 30

제2절 의회 일반 현황

1. 의회 기구





2. 의원 현황

◎의원 정수

계	가선거구 (농소1동 · 강동동 · 송정동)	나선거구 (농소2동 · 농소3동)	다선거구 (효문동 · 양정동 · 염포동)	비례대표
7	2	2	2	1

3. 의사당 시설 현황

◎위치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연암동 1004-1)

◎면적 : 북구청 5층 1,052㎡

(단위 : ㎡)

시 설 명	전 용 면 적	비고
본 회 의 장	208.43	
방 청 객 실	60.23	
소 회 의 실	108.00	
의 장 실	70.47	
부 의 장 실	60.70	
의 원 사 무 실	129.05	2인 1실 3개
민 원 접 견 실	72.00	
의 회 사 무 과	117.43	
전 문 위 원 실	36.00	
방송실 등 5실	189.40	

제3절 의회의 권한과 지위

지방의회는 의결권, 행정감시권, 자율권, 선거권, 청원처리권, 의견표명권 등의 권한을 갖는다.

또한 주민대표기관, 의결기관, 입법기관, 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1. 의회의 권한

의회는 의결권, 행정감시권, 자율권, 선거권, 청원처리권, 의견표명권 등을 갖는다.

1)의결권

법령과 조례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과 중요 정책을 심의 · 의결하는 권리이다.

- 조례의 제정 및 개정, 폐지
- 예산의 심의 확정, 결산의 승인
-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 기금의 설치 · 운용
- 중요 재산의 취득 및 처분
- 공공 시설의 설치 및 처분
-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 의무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 의무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 청원의 수리와 처리
-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
-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2)행정감시권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정부의 행정 집행 상태를 감시하는 통제권이다. 매년 정례회 때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특정 사안을 조사하는 행정사무조사가 있다.

3)자율권

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있어 스스로 규율을 정하는 권리이다.(회의 규칙, 회기 결정 등)

4)선거권

의장, 부의장, 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을 선출하는 권리이다.

5)청원처리권

주민이 의원의 소개를 받아 제출하는 청원을 수리하고 처리하는 권리이다.

6)의견표명권

자치단체의 공공 이익을 위하여 집행기관, 공공·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의견(건의안 등)을 제시할 수 있는 권리이다.

2. 의회의 지위

의회는 주민대표기관, 의결기관, 입법기관, 감시기관 등의 지위를 갖는다.

1)주민대표기관

주민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되며, 주민을 대신하여 지역의 이익을 대변함과 동시에 주민의 뜻을 정책 결정에 반영시키는 역할을 한다.(선거지역 뿐만 아니라 해당자치단체 전 주민 대표)

2)의결기관

자치단체의 주민 부담에 관한 사항, 조례 제정, 단체 운영 등 그 자치단체의 주요 사항을 최종적으로 심의·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관의 역할을 한다.

3)입법기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자치단체의 법규인 조례를 발의하고 의결하는 역할을 한다.

4)감시기관

집행기관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가를 감시하고 확인하기 위해 보고, 승인, 질문, 행정사무감사·조사하는 역할을 한다.

제2장

초대 북구의회 의정활동 1997. 7.15 ~ 1998. 6. 30

- 제1절 원구성 현황
- 제2절 집회 현황
- 제3절 행정사무감사
- 제4절 기타 의정활동





Global



울산광역시 승격과 더불어 출범한 초대 북구의회 의원은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을 겸했으며, 임기는 1997년 7월 15일 ~ 1998년 6월 30일까지이다.

제1절 원구성 현황

1. 원구성

◎집회 공고

최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단체장이 소집하도록 되어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7년 7월 15일 09시에 울산광역시북구청장이 집회공고 하였다. 집회일시는 1997년 7월 15일 20시로 공고하였다.

◎의장단 선거(제1차 본회의)

1997년 7월 15일 20시에 개최된 제1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7명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지방자치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자인 김성보 의원의 사회로 의장선거를 실시하였다. 그결과 김성보 의원이 초대의장에 당선되었으며, 김성보 의장의 사회로 윤두환 의원을 초대부의장으로 선출하였다.

◎개원식

개원식은 1997년 7월 15일 21시에 북구의회 의사당 본회의장에서 의원 7명과 황성환 북구 부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공무원 2명과 유관 기관 단체·주민 등 20여명이 초청된 가운데 진행되었다.

2. 초대 의원 현황

1)의장 명단

선 거 구	성 명	생년월일	재임기간	비 고
강 동 동	김 성 보	1937. 4. 4	1997. 7. 15 ~ 1998. 6. 30	

2)부의장 명단

선 거 구	성 명	생년월일	재임기간	비 고
송 정 동	윤 두 환	1955. 3. 5	1997. 7. 15 ~ 1998. 6. 30	

3)의원 명단

선 거 구	성 명	생년월일	재임기간	비 고
제10선거구	이 상 원	1941. 8. 29	1997. 7. 15 ~ 1998. 6. 30	
농 소 동	한 성 두	1941. 3. 31	1997. 7. 15 ~ 1998. 6. 30	
진 장 동	정 석 수	1937. 4. 15	1997. 7. 15 ~ 1998. 6. 30	
효 문 동	이 병 우	1942. 2. 8	1997. 7. 15 ~ 1998. 6. 30	
양 정 동	진 한 걸	1953. 11. 15	1997. 7. 15 ~ 1998. 6. 30	
염 포 동	조 승 수	1963. 1. 22	1998. 3. 2 ~ 1998. 6. 30	행정구역변경으로 '98.3.2 북구의회등록신고

4)의원 사진

▣ 의장단

강동동(면)



의장 김 성 보

송정동(면)



부의장 윤 두 환

▣ 의원

제10선거구



이 상 원

농소동(읍)



한 성 두

진장동



정 석 수

효문동



이 병 우

양정동



진 한 결

염포동



조 승 수

3. 초대 북구의회 총평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지역개발과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1997년 7월 15 일자로 울산광역시와 5개 구·군이 설치되면서 북구에도 의회가 설치되었다. 이에따라 총 7명의 의원이 지방자치사에 선례가 없는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을 겸임하여 주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초대의회 개원식에서 초대의장단을 선출하였다. 초대의장에 김성보의원, 초대부의장에 윤두환의원을 선출 하여 원구성을 하였다.

1997년 7월 15일 제1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에서는 1일간의 회기로 울산광역시북구의회 회의 규칙 등 의회 운영에 필수적인 4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

울산광역시북구 설치 이전과 이후에 이루어지는 행정의 연속성이 계속 유지되고,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울산시 조례를 기본골격으로 유지하고 북구설치준비단과 5개 구·군 준비단의 합동작업, 울산광역시 설치준비단과 내무부의 검증 및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90건의 조례를 심의 확정하였다.



1997년 6월 27일 북구청에서 제출한『97울산광역시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전심사(안)』에 대해 1997년 7월 2일 울산광역시 북구의원 협의회에서 협의하고, 1997년 7월 11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사전심사를 거쳐 제1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였다.

- ◎1997년 4월 21일 염포동의 2,038명의 주민들이 행정구역의 불합리와 주민불편을 사유로 염포동을 동구에서 북구로 변경해 달라는 청원을 조승수 시의회의원(염포동 소속)의 소개로 울산시의회에 제출하였다. 시의회 내무위원회에서 청원심사결과 염포동 주민의 의견수렴(설문조사) 절차를 위하여 울산시장에게 이송하였으며, 설문조사결과 찬성 59.8%, 반대 40.2%의 양분된 의견을 보였고, 동구 존치를 위한 염포동의 1,227명의 진정서가 동구청에 접수(1997. 9. 9)되는 등 주민간에 대립 양상이 나타났다. 그러나 주민의견을 최종 수렴한 결과 60대 40의 수치는 과반수가 넘어 제3회 북구의원 임시회 제1차 본회의(1997. 9. 24)에서 "자치구간 행정구역(경계) 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종합의견서에 "찬성"이라는 의견서를 채택하였다.
- ◎제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1998. 2. 26)에서 대통령령 제15652호(1998. 2. 24)에 의한「광주광역시 북구 등 4개 자치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8년 3월 1일 울산광역시 동구 관할 구역 중 염포동 지역이 북구로 행정구역이 조정됨에 따라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조례를 조정하였다.
동구에 속해 있던 염포동이 북구에 편입됨에 따라 의원이 7명에서 8명으로 늘어나게 되었으며, 그동안 주민생활과 문화권이 북구지역이면서도 행정구역상 동구로 편입되어 관내 기업체나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왔던 많은 불편사항들이 많이 해소되었다. 아울러 면적이나 인구 그리고 재정적인 면에서 구세가 크게 확대되어 북구가 한층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 ◎제5회 정기회에서는 광역시 출범 후 처음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998년도 예산안을 확정하였다. 또한 북구청사 건립에 따른 재원부족으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청사정비기금 55억원을 2년 거치 10년 균등상환하는 "청사정비기금 차입 의결의 건"을 의결하여 모든 구민들이 열망하는 북구청사가 차질 없이 건립될 수 있도록 하였다.
- ◎1998년도 IMF체제에서 관내에 있는 국내 최대의 자동차 생산업체인 현대자동차가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노사간 갈등이 심화되었다. 수많은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거리로 내몰리는 상황에서 북구의회는 실업문제와 고용안정에 모든 역량을 결집, 의정활동을 펴나갔다.
- ◎1998년 6월 15일 제10회 임시회를 마지막으로 초대의회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게 되었다. 초대 북구의회는 의회개원을 비롯한 의사진행안전심사, 각종 의정활동 등에 있어서 다소 미흡한 점도 있었지만 미래 북구의회의 기반과 초석을 다지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제2절 집회 현황

1. 집회현황

구분	연도	정 기 회		임 시 회		합 계	
		회수	회기(일)	회수	회기(일)	회수	회기(일)
초대	계	1	35	9	25	10	60
	'97	1	35	4	11	5	46
	'98			5	14	5	14

2. 회기별 안건 처리 현황

회수	기간	일수	계	예산 안	결산	조례 안	동의안 (승인)	건의 안	결의 안	청원	보고	질문	기타
합계		60일	159	5		112	2				6	1	33
소계	97년도	46일	127	4		100	2				2		19
제1회	97. 7.15~97. 7.15	1일	97	1		94							2
제2회	97. 8. 4~97. 8. 6	3일	5								1		4
제3회	97. 9.24~97. 9.25	2일	5			1							4
제4회	97.10.31~97.11. 4	5일	6	1			1						4
제5회	97.11.25~97.12.29	35일	14	2		5	1				1		5
소계	98년도	14일	32	1		12					4	1	14
제6회	98. 2.13~98. 2.19	7일	4								1		3
제7회	98. 2.26~98. 2.27	2일	7			3					1		3
제8회	98. 3.26~98. 3.27	2일	8			3					1		4
제9회	98. 4.28~98. 4.29	2일	5	1							1	1	2
제10회	98. 6.15~98. 6.15	1일	8			6							2

제3절 행정사무감사

1.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1)감사 목적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구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서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파악과 1998년도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사무처리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당한 사항이나 미비점에 대하여 이를 시정 또는 개선방안을 강구토록 함으로서 효율적인 구정운영을 도모하자는 데 있다.
(감사기간 : 1997. 12. 1 ~ 12. 7)

2)감사 자료 제출 요구 현황

계	기 획 감사실	문 화 공보실	총 무 사회국	산 업 건설국	보건소	의 회 사무국
287(건)	20	15	125	89	33	5





2.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1)증인 출석 및 감사 실시 현황

감사대상부서	감사자료제출건수	증인출석인원	주요감사실시건수
계	287	19	191
기획감사실	20	1	15
문화공보실	15	1	13
총무사회국	125	9	80
산업건설국	89	6	65
보 건 소	33	1	13
의회사무국	5	1	5

2)현지 확인 감사

기 간	현지확인 감사내용	비 고
'97.12.3 (1일간)	• 정자 오피스텔 용도변경 실태확인 - 정자, 파파나, 대우마리나 오피스텔	강동동
	• 공유재산관리 실태확인 - 산하리 940번지 대성교회 건축물	강동동

3)감사 결과 시정 요구 및 건의 사항 현황

감사대상부서	계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계	57	24	33
기획감사실	5	5	
문화공보실	1	1	
총무사회국	27	8	19
산업건설국	16	8	8
보 건 소	4	2	2
의회사무국	4		4

3.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 평가

- ◎1997년 7월 15일 역사적인 울산광역시 승격으로 자치복구 탄생 이후 처음으로 1997년 행정사무감사를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울산광역시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규정에 의거 1997년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7일간) 실시하였다.
- 구정 전반에 대한 실태파악과 1998년 예산안 심의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집행부의 행정사무처리 과정에서 부당한 사항이나 미비점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토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구정운영을 도모하였다.

-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신설된 북구의 어려운 환경여건 속에서도 구청장 이하 전 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업무연찬에 힘써 업무편람작성 등 공무원 개개인의 업무추진 능력을 향상시키고 구정업무의 조기 정착에 기여해 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감사과정에서 집행부는 그간에 추진한 구정전반에 대하여 구민에게 평가를 받는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여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였다. 수감자료의 경우 계수가 불일치하거나 오·탈자가 발생했고, 누락된 부분 등 감사자료 준비에 소홀한 부분이 많아 의원들이 감사자료를 파악 하는데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었다.
-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구정추진상 부당한 예비비 지출의 승인건이나 중·장기지방재정계획 미수립 등 시정요구 24건, 북구청사 잔여부지 감정요구와 민원인 시청주차장 무료이용 홍보 등 건의 사항 33건 등 모두 57건의 구정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중 예비비 부당승인지출 및 중·장기 지방재정계획 미수립과 투·융자 심사 미이행 사항의 경우 업무와 관련한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관계공무원은 담당업무와 관련한 법규연찬으로 업무 처리절차 및 법령준수사항의 위반사례가 차후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명심할 것'을 엄중 경고하였다.
- 아울러 집행부에서 보다 많은 창의력을 발휘하여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지역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한 새로운 시책들을 발굴추진해 나가는데 가일층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4.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

1)시정요구 사항 총괄

구 분		계	처 리 내 역			비 고
			완 결	추진중	처리불가	
총 계		24	17	7		
기 획 감 사 실		5	5			
문 화 공 보 실		1	1			
총 무 사회국	소 계	8	5	3		
	총 무 과	3	2	1		
	지방세과	2		2		
	시 민 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사회복지과	3	3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산 업 건설국	소 계	8	6	2		
	지역경제과	2	1	1		
	농림수산과	3	3			
	건설도시과	1		1		
	건 축 과	1	1			
	지 적 과	1	1			
보 건 소		2		2		



2)시정요구 사항 주요 처리 결과

기획감사실

▶시정요구 사항

중장기 재정계획 미수립으로 예산 편성 부적정

◎예비비 사용승인과 관련 관계법규 연찬미숙 시정요함

◎총지출액 : 7,526만 7,000원

- 보건소 청사관리비 645만 4,000원
- 보건소 · 동 방역인부임 1,492만 3,000원
- 보건소 7급 직급보조비 669만 3,000원
- 사회복지과 노인회 활동비 120만원
- 사회복지과 4/4분기 경로 승차요금 4,599만 7,000원

▶처리 내역

◎울산광역시 북구재무회계 규칙 제29조(예비비의사용)의 규정에 의거 천재지변 등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을 엄격히 하고, 향후 관계법규 연찬으로 지출목적에 부합되도록 예비비 지출승인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음.

▶비 고 : 완결

문화공보실

▶시정요구 사항

노점상 취급 불법 음반 · 비디오물 단속 철저

◎기존 음반 · 비디오물 취급업소에서는 행정의 지도단속으로 불법음반 · 비디오물취급이 근절되고 있음.

◎화봉, 농소동 등 노점상에서는 음반 · 비디오물을 판매할 수 없는데도 불법 음반 · 비디오물을 판매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노점상 단속을 철저히 하여 불법 음반 · 비디오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시정조치바람.

▶처리 내역

◎화봉, 농소를 비롯한 관할지역관광지나 대로변, 공단지역등 주민의 왕래가 빈번한 곳을 중심으로 불법 음반 · 비디오물의 진열 판매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 · 동단위 단속반을 구성하여 지속속인 단속을 실시하겠음.

◎1998. 1. 6 ~ 1. 9 동안 단속 · 점검결과 노점상 및 차량을 이용한 음반 · 비디오물이 유통되고 있지 않음.

▶비 고 : 완결

총무과

▶시정요구 사항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융자금 회수 소홀

◎융자를 7명에게 2,300만원을 대부하였으나, 상환일인 1997. 6. 30 현재 150만원만 회수하고 나머지 730만원은 미회수함으로써 융자금 운용관리에 소홀.

▶처리 내역

◎채납자에 대하여 원인분석 및 상환능력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당사자가 상환하지 못할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이 상환하도록 조치하겠음.

▶비 고 : 추진중



지방세과

▶시정요구 사항

사치성 재산에 대한 과세 소홀

◎북구관내사치성재산에 대한 징수실적이 전무한 상태이므로 빈약한 북구세수증대차원에서 사치성 재산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이며, 실시결과를 1998. 1. 30일까지 자료첨부 보고.

▶처리 내역

◎사치성 재산 일제 조사 실시

- 대 상 : 강동동 소재 3개 오피스텔
- 기 간 : 1998. 1. 12 ~ 1. 30
- 조사자 : 세무조사계장 외 2
- 조사 내용
 - 오피스텔 3개소 건축물 관리대장 55세대 대조 작업
 - 강동동사무소 취득세 부과 자료 확인
 - 현지방문 거주여부 확인 · 재산세 과세내역 확인
 - 전산상 취득세 부과내역 확인('95이후분)
 - 소유자에 대한 전화번호확인
 - 소유자에 대한 전화번호 확인

▶비 고 : 추진중

사회복지과

▶시정요구 사항

생활보호자 생활안정기금 홍보 소홀

◎저소득주민 보호를 위한 생활 안정기금을 1억 3,826만 1,000원 확보하였으나, 신청자가 없어 한 건도 지급하지 않음.

◎앞으로 저소득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저소득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치 요망.

▶처리 내역

- ◎저소득 399세대 가정에 생활안정기금 용자홍보 통신문을 일제히 발송하였으며,
- ◎반사회 등 각종 기회를 통하여 충분히 홍보하여 기금 활용도를 높혀 나가겠음.

▶비 고 : 완결

지역경제과

▶시정요구 사항

물가관리 소홀

◎물가관리체계 허술 및 지도 단속실적 미흡으로 인한 감물가가 급등하므로 강력한 물가지도 단속으로 소비자 물가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

▶처리 내역

- ◎안정적인 물가관리를 위하여 상시 물가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 ◎특히 개인서비스요금 인상억제, 매점매석행위 단속을 위한 합동단속반 편성 운영하고 있음.
- ◎소비자고발신고센터 운영을 통하여 체계적인 물가지도 관리를 하겠음.

▶비 고 : 추진중

**농림수산물****▶시정요구 사항****국·도비 보조 농약 공급 철저**

◎벼 목도열병은 7~8월 사이에 방제가 되어야 하는데 국·도비보조 농약이 적기에 공급되지 않아 벼 병해충 방제에 소홀하였음. 농약은 적기에 공급이 되어 병충해를 방제하여야 효과가 있으므로 내년부터는 농민들에게 보조되는 농약은 방제협의회를 통하여 적기에 공급하여 방제시기가 일실 되지 않도록 시정할 것.

▶처리 내역

◎국·도비 보조농약은 방제적기에 맞춰 먼저 농약을 공급하여 병해충 방제에 임하여 사업비 정산은 차후에 실시 하였음.

◎금년부터는 보조지원 농약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병해충 방제협의회를 통하여 적기에 방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음.

▶비 고 : 완결**건설도시과****▶시정요구 사항****공유재산 관리 소홀**

◎1997. 12. 3현장확인시 강동 산하동 940번지 하천부지내에(태연학교앞) 교회에서 무허가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공유재산관리 소홀 사항으로 조속한 시일내 철거 조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처리 내역

◎산하동 940-9번지 건축주에게 1997. 12. 31한 자진철거 원상복구 3차 계고하였던바, 1997. 12. 12 건축주로부터 재정형편 및 동절기로 인하여 자진철거연장 요청 각서가 접수되어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철거기한을 1998. 4. 30일까지 연장코자하며, 만약 미이행시 강제철거(행정대집행)조치할 계획임.

▶비 고 : 추진중**건축과****▶시정요구 사항****오피스텔 관리 철저**

◎강동동에 있는 오피스텔을 전수조사하여 불법구조 변경 사항이 있을 시 시정조치 및 월1회 이상 정기 점검을 강화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처리 내역

◎강동동에 있는 오피스텔 5개소에 대하여 실태조사한 결과 내부구조를 변경한 세대는 적발하지 못하였으며, 상시 거주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세대를 2세대 적발하여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토록 조치하였음.

- 오피스텔 109호

- 마리나 430호

◎오피스텔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점검 사항 기록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음.

▶비 고 : 완결



지적과

▶시정요구 사항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 소홀

◎토지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에 있어 과년도 기업부도 등으로 16억 5,522만 7,000원이 체납되어 징수에 소홀한 점이 있음.

◎앞으로 체납자에 대하여 체납 처분 및 징수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처리 내역

◎체납부담금에 대해서는 재산 압류조치 등 징수 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음.

◎현행 개발이익환수법은 개발부담금내역서 제출시부터 납부기한까지 약10개월정도 소요되어 납부의무자의 사업장 이전 및 부도등으로 체납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제도 개선하여 "선"부과"후"정산하도록 제도개선 건의 하였음. (1998. 1. 16)

▶비 고 : 완결

보건소

▶시정요구 사항

북구 건강생활협의회 운영 소홀

◎울산광역시 북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에 의거 북구건강 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 운영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15명의 위원만 위촉 구성, 현재까지 예산부족 사유로 운영실적이 전무한 상태임.

◎앞으로 운영을 활성화하여 구민건강증진 시책이나 제도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받아 보건행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정 바람.

▶처리 내역

◎건강생활협의회 운영은 반기별로 년2회 개최할 계획이며, 1998년도에는 2월경에 1차 협의회를 운영하여 보건행정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음

▶비 고 : 추진중





3)건의 사항 총괄

구 분		계	처 리 내 역			비 고
			완 결	추진중	처리불가	
총 계		33	14	17	2	
기 획 감 사 실						
문 화 공 보 실						
총 무 사회국	소 계	18	12	6		
	총 무 과	4	3	1		• 당초:5건 • 1건 지방세과 이관
	지방세과	3	2	1		
	시 민 과	1	1			
	민방위재난관리과					
	사회복지과	1	1			
	환경위생과	6	3	3		• 당초:7건 • 1건 건설도시과 이관
	환경미화과	3	2	1		
산 업 건설국	소 계	9	2	7		
	지역경제과	5	1	4		
	농림수산과					
	건설도시과	4	1	3		
	건 축 과					
	지 적 과					
보 건 소		2		1	1	
의회사무국		4		3	1	

4)건의 사항 주요 처리 결과

총무과

▶시정요구 사항

국·공유재산의 잡종재산 불하 건의

○국·공유재산의 잡종재산인 대지에 주민들이 주거용 건물을 사용할 경우 주민편익을 위하여 과감하게 불하 건의.

▶처리 내역

○국·공유재산중 재정경제원 소관 잡종재산에 대하여 국유재산관리규정에 의거 매수 희망자로부터 매수신청을 받아 상급기관(울산광역시, 재정원)으로부터 관리계획 승인을 득한 후, 매각하고 있으므로 매각조건에 해당되면 가능함.

▶비 고 : 완결



지방세과

▶시정요구 사항

과년도 체납액 결손처분 건의

◎지방세 부과징수에 있어 과년도 지방세중 결손처분 할 체납세는 과감하게 결손 처분하여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처리 내역

◎결손처분 실시(1997년 11월) - 2,251건, 1억 1,300만원

◎10만원이상 결손처분자에 대하여 관리카드를 작성, 지속적으로 관리 : 4건

▶비 고 : 완결

환경위생과

▶시정요구 사항

환경모니터 운영 건의

◎북구에 환경모니터 요원을 정식 위촉하여 환경사범을 신고할 수 있도록 건의.

▶처리 내역

◎전 구민을 환경모니터요원화하고 1998년에는 환경신문고를 설치하여 누구나 환경오염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겠음.

◎신고 대상은

- 폐수무단방류 행위
- 자동차매연, 불법소각 등 대기오염 행위
- 쓰레기불법투기행위등 각종 환경오염행위등이며

◎시책 추진을 위하여 환경오염 신고 엽서 제작 배포(5,000매), 환경신문고제도 홍보를 위한 전단지제작, 배포를 하고 신고 내용에 따라 포상금 지급 : 당초예산에 80만원 확보

▶비 고 : 완결

환경미화과

▶시정요구 사항

쓰레기 불법투기시 신고자 보상금 지급 홍보 건의

◎쓰레기 투기시 신고자에게 보상금 3만원이 지급되는 것을 주민들에게 홍보하여 쓰레기 투기가 근절 되도록 조치.

▶처리 내역

◎1998. 1. 14 관련실·과 및 전 동에 주민홍보계획을 통보하였으며, 1998.1월 반상회보에 게재하였음.

▶비 고 : 완결

지역경제과

▶시정요구 사항

가스업체 책임보험가입 지도 강화

◎북구관내 가스업체 책임보험가입이 되도록 지도하고 미가입자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범칙금 부과등 행정조치 요망.

▶처리 내역

◎북구관내 160개 LPG사용 신고업소 책임보험 100% 가입 완료.

▶비 고 : 완결



건설도시과

▶시정요구 사항

공유수면 주차 공간 확보 건의

○강동해안의 공유수면은 점 사용 허가보다는 지역경제과와 협의하여 주차 공간 확보하여 바다 경관 조성.

▶처리 내역

○주차장으로 활용될 만한 예정부지의 신규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억제하고, 기 점용 공유 수면이라도 주차장으로 사용코자 할 경우 점용 허가를 유보코자 함.

▶비 고 : 추진중

제4절 기타 의정활동

1. 구정 질문

1)구정 질문 현황

일 시	회 순	의 원	질 문 요 지
계		1	2건
'98.4.29	제9회임시회	진한걸의원	-북구관내의 실업대책에 관한 질문 -주거밀집지역 소방도로 확보와 무허가 건물처리 행정의 기본원칙에 관한 질문

2)구정 질문 및 답변 요지

■진한걸의원 질문

북구관내의 실업 실태와 향후 실업대란에 따른 구체적인 실업 대책은?

■북구청장 직무대행 부구청장 황성환

○오늘과 같은 대규모의 실업 사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데는 구청 단위의 한계가 있는 실정임. 따라서 향후 국가적인 실업 대책이 마련되면 그에 따른 우리구 실정에 맞는 대책을 수립하여 성실히 추진해 나가겠음.

○지금까지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실업 대책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첫째, 구와 전동에 취업정보센터를 설치하여 재취업 등을 알선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41명에 대해서 취업을 알선하였음.
둘째, 실직자와 고교 및 대졸자 신규실업자를 대상으로 1억 4,000만원을 지원하여 고용촉진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1차로 4월 1일부터 113명을 11개 민간학원에 3 ~ 6개월 기간으로 위탁교육하고 있고, 2차는 6월 이후 실시할 계획임.
셋째,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및 자활을 위해 2,200만원을 투입, 관내 220세대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5월 4일부터 취로사업을 실시할 예정임.

■진한걸의원 질문

주거 밀집지역 소방도로 확보와 무허가 건물의 처리 행정 기본 원칙은?

■북구청장 직무대행 부구청장 황성환

- 양정동 484-47번지 도로가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소방도로로 개설되어야 할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현대자동차와 계속 협의하여 기부체납을 받든지, 추후 구의 재정상태를 고려하여 매입하는 방법 등을 통해 소방도로를 개설토록 노력 하겠음.
- 북구관내 무허가 건축물의 처리 실태와 관련, 우리구에서는 무허가 건축물 발생시에 시공중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적발 즉시 철거 등 현 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완공된 무허가 건물은 자진철거하여 원상복구토록 계고하고, 이행하지 않을때는 고발, 강제철거, 이행강제금부과 등 관련법에 따라 조치하고 있음.

2. 북구청사 건립 추진 행정사무 처리 상황 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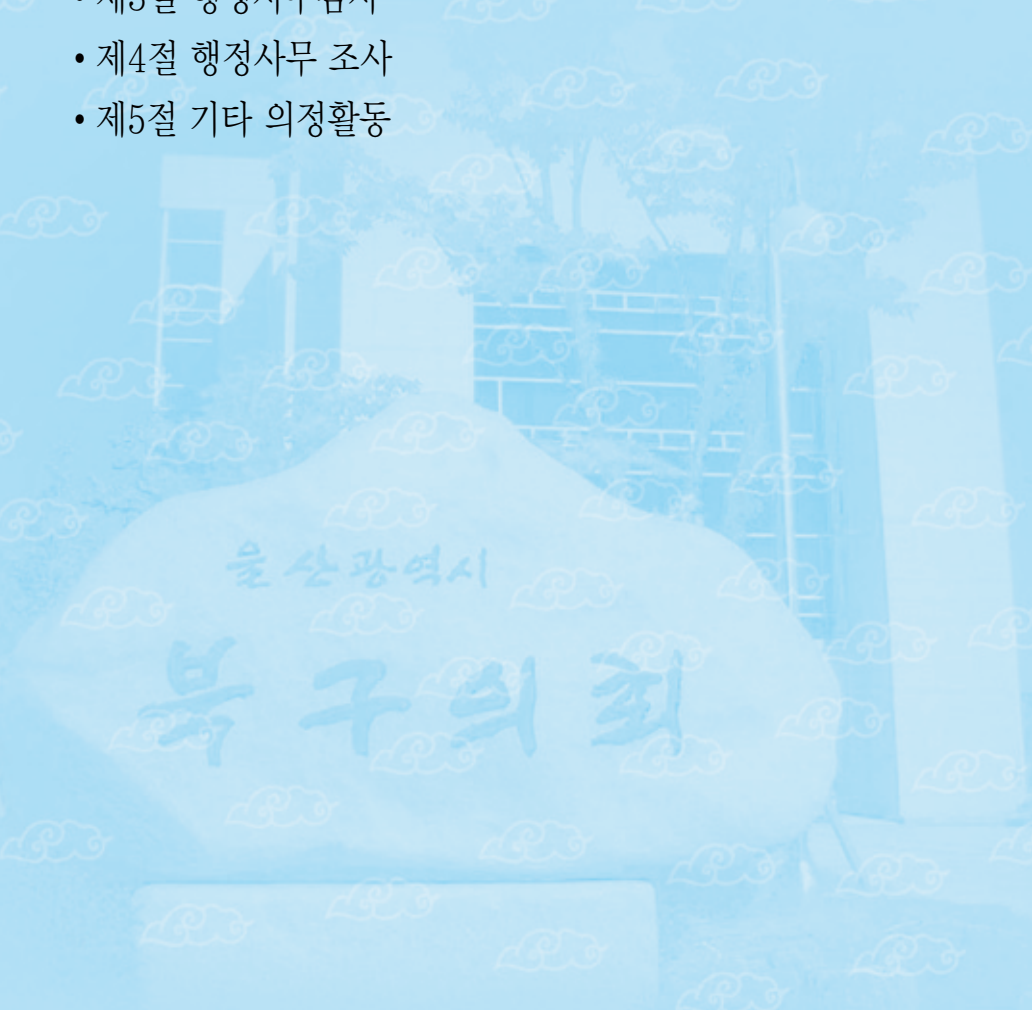
일 시	건 명	내 용	비 고
'97.12.15 (정기회)	청사정비기금 차입의결	• 차입의결의결(안)제출(집행부) • 차입금 승인 · 금액 : 55억원 승인 · 상환 : 울산광역시 • 잔여부지(도로 881평, 녹지 856평)감정촉구	
'98.2.5 (간담회)	시에 차입금 상환약속 등 서면건의	• 청사정비기금상환을 당초 시장약속대로 상환할 것을 서면약속 요구 • 감정된 토지보상금 14억 6,000만원과 미감정 보상금 27억 2,100만원 계 41억 8,100만원을 지원요구 • 전의원 연명 서명하여 공문송부	울산광역시기획 13130-70 ('98.2.13)호로 상환 및 지원 할 계획임을 회시
'98.2.19 (임시회)	입찰방식결정 업무보고	• 일괄입찰방법, 기타공사방법중 • 기타공사 방법으로 촉구	지역경제 활성화
'98.3.17 (간담회)	추진상황보고	• '98. 3. 6 시건설심의위원회에서 기타공사결정 • 현상설계 공모기간(90일 소요)	'98. 2. 19 건축 설계경기운영 지침개정으로 90일 소요
'98.6.26 (공모작품심사)	현상설계공모 작품심사	• 공모작품 15개 중 - (주)성림건축 작품 당선	의원 1명 참석
'98.4.19 (광역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 (광역시의회 : 윤두환의원)	• 청사건립비 292억원의 연도별 재원 확보대책에 관한 사항 • 외환위기로 세입결손이 많은데 북구청사 건립추진에 관한 사항	



제3장

제2대 북구의회 의정활동 1998.7.1 ~ 2002. 6.30

- 제1절 원구성 현황
- 제2절 집회 현황
- 제3절 행정사무감사
- 제4절 행정사무 조사
- 제5절 기타 의정활동





발전하는
의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기는 제2대 1998년 7월 1일 ~ 2002년 6월 30일까지이다.

제1절 원구성 현황

1. 원구성

◎집회 공고

최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단체장이 소집하도록 되어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98년 7월 1일에 울산광역시북구청장이 집회공고 하였다. 집회일시는 1998년 7월 7일 09시30분으로 공고하였다.

◎의장단 선거(제1차 본회의)

의장단 선거(제1차 본회의) 1998년 7월 7일 09시 30분에 개최된 제1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8명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지방자치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자인 진한걸 의원의 사회로 먼저 의장선거를 실시, 윤두환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하였다. 이어서 당선된 윤두환 의장의 사회로 박춘환 의원을 부의장으로 선출하였다.

◎개원식

개원식은 1998년 7월 7일 11시에 북구의회 의사당 본회의장에서 의원 8명과 조승수 북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공무원과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울산광역시 교육위원회 위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2. 제2대 의원 현황

1)의장 명단

선 거 구	성 명	생년월일	재임기간	비 고
송 정 동	윤 두 환	1955. 3. 5	1998. 7. 1 ~ 2000. 2. 21	전반기의장(2000.2.21 의원사직)
농소3동	박 춘 환	1952. 1. 11	1998. 7. 1 ~ 2002. 6. 30	전반기 부의장 및 의장(보궐)
양 정 동	진 한 걸	1953. 11. 15	1998. 7. 1 ~ 2002. 6. 30	전반기 부의장(보궐) 및 후반기 의장

2)부의장 명단

선 거 구	성 명	생년월일	재임기간	비 고
강 동 동	박 광 식	1955. 11. 15	1998. 7. 1 ~ 2002. 6. 30	

3)의원 명단

선 거 구	성 명	생년월일	재임기간	비 고
농소1동	김 수 헌	1957. 11. 15	1998. 7. 1 ~ 2002. 6. 30	전반기운영위원장
농소2동	강 혁 진	1961. 10. 1	1998. 7. 1 ~ 2002. 6. 30	
효 문 동	류 재 건	1961. 2. 5	1998. 7. 1 ~ 2002. 6. 30	
송 정 동	김 진 영	1964. 10. 11	2000. 6. 8 ~ 2002. 6. 30	보궐선거 당선
염 포 동	윤 종 오	1963. 8. 14	1998. 7. 1 ~ 2002. 6. 30	후반기운영위원장

4)의원 사진

▣ 의장단

송정동



의장 윤 두 환

농소3동



의장 박 춘 환

양정동



의장 진 한 길

강동동



부의장 박 광 식

▣ 의원

농소1동



김 수 현

농소2동



강 혁 진

효문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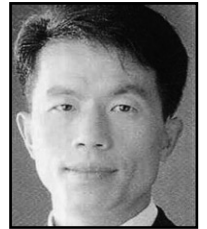
류 재 건

송정동



김 진 영

염포동



윤 종 오

3. 제2대 북구의회 총평

- ◎1998년 6월 4일 지방선거를 통하여 의원 8명이 당선되어 1998년 7월 7일 제11회 북구의회 임시회에서 재적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의장단 선거를 실시하여 의장에 윤두환 의원, 부의장에 박춘환 의원을 선출 하였다.
- ◎1998년 7월 14일 현대자동차 대량해고사태와 관련하여 정부는 현대자동차 대량해고 사태의 심각성을 직시하여 정부차원에서 중재단을 긴급 구성하여 사태해결에 나설 것 노·사 양측은 고용안정을 위한 현실적 대안제시로 협상에 임할 것 노·사 양측은 실업인원 및 향후 실업대책 등 재원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것 노·사 양측이 추천하는 전문기관에 경영전반에 대한 진단팀을 구성할 것 회사는 구체적인 내용으로 노조를 설득하고 감원을 최소화 할 것 노조는 과격한 단체행동을 자제하고 전향적 양보로 성실히 교섭에 임할 것 등을 권고 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하여 정부 및 노·사에 전달, 원만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다.
- ◎제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1998. 10. 29)에서 IMF 체제로 인한 구조조정으로 긴축재정을 운용하고 있는 시점에서 의정활동을 하지 않는 공휴일에는 회기수당을 지급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례안을 의결하였다.
- ◎제1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1999. 2. 23)에서 울산지역의 현안사항인 핵발전소 유치계획과 관련한 의회의 반대 입장을 표명하기 위하여 원자력발전소 유치반대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결의안에는 울산지역 원전유치에 대해 울산시민 66%, 울주군민 65% 이상 반대 산업자원부의 지역주민 의견을 무시한 일방적 추진과 울주군의 독자적 원전유치 결정은 정책결정에 신중치 못함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 이후 세계적으로 원전을 폐쇄하거나 사양화되어 가고 있으며, 핵폐기물 처리문제로 기존 시설물에 대한 대책 없이 추가 건설은 세계적 흐름에 역행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와 관련해 북구는 천혜의 경관을 자랑



하는 강동해안을 끼고 있으며 한국 최대의 공업도시로 현대자동차 단지가 있어 핵 방사능 누출 등 만약의 사고 발생시 지역 공산품 이미지 저하와 어패류, 해조류의 생산 격감으로 지역경제에 심각한 타격은 물론 대형참사의 우려가 상존함으로 12만 구민을 대표하여 산업자원부, 한전, 울주군, 경주시에 핵발전소 유치계획을 전면 철회할 것을 촉구 결의 하였다.

◎제2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1999. 3. 22)에서 울산지역 주민의 숙원인 현대자동차(주) 본사 울산유치 건의안을 의결하였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업체 본사의 지방이전을 촉진할 수 있는 각종 행정·재정적인 지원대책을 강구 바라며, 관련 법률 개정 및 업무의 지방이양·위임확대가 선행되어야 하며"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의 확고한 정책과 기업체의 실천의지가 필요하며, 세제감면과 금융제도, 지역의 정보화, 통상정책 등 기업 자율적 활동 여건이 조성되어야 하며" "현대자동차에서도 현장중심의 경영과 투자증대, 지역밀착 경영방침과 책임경영체제로 전환하여 본사 이전의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추진할것"을 촉구 건의 하였다.

◎제2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1999. 8. 23)에서 1970년 11월 20일 개항하여 하루 36편이 운항하고 있고 이용객의 계속적인 증가로 항공기 운항회수가 증가됨에 따라 주민들의 피해가 많아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위원장 류재건)를 구성하고 제25회 임시회(1999. 9. 4)에서 울산공항 실태조사계획서를 승인하여 울산공항 관련 전반적인 실태 및 문제점 등을 조사(1999. 9. 6 ~ 11. 9)하게 되었다. 제28회 임시회(1999. 11. 15)에서 행정사무조사 결 과보고서를 의결하여 울산북구청, 울산광역시, 건설교통부, 환경부, 한국공항공단에 통보하여 빠른 시일내 개선될 수 있도록 촉구 건의 하여 많은 문제점을 해결 하였다.

◎제3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2000. 10. 12)에서 북구 신천동 625-1번지 약수초등학교 앞 자연녹지 지역에 (주)남진여객이 시내버스 차고지를 설치하려는 계획에 대해 이 지역은 약수초등학교 학생 2,700여명이 등·하교하는 유일한 통로로서 학생들의 보행안전 문제가 심각하게 우려되고, 그 주변이 수만 평의 비옥한 농업진흥지역으로 차고지가 들어설 경우 농지가 황폐화가 우려되어 "약수초등학교 앞 시내버스차고지 설치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제37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2000. 11. 18)에서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원의 공무로 국외연수를 실시 함에 있어 보다 투명하고 내실 있는 국외연수를 실시하기 위해 연수 전 사전평가를 거쳐 효율적인 의정 활동과 내실 있는 자료 수집을 하고, 호화관광이라는 여론을 방지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연수 평가 자문위원회 조례」를 제정하였다.

◎우리구의 오랜 숙원사업인 북구청사가 준공되어 제46회 제1차 정례회(2001. 7. 7)를 신청사에서 개최 하게 되어 바야흐로 우리구가 자리를 잡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며, 제4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01. 12. 4)에서 체육시설이 부족한 연암동 일원에 체육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구민의 건전한 여가활동 공간을 마련하고자 국·시비보조사업으로 효문운동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의 건은 가결하였으나 중산동 829번지에 조성하는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는 민원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하여 부결시켰다.

◎2002년 4월 19일 제52회 임시회를 마지막으로 제2대의회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게 되었으며, 제2대 의회는 광역시와 더불어 신설된 북구의 어려운 여건과 환경속에서도 시대적 소명의식과 사명감을 가지고, 주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신설구로서 열악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지역의 시급한 현안문제를 해결하는 등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 나갔다.

제2절 집회 현황

1. 집회 현황

구 분	연 도	정 령 회		임 시 회		합 계	
		회수	회기	회수	회기	회수	회기
제2대	계	6	140	36	184	42	324
	1998	1	35	6	31	7	66
	1999	1	35	11	45	12	80
	2000	2	35	8	45	10	80
	2001	2	35	9	45	11	80
	2002			2	18	2	18

2. 회기별 안건 처리 현황

회수	기간	일수	계	예산안	결산	조례안	동원안 (승인)	건의안	결의안	청원	보고	질문	기타
합계		324	447	18	4	184	18	5	7	0	32	14	165
소계	1998년도	66	82	3	1	37	4	0	2	0	5	2	28
제11회	'98. 7. 7 ~ 7. 7	1	2										2
제12회	'98. 7. 14 ~ 7. 21	8	12			6			1		1		4
제13회	'98. 9. 1 ~ 9. 3	3	4								1		3
제14회	'98. 9. 24 ~ 9. 30	7	17	1		13							3
제15회	'98. 10. 26 ~ 11. 4	10	13		1	2	1		1		1	1	6
제16회	'98. 11. 19 ~ 11. 20	2	6			1					1		4
제17회	'98. 11. 25 ~ 12. 29	35	28	2		15	3				1	1	6
소계	1999년도	80	118	5	1	45	4	3	1	0	6	4	49
제18회	'99. 1. 25 ~ 1. 26	2	5					1				1	3
제19회	'99. 2. 19 ~ 2. 25	7	8			3			1				4
제20회	'99. 3. 29 ~ 3. 30	2	11			6		2					3
제21회	'99. 4. 26 ~ 4. 30	5	16	1		8						2	5
제22회	'99. 5. 25 ~ 5. 26	2	4								1		3
제23회	'99. 7. 27 ~ 7. 27	1	19			14	1						4
제24회	'99. 8. 23 ~ 8. 26	4	6								1		5
제25회	'99. 9. 1 ~ 9. 4	4	4	1									
제26회	'99. 9. 30 ~ 9. 30	1	7			3						1	3
제27회	'99. 10. 8 ~ 10. 16	9	9		1	2	1				1		4
제28회	'99. 11. 8 ~ 11. 15	8	11	1		2					2		6
제29회	'99. 11. 25 ~ 12. 29	35	18	2		7	2				1		6
소계	2000년도	80	124	5	1	59	4	0	2	0	7	3	43
제30회	'00. 2. 12 ~ 2. 21	10	9			3					1		5
제31회	'00. 3. 28 ~ 4. 3	7	19	1		12			1			2	3



회수	기간	일수	계	예산안	결산	조례안	동약안 (승인)	건의안	결의안	청원	보고	질문	기타
제32회	00. 5. 22 ~ 5. 23	2	7			2					1		4
제33회	00. 6. 27 ~ 7. 1	5	7	1			1					1	4
제34회	00. 7. 7 ~ 7. 14	8	12		1	3	1				1		6
제35회	00. 9. 4 ~ 9. 7	4	19			14					1		4
제36회	00.10. 10 ~ 10. 12	3	14			7			1		2		4
제37회	00. 11. 13 ~ 11. 18	6	17	1		10							6
제38회	00. 11. 25 ~ 12. 21	27	11	1		2	2				1		5
제39회	00.12. 22 ~ 12. 29	8	9	1		6							2
소계	2001년도	80	90	4	1	25	5	2	0	0	11	4	38
제40회	01. 1. 19 ~ 1. 19	1	4								1		3
제41회	01. 2. 8 ~ 2. 15	8	8			1		2			1	1	3
제42회	01. 3. 28 ~ 4. 4	8	11	1		5	1					1	3
제43회	01. 5. 11 ~ 5. 12	2	7								4		3
제44회	01. 5. 22 ~ 5. 23	2	10			3					2		5
제45회	01. 6. 27 ~ 6. 27	1	3			1							2
제46회	01. 7. 7 ~ 7. 16	10	10		1	2	1				2		4
제47회	01. 9. 15 ~ 9. 25	11	11	1		8							2
제48회	01. 11. 9 ~ 11. 13	5	8			1						1	6
제49회	01. 11. 26 ~ 12. 20	25	12	1		1	3				1	1	5
제50회	01. 12. 21 ~ 12. 27	7	6	1		3							2
소계	2002년도	18	33	1	0	18	1	0	2	0	3	1	7
제51회	02. 1. 29 ~ 2. 6	9	14			8					1	1	4
제52회	02. 4. 11 ~ 4. 19	9	19	1		10	1		2		2		3

제3절 행정사무감사

1.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1)감사 목적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및 울산광역시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구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파악과 1999년도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사무처리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당한 사항이나 미비점에 대하여 이를 시정 또는 개선방안을 강구토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구정운영을 도모하자는데 있다.

(감사기간 : 1998. 11. 26 ~ 12. 2)

2)감사자료 제출 요구 현황

계	공 통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사회국	산업건설국	보건소	의회사무과
179(건)	12	12	8	66	63	11	7

2.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1)증인 출석 및 감사 실시 현황

감사대상부서	감사자료제출건수	증인출석인원	참고인출석인원	주요감사실시건수
계	192	18	4	192
공 통 사 항	12			12
기획감사실	12	1		12
문화공보실	8	1		8
총무사회국	68	7		68
산업건설국	73	7	4	73
보 건 소	12	1		12
의회사무과	7	1		7

2)현지 확인 감사

○기 간-1998. 11. 29(1일간)

○현지 확인 감사 내용

- ① 소방도로 예정지(염포76-2번지)/염포동
- ② 염포 미도아파트 재해위험지/염포동
- ③ 소방도로 예정지(양정464-1번지)건축물현황 <양정초등학교 후문>/양정동
- ④ 양정동 사무소앞 소방도로상 건축물/양정동
- ⑤ 미포국가공단/효문 · 연암
- ⑥ 신현~어물간 도로공사 현장/강동동(신현)
- ⑦ 금천교/강동동(어물)
- ⑧ 간이조선수리소/강동동(어물)
- ⑨ 신현~당사간 도로공사현장/강동동(신현)
- ⑩ 매곡 마동 소교량 수해피해지 현장 / 농소1동
- ⑪ 매곡 괴정 소교량 파손지 현장/ 농소1동
- ⑫ 약수 오리미들 농로확 · 포장 공사현장/ 농소2동

3)감사 결과 시정 요구 및 건의 사항 현황

감사대상부서	계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계	60	25	35
공통사항	2	2	
기획감사실	7	4	3
문화공보실	5	2	3
총무사회국	26	8	18
산업건설국	17	8	9
보 건 소	3	1	2



3.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

1)시정요구 사항 총괄

구 분		계	처 리 내 역			비 고
			완 결	추진중	처리불가	
총 계		25	18	7		
공 통 사 항		2	2			
기 획 감 사 실		4	3	1		
문 화 공 보 실		2	2			
총 무 사회국	소 계	8	6			
	총 무 과	5	3	2		
	지방세과	1	1	2		
	시 민 과					
	사회복지과	1	1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1	1			
산 업 건설국	소 계	8	4	4		
	지역경제과	2	2			
	농림수산과	2	1	1		
	건 설 과					
	도시교통과	2	1	1		
	건 축 과	2		2		
	지 적 과					
보 건 소		1	1			

2)시정요구 사항 주요 처리 결과

공통사항

▶시정요구 사항

감사자료 작성 소홀

○1998년도 북구의 행정사무 감사실시에 따른 의원들의 감사자료 요구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정확한 감사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나 그렇지 못하여 업무보고서 및 감사 자료파악에 혼란을 초래케하는 등 전반적으로 미흡. 앞으로 요구자료에 대하여 간부공무원들이 최종확인과 직무교육 등을 통한 명확한 근거와 처리절차 등 상세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처리 내역

○행정사무감사자료의 제출시에는 심도있고, 정확한 근거에 의한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와 병행하여 간부공무원 및 담당자에 이르기까지 소관사무에 완벽을 기할 수 있도록 업무연찬회, 직무교육 등 소양을 넓힐 수 있는 각종 시책을 강구, 이를 적극 추진토록 하겠음.

▶비 고 : 완결



기획감사실

▶시정요구 사항

각종 위원회 운영 소홀

◎각종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가 42개이나 이중 1년내 한번도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가 19개가 됨으로 위원회 난립 및 운영에 소홀한 점이 있음. 앞으로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폐합 정리하여 내실있게 운영할 것.

▶처리 내역

◎법령상 설치토록 되어있는 위원회에 대하여는 운영실태 및 정비의견을 행정자치부에 제출하였으며, 중앙정부의 정비 결과에 따라 정비 추진토록 하겠음.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도 실효성이 적은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폐지 내지 통·폐합하여 앞으로 위원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음.

▶비 고 : 추진중

총무과

▶시정요구 사항

주민동향 파악 관행 시정

◎총무과에서 일선동으로부터 보고받고 있는 주민행사, 집회 등의 관행적 주민동향 파악은 법적 근거도 없는 사생활 침해이자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임.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시정하고 행정에서 꼭 필요한 사건·사고·화재발생등만파악하여 신속하게 행정적으로 대처하기 바람.

▶처리 내역

◎긴급한 재난이나 사건·사고등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조치될 수 있는 주민 불편 사항만을 동향 보고토록 조치하였음.

▶비 고 : 완결

지역경제과

▶시정요구 사항

도시가스 공사후 배관도면 관리 철저

◎도시가스관 배관도면은 지역 경제과와 각 아파트 관리실에 비치하여 상수도관 매설등 굴착 공사 시에 참고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함. 그러나 구청에서 보관 관리하고 있는 도면은 실제 시행구간이 변경되어도 정리하지 않아 전체적으로 관리가 부실함. 도시가스관 매설도면을 재정리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처리 내역

◎공사발주 시 현장상황과 일치되는 도면 제출 및 현재까지의 공사도면 전면 재확인 후 현장과 불일치되는 도면은 정리하도록 경동도시가스측과 협의.

◎추후 공사신고 승인 시 시공사와 가스안전공사 현장감리자의 기술자문을 받아 도면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행하고 현장상황과 도면간 상이점 발견시 시정후 시공토록 조치.

▶비 고 : 완결

농림수산과

▶시정요구 사항

효문사거리 농경지 오염 대책 강구

◎효문사거리의 오·폐수관로 누수로 인한 농경지 오염으로 추곡수매시에 벼에서 이상한 냄새 발생으로 등의 판정.

◎수확한 벼가 식용 가능한지 수거하여 국립식품 연구원에 검사를 의뢰, 식용여부 판단 등 대책 강구.



▶처리 내역

◎상기 지역은 오·폐수관로 파손으로 오·폐수 유입에 의하여 오염된 상태임.

◎추곡수매시 벼에서 이상한 냄새 발생에 의한 등외 판정은 아니며 태풍피해로 인해 수발아가 되어 등외 판정을 받은 것임.

◎이미 수확한 벼는 정부 수매로 태화농협창고에 입고되어 일부 잔량은 식용으로 소비.

▶비 고 : 완결

보건소

▶시정요구 사항

약품 구매 방법 개선

◎약품구매시 부산, 경남지역 약품도매상의 한정적 계약 체계의 잘못으로 시중가격보다 싸게 구입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계약업체를 전국으로 확대, 공개입찰을 통하여 최저가격으로 구입 할 수 있는 방안 강구.

▶처리 내역

◎각종 약품구매(입찰, 수의)시 대한의약품 도매협회(서울)에 의뢰하여 전국에 많은 약품 도매 업체가 응찰 및 견적서가 제출될 수 있도록 하여 최저 가격으로 구입토록 하겠음.

▶비 고 : 완결

3)건의 사항 총괄

구 분		계	처 리 내 역			비 고
			완 결	추진중	처리불가	
총 계		35	24	8	3	
기 획 감 사 실		3	1		2	
문 화 공 보 실		3	3			
총 무 사회국	소 계	18	13	5		
	총 무 과	3	1	2		
	지방세과	2	1	1		
	시 민 과	3	3			
	사회복지과	4	3	1		
	환경위생과	4	4			
	환경미화과	2	1	1		
산 업 건설국	소 계	9	6	2	1	
	지역경제과	2	1	1		
	농림수산과	1	1			
	건 설 과	1	1			
	도시교통과	2	1	1		
	건 축 과	3	2		1	
	지 적 과					
보 건 소		2	1	1		



4)건의 사항 주요 처리 결과

기획감사실

▶시정요구 사항

소송업무 제도 개선 요망

- ◎소송사건을 고문변호사에게 위임하여 수행할 때 본안 심리도 들어가지 않고 1심에서 승소할 경우와 기각 판결로 승소할 경우에 승소 사례금을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개선 요망.

▶처리내역

- ◎승소사례금은 소송사건을 위임받은 수임변호사와의 위임계약에 따라, 성공보수 차원에서 당해 심급 승소시마다 지급키로 되어 있으며,
- ◎1심기각 판결 승소 또한 본안 사건에 의한 심급별 승소한 경우이므로 사례금을 지급하고 있음.
- ◎건의 내용대로 1심 승소의 경우와 기각판결 승소할 경우 사례금 지급 개선여부는 타 구·군 사건위임 계약에 의한 승소사례금 지급기준과의 형평성문제도 있는 만큼 현실적으로는 개선하기 어려움.

▶비 고 : 불가

문화공보실

▶시정요구 사항

각종 체육대회 통합 개최 요구

- ◎1998년도에는 구청장배 축구대회, 테니스대회 등 종목별로 개최일정이 달라 동에서는 부담이 되므로, 이를 북구 주민체육대회로 통합, 구민화합과 실질적인 주민을 위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처리 내역

- ◎1999년도 제2회 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 개최시 실시 종목별 통합개최토록 하겠음.

▶비 고 : 완결

총무과

▶시정요구 사항

수의계약시 북구지역업체 우선 계약 방안 강구

- ◎북구청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북구지역 소재 업체가 아닌 타구 소재 업체로 계약하는 것은 주민정서에 맞지 않으므로 될 수 있는 한 수의계약시 북구지역 소재 업체와 계약이 될 수 있도록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방안 강구.

▶처리 내역

- ◎북구관내 업체를 참여토록 다 각도로 노력하였으나 아직까지 수의계약에 맞는 건설, 제조, 설비 등의 면허(등록)업종이 적으며 일부 업체만 참여하고 있는 실정임.
- ◎관내 업체를 조사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내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임.

▶비 고 : 추진중

사회복지과

▶시정요구 사항

고아, 행려자 대책

- ◎IMF한파로 향후에 북구지역에도 부모의 실직 및 가정파탄으로 고아와 행려자가 많이 발생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회복지과에서는 보호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처리 내역

- ◎노숙자, 고아, 행려자 대책
 - 순찰 활동 실시 - 기간 : 1997. 1. 27 ~ 계속
 - 발생시 보호시설 안내
 - 의류, 식사비, 목욕비 지원

▶비 고 : 완결

**환경위생과****▶시정요구 사항****동천강 정화시설 설치**

◎동천강 간이 정화시설은 수질을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므로 전문지식과 연구로 효과성을 부각하여 환경적 차원에서 설치될 수 있도록 건의하기 바람.

▶처리 내역

◎추경예산 편성시 1,000만원을 요구하여 반영시 간이 정화 시설 설치 할 계획임.

▶비 고 : 완결**지역경제과****▶시정요구 사항****달천농공단지 입주업체 지원 대책 강구**

◎달천농공단지의 희망업체들이 국내 경기침체로 자금 압박을 많이 받고 있는 실정임. 이에따라 지금이라도 농공단지 입주를 위해 투자된 자금을 이자없이 원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으면하는 업체가 많아 상당수 탈락업체가발생될것으로 예상되므로 금융지원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처리 내역

◎달천농공단지에 입주하는 업체에 제공되는 융자금의 조건, 이율, 금액, 상환조건 등 홍보.

◎중소기업청에서는 농공단지 조성사업자에게 유리한 조건의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지침을 개정 검토중임.

◎입주업체에게 각종 융자금제도 홍보.

▶비 고 : 추진중**농림수산과****▶시정요구 사항****소규모 어항시설 사후 관리 철저**

◎강동 간이 조순수리시설물 전체가 부실로 드러나 감사원 감사를 요청하였음. 각종 국·시비 지원사업에 대한 자체 점검실시로 사후 관리 철저.

▶처리 내역

◎향후 각종 국·시·구비로 추진되는 모든 사업에 대하여 철저한 자체점검 실시와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음.

▶비 고 : 완결**건축과****▶시정요구 사항****농·어촌 폐가 철거 방안 강구**

◎북구관내 농어촌에 폐가가 많아 청소년의 탈선장소로 이용되고, 미관상 보기가 흉함으로 이를 전수 조사하여 구청에서 장비 등을 지원하여 철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처리 내역

◎1999. 1. 30일까지 우리구 관내 농·어촌 폐가 전수조사하여, 소유자가 원할 경우 북구에서 장비를 동원, 철거할 계획임.

▶비 고 : 완결**4.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1)감사 목적**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및 울산광역시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구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파악과 2000년도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사무처리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당한 사항이나 미비점에 대하여 이를 시정 또는 개선방안을 강구토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구정운영을 도모하자는데 있다. (감사기간 : 1999. 11. 26 ~ 12. 2)

2)감사자료 제출 요구 현황

계	공 통	기획공보실	총무사회국	산업건설국	보건소	의회사무과
228(건)	14	17	133	47	14	3

5.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1)증인 출석 및 감사 실시 현황

감사대상부서	감사자료제출건수	증인출석인원	참고인출석인원	주요감사실시건수
계	230	20	1	230
공 통 사 항	14			14
기획공보실	18	1		18
총무사회국	133	11		133
산업건설국	47	6	1	47
보 건 소	14	1		14
의회사무과	4	1		4

2)현지 확인 감사

◎기 간 -1999. 12. 26(1일간)

◎현지 확인 감사 내용

- ① 보건소 현 실태 확인
 - 각종장비 관리 실태
 - 약품관리 상태
- ② 관내주유소 연료기 및 미터기(지역경제과)
 - 강동, 농소, 화봉지역

3)감사 결과 시정 요구 및 건의 사항 현황

감사대상부서	계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계	57	28	29
공통사항	2	2	
기획공보실	5	4	1
총무사회국	24	16	8
산업건설국	22	3	19
보 건 소	4	3	1



6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

1)시정요구 사항 총괄

구 분		계	처 리 내 역			비 고
			완 결	추진중	처리불가	
총 계		29	27	1	1	
공 통 사 항		2	2			
기 획 공 보 실		4	4			
총 무 사회국	소 계	17	15	1	1	
	총 무 과	8	8			
	자치행정과	4	4			
	지방세과	1	1			
	민원지적과	2	2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1		1		
	환경미화과	1			1	
산 업 건설국	소 계	3	3			
	지역경제과					
	농림수산과	1	1			
	건 설 과					
	도시교통과	1	1			
	건 축 과	1	1			
보 건 소		3	3			

2)시정요구 사항 주요 처리 결과

공통 사항

▶시정요구 사항

감사자료 작성 소홀

- 지방자치법 제17조의4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를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1999년 11월 13일 통보하였으나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관련 자료에 대한 현황, 근거서류를 일목요연하게 작성 제출하여야함에도 그렇지 못하였음.
- 총무과에서는 전실·과 취합 요구 자료인 특근 급식비 지출 현황, 관외출장 여비 현황등 동일 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서와 감사자료 내용의 불일치 등으로 감사 당일 예산집행현황에 대하여 추가자료를 제출하는 등 의원들의 감사자료 파악에 혼란을 초래하였고,
- 기획공보실에서는 취합과정에서 감사요구 자료를 확인하지 않고 실·과의 자료를 그대로 의회 제출하였음. 향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시 간부공무원들이 확인점검을 철저히 하여 신뢰성있고 정확한 자료를 작성, 제출할 수 있도록 시정 요구함.

▶처리 내역

- 감사자료 및 각종 안전 제출시 관련자료에 대한 현황 및 추진사항, 근거서류 등 일목요연하게 작성 제출하고,
- 향후 각종 제반규정사항 준수 및 정확한 자료작성을 위한 부서별 교육실시로 같은 사례가 사전에 예방



되도록 하고 자료취합에 따른 철저한 준비가 되도록 시정하겠습니다.

▶비 고 : 완결

기획공보실

▶시정요구 사항

특정업체 상호 지정

◎구민의 대회의실에 세일즈 구정홍보를 위해서 특산물 사진 전시에 따라 특정업체의 상호가 나타나는 것은 매우 유감으로 사료되며 이 부분을 지우거나 모자이크로 처리하여야 바람직할 것이나, 특정회사 상품이 보이게끔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으므로 시정 요구함.

▶처리 내역

◎지역의 특산물 홍보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추진의 일환으로 구청 대회의실에 특산품을 촬영 게시 했으나 특정업체 상호가 사진에 표시가 되도록 의도적으로 홍보사진을 찍은 것은 아니며 차후 홍보사진 촬영시 주의해서 찍도록 하겠음.

◎1999. 11. 30일자로 특정업체 상호를 지워서 게시하였음.

▶비 고 : 완결

총무과

▶시정요구 사항

사무 인수인계 철저 요망

◎1997. 7. 15일 북구청이 신설되어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종전 중구, 울산군의 관계 서류가 인계되지 않아 문서확인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울산광역시북구사무인수인계 규칙 제10조에 의거 중구, 울주군의 보존문서(30년, 준영구, 영구)누락분에 대하여 인수를 철저히 하여 북구 행정발전에 철저를 기할 것.

▶처리 내역

◎우리구 신설 당시 북구 설치 준비단에서 문서이관을 하였으며, 이관문서에 대하여 현재 각 실·과에서 보관중임.

◎2000년 보존문서 이관시 중구와 울주군과 협의하여 누락분에 대하여 인수조치하겠음.

▶비 고 : 완결

자치행정과

▶시정요구 사항

열린글방 효율적 운영

◎열린글방이라 하면 마치 12만 북구민들 모두가 이용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이용은 극히 저조하여, 동단위 또는 권역별로 설치하여 편리하게 전구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 강구바람.

▶처리 내역

◎문고를 갖춘 동에는 도서를 순환 비치하고 있으나,

◎동인력 및 공간부족으로 동단위 또는 권역별 신규 문고설치는 어려운 실정이므로 북구이동도서관과 협의하여 구민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하겠음.

▶비 고 : 완결

도시교통과

▶시정요구 사항

도시계획 재정비 협조체제 강화

◎울산광역시 북구도시계획 위원회 조례에서 의결된 사항은 상부기관에 강력히 요구하여야 하며, 타 행정 기관과의 협조체계가 미흡 함으로 시정 요구함.

▶처리 내역



○도시재정비계획은 광역시 차원에서 결정되는 사항이나 복구에 요구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업무추진시 반영되도록 강력히 요구함과 동시에 타기관과의 사전의견 조율을 거쳐 협조체계를 강화토록할 것임.

▶비 고 : 완결

보건소

▶시정요구 사항

약품관리 철저

○보건소에서는 각종 육아예방접종시 P.D.T, 간염 예방접종, 결핵약 등 약품보관 창고에 관리가 되지 않아 일부약품을 일반문서고에 보관하는 등 문제가 발생됨으로 보건소에서는 약품구매시 보관에 철저를 기하고 방역장비를 문서고에 보관한데 대하여 시정 요구됨.

▶처리 내역

○보관창고로 이동조치하였으며 보관에 철저를 기하겠음.

▶비 고 : 완결

3)건의 사항 총괄

구 분		계	처 리 내 역			비 고
			완 결	추진중	처리불가	
총 계		29	22	4	3	
공 통		0				
기 획 공 보 실		1	1			
총 무 사회국	소 계	8	7		1	
	총 무 과	4	4			
	자치행정과	2	2			
	지방세과	0				
	민원지적과	0				
총 무 사회국	사회복지과	1			1	
	환경위생과	1	1			
	환경미화과	0				
산 업 건설국	소 계	19	13	4	2	
	지역경제과	4	4			
	농림수산과	4	2	1	1	
	건 설 과	5	2	2	1	
	도시교통과	2	2			
	건 축 과	4	3	1		
보 건 소		1	1			

4)건의사항 주요 처리 결과

기획공보실

▶시정요구 사항

구청장 공약 사항 2부제 수업 해소 재검토 요망



◎구청장 공약사항 중 2부제 수업을 없애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교육청 등에 협의를 하지도 않고 억지로 2부제 수업해소를 하다보니 오히려 학급당 학생수(35명~60명)만 늘고 있으며 당초 공약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하기 바람.

▶처리 내역

◎교육청의 업무로 지역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안인 만큼 교육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2부제 수업 해소의 질적 향상을 도모 할 수 있도록 하겠음.

▶비 고 : 완결

총무과

▶시정요구 사항

국·공유지 관리 체계 재검토

◎울산광역시 북구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시행 규칙에 따라 농경지를 계속 같은 사람이 대부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고 소액의 임대료를 부과하는 것은 행정의 낭비가 되므로 국·공유지 263건에 대한 관리 체계를 전면 재검토하여 대부자가 누락됨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바랍. 또 관내 30년이상 국유지를 경작해 오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불하 방법을 강구하기 바랍.

▶처리 내역

◎국·공유지 매각 가능분을 연중 조사(국유지 : 1,100필지, 공유지 : 860필지)하여 매각가능 토지중 매수 신청이 있을시 적극 매각 추진 할 것임.

▶비 고 : 완결

자치행정과

▶시정요구 사항

모니터요원 활성화

◎민원행정시책이나 제도 개선 구민 여론수렴 등 주민 불편 사항 의견제출 등 행정참여방안 강구하여 애로 사항을 충분히 인식하고, 구민감동 행정서비스 품질개선 분위기를 조성하여 봉사행정에 최선을 다할 것을 건의함.

▶처리 내역

◎현재 주민 의견 수렴 및 건의 사항 접수는 다방면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필요성이 있을 경우 추가로 지정하여 운영 할 계획임.

◎현재 운영하는 시책

- 120기동대, 민원상담의날, 대형공사구민감시관제도, 직소민원제도, 민원모니터

▶비 고 : 완결

사회복지과

▶시정요구 사항

편의시설 설치 지정

◎현재까지 각동에 설치된 장애인 편의시설을 이용하여 본 사례가 1건도 없으며, 민원택배제를 활용하여 장애인 민원처리에 아무런 불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동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지 상급기관에 의무규정 개정을 건의함.

▶처리 내역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근접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사회생활 참여를 높이는 것이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목적임.

▶비 고 : 불가



환경위생과

▶시정요구 사항

약수터 수질검사 철저

- ◎먹는물 공동시설 수질검사 실시와 관련하여 지속적인 주변청결 및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 식수 사용 인근주민에게 홍보계도하고, 수질검사 결과를 안내판에 부착, 공동우물 약수터에 대한 신뢰감을 주어 안심하고 이용객이 증가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바람.

▶처리 내역

- ◎전체 먹는물 공동시설 6개소에 대한 점검표작성, 소독약배포, 주변청결 유지, 매분기 2회이상 수질검사 실시 및 채수과정에 신중을 기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계속하여 부적합 결과가 나올시는 음용수로 사용불가함을 주민홍보하고 사용금지 안내판 설치하는 등 먹는 물공동시설 지정취소 할 것임.

▶비 고 : 완결

농림수산과

▶시정요구 사항

수목이식시 대책 강구

- ◎농림수산과에서는 임도 개설시 좋은 나무가 훼손되지 않도록 지장수목 굴취, 이식을 할 시에 임지의 여건을 최대한 살려 아까운 수목이 보존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처리 내역

- ◎임도개설시 발생하는 지장목 굴취 이식시 분을 만들어 굴취를 하여야 하나 임지의 여건상 불가능하며 그 외 인허 가지 및 각종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지장목에 대해서는 제반사항 검토하여 조정수로 사용토록 할 것임.

▶비 고 : 완결

건설과

▶시정요구 사항

도로 굴착공사후 사후 관리 철저

- ◎관내 상수도사업과 관련해 굴착후 재포장 공사시 도 로면이 고르지 않아 차량 운행시 비만 오면 고여 있는 물이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므로 도로 굴착 공사 후 제대로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현장확인을 강화, 주민불편 사항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람.

▶처리내역

- ◎각종 관로시설 관리 7개 기관에 공문 발송
 - 공사시 철저를 기하고
 - 준공검측시 부실할 경우 재시공 방침

▶비 고 : 완결

도시교통과

▶시정요구 사항

시내버스 노선 신설 건의

- ◎화봉 이북지구에서 삼산방향 시내버스 노선설치. 화봉 지구 주민이 삼산방향으로 시내버스가 없어 주민 불편함으로 진장, 명촌, 효문역을 경유하는 시내버스선이 신설될 수 있도록 광역시에 건의하기 바람.

▶처리 내역

- ◎기 건의된 내용에 의거 시내버스 노선개편을 위한 1999년 제2차 시내버스노선 조정 심의위원회

(1999. 12. 14)에서 모화 울산역 무거를 운행하는 126번 노선을 신설하여 현재 1일 6대 운행하고 있음.
▶비 고 : 완결

건축과

▶시정요구 사항

집중게시대 설치 문제점

◎건축과에서는 관내 민자유치를 통합하여 현수막 집중게시대 11개소를 신설 설치 하였으나, 광고효과의 핵심부분은 후원업체가 선정된 부분에 대하여 집중 게시대를 설치하고 있는만큼 행정의 전반적인 재검토를 요망함.

▶처리 내역

◎현수막 집중게시대는 순수민자유치로 설치한 것으로 당초 설치시의 계약조건상 시공자가 상업광고를 1/5범위 내에서 지정광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현상태에서의 게시대의 변경은 계약파기에 따른 새로운 문제점이 우려되는 등으로 불가한 것으로 판단되나, 계약기간이 완료되는 3년후 재계약시는 구마크 설치 위치의 변경을 포함하여 그간의 운영에 따른 전반적인 문제점을 재검토하여 최선의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음.

▶비 고 : 완결

보건소

▶시정요구 사항

예방접종 홍보 철저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예방접종시 구민에게 혜택이 되도록 접종기간 등을 홍보하여(유선자막 등)노약자 등 예방접종에 차질없이 건강한 구민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 바람.

▶처리 내역

◎동을 통한 동 앰프방송 및 지역소식지, 유선방송 등을 통하여 홍보를 철저히 하겠음.

▶비 고 : 완결

7.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1)감사 목적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6조 내지 제19조 및 울산광역시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구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파악과 2001년도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사무처리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당한 사항이나 미비점에 대하여 이를 시정 또는 개선방안을 강구토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구정운영을 도모하자는데 있다.
(감사 기간 : 2000. 11. 27 ~ 12. 3)

2)감사자료 제출 요구 현황

계	공 통	기획감사실	총무국	경제사회국	도시건설국	보건소	의회사무과
205(건)	16	19	84	31	38	14	3

8.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1)증인 출석 및 감사 실시 현황



감사대상부서	감사자료제출건수	증인출석인원	참고인출석인원	주요감사실시건수
계	203	19	9	203
공 통 사 항	23			23
기획감사실	13	1		13
총 무 국	79	6	4	79
경제사회국	32	5	2	32
도시건설국	40	5	3	40
보 건 소	13	1		13
의회사무과	3	1		3

2) 현지 확인 감사

○기 간-2000. 12. 2 ~ 12. 3(2일간)

○현지 확인 감사 내용

① 동 업무추진 상황 감사 실시

- 일반추진 현황
- 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 및 추진상황
- 동 발주사업 추진현황

② 관내 현장 확인 실시

- 약수마을 철도통행 박스 확장공사
- 소방도로 개설 대상지(염포동461-1번지일원)
- 농심메가마켓 하수처리시설
- 소방도로 개설 대상지(호계동678-3번지일원)
- 농소3동사무소 신축부지(천곡동421-12번지)

3) 감사 결과 시정 요구 및 건의 사항 현황

감사대상부서	계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계	69	39	30
공통사항	3	3	
기획감사실	5	4	1
총 무 국	18	9	9
경제사회국	17	11	6
도시건설국	20	7	13
보 건 소	2	1	1
동	4	4	

9.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 평가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울산광역시북구의회 행정 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의 등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요구하고 새로운 방향을 대안하는데 있다. 2000년 11월 27일 ~ 12월 3일까지 7일간의 감사실시에 대하여 중앙부서 및 상급기관에서는 정기 및 수시로 지방자치단

- 체에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주민대의기관인 의회의 감사기간이 너무 짧아 전반적으로 효율적인 감사를 하지 못하는 한계점을 안고 있다.
- ◎민선시대를 맞아 행정수요 및 주민욕구가 날로 급증되고 있음에도 지방세과 박현근 공무원은 지방세과를 찾아온 민원인에게 아주 친절하고, 민원1회 방문제도 사업 등에 대해서도 솔선수범 하는 공무원으로서 높이 평가하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대다수 공무원들에게도 노고를 격려하였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의거하여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를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통보 하였으나 일목요연하게 작성·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감사자료 작성이 소홀하였다. 이에따라 대부분의 실과에서 의원들의 질의과정에서 감사자료 계산착오나 엉뚱한 자료를 시인하는 사례가 빈번하였고, 각 실과에서는 구체적인 업무과목이 미흡하여 의원들에게 설득력이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 ◎각종 문제점에 따른 지적사항으로는 감사자료 작성 소홀과 예산집행 부적절, 행정사무감사 수감자세 불성실, 1999년도 감사지적사항 처리 미흡 등 시정요구 39건, 건의사항 30건, 총 69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관계규정 및 업무연찬으로 조속히 시행·조치, 2001년 1월 31일까지 결과 보고하였다.
 - ◎의회와 유기적인 상호 협력체계 구축으로 관계법령 및 처리절차를 준수하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새로운 시책개발과 북구 발전에 기여토록 하였다.

10.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

1)시정·건의 요구 사항 총괄

구 분		계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계	완결	추진중	처리불가	계	완결	추진중	처리불가	계	완결	추진중	처리불가
총 계		69	43	23	3	39	31	8	0	30	12	15	3
공통사항		3	3	0	0	3	3			0			
기획감사실		4	3	1	0	4	3	1		0			
총 무 과	소 계	19	12	7	0	9	7	2		10	5	5	
	총 무 과	6	4	2	0	4	3	1		2	1	1	
	자치행정과	7	4	3	0	4	3	1		3	1	2	
	지방세과	2	2	0	0	1	1			1	1		
	민원봉사과	2	0	2	0	0				2		2	
	주민자치센터운영단	2	2	0	0	0				2	2		
경 제 사 회 국	소 계	17	11	5	1	11	8	3	0	6	3	2	1
	지역경제과	3	3			2	2			1	1		
	사회복지과	6	4	1	1	3	2	1		3	2		1
	환경위생과	3	1	2	0	2	1	1		1		1	
	환경미화과	5	3	2	0	4	3	1		1		1	
도 시 건 설 국	소 계	20	10	9	1	7	6	1	0	13	4	8	1
	도시교통과	8	3	5	0	2	2			6	1	5	
	건 설 과	4	3	1	0	4	3	1		0			
	농림수산과	6	2	3	1	0				6	2	3	1
	허 가 과	2	2	0	0	1	1			1	1		
보 건 소		2	0	1	1	1	0	1	0	1	0	0	1
동		4	4	0	0	4	4			0			



2)시정요구 사항 주요 처리 결과

공통사항

▶시정요구 사항

감사 지적사항 처리 미흡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하여 형식적으로 완결하는 등 처리가 미흡하므로 시정요구나 건의사항에 대하여 철저하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함은 물론 중요사항은 의회에 보고될 수 있도록 시정 요구함.

▶처리 내역

◎1999 감사 지적사항 처리 시정

-2000. 11. 1, 11. 7 주간 업무보고시 부구청장 강조사항으로 전실·과·소에 지시

-차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에 성실한 답변은 물론 중요 사항에 대하여 의회에 보고될 수 있도록 시정 하겠음.

▶비 고 : 완결

기획감사실

▶시정요구 사항

감사 업무 소홀

◎감사 부서에서 민원 발생이 많은 실과에 대하여는 감사 기능을 발휘하지 않고 업무가 과중한 일선 동에만 감사를 편중하는 것을 시정 요구함.

▶처리 내역

◎2001년부터 동종합감사 기간을 4일에서 3일로 단축하여 동기능 전환에 따른 심적, 시간적부담을 최소화 하겠음.

◎실·과·소의 주민불편 사항과 관련한 진정 등 민원발생 취약업무에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행정착오로 인한 주민불편을 야기 시키는 일이 없도록 분기별 직원교육을 강화하였음.

▶비 고 : 완결

자치행정과

▶시정요구 사항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 소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정기적으로 수질검사와 검사성적서를 첨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함에도 검사성적서 시효가 경과된 것이 부착되어 있고 관리책임자 표시가 없는 등 관리가 소홀하여 시정을 요구함.

▶처리 내역

◎수질검사 실시

-일시 : 2000년 12월 12일

-실시 : 분기 1회

-의뢰처 : 울산광역시상수도 사업본부

◎수질검사 성적서 아크릴판 제작 부착

-신천동 633-1번지의 3개소

-관리책임자 지정(정 : 동장, 부 : 민방위담당자)

▶비 고 : 완결

도시교통과

▶시정요구 사항

시내 버스 운행시간표 불일치 시정



◎광역시 시내버스 운행 시간표와 북구청 홈페이지 게재사항과 상이하여 시정 요구하며 19번 노선도 등록 조치하기 바랍.

▶처리 내역

◎2000년 11월 30일 市홈페이지의 시내버스 운행시간표와 일치하여 구홈페이지에 재 게시완료.

▶비 고 : 완결

허가과

▶시정요구 사항

건축허가 후 미준공 건물 관리 미흡

◎건축허가 후 미준공 건물 45건이 있는데 사실상 입주 유무를 파악하여 지방세 부과자료를 통보해야 함에도 부서간의 업무통보가 되지않아 지방세 부과징수에 차질이 있으므로 시정 요구함.

▶처리 내역

◎장기 미준공건축물의 사용 여부를 지방세과에 업무 참고토록 통보 조치하였음.

-업무연락(2001. 1. 15)장기미준공 건축물현황 통보

-업무연락(1999. 12. 23)장기미준공 건축물 지방세 납부여부 조회

▶비 고 : 완결

동

▶시정요구 사항

산불진화 장비 관리 소홀(염포동)

◎산불진화 장비를 철저히 관리해야 함에도 랜턴의 건전지 등을 비치하지 않아 산불 발생 시 즉시 대처 할 수 없으므로 시정 요구함.

▶처리 내역

◎보유 산불진화 장비는 등짐펌프 24개, 비상전등 10개, 칼쿠리 10개, 삽 10개, 진화장비세트 7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비상 전등 건전지 10개를 2000. 12. 22일 구입하여 야간 산불 발생시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음.

▶비 고 : 완결

3)건의사항 주요 처리 결과

총무과

▶시정요구 사항

구청장 해외 출장 성과 설명회 개최

◎구청장의 해외 출장 후 방문성과 등에 대하여 의회에 방문성과 설명회 개최 건의.

▶처리 내역

◎구청장 취임후 해외 여행 건수 : 3회

◎조치 사항

향후 해외 여행시 사전 의회와 협의하겠으며, 방문 성과에 대하여도 설명회를 개최토록 하겠음.

▶비 고 : 완결

자치행정과

▶시정요구 사항

문화행사 경상보조금 지급 기준 제정

◎북구의 문화행사 지원 경상 보조금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형평에 맞는 지급 건의.

▶처리 내역

◎문화예술 기반이 취약한 북구지역에서 지역민의 문화 향유의 기회 확대로 구민의 문화수준을 높이기



위한 각종 주요 문화행사 개최 시, 행사주관단체로부터 신청된 보조금을 행사내용, 사업비 등을 고려하여 울산광역시북구보조금관리조례 및 예산의 범위에 맞게 철저히 검토한 후 합리적인 보조금 책정으로 원활한 행사추진을 도모하겠음.

▶비 고 : 완결

주민자치센터 운영단

▶시정요구 사항

탄생 백일 축하카드 제도 개선

◎탄생 축하카드를 1,000원을 들여 발송하고 있는데 구민의 소속감 고취와 더불어 사는 북구민의 공동체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 건의.

▶처리 내역

◎탄생 축하카드 발송시 카드에 구민의 소속감 고취를 위해 축하문을 인쇄 동봉하여 발송 조치하겠음.

▶비 고 : 완결

사회복지과

▶시정요구 사항

저소득 결식아동 파악 방법 개선

◎저소득 결식아동을 교육청의 자료에만 의존하지 말고 학교급식위원회 등을 통하여 실제 결식아동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결식아동 지원 건의.

▶처리 내역

◎초·중등교육법 개정(1997. 12. 13)으로 인하여 학교급식위원회는 학교운영위원회와 통합 운영되고 있으므로 향후 각급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하여 결식 아동현황을 파악하겠음.

▶비 고 : 완결

도시교통과

▶시정요구 사항

시내버스 요금 인상 후 서비스 개선 요망

◎대중교통 불편신고 엽서가 운송업자에게 가도록 되어 있고, 시내 버스요금 인상 후에도 서비스의 질이 개선되지 않으므로 그 시정과 시내버스 카드제 도입과 거스름돈 대책을 시에 건의.

▶처리 내역

◎우리구에 사무소가 위치한 시내버스 업체가 없으므로 2000. 12. 7일 교통불편신고엽서 수신처를 관할 구, 군으로 변경하여 줄 것 등을 시와 각구·군에 건의 하였음.

▶비 고 : 추진중

허가과

▶시정요구 사항

건축허가 불합리 조항 상부에 시정 건의

◎각종 허가 업무를 처리하면서 타 실·과의 의견조회에 따라 소극적으로 처리하지 말고 불합리한 조항을 상부 기관에 법개정 등을 건의.

▶처리 내역

◎건축관련 인허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건축분야의 불합리한 법규정 및 협의부서의 불합리한 의견사항에 대하여는 법개정을 적극적으로 건의하는 등 민원인의 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할 것임.

▶비 고 : 완결

11.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1)감사 목적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및 울산광역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구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파악과 2002년도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사무처리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당한 사항이나 미비점에 대하여 이를 시정 또는 개선방안을 강구함으로써 효율적인 구정 운영을 도모하자는데 있다.
(감사 기간 : 2001. 11. 27 ~ 12. 3)

2)감사 기간 : 2001년 11월 27일 ~ 12월 3일(7일간)

계	공 통	기획감사실	총무국	경제사회국	도시건설국	보건소	의회사무과
217(건)	20	22	65	44	49	13	4

12.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1)증인 출석 및 감사 실시 현황

감사대상부서	감사자료제출건수	증인출석인원	참고인출석인원	주요감사실시건수
계	217	80		207
공 통 사 항	20	1		25
기획감사실	22	7		15
총 무 국	65	26		71
경제사회국	44	15		37
도시건설국	49	25		43
보 건 소	13	5		12
의회사무과	4	1		4

2)감사 결과 시정 요구 및 건의 사항 현황

감사대상부서	계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계	57	31	26
공통사항	2	2	
기획감사실	6	4	2
총 무 국	19	9	10
경제사회국	11	6	5
도시건설국	17	9	8
보 건 소	2	1	1



13.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 평가

-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울산광역시북구의회 행정 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원활한 의정활동과 2002년도 예산안 심의 등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사무처리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당한 사항이나 미비점에 대하여 이를 시정 또는 개선방안을 강구토록 하는데 있다. 또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효율적인 구정운영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다.
- ◎2001년 11월 27일 ~ 12월 3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2001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나 주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의 감사기간이 너무 짧고, 특히 북구 의회는 상임위원회가 없으므로 본회의에서 구정의 전 업무를 감사함으로써 정확하고 효율적인 감사를 하지 못하는 현실의 한계점이 있었다.
-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울산광역시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를 본회의에서 의결 하여 통보하였다. 그러나 정확한 감사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작성·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감사자료 작성이 소홀하여 각종 통계자료가 틀리거나 자료 미제출로 인하여 추가 자료요구를 하거나, 증인으로 출석한 각 실·과 관계공무원이 구체적이고 정확한 업무 파악이 미흡하여 의원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못하는 경우 등이 많았다.
- ◎따라서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의회에서 행정 사무감사나 예산심사 또는 각종 안건 심사시 정확하고 설득력 있는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심기일전,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민선 자치시대를 맞아 행정수요 및 주민욕구는 날로 급증하고 있고 도시기반 시설이나 행정여건이 타구에 비해 몹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대다수 공무원들은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헌신적인 자세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엿보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공무원들에게 주민을 대표하여 감사를 드렸다.
- ◎각종 문제점에 따른 감사지적사항으로는 감사자료 작성 소홀 과 예산 집행 부적절 등 시정요구 31건, 건의사항 26건 등 총57건으로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에 이송하고 2002년 1월 31일까지 결과 보고토록 하였다.

14.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

1)시정·건의 요구 사항 총괄

구 분	계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계	완결	추진중	처리불가	계	완결	추진중	처리불가	계	완결	추진중	처리불가
총 계	57	40	15	2	31	24	6	1	26	16	9	1
공통사항	2	2			2	2			0			
기획감사실	6	6			4	4			2	2		
총 무 과	소 계	19	14	4	1	9	8	1	10	6	3	1
	총 무 과	6	5	1		4	3	1	2	2		
	자치행정과	6	3	2	1	2	2		4	1	2	1
	문화공보과	2	1	1		1	1		1		1	
	지방세과	2	2			1	1		1	1		
	민원봉사과	3	3			1	1		2	2		

구 분		계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계	완결	추진중	처리불가	계	완결	추진중	처리불가	계	완결	추진중	처리불가
경 제 사 회 국	소 계	11	8	3		6	5	1		5	3	2	
	지역경제과	4	3	1		2	2			2	1	1	
	사회복지과	4	3	1		3	3			1		1	
	환경위생과	1	1			0				1	1		
	환경미화과	2	1	1		1		1		1	1		
도 시 건 설 국	소 계	17	9	8		9	5	4		8	4	4	
	도시교통과	3		3		1		1		2		2	
	건 설 과	8	8			4	4			4	4		
	농림수산과	5		5		3		3		2		2	
	허 가 과	1	1			1	1			0			
보 건 소		2	1		1	1			1	1	1		

2)시정 · 건의 요구사항 주요 처리 결과

총무과(시정)

▶시정요구 사항

차량 관리 부실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지침상 중 · 소형 승합 차량의 내구 연한이 6년임에도 울산80년1934 차량은 91년식으로 10년이 넘었으며, 또한 본 차량이 환경단속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많은 매연을 발생하고 있으므로 시정 요구함.

▶처리 내역

◎물품관리 내구연한이 지난 환경 단속차량에 대하여 차량교체에 따른 정수를 재배정하고 2002년도 추가 경정예산 편성시 예산 반영후 교체하였음.

▶비 고 : 추진중

자치행정과(시정)

▶시정요구 사항

제2건국위원회 실적 미비

◎제2건국위원회 운영이 위원 위촉식 및 전체회의 외 3건으로 실질적으로 위원회 활동이 미흡하고 불필요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므로 폐지 내지는 당초 목적에 맞게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정 요구함.

▶처리 내역

◎제2의건국추진위원회는 대통령령 제15093호에 의거 국가시책추진을 위하여 전국적으로 일제히 출범한 기구로, 2001년도 실적이 다소 미비하나 2002년부터는 실질적인 다양한 활동 강화로 위원회 위상을 제고할 예정임.

▶비 고 : 완결

민원봉사과(건의)

▶시정요구 사항

민원실내 인터넷방 개선

◎민원실내에 설치된 인터넷방 이용주민은 대부분 학생으로 이용시 주로 게임을 하고 있어 주민이 이용하는데 많은 불편이 있으므로 이용시간 제한 등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를 건의함.



▶처리 내역

◎인터넷방개선 교육 실시

- 일시 : 2001년 1월 9일(수) 17:00 ~ 17:20
- 대상 : 전 직원 24명
- 교육내용
 - 이용시간 제한
 - 09:00~근무시간 내
 - 사용대상 구분(일반 3대(PC 표기), 학생 3대(PC 표기))
 - 오락등 수시점검

▶비 고 : 완결

지역경제과(시정)

▶시정요구 사항

복사기 임대 사용

- ◎복사기 임대사용은 구입사용과 비용을 객관적으로 비교 분석하여 시행하여야 함에도 정확한 근거 없이 임대 사용하고 있음. 어떤방법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지 정확한 비용 비교분석후 시행하도록 시정 요구함.

▶처리 내역

- ◎복사기 구입 · 임대시 비용을 분석해본 결과 약 1백68만 1,000원 정도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임대 복사기에 대한 비품관리대장을 작성 관리하여 향후 복사기 임대계약 체결시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등 임대복사기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음.

▶비 고 : 완결

도시교통과(건의)

▶시정요구 사항

탄력적인 주 · 정차 단속

- ◎불법 주 · 정차 단속을 적발 위주로 하지말고 계도 위주로 하기 바라며 관내에 턱없이 부족한 주차장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람.

▶처리 내역

- ◎불법 주 · 정차 단속은 탄력적으로 실시중이며 부족한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2002년부터 예산을 적립중에 있음.

▶비 고 : 추진중

건설과(시정)

▶시정요구 사항

과속방지턱 개선

- ◎과속방지턱은 차량의 과속을 방지하면서도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규정상 높이를 10cm로 시공하여야 하나 달천교 앞 과속 방지턱은 높이가 그 이상이 되고, 또한 방지턱 간격이 너무 좁아 차량운행에 불편이 많으므로 시정 요구함.

▶처리 내역

- ◎과속방지턱 개선을 위하여 달천마을을 방문한 결과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기존 방지턱의 철거 또는 조정이 불가함.
- ◎주민들 의견은 달천농공단지 통행 차량이 너무 많고 과속을 하여 위험하기 때문에 과속방지턱을 더 높이고, 추가로 더 설치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실정임.

▶비 고 : 완결

농림수산물(시정)

▶시정요구 사항

조림사업 철저

◎조림사업은 규정상 1ha당 3,000본 정도를 식재하여 식재 간격이 약 1.8m 정도가 되어야 하나 무룡동 산 80-4번지의 12필지에 대한 조림사업을 하면서 무룡산 정상부근은 식재 간격이 약30~40cm 정도로 조밀하게하여 나무가 정상적으로 자랄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시정 요구함.

▶처리 내역

◎2001년 국고보조 조림사업은 울산산림조합에서 대행사업으로 시행한 것으로 무룡동 산98번지 정상 부근 약 300㎡ 면적에 조밀한 간격으로 조림목이 일부 식재되었음. 2002년도 조림 실시 시 울산 산림조합에 통보하여 조밀하게 식재한 묘목을 이식토록 하겠으며, 2002년 사업시행 시 작업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음.

▶비 고 : 추진중

보건소(건의)

▶시정요구 사항

방역 철저

◎요즈음은 겨울철에도 모기가 극성을 부리는 등 방역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방역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람.

▶처리 내역

◎동절기에 주로 하수구 및 복개천에 서식하는 모기의 성충을 구제하기 위하여 주3회 동절기 방역 (2001. 11 ~ 12월까지)을, 분무 소독 24회, 살균소독 24회 실시하였으며,

◎방역취약지 등을 고려하여 전구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방역활동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음.

▶비 고 : 완결

제4절 행정사무조사

1. 울산공항 관련 행정사무조사 배경

1)행정사무 조사 배경

울산공항으로 인한 지역주민들이 피해가 날로 심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각종 실태를 종합적으로 조사 분석하여 각종 피해상황을 연구, 조사, 비교, 검토하고 이에 따른 대책 및 대안을 마련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향상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민원해소 및 중·장기적인 지원방안과 해결대책을 강구하고자 하는데 있다.

2)행정사무 조사 개요

일 자	건 명	내 용
'99. 8. 21	• 행정사무조사의건 발의	• 발의자:김수현의원 외 2명
'99. 8. 23	• 행정사무조사의건 의결	제24회임시회 제1차본회의
'99. 8. 23	•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제24회임시회 제1차본회의 - 6명:(류재건, 강혁진, 김수현, 박광식, 진한걸, 윤종오의원)
'99. 9. 1 ~ 9. 3	•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 (조사특별위원회)	• 기간:'99. 9. 1~11.20(80일간)



일 자	건 명	내 용
'99. 9. 4 '99. 9. 6 ~ 11. 9	•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 행정사무조사 실시	• 제25회임시회 제4차본회의 • 주민피해 실태조사 • 타 의회 비교조사 • 대한항공공단 방문조사
'99.11.10 ~ 11.13	•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작성 (조사특별위원회)	
'99.11.15	•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의결	• 제28회임시회 제8차본회의

2. 특별위원회 구성 현황

1)특별위원회 구성

- 일 시 : 1999년 8월 23일(제2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명 칭 : 울산공항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 위원장 : 류재건
- 위 원 : 강혁진(간사), 김수현, 박광식, 진한걸, 윤종오

2)실태조사 계획서

가. 조사 기간

- 1999년 9월 1일 ~ 1999년 11월 20일(80일간)

나. 조사 대상 기관

- 북구청, 중앙 관련부처, 타 지방자치단체 및 의회, 울산공항, 타 지역 공항

다. 조사 대상

- 울산공항에 따른 소음 피해 상황
- 항공기 안전사고에 대한 고도 제한
- 소음진동 규제 방안 모색
- 공항 주변 현지 피해 조사 및 주민 의견 수렴
- 관련 기관 방문 및 기타

라. 조사 범위

- 울산공항 관련 전반적인 실태 및 문제점

마. 조사 방법

- 현지 방문 조사
- 주민 면담 및 의견 수렴
- 공항 관계기관 및 실무자 면담
- 실증적 조사 등



울산공항 전경

3)실태조사 의사 일정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울산공항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1999년 9월 1일 ~ 11월 14일(75일간)

일 시	차 수	부 의 안 건	비고
'99.9.1(수) 본회의산회후	1	1. 울산공항실태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2. 울산공항실태조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 3. 울산공항실태조사 계획서 작성 협의	소회의실
		✚울산공항실태조사 계획서 승인요청 (본회의 제출) → '99.9.4 승인	
'99.9.6 ~ 9.11	2~7	• 관련자료 수집 및 자료수집 분석	〈현장〉
'99.9.13	8	• 한국공항공단울산지사 방문	〈현장〉
'99.9.27 ~ 9.28	9~10	• 피해실태 현장활동(소음측정)	〈현장〉
'99.10.4	11	• 피해실태 현장활동(소음측정, 주민의견 수렴)	〈현장〉
'99.10.14 ~ 10.15	12~13	• 피해실태 현장활동(소음측정 및 주민의견수렴) - 농소1동, 구 진장동, 송정동 - 대한항공 항공기장 면담(경주)	〈현장〉
'99.10.16	14	• 피해실태 현장활동(소음측정)- 농소2, 3동	〈현장〉
'99.10.19 ~10.20	15~16	• 타 의회 비교 실태조사 계획서 협의	소회의실
'99.10.22	17	• 피해실태 현장활동(소음측정)	〈현장〉
'99.10.28 ~ 10.30	18~20	• 타 의회 비교시찰(김해시, 사천시, 여주시, 강서구 (서울), 김포시, 항공조종사협회(김포))	
'99.11.9	21	• 피해현장 활동(소음측정)	〈현장〉
'99.11.10 ~ 11.13	22~24	• 울산공항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작성 협의의견	소회의실
'99.11.15	25	✚울산공항실태조사 결과보고(본회의) → '99.11.15 의결처리	

3. 울산공항 현황

1)울산공항 기본 현황

• 공항소재지	울산광역시북구 송정동 522
• 개항일(인수일)	1970년 11월 20일(1990. 6. 28)
• 활주로(m)	길이(2,000), 폭(45)
• 공항면적(m²)(천평)	883,740(267)
• 1998년 이용자수 (천명)	1,199
• 1일 운항 편수	39
• 비 고	1973년 1월 23일 ~ 1984년 7월 21일 휴항

2)울산공항 역사

• 1970. 11. 23	울산비행장 개항정기노선 취항
• 1984. 1. 23	휴항
• 1984. 7. 21	정기노선 재취항
• 1990. 6. 21	한국공항공단 인수 운영
• 1992. 3. 16	아시아나항공 취항(복수 민항)
• 1993. 2. 6	대한항공 제주노선 취항
• 1993. 5. 8	아시아나항공 제주노선 취항
• 1995. 9. 15	활주로 확장공사에 따라 일시 중단



- 1995. 12. 27 항공기 재취항
- 1997. 12. 22 신 여객청사로 이전

3)시설 현황

시 설 명	규 모	능 력	비 고
부지(㎡)	917,487		
활주로(m)	2004.5	6만회/년	
계류장(㎡)	33,480	동시주기 : MD82 기준 4대	
여객청사(㎡)	8,651	230만명/년	
동력동(㎡)	991		
주차장(㎡)	26,860	동시주차 : 534대	무인주차장비설치
항행안전시설	LLZ/DME, VOR/DME, G/P, M/M	정밀계기 운항으로 결항률 감소	
항공등화시설	ALS 1식 PAPI 2식		
기계설비	탑승교 2기 콘베어등		
소방대 및토목장비고	887㎡		
관리동(㎡)	1,197	'98. 7 개량공사완공	

4)운송 현황

구 분	계	서울	제주	비 고
대한항공	22	20	2	MD82(164인승), F100(109인승)
아시아나	18	18		B737-400(149인승)

5)연도별 수송 실적

연도별 구분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1~6월)
운항(편)	6,140	9,270	10,290	6,833	12,392	15,392	14,189	5,929
증가율(%)		51	11	△33	81	24	△7.8	20.3
여객(명)	544,091	804,393	991,379	690,088	1,426,585	1,691,279	1,199,313	622,030
증가율(%)		48	23	△30	107	18	△ 29	5.5
화물(톤)	1,354	2,647	3,323	2,158	3,015	3,744	2,281	1,720
증가율(%)		93	26	△35	40	24	△ 39	48.8

※ 연평균 증가율 : 운항(27%), 여객(18%), 화물(24%)

※ 1995년 감소는 활주로 확장공사로 인한 항공기 운항 중단

- 기간 : 1995년 9월 15일 ~ 12월 26일

6)한국공항공단 울산지사 방문 면담 내용

- 장기적인 울산공항 이전대책 - 한국공항공단 결정사항에 따라 결정
- 2002년 월드컵 경기에 따른 국제공항이 바람직함.
- 지역주민 이용률은 공업도시로 출장이 65%정도이고, 경주 관광객은 20% 공항이용

4. 주민 피해 실태 조사

1)제1, 2차 피해 실태 현장 조사(소음측정)

가. 측정 일시 : 1999년 9월 27일 ~ 28일(2일간) 06:40 ~ 20:00

나. 측정 장소 : 농소1동(성우현대APT 앞), 농소3동(원동현대APT 옆), 효문동(구 진장동사무소 옥상), 송정동(구 동울산세무서)

※WECPNL(Weighted Equivalent Continuous Perceived Noise Level의 약자)

· 소음의 크기를 나타내는 단위로 데시벨(dB) 등이 사용되고 있으나 항공기 소음은 일상의 환경소음에 비해 특이하고 소음원이 상공을 통과하고 계속시 간이 20초 내지 수십초의 소음이 단속적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이러한 단위는 항공기 소음에 부적당하여 1969년에 국제민간 항공기구(ICAO)에서 제안한 WECPNL(웨클)을 항공기 소음을 나타내는 국제단위의 하나로 사용되고 있다.

다. 항공 소음 측정 결과

측 정 장 소	측 정 일 시	측 정 시 간	항공사	항공기통과시 소음최고치	평균최고 소 음 도	항 공 기 소음영향도
성우현대 APT	'99.9.27	11:38	대한항공(이륙)	85.3dB(A)	81.9dB(A)	72 WECPNL (웨클)
		12:44	아시아나(이륙)	81.1dB(A)		
		15:32	대한항공(착륙)	81.9dB(A)		
		15:50	아시아나(착륙)	75.9dB(A)		
		16:00	대한항공(착륙)	83.9dB(A)		
		16:26	대한항공(착륙)	75.7dB(A)		
		18:52	아시아나(이륙)	82.0dB(A)		
		19:06	대한항공(이륙)	81.3dB(A)		
		19:38	아시아나(이륙)	82.1dB(A)		
현대원동 APT	'99.9.27	11:38	대한항공(이륙)	82.8dB(A)	84.4dB(A)	74 WECPNL (웨클)
		12:44	아시아나(이륙)	79.2dB(A)		
		15:32	대한항공(착륙)	75.3dB(A)		
		15:49	아시아나(착륙)	72.9dB(A)		
		15:57	대한항공(착륙)	70.6dB(A)		
		16:26	대한항공(착륙)	91.6dB(A)		
		17:06	대한항공(이륙)	81.1dB(A)		
		19:38	아시아나(이륙)	80.5dB(A)		
(구)동울산 세무서	'99.9.28	07:00	대한항공(이륙)	78.8dB(A)	74.2dB(A)	64 WECPNL (웨클)
		07:30	아시아나(이륙)	71.6dB(A)		
		10:10	대한항공(이륙)	75.3dB(A)		
		10:38	아시아나(이륙)	71.8dB(A)		



측정장소	측정일시	측정시간	항공사	항공기통과시 소음최고치	평균최고 소음도	항공기 소음영향도
(구)동울산 세무서	'99.9.28	11:43	대한항공(이륙)	71.4dB(A)	74.2dB(A)	64 WECPNL (웨클)
		12:58	아시아나(이륙)	65.0dB(A)		
		13:10	대한항공(이륙)	74.8dB(A)		
		16:18	대한항공(이륙)	73.5dB(A)		
(구)진장동 사무소	'99.9.28	07:52	아시아나(착륙)	90.4dB(A)	88.5dB(A)	78 WECPNL (웨클)
		08:08	대한항공(착륙)	85.2dB(A)		
		09:58	아시아나(착륙)	88.2dB(A)		
		12:14	아시아나(착륙)	90.5dB(A)		
		12:27	대한항공(착륙)	84.3dB(A)		
		12:58	아시아나(착륙)	87.7dB(A)		
		15:26	대한항공(착륙)	88.0dB(A)		
		15:45	아시아나(착륙)	89.6dB(A)		

2)제3차 피해 실태 현장 조사(소음측정 및 초등학교장 면담)

가. 측정 일시 : 1999년 10월 4일(월) 09:30

나. 측정 장소 : 농소초등학교, 약수초등학교(교실, 운동장, 옥상)

구분	면적(㎡)	교실수	학생수(명)	교사수(명)	비고
농소초등학교	11,934	58	2,700	54	295-4012
약수초등학교	13,476	52	2,861	58	282-1291

다. 학교장 면담

- 매주 월요일 아침조회시 소음이 심각하여 일시적 중단 후 계속 조회 실시(항공기, 이·착륙시)
- 학생들의 목청이 높아짐
- 하절기(창문 개방시) 수업에 많은 지장을 줌.

라. 항공소음 측정 결과

측정장소	측정일시	측정지점	측정시간	항공사	항공기통과시 소음최고치	평균최고 소음도	항공기 소음영향도
약수 초등 학교	'99.10.4	옥상	10:16	대한항공(이륙)	83.8dB(A)	79.5dB(A)	69 WECPNL (웨클)
			10:38	아시아나(이륙)	74.4dB(A)		
			11:51	대한항공(이륙)	81.0dB(A)		
			14:10	대한항공(이륙)	81.9dB(A)		
		교실 (6-4)	15:39	아시아나(이륙)	65.3dB(A)		
			16:10	대한항공(이륙)	70.6dB(A)		
			16:37	아시아나(이륙)	69.2dB(A)		
		운동장	17:07	대한항공(이륙)	81.7dB(A)		

측 정 장 소	측 정 일 시	측 정 지 점	측 정 시 간	항공사	항공기통과시 소음최고치	평균최고 소 음 도	항 공 기 소음영향도
농소 초등학교	'99.10.4	옥상	10:16	대한항공(이륙)	85.2dB(A)	79.6dB(A)	69 WECPNL (웨클)
			10:38	아시아나(이륙)	79.2dB(A)		
			11:51	대한항공(이륙)	83.4dB(A)		
		운동장	13:09	대한항공(이륙)	74.9dB(A)		
			13:40	아시아나(이륙)	78.8dB(A)		
			14:15	대한항공(이륙)	82.0dB(A)		
		교실 (6-1)	15:39	아시아나(이륙)	64.8dB(A)		
			16:10	대한항공(이륙)	68.6dB(A)		
		교실 (5-1)	16:37	아시아나(이륙)	68.1dB(A)		
			16:42	대한항공(이륙)	67.9dB(A)		

3)제4차 피해 실태 현장 조사(소음측정 및 주민피해)

가. 측정 일시 : 1999년 10월 14일 ~ 15일(2일간)

나. 측정 장소 및 주민 면담 : 농소1동(매곡 입구), 농소2동, 농소3동(성혜원), 효문동, 송정동

다. 주요 면담 - 주민 피해 상황

- 가축 성장 지장
 - 과도한 소음과 진동에 노출되면 심장박동수와 호흡수의 변화, 말초신경이 축소되어 배란횟수가 줄어들며 가축이 폐사하거나 유·사산 기립 부진 및 성장이 지연된다고 함.
- 소음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 거의 매일 최대 소음도에 달할 경우 회화 장애, 수면 장애, 짜증, 불안으로 정서 불안과 스트레스가 증가되고 있음.
 - 전화, TV이용시 항공기 소음피해로 통화가 중단되고 화면이 떨리고 소리가 안 들림.

라. 항공소음 측정 결과

측 정 장 소	측 정 일 시	측 정 시 간	항공사	항공기통과시 소음최고치	평균최고 소 음 도	항 공 기 소음영향도
매곡현대 APT앞	'99.10.14	10:09	대한항공(이륙)	75.9dB(A)	71.6dB(A)	66 WECPNL (웨클)
		10:36	아시아나(이륙)	76.2dB(A)		
		11:38	대한항공(이륙)	71.6dB(A)		
		12:38	아시아나(이륙)	75.6dB(A)		
		13:08	대한항공(이륙)	70.7dB(A)		
		13:39	아시아나(이륙)	76.4dB(A)		
		14:11	대한항공(이륙)	78.6dB(A)		
		15:40	아시아나(이륙)	78.4dB(A)		
시례 마을	'99.10.14	10:58	대한항공(착륙)	60.9dB(A)	82.6dB(A)	72 WECPNL (웨클)
		11:35	대한항공(이륙)	89.4dB(A)		
		11:54	아시아나(착륙)	69.1dB(A)		
		12:22	대한항공(착륙)	76.3dB(A)		
		12:37	아시아나(이륙)	78.7dB(A)		
		12:52	아시아나(착륙)	63.9dB(A)		
		13:07	대한항공(이륙)	81.2dB(A)		
		13:24	대한항공(착륙)	71.9dB(A)		



측 정 장 소	측 정 일 시	측 정 시 간	항공사	항공기통과시 소음최고치	평균최고 소 음 도	항 공 기 소음영향도
시례 마을	'99.10.14	13:38	아시아나(이륙)	78.7dB(A)	82.6dB(A)	72 WECPNL (웨클)
		14:11	대한항공(이륙)	86.7dB(A)		
		14:49	아시아나(착륙)	81.1dB(A)		
		15:21	대한항공(착륙)	85.8dB(A)		

4)제5차 피해 실태 현장 조사

가. 측정 일시 : 1999년 10월 16일, 14:00

나. 측정 장소 : 구 진장동 사무소, 강북교육청 앞

다. 소음측정 결과

측 정 장 소	측 정 일 시	측 정 시 간	항공사	항공기통과시 소음최고치	평균최고 소 음 도	항 공 기 소음영향도
강북 교육청앞	'99.10.16	10:08	대한항공(이륙)	80.2dB(A)	84.5dB(A)	74 WECPNL (웨클)
		10:38	아시아나(이륙)	83.7dB(A)		
		11:00	대한항공(착륙)	68.6dB(A)		
		11:38	대한항공(이륙)	88.3dB(A)		
		12:39	아시아나(이륙)	85.5dB(A)		
		13:10	대한항공(이륙)	83.9dB(A)		
		13:38	아시아나(이륙)	86.4dB(A)		
		14:02	대한항공(이륙)	82.2dB(A)		
(구)진장동 사무소	'99.10.16	15:42	아시아나(이륙)	85.2dB(A)	87.9dB(A)	77WECPNL (웨클)
		10:56	대한항공(착륙)	90.2dB(A)		
		11:54	아시아나(착륙)	87.1dB(A)		
		12:26	대한항공(착륙)	83.2dB(A)		
		12:51	아시아나(착륙)	90.7dB(A)		
		13:26	대한항공(착륙)	81.3dB(A)		
		15:03	아시아나(착륙)	88.0dB(A)		

5)제6차 피해 실태 현장 조사

가. 측정 일시 : 1999년 10월 22일, 10:00

나. 측정 장소 : 농소중학교 옥상, 쌍용아진 아파트 옥상

다. 항공소음 측정 결과

측 정 장 소	측 정 일 시	측 정 시 간	항공사	항공기통과시 소음최고치	평균최고 소 음 도	항 공 기 소음영향도
농소중학교	'99.10.22	10:38	아시아나(이륙)	82.6dB(A)	83.3dB(A)	73WECPNL (웨클)
		12:27	대한항공(이륙)	86.2dB(A)		
		12:38	아시아나(이륙)	79.6dB(A)		
		13:43	아시아나(이륙)	82.3dB(A)		
		15:54	아시아나(이륙)	83.3dB(A)		

측 정 장 소	측 정 일 시	측 정 시 간	항공사	항공기통과시 소음최고치	평균최고 소 음 도	항 공 기 소음영향도
쌍용아진 APT	'99.10.22	10:30	대한항공(이륙)	83.0dB(A)	80.2dB(A)	70WECPNL (웨클)
		12:27	대한항공(이륙)	80.6dB(A)		
		12:39	아시아나(이륙)	76.7dB(A)		
		13:44	아시아나(이륙)	79.7dB(A)		
		15:54	아시아나(이륙)	78.8dB(A)		

6)제7차 피해 실태 현장 조사

가. 측정 일시 : 1999년 11월 9일, 07:00 ~ 21:00

나. 측정 장소 : 구 진장동사무소, 강북교육청 앞 원지삼거리

다. 항공소음 측정 결과

측 정 장 소	측 정 일 시	측 정 시 간	항공사	항공기통과시 소음최고치	평균최고 소 음 도	항 공 기 소음영향도
(구)진장 동사무소	'99.11.10	07:46	아시아나(착륙)	87.4dB(A)	85.9dB(A)	76 WECPNL (웨클)
		08:06	대한항공(착륙)	87.5dB(A)		
		09:29	대한항공(착륙)	85.1dB(A)		
		09:54	아시아나(착륙)	87.1dB(A)		
		11:52	대한항공(착륙)	84.0dB(A)		
		12:20	아시아나(착륙)	86.8dB(A)		
		13:07	아시아나(착륙)	86.1dB(A)		
		15:02	아시아나(착륙)	86.3dB(A)		
		15:49	대한항공(착륙)	80.9dB(A)		
		16:03	아시아나(착륙)	86.1dB(A)		
		16:33	대한항공(착륙)	86.6dB(A)		
		17:26	대한항공(착륙)	84.8dB(A)		
		17:53	아시아나(착륙)	87.0dB(A)		
		18:30	대한항공(착륙)	83.4dB(A)		
		19:03	아시아나(착륙)	87.7dB(A)		
		20:52	대한항공(착륙)	81.3dB(A)		
		21:09	아시아나(착륙)	85.7dB(A)		
강북교육청 앞 원지삼거리	'99.11.10	07:00	대한항공(이륙)	85.1dB(A)	89.9dB(A)	80 WECPNL (웨클)
		07:30	아시아나(이륙)	84.3dB(A)		
		08:36	아시아나(이륙)	83.5dB(A)		
		09:06	대한항공(이륙)	86.3dB(A)		
		10:07	대한항공(이륙)	89.7dB(A)		
		10:37	아시아나(이륙)	89.6dB(A)		
		12:30	대한항공(이륙)	87.6dB(A)		
		13:40	아시아나(이륙)	88.4dB(A)		
		14:15	대한항공(이륙)	85.8dB(A)		



측 정 장 소	측 정 일 시	측 정 시 간	항공사	항공기통과시 소음최고치	평균최고 소 음 도	항 공 기 소음영향도
강북교육청 앞 원지삼거리	'99.11.10	15:37	아시아나(이륙)	88.5dB(A)	89.9dB(A)	80 WECPNL (웨클)
		16:40	아시아나(이륙)	87.4dB(A)		
		17:10	대한항공(이륙)	94.2dB(A)		
		18:10	대한항공(이륙)	95.7dB(A)		
		18:40	아시아나(이륙)	88.1dB(A)		
		19:17	대한항공(이륙)	93.7dB(A)		
		19:40	아시아나(이륙)	86.2dB(A)		

7)불편 사항 설문 조사 실시

가. 조사 기간 : 1999년 10월 25일 ~ 11월 6일

나. 조사 지역 : 농소1,2,3동, 효문동, 송정동.(5개동)

다. 조사 방법 : 해당동(통장회의시 설문지 배부)

라. 조사 대상 : 5개동 관내(통장 89명)

(농소1동 15명, 농소2동 20명, 농소3동 20명, 효문동 21명, 송정동 13명)

마. 공항 관련 피해 실태 상황 분석(67명)

(1) 울산공항 이용해 본 수

- * 울산공항 이용자(통장) 수 39명
- * 울산공항 미이용자(통장) 수 25명
- * 울산공항 이용 무응답 수 3명

(2)울산공항 친절도

- * 울산공항 친절도 만족 27명
- * 울산공항 친절도 불만족 26명
- * 무응답 14명

(3)현 울산공항 위치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현 위치 만족 8명
- * 다소 불만족 9명
- * 이전 요구 38명
- * 무응답 12명

* 이전 요구시 적당한 지역(울산·경주 중간지점, 해상공항, 해안 주변, 문화, 상북)

(4)비행기 이·착륙 소음 피해 사항

①텔레비전 시청 장애에 관하여(유선방송 설치한 경우)

- 전혀 볼 수 없음 : -
- 일부화면이 흐린 상태임 : 21명
- 영향이 전혀 없음 : -
- 조금 영향을 미치나 시청가능 : 29명
- 기타 : 17명

②텔레비전 시청 장애에 관하여(안테나 설치한 경우)

- 전혀 볼 수 없음 : -
- 일부화면이 흐린 상태임 : 26명
- 영향이 전혀 없음 : 3명
- 조금 영향을 미치나 시청가능 : 29명
- 기타 : 19명

③전화 통화 장애에 관하여(무선)

- 통화불량 상태임 : 7명
- 조금 영향을 미치나 통화가능 : 21명
- 통화에 영향 없음 : 32명
- 기타 : 7명



④전화 통화 장애에 관하여(유선)

- 전화불량 상태임 : 4명 · 조금 영향을 미치나 통화가능 : -
- 통화에 영향 없음 : 19명 · 기타 : 9명

⑤정서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소아, 청각, 대화 등)

- 청각 및 대화시 큰 문제점이 발생 : -
- 각종 회의 및 반상회시 소음으로 회의중단 실패 : -
- 어린아이가 잠을 자다 놀랐을 정도 : -

⑥농작물 및 가축 피해 사항

- 농작물 성장 지장 : - · 가축 소음 불안 : -
- 가축이 경기하는 사례 종종 발생 : -

⑦기타 피해 및 불편 사항

- 울산화학공단으로 향로가 경유하기 때문에 불안
- 공항 주변 불법 주차로 인한 주민 불편 사항 심각(무단주차)

8)공항소재에 따른 피해 사항

가. 사유재산권 침해 사항

- 개발제한구역 해제 불가
- 소음 · 진동으로 인해 집값 하락 영향이 심각
- 부동산 하락 등

나. 도로 여건 및 교통 유발

- 공항이 있어 7호 국도가 정체됨
- 공항입구 신호체계에 문제가 있음

다. 도시발전 저해 관련 사항

- 고도제한에 의한 놀이공원 및 유락시설이 불가능
- 북구의 중심지로 발전 저해
- 공항문제로 부동산 매매 저하

라. 비행기 안전사고에 대한 사항

- 활주로 짧은 관계로 주변지역으로 이탈 가능성
- 이 · 착륙시 고도가 너무 낮아 APT가 날아가는 것 같음
- APT옥상으로 지나지 않았으면 하는 주민들의 바람

마. 기타 피해 및 불편사항

- 화봉일대 APT, 농로 주위엔 불법주차로 인하여 주민들의 피해
- 국도 7호선 조기확장 촉구

9)항공기 소음 동별 피해 실태 사례

· 농소1동

- 전화, 혼선, TV난시청, 라디오 청취 지장 초래
- 초등학교, 중학교 수업 등 지장 초래
- 외부 친인척이 방문 시 어린아이들이 잠자다가 깨는 경우가 많다.
- 주민 불편 초래(야간 비행기 운행에 따른 수면 방해, 스트레스 누적, 사생활 침해 가중)

· 농소2동

- 직접적인 피해 사례는 없으나 소음으로 인하여 간접적으로 이 · 착륙 및 상공비행시 전화, TV라디오 청취를 못하고 정신집중 방해로 학업 지장 초래



- 농소3동
 - 쌍용아진APT단지는 층수에 따라 다소 소음이 높은 편임.
 - 항공기 노선에 따라 다소 소음측정이 차이가 있다.
 - 부동산거래 불이익(개발제한구역, 소음발생지역)
 - 가축 사육시 성장 저해 및 불임(시례동 닭사육농가 감소)
- 효문동 (구 진장동)
 - 전화 혼선, TV, 라디오 청취 지장 초래
 -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집값 하락 및 전세입주자 기피 현상 항공기 소음으로 투자 기피 현상
 - 임산부 및 유아 피해
 - 불편 초래(수면 방해, 스트레스 누적, 사생활 침해)
 - 농산물 수확량 5~10% 감소(이·착륙시 분진 발생)
- 송정동
 - 수면 방해, 전화 통화시 대화가 안됨
 - TV시청시 화면이 떨리고 소리가 안들림
 - 이·착륙시 아기들 잠에서 깨어나 우는 피해
 - 항로에 따라 소음 차이가 많다.

5. 기타 실태 조사

1)항공기장 면담

가. 일 시 : 1999년 10월 14일 21:30 ~ 22:50

나. 장 소 : 경주 코오롱 호텔 커피숍

다. 면담자 : 대한항공 F100기장 김기봉

라. 의문 사항 질의 및 답변

①항공기 이·착륙시 기계조작을 통하여 소음 강약 가능한가?

현재 울산공항 활주로 6,500피트로는 이·착륙시 최대출력을 요하므로 소음을 줄이는 방법은 없으나 활주로 확장시 다소 감소 가능하다.

②항공기 노선폭의 변경은 기장의 임의대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이·착륙시 풍향에 따라 폭을 변경하므로 기장 마음대로 변경은 불가하다.

③대한항공·아시아나 항공기는 이·착륙시 노선이 다른 이유는?

대한항공은 MD80, MD82, F100 3종이고, 아시아나는 보잉 737로 기종이 다르므로 회전 반경의 차이로 인해 노선이 다를 수 밖에 없다.

④울산공항의 시설 규모 등과 노면의 안전성은?

울산공항은 6,500피트로 김포 1만 2,700피트(군용 9,000피트) 보다는 짧으나 여수, 목포의 5,000피트 보다 길고 시야가 넓어 국제공항(김포, 김해, 제주) 다음으로 안전하다. 노면에는 그르브(미끄럼방지)를 설치하면 좋겠다.(군산만 설치)

⑤현재 울산공항 이·착륙시 노선을 일관성 있게 사용할 수 없는가?

이·착륙시 풍향에 따라 비행기가 바람을 안고 착륙해야 하므로 일관성 있게 사용할 수 없다.

⑥현재 노선을 보면 착륙시 울산화확단지 상공을 경유하는데 안전성은 고려하고 있는가?

홍콩같은 경우 빌딩 위를 지나고 있다. 비행기는 현대사회의 필요악으로 불편이나 위험을 감수하여야 한다.

※-국제공항은 8,000피트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현재 대형항공기 취항이 어려워 경제성이 없을 것으로 사료됨.

-울산공항에는 북쪽편에 가이드라이트를 설치하면 더욱 안전성을 도모할 수 있음.

2)공항 관련 법률 분석

◎항공법 제107조의 규정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항공기에 의한 소음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할 수 있는 공항 대상은 동 법시행령 제40조 제1항에서 국제공항(정기 국제공항노선이 개설된 공항을 말한다)으로 한정되어 있고 동시행규칙 제271조에서는 공항소음 피해지역 또는 공항소음 피해예상 지역을 항공기 소음 영향도에 따라 구역별 지정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

공항소음 피해지역 등의 지정 내용

(단위 : WECPNL)

구 분	구 역	소음영향도	설치제한
소음피해 지 역	제1종구역	95이상	이주대책 (신축, 증·개축금지)
	제2종구역	90이상 95미만	신축금지 증·개축허가
소음피해 예상지역	제3종구역	“가”지구 85이상 90미만 “나”지구 80이상 85미만	신축, 증·개축허가 (방음시설설치조건)

- ◎소음진동규제법 제42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2에서는 환경부장관은 항공기 소음이 공항주변 인근 지역은 항공기소음영향도(WECPNL) 90으로 하고 기타 지역은 80으로 하고 있다., 이를 초과할 때는
- ◎공항주변의 생활환경이 매우 손상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계기관의 장에게 방음시설의 설치 및 소음 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요청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공항은 정기 국제항공노선이 개설된 공항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기타 지역부분은 항공법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다.
- ◎특히 항공법 관련 규정에 의하여 항공소음피해지역 또는 예상지역이 지정 고시되면 소음피해 방지대책 사업이 시행되어야 하므로, 이로 인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 제한을 받게 되어 있어, 오히려「재산권」을 규제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3)항공법 적용 대상지역 업무처리 절차

- 가. 정부공인기관에 소음 측정을 의뢰하여 소음도「등고선」을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근거로 항공소음 피해 지역 및 공항소음피해 예상지역을 고시한다.
- 나. 고시지역 안에 시설물 설치제한과 함께 소음영향도에 따라 재원의 범위안에서 소음방지 대책을 수립 하고 소음부담금을 부과, 징수한다.
- 다. 이 때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공항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소음대책을 수립시행하는 시행자가 공항 개발 사업을 위한 토지매수업무, 손실보상업무, 이주대책 업무를 위탁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항공법 제100조)

4)타 시·도 피해 대책 활동 사례

가. 대구 동구의회

• 대구공항 현황

위 치	부지면적	여객청사	화물청사	주차장	활주로	비 고
대구 동구 지정동 400 번지	67,474m ²	7,809m ²	264m ²	470m ²	2,740×45	군·민항 겸용



※1일 평균 42회(국제노선 주2편, 일본)

- 주요 활동 사항
 - 대구국제공항화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운영
 - 제1대(1994. 5. 30 ~ 1994. 10. 24) : 16명
 - 제2대(1995. 12. 29 ~ 1997. 12. 29) : 19명
- 대구공항은 군용과 민간 범용으로 국제정기노선이 일부 취항하고 있으나, 국제공항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 또한 군용항공기는 항공법 적용을 받지 않음.
- 실제 대구공항 소음측정 결과(최고 98/최저 81 WECPNL) 기준치 이상의 피해지역이 많고, 주민피해 상황도 극심하여 지역주민 민원 해소 측면에서 대구광역시에서 자체적 대책 마련
- 공항주변 현지 피해조사 및 민원실태 파악 수렴
- 주민불편사항 및 낙후지역 개발사업비 예산요청
 - 요구액 : 506억(사장 3회 면담결과 특별교부사업 약속)
 - 확보액 : 373억(1996년부터 단계별 연차별 확보)
 - 지원내역
- 공항주변 23개 학교 냉 · 난방기 설치
 - 880개 교실 40억
- 도로 및 교량, 하수구 등 주민숙원사업비 지원

※주요 특위 활동

현 대구공항은 국제공항으로서 입지조건이 부적합하나 소음피해, 항공기 안전사고 등이 우려되며, 건축 등 행위제한으로 주민피해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강력한 반대특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결론

나. 강릉시의회

- 강릉공항 현황

위 치	부지면적	여객청사	주차대수	활주로	비 고
강원도 강릉시 난항 진동	69,727m ²	3,321m ²	172대	2,740 45	군 · 민항 겸용

※1일 평균 20회(국제 비행기 노선)

- 주요활동사항
 - 강릉시에서 「비행기 주변지역 지원대책 추진위원회」구성운영
 - 위원장 : 부시장
 - 위 원 : 25명(실 · 국장, 시의원, 주민대표 등)
- 1998. 6 : 항공소음 측정 및 피해조사 용역 실시
 - 용 역 비 : 6,200만원
 - 조사기간 : 200일간
 - 조사내용
 - 소음측정결과 : 최대 123dB/최저 65dB
 - 피해지역 면적 : 579.6ha
 - 총 피해액 : 73억 5,900만원
 - 주요소음피해는 민항기보다 군용기 소음으로 피해발생 극심
 - 비행장소재 자치단체 합동건의문 발송

- 해당 18개 자치단체 지역연계 중앙건의
- 비행장주변 지역숙원사업비 지원 : 3억 7,000만원(시비)
1998년 2억 1,000만원
1999년 1억 6,000만원
- 군용항공기 엔진 테스트장 방음시설 건의 - 공군부대

다. 제주시의회

- 제주공항 현황

위 치	부지면적	여객청사	주차대수	활주로	비 고
제주시 용담2동 2002	3,004.816㎡	46,648㎡	1,500대	2본 3,000×45m 2,000×45m	군·민항 겸용

- 주요활동사항
 - 제1종 구역 : 1982년 ~ 1985년 제주국제공항 확장사업지 건설교통부 항공건설사무소에서 제주시로 이주 보상 위탁 시행 완료
 - 제2종 구역(한국공항공단 제주지사 주체)
 - 주택방음공사
1994년 ~ 1995년 : 5가옥 공사 완료
1999년 6월 : 1가옥신청(2000년 공사요구)
 - TV수신시설 설치
1996년 ~ 1999년 : 18세대 설치 완료
 - 제3종 구역
 - 1996년 8월 ~ 1999년 9월 : 도리초등학교 방음 및 냉방시설 설치
 - 1996년 12월 ~ 1997년 5월 : 제주사대부중학교 냉방시설 설치
 - 1999년 1월 ~ 1999년 3월 : 마을회관 6개소 방음 및 냉방시설 설치(제주시 위탁 추진)
- 공항으로 인한 피해 보상 주민 숙원 사업
 - 민간

구 분	제1종구역	주차대수제2 ~ 3종 구역	비 고
시행기관	제주시청	한국공항단 제주지사	
대 상	88WECPNL이상 410가옥	80~90WECPNL 1,500가옥	
보상유형	이주보상	주택방음시설 및 TV수신시설 설치사업	
재원조달방법	국 비	한국공항공단 일반예산인 소음대책비	

※항공소음 피해지역 확대, 2~3종 구역 이주대책 강구, 전화, TV, 시청료감면, 냉방시설설치(방음시설과 병행), 주민복지사업, 사회기반 시설지원, 냉방시설 유지관리비 지원 등 관련 항공법 개정 요구

라. 부산시 강서구의회

- 주요 활동 사항
 - 소음 및 지역개발 대책위원회 구성
 - 참여기관 : 강서구청, 부산지방항공청, 한국공항공단 부산지사, 대한항공 김해지역본부, 김해농지 개량조합, 주민대표(대규2동 구의원)
 - 소음 대책 사업비 확보 : 7억원



※소음 대책 사업

- 배영초등학교 방음, 냉방시설 : 2억원
- 주택방음시설 설치(32호) : 4억 5,500만원
- 마을회관 방음, 냉방시설(중덕, 월포) : 3,000만원
- TV수신장애 대책 : 1,500만원
- 소음도 기준치(3종구역 80웨클)이하 지역 대책
 - 현황
 - 공항주변 3개 초등학교 : 3개학교 752명
 - 수업장애, 집중력저하 등 환경에 저해
 - 문제점
 - 소음도 기준이하이므로 사업추진 불가
 - 대책 협의 사항
 - 항공기 소음영향도 측정 산정방법 개선
 - 지역 및 시설의 특수성을 감안, 항공기 소음이 교육에 지장을 주는 학교 시설에 소음대책 사업추진

5)울산공항 문제점(조종사협회 자료)

- ① 바람은 주로 북동풍이 불며, 활주로 양방향 공히 접근시 낮은 고도에서 순간돌풍(Wind Shear)이 발생함(우측의 높은 산으로부터 내리치는 바람 영향임)으로 접지 조작시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 ② 풍향·풍속 감지기 위치를 활주로나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여 관제사가 조종사들에게 정확한 바람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도록 해야한다.
- ③ 야간 접근시 비행장 인근의 운동장 밝은 불빛이 조종사들에게 시각장애를 유발시킬 수 있다.
- ④ 울산 VOR 통과 후 울산공항 관제탑으로 이관되며, 공항 자체 RADAR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RADAR 유도가 불가능하여 조종사들이 “접근 절차 차트”를 보면서 접근해야 한다.
- ⑤ 공항 자체의 연료보급이 불가능하다.
- ⑥ 활주로 길이 6,562피트로 MD82 취항공항 중 가장 짧은 공항이다.(포항공항은 7,000피트)
- ⑦ 시각선회접근(Circling Approach)으로 활주로 방향 18 접근시, 최저 강하고도(MDA)가 1800피트로 3선회 이후 고도처리를 바쁘게 해야 되며, 접근로상 고압선 때문에 접근각 조명장치(PAPI)의 각도가 3.3도로 높게 설정 되었다.(ICAO 표준 접근각은 3.0도임)
- ⑧ 울산 관제탑 부산 출발허가 관제소(Clearance Delivery)가 같은 주파수를 사용함으로 혼선이 발생 하는 경우가 있다.
- ⑨ 1999년 3월 15일 포항공항사고 이후 우천시의 바람 제한치가 “측풍 30노트, 배풍 10노트”에서 “측풍 15노트, 배풍 9노트”로 상향조정 되었다.
- ⑩ 결론

결론적으로, 울산공항은 MD82 취항공항 중 가장 짧은 활주로이며, 지형적인 영향으로 접근저고도에서 순간돌풍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은 공항이다. 이에 대한 개선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활주로 길이를 확장해야 한다.

둘째, 활주로 방향 18 접근시 접근 조명시설(Approach Light)을 설치하여 야간 및 악 기상시 조종사들이 활주로 식별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활주로 부근(적절한 위치) 관제사 조종사 가시 거리 지점에 풍향·풍속 감지기를 설치한다.

6. 실태조사 검토 및 분석

1) 소음측정 및 분석 결과

- 피해지역 주민들의 민원발생지점 중에서 항공기 운항패턴에 따른 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 5개동(농소1,2,3동, 효문동, 송정동)지점에서 기종과 운항패턴에 따라 소음측정을 실시하여 측정횟수에 대한 평균소음도(LmaxdB(A))를 구하였다. 또 각 지점에서의 기종별 이·착륙 및 운항횟수에 다른 WECPNL을 산출하여 측정한 결과 법정 항공소음 기준치(80WECPNL)에는 근접하나(최고 80WECPNL, 최저 64WECPNL) 체감소음은 일상생활에 많은 지장을 줄 정도로 높았다.
- 항공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중(소음측정) 불규칙한 기상현상으로 비행시간이 다소 변경되었을 것으로 추측되었다.
- 특히 야간시간대에는 주변이 상대적으로 조용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느끼는 정도가 더욱 컸다. 심리적인 안정속에 하루를 마감하고 새벽의 일을 준비해야 하는 주민들로서는 수면방해 및 불안감 조성과 학생들에게는 학습방해 등 주간대의 비행소음과 더불어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이었다.

2) 공항 주변의 피해 실태 분석

울산공항 주변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제 피해 사례를 조사한 결과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청각 및 정신장애 증상(난청, 스트레스, 수면방해 등)
- 가축피해(가축성장 저해 및 불임 등)
- 학교수업 및 학습방해(조회시간, 하절기 창문개방시)
- 토지지가 하락(전세세입자 입주기피)
- 생활상의 불편(전파장애 - 전화통화, TV시청, 라디오 청취 곤란)
- 소음으로 인한 농작물에 미치는 영향

항공기 소음뿐만 아니라 어떤 소음으로 인한 농작물 수확량의 감소여부는 이론적이고 실험적인 근거가 없다. 따라서 정확한 관계 규명을 위해서는 현재 상황과 동일한 조건에서 장기간에 걸쳐 기후, 비료, 토양환경, 종자 종류와 소음정도 등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관련전문가와 공동으로 관측 연구해야 한다. 항공기 소음 때문에 물이나 비료주기 등 관리측면이 소홀해 진다면 품질과 수확량에 간접적으로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소음으로 인한 지역주민에 미치는 영향
유·무형적 피해에 대한 소음발생의 근본적 대책 수립과 함께 주민들의 근원적인 숙원사업을 해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소음으로 인한 인체, 가축, 농작물 피해의 인과관계 검토 소음으로 인한 인체, 가축과 농작물 등의 피해는 장기간의 소음노출에 의해서 일어나 일정 공간에서의 장기간 관찰을 필요로 하기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밀한 현지조사 및 실태분석을 통해서 보다 객관적으로 분석 평가해야 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3) 울산공항 문제점 분석

- 북구의 중심에 위치하고 국도 7호선에 인접하여 엄청난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다.
- 이·착륙시 남쪽에는 석유화학공단이 위치하고 북쪽에는 대단위 APT단지가 있어 대형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 울산공항 자체의 레이더(Radar)시설이 없고, 포항공항의 레이더 관제를 받기 때문에 조종사들이 “접근절차 차트”를 이용하여 이·착륙하므로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 공항자체의 연료 보급소가 없어 순간 기상 악화에도 무리한 착륙이나 빠른 회항으로 결항이 많다.
- 활주로 길이가 6,562피트로 MD82기 취항공항 중 가장 짧은 공항이므로 활주로 확장 및 미끄럼방지 시설(GROOVING) 설치가 요망된다.(500피트 활주로 연장효과 있음)



※1998년 9월 30일, 09:30 서울발 울산행 KE1603편(MD82기종) 이 활주로 초과하여 정지하여 3명이 부상한 사고 발생

－ 국회 건설교통위 보도자료(1999. 9)참조

- 공항북측에 조명시설(Approach Light)이 없어 남풍이 부는 하절기에는 약간의 곳은 날씨에도 결항이 많다.

7. 실태조사 결과 문제점 및 개선 대책

1)공항 입지의 문제점

- 북구의 중심에 위치하고 국도 7호선에 인접하여 엄청난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다.
- 항공기 이·착륙시 남쪽에는 석유화학 공단이 위치하고, 북쪽에는 대단위 APT단지가 있어 대형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대책

- 울산·경주·포항·대구 등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국제공항을 건립 이전

2)공항시설의 문제점

- 울산공항의 자체 레이더(Radar)시설이 없고, 포항공항 레이더(Radar) 관제를 받기 때문에 조종사들이 “접근절차 차트”를 이용하여 이·착륙하므로 사고위험 상존하고 있다.
- 공항자체의 연료 보급소가 없어 순간 기상악화에도 무리한 착륙이나 빠른 회항으로 결항이 많다
- 활주로 길이가 6,562피트로 MD82기 취항공항 중 가장 짧다.

※ 1998년 9월 30일 서울발 울산행 KE1603편(MD82기종)이 활주로를 초과하여 정지하여 3명이 부상한 사고가 발생

- 울산관제탑과 부산 출발허가 관제소(Clearance Delivery)가 같은 주파수를 사용함으로 혼선이 발생할 경우가 있다.
- 공항 북측에 조명시설(Approach Light)이 없어 착륙시 어려움이 있으며 남풍이 부는 하절기에는 약간의 곳은 날씨에도 결항이 많다.

◆대책

- 울산공항 레이더(Radar)시설 설치
- 활주로 확장 또는 미끄럼 방지시설(Grooving)시설 설치(500피트 활주로 연장 효과)
- 울산관제탑과 부산 출발허가 관제소(Clearance Delivery) 주파수 변경
- 공항 북측에 조명시설(Approach Light)설치

3)지역 주민 정서의 문제점

- 항공법상의 소음피해 영향도 (WECPNL) 기준치(80WECPNL)를 비교 하면 측정치는 최고 80WECPNL에서 64WECPNL로 나타났으나, 주민들이 체감하는 소음은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다.

※소음피해 사례

- 청각 및 정신장애(난청, 스트레스, 수면방해, 유아의 경기 등)
- 가축성장 저해(불임, 사산 등)
- 학교 학생수업 지장(조회시 지장, 하절기 창문개방 곤란 등)
- 토지 및 건물 값 하락(세입자 입주기피)
- 일상생활의 불편(전화통화 곤란, TV, 라디오 청취 곤란)
- 공항으로 인하여 많은 강우시 침수피해 우려된다.



◆대책

- 소음피해 실태의 공정하고 정확한 조사(공인된 기관)
- 학교시설(2중창, 냉·난방시설) 지원
- 피해지역 주민의 숙원사업 지원

4)항공법의 문제점

- 항공법 제107조 : 소음방지대책의 수립
 - 동법시행령 및 규칙에 소음 방지대책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 항공법 시행령 제40조 1항 : 소음대책 수립 등
 - 항공법 제107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음방지대책은 국제공항(정기 국제 노선이 개설된 공항)에 대하여 수립시행하므로 울산공항은 해당되지 않는다.
- 항공법 시행령 제41조 : 항공소음 피해지역 등의 지정고시
 -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다.
- 항공법 시행규칙 제271조 공항소음 피해지역의 개정
 - 소음피해 예상지역의 소음 기준 80WECPNL은 1993년 2월 3일 개정이 됐다.
- ◆대책
 - 항공법 제107조 소음방지대책의 수립에 의한 소음방지대책의 기준을 명확히 함을 촉구
 - 항공법 시행령 제40조의 소음방지대책 수립을 국제공항에만 한정하는 것을 일반공항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
 - 항공법 시행령 제41조의 공항피해 지역 등의 지정고시를 5년마다 타당성 검토 후 지정을 2년마다로 개정
 - 항공법 시행규칙 제271조의 소음피해예상 소음기준을 현행 80WECPNL을 75WECPNL로 상향조정하여 소음피해대책 수립의 개정

5)개선 대책

- 이상과 같이 문제점 및 개선 사항을 울산광역시 북구청, 울산광역시, 건설교통부, 환경부, 한국공항공단에 통보하여 빠른 시일내 개선될 수 있도록 촉구 건의하였다.





8. 문제점 및 개선 사항에 대한 관계기관 회신 내용

1)건의 사항 회신 주요 내용

건의 사항	회신기관(회신일자)	회신 내용	비고
고소음 항공기 운항감축	건설교통부 (2000.1.4) 공항공단 (2000.3.10)	• 국내공항(울산)저소음 항공기인 chapter3기종이 운항하고 있음. • 울산공항에는 항공법시행규칙 제275조에 의한 5등급 저소음 항공기(B737, MD82, F100등)가 운항하고 있음.	
울산공항 자체 레이더 시설설치	건설교통부 (2000.1.4) 공항공단 (2000.3.10)	• 2000년~2002년 사업비 202억원을 투자하여 레이더 시설도입 설치 예정 • 부산지방 항공청에서 2000~2003년까지 레이더 설치 추진중에 있음.	
주파수 혼선문제	건설교통부 (2000.1.4)	• '99.9.22 울산공항과 김해공항 주파수 혼선 문제 해결.	
활주로 미끄럼 방지시설 설치	건설교통부 (2000.1.4)	• 미끄럼방지시설(GROOVING)은 2000년도에 한국공항공단에서 안전성 확보가능 여부와 기술적 검토를 위한 시험시공 용역을 계획 하고 있으며 안전성과 실효성이 검증될 경우 GROOVING을 설치 추진할 계획임.	
항공법 시행규칙 소음기준을 80웨클에서 75웨클로 하향조정	건설교통부 (2000.1.4) 공항공단 (2000.3.10)	• 현재의 소음기준 80웨클의 경우에도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국가재정 형편상 소음기 준의 하향조정은 어려운 실정이나 향후 국가재정 형편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검토할 계획임. • 현재의 80웨클의 경우에도 국제공항(김포, 김해, 제주)만의 소음대책에 5,23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고, 75웨클로 조정시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되므로 현실적으로 어려움.	
활주로 확장	건설교통부 (2000.1.4)	• 북측의 하천과 남측의 도로시설 등의 지형여건으로 확장이 곤란한 실정이나 중장기적으로 검토예정임.	
소음피해지역 주민설명회 개최와 전문기관 실태조사 용역	건설교통부 (2000.1.4) 공항공단 (2000.3.10) 울산광역시 ('99.12.28)	• 2000년도에 소음평가 용역을 시행할 계획으로 그 결과에 따라 주민설명회, 소음자 동측정망, 전광판 설치 등을 검토할 계획임. • 2000년 중에 울산공항주변소음피해 여부를 조사할 계획임. • '98.5월부터 울산공항주변 10개 지점에 항공기 소음 측정망을 운영하고 있음. • 2000년도에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에서“울산 공항주변 소음분석 및 대책방안 강구”연구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제5절 기타 의정활동

1. 구정 질문

1)구정 질문 현황

일 시	회 순	의 원	질 문 요 지
계	14회		34건
1998. 10. 26	제15회임사회	김수현 의원	· 구 진장동사무소 활용방안
1998. 12. 18	제17회정기회	진한걸 의원	· 행정의 기본원칙 확립 · 북구 실직자 고용창출 대책 · 작고 강한 지방정부 구현 · 북구 특산물 특화사업
1999. 1. 25	제18회임사회	윤종오 의원	· 북구청 발주 각종 공사계약 · 울산자활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사업 · 염포 미도아파트 향후대책
1999. 4. 26	제21회임사회	김수현 의원	· 북구청 직원들의 복리후생
1999. 4. 26	제21회임사회	박광식 의원	· 21C 북구발전 마스터플랜 · 북구 강동권의 광역시 도시재정비 계획 제외안의 문제점
1999. 9. 30	제26회임사회	김수현 의원	· 각종 도급공사 하자관리 및 사후관리 점검표 작성관리 · 상안교 개통 및 잠수교 긴급 복구공사
2000. 4. 3	제31회임사회	진한걸 의원	· 낡은 공동주택의 재해위험에 대한 대책 · 기술직 공무원의 사기진작 · 방어진 하수종말처리장 최종 방류구 · 지역산업 공동화
2000. 4. 3	제31회임사회	윤종오 의원	· 환경미화원의 결원대책 · 쓰레기봉투값 단일화 대책 · 재활용품 상설판매장 건설계획 철회
2000. 6. 27	제33회임사회	김수현 의원	· 노래방 영업실태 및 문제점에 대한 향후 대책과 위법 조치사항
2001. 2. 8	제41회임사회	박춘환 의원	· 지방자치제도의 문제점과 초대 민선자치 단체장의 역할 · 불합리한 자치구 구세 · 20m이하 도로에 대한 광역시의 위임 사무조례 · 성과상여금 지급 · 북구주민 울산광역시민으로서의 긍지 여부와 시장님 북구 공식적 방문회수 · 화장장 유치문제
2001. 3. 28	제42회임사회	박광식 부의장	· 북구문화예술회관건립과 사후 운영관리 계획 및 구재정 운용의 문제점
2001. 11. 9	제48회임사회	김수현 의원	· 갈밭돌 개발계획 · LPG충전소 허가
2001. 11. 27	제49회 제2차 정례회	윤종오 의원	· 강동해맞이 축제 · 공공도서관 건립 · 환경미화원 인력운용
2002. 1. 29	제51회임사회	류재건 의원	· 울산미포 국가산업단지 효문지구

2)구정 질문 및 답변 요약

가. 진장동사무소 활용 방안 등에 관한 질문

◎질문 의원 : 김수현 의원

◎1998년 10월 26일(제1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김수현 의원 질문

구 진장동사무소에 울산 실업극복 시민단체협의회가 구 실업극복지원센터 설립을 위하여 복구청으로부터 승인 받아 무상사용 결정한 과정과 무상사용 대부에 대한 법적 타당성 여부는?

■ 조승수 구청장 답변

공공근로사업과 재취업 및 교육사업은 복구청이 실업대책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으나 “실업자 관리” 사업은 비예산사업으로 시민단체가 추진함이 가장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복구청 실업 대책 추진 사업과 병행 서로 협조 보완하여 추진함이 바람직함으로 무상 이용토록 내부적으로 검토한 적이 있음.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추진하는 사업에 시민단체는 협조와 보완하는 역할에 국한 되므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공유재산을 행정 목적 및 공익적 사업수행에 사용하는 것으로써 법령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됨.

■ 김수현 의원 질문

진장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는?

■ 조승수 구청장 답변

진장동사무소를 주민복지 시설로 활용하는데는 동의하나 현재 주민자치센터라는 명칭은 그 자체가 동을 변화 개선시키는 의미가 같이 붙어 있어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사용은 다시 검토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됨.

나. 행정의 기본 원칙 확립 등에 관한 질문

◎질문 의원 : 진한걸 의원

◎1998년 12월 18일(제17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 진한걸 의원 질문

도시계획상 예정되어 있는 소방도로 예정부지에 신축 건축물 준공 및 개교를 앞둔 학교의 진입로가 확보되지 않은 문제점 등 복구관내에 노출된 제반 문제점에 대한 행정의 직무유기 부분에 대해 책임소재를 가려 신상필벌이 따라야 한다고 보는데?

■ 조승수 구청장 답변

도시계획도로 예정부지에 저축되는 건축물은 총 7건 중 준공이 6건, 미준공이 1 건으로 이는 광역시 승격 이전 복구청에서 허가 내지 준공처리 된 것으로 건축허가 및 준공당시 처리과정 등을 면밀히 재확인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관련자 조치 및 행정처분 여부를 검토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임. 농소 천곡초등학교 진입로 개설 문제는 학교 개교일인 내년 3월 이전까지 교량공사 부분부터 우선 준공토록 하여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임.



■ 진한걸 의원 질문

북구 실직자 고용창출 대책에 따른 실직자 고용창출을 위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생산적인 실업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보는데 ?

■ 조승수 구청장 답변

우리 구는 항구적 실업대책으로 중소기업체의 조업률 제고 노력과 함께 창업 및 유지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단기적으로 고용 촉진훈련, 취업알선, 공공근로사업 등을 통하여 임시적 실업대책을 병행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음. 실직자 고용창출 대책 내용을 참고로 시행 가능한 시책을 개발하여 생산적이고 체계적인 실업대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음.

■ 진한걸 의원 질문

조직의 혁신이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북구의 고비용 저효율 조직은 여전한 실정임. 재정이 열악한 북구에서 먼저 권위있는 외부 기관에 의뢰하여 경쟁력 있는 구청으로, 작고 강한 지방자치단체로 거듭 태어날 의향은 없는지?

■ 조승수 구청장 답변

공무원의 사고전환과 공공부문의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필요하다면 신뢰 할 수 있는 외부기관에 조직 진단을 의뢰하여 경쟁력 있는 북구청, 작고 강한 지방자치단체로 성장시켜 좀더 구민들의 가까이에서 구민들의 숙원을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할 것임.

■ 진한걸 의원 질문

기획예산위원회와 행정자치부는 경기도 부천시를 복식부기 도입 시범단체로 선정해 2000년도 예산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하는데 열악한 북구재정을 고려하여 기금과 특별회계 정도는 당장 복식부기로 보완할 용의는 없는지?

■ 조승수 구청장 답변

자치단체에서도 이미 대기업 등에서 다루고 있는 복식부기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나 당장 복식부기가 도입되면 제도의 변화로 회계업무에 혼란을 초래할 것임. 복식부기가 도입된다 하더라도 기업의 방식이 아닌 우리 행정제도에 맞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함. 우리구도 부천시의 시범 실시결과 장·단점을 판단한 이후에 본제도의 도입여부를 고려하겠음.

■ 진한걸 의원 질문

청정해역인 강동지역의 젓갈과 미역은 국내시장에서 충분한 경쟁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이미지 제고로 직·간접적인 경제적 시너지효과가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강동지역 특산품을 공신력 있는 식품 연구소에 성분분석을 의뢰하여 지역의 특화산업으로 육성할 대책이 없는지?

■ 조승수 구청장 답변

내년부터는 지역 특산물의 특화를 위해 성분분석 및 특성분석을 토대로 하여 독자적인 브랜드 개발, 포장단위개선, 다양한 홍보, 특산물 관리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등으로 생산에서 출하시까지 품질관리를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 집중 관리해 나갈 방침임.

다. 북구청 발주 각종 공사 계약 등에 관한 질문

◎질문 의원 : 윤종오 의원

◎1999년 1월 25일(제1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윤종오 의원 질문

현재 시행하고 있는 북구청 발주 각종공사 계약방식은 단순 수의 계약에 형식적으로 1개 업체의 견적서를 첨부한 것에 불과해서 특정업체에게 특정공사가 계약될 수밖에 없는 실정임으로 각종 공사 계약방식에 대한 개선책은 없는지?

■ 조승수 구청장 답변

우리 구에서는 기존의 수의계약 방식과 입찰시 3~5개 업체를 입찰에 참여케 한 수의계약 방법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본 결과 3~5개 업체의 입찰 참여시 장점으로는 공사계약시 투명성 확보와 동등한 업체에 참여 기회를 부여할 수 있으며, 단점으로는 타업체의 불만의 소지가 있으며 불성실한 사업자 낙찰시 부실공사 우려로 완벽한 시공이 어렵다는 문제가 예상되고, 건설업체의 빈번한 부도등이 예상될 때 건설한 업체가 잘못된 계산식 일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예상되는 바, 장점보다 단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어 2개 업체의 최저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음. 앞으로 예산을 최대한 절감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 제도에 대하여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음.

■ 윤종오 의원 질문

울산자활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사업에 대해 1999년도 예산금액 1억 8,000만원중 1억원이 특별 취로 사업이고 8,000만원이 인건비 또는 운영비로 책정되어 있는데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배정되었는지 주요사업계획인 공동작업장운영 등이 현재 예산규모로 가능한지?

■ 조승수 구청장 답변

자활지원센터 지원예산은 총 1억 8,000만원으로, 그 중 인건비 등 운영비가 8,000만원인데 국비 5,600만원, 시비 1,200만원, 구비 1,200만원으로 각각 70%, 15%, 15%의 예산으로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음. 또한 특별취로사업비는 1억원으로, 현재로서는 공동작업장 운영비 지원은 이 사업비의 성격상 어려운 실정임.

■ 윤종오 의원 질문

남구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재활용센터 사업을 북구에도 개설하여 자활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 조승수 구청장 답변

금년 상반기 중 연암동 1049-4번지 구유지에 200평 정도의 재활용상설판매장과 교육장을 건립키로 계획하여 소요사업비 약 3억원 중 50%를 시비지원 요청하였으나 시자체 신규사업예산 삭감원칙에 따라 보조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본 사업의 추진이 다소 어렵게 되었음. 앞으로 시비지원요청 등 예산확보 노력을 계속하여 재활용센터 건립사업이 꼭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임.

■ 윤종오 의원 질문

공공근로사업중 생산성이나 효율성이 높은 사업은 자활지원사업과 연계하거나 유기적 협조를 하여 시행해야 실질적 자활지원 사업이 될 것이며, 주요사업계획인 용역사업이나 부업 공동체사업은 구청의 각별한 지원이나 지속적 관심을 가져야 가능한 사업으로 판단되는데 구청의 지원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 조승수 구청장 답변

금년도 우리 구의 자활지원센터 지원은 특별취로사업비 1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으나, 앞으로 센터의 기능범위 내에서 공공근로사업과 연계 추진하여 저소득층 주민이 자립할 수 있도록 종합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윤종오 의원 질문

염포 미도아파트 문제 해결을 위한 중앙정부에 특별교부금 요청 후 추진 사항과 향후 대책은?

■ 조승수 구청장 답변

지난 1월 7일 행정자치부를 방문하여 미도아파트 매입비 및 철거비 5억원, 천곡초등학교 진입로 개설비 10억원 해서 총 15억원을 지원토록 요청한 바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긍정적으로 지원을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전달받아 협의가 진행중에 있음. 향후 특별교부세가 지원되면 철거후 소공원 등을 조성하여 시민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임.

라. 북구청 직원들의 복리 후생에 관한 질문

◎질문 의원 : 김수현 의원

◎1999년 4월 26일(제2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김수현 의원 질문

울산광역시 타 구·군과 북구청 공무원들의 복리후생적인 급여지급 대비현황을 파악하고 있는지?

■ 조승수 구청장 답변

우리 구의 경우 시간외수당 4억 7,800여만원과 국내여비는 5억 700만원, 급량비 2억 900만원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재정자립도가 다소 좋은 남구의 경우 시간외 수당 11억원, 여비 8억원, 급량비 5억원으로 부분적으로 배가 되는 복리후생비를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임.

■ 김수현 의원 질문

일반 국영기업체 임직원들과 공무원들의 보수를 비교해 볼 때 공무원들의 처우수준은 어떠한지?

■ 조승수 구청장 답변

대기업과 비교할 때 5급 이상 공무원은 67.3%, 6급 이하는 79.5%수준이며 중소기업체와 비교했을때 공무원보수는 전직급 모두 비슷한 수준이며, 국영기업체 임금과 비교했을때 5급 이상은 84.2%, 6급 이하는 89.2% 수준으로 향후 행정자치부에서는 공무원 보수를 국영기업체 수준으로 현실화 할 계획이라는 방침이 정해 진 것으로 알고 있음.

■ 김수현 의원 질문

보수 삭감으로 인한 북구 공무원들의 부채 파악 및 생계대책은 어떠한지?

■ 조승수 구청장 답변

현재 우리구청 전체직원 380명 중 가계 자금대출은 82명에 9억 5,860만원을 대출하였고, 주택 구입자금은 1명에 4,000만원을 대출하였음. 행정자치부와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서 농협 외 4개 시중은행과의 협의를 거친 후, 퇴직금을 담보로 지난 2월부터 가계안정자금은 최고 2,000만원까지, 주택구입자금은 최고 5,000만원까지 연리 11.25%로 대출을 해주고 있음.

■ 김수현 의원 질문

공무원보수를 삭감하여 공공근로사업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대한 견해와 삭감된 인건비 정상화를 위해 행정자치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 조승수 구청장 답변

시장, 군수, 구청장 간담회에서 5개 구·군 공히 현재와 같은 공공근로 예산편성에서 국비를 제외한 지방비 부담 분 중에서 현재 구·군에서 70% 시비 30%로 되어 있는 기준을 바꾸어서 구·군에서 30%, 시비 70%로 편성해 주도록 건의한 바 있음.

■ 김수현 의원 질문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어려운 생활을 돕기 위해 구청장이 할 수 있는 방법과 향후 추진계획은?

■ 조승수 구청장 답변

구청장의 권한으로는 구체적인 보수인상이 불가능하지만, 현재 시행하고 있는 가계자금 대출과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희망하는 직원 모두에게 대출 알선을 해 주겠음. 일한 만큼 시간외수당과 급식비 지급, 규정된 출장여비 전액을 지급하여 조금이나마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하며, 구청사 건립시 탁아시설을 지어서 직원 후생복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음.

마. 21C 북구발전 마스터플랜 등에 관한 질문

◎질문 의원 : 박광식 의원

◎1999년 4월 26일(제2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박광식 의원 질문

울산북구21C위원회와 실무기획단을 1999년 2월중에 완료하겠다고 했으나 이 시점까지 묵묵부답인 실정인데 위원회 구성을 하지 않는 이유는?

■ 조승수 구청장 답변

용역발주 시기를 일부 조정하여 오는 5~6월경에 용역계약하기로 잠정 결정하여 오는 7월경으로 예상되는 정부의 그린벨트 관련 정책방침 내용을 반영할 계획임.

■ 박광식 의원 질문

북구발전21C위원회와 자문위원회는 동일한 것인지 만일 양자가 동일하다면 왜 의원들은 배제하고 관계공무원과 전문인사로만 구성하고 있는지?

■ 조승수 구청장 답변

자문위원회도 직접 용역을 수행하는 21세기 위원회와 또 용역이 수행된 다음에 시·구 의원과 지역주민까지 포함한 각계각층에서 용역 결과에 대한 의견들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토록 계획을 세웠음.

■ 박광식 의원 질문

북구발전21C위원회와 자문위원회는 동일한 것인지 만일 양자가 동일하다면 왜 의원들은 배제하고 관계공무원과 전문인사로만 구성하고 있는지?

■ 조승수 구청장 답변

자문위원회도 직접 용역을 수행하는 21세기 위원회와 또 용역이 수행된 다음에 시·구 의원과 지역주민까지 포함한 각계각층에서 용역 결과에 대한 의견들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토록 계획을 세웠음.

■ 박광식 의원 질문

1998년 정기회에서 당해 계획과 관련하여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문서로 제출하고 설명한 후 1999년 1월 26일 업무보고시 이 조례가 불필요하다고 단정한 이유는?

■ 조승수 구청장 답변

실제 운영과정에서는 크게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됐고, 다른 법적·제도적 장치를 불필요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많아서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음.

■ 박광식 의원 질문

북구발전21C마스터플랜의 실효성 문제에 있어서, 특히 위상적 측면에서 실효성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람.

■ 조승수 구청장 답변

이 계획이 법적인 강제성을 지니거나 혹은 법적 근거를 가지는 법정계획은 아니지만, 구 단위의 계획은 신설 구로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이 계획의 필요성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있음.

■ 박광식 의원 질문

과업지시서에 의하면 재원조달 방안제시, 민자유치 및 제3섹터에 의한 재정조달 방안이라는 단 두 줄만 언급하고 있는데 재원조달 계획은?

■ 조승수 구청장 답변

지역개발 부분에 소요될 예산이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이 용역에 담아 내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며, 예산의 편성과 배정, 재원조달에 관해서는 오히려 중기 지방 재정계획에서 구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 박광식 의원 질문

강동권의 광역시 도시재정비계획 제외안에 대해 집행부의 대책을 촉구하며 답변 바람.

■ 조승수 구청장 답변

도시재정비 작업에서 강동지역의 관광위락단지 구성에 따른 관광단지개발계획 수립이 뒤따르지 않아 향후 관광단지 구성에 많은 차질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됨.

5월중에 도시재정비계획이 입안되고 9월 중에 재정비사항이 결정되면 기존 주택을 가지고 거주하는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행정적으로 검토할 계획임.

구체적 계획수립 일정 및 실현 가능성 있는 재원조달방법에 대해서는 강동권 개발의 구체적인 계획수립 일정이 광역시와 관련된 사항으로 광역시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일정에 따라 우리구에서도 개발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

바. 각종 도급공사 하자 관리 및 점검표 작성 관리 등에 관한 질문

◎질문 의원 : 김수현 의원

◎1999년 9월 30일(제2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김수현 의원 질문

구청 도급공사 중 하자담보책임 기간 내에 있는 공사건수 및 공사금액은 총 얼마인가?

■ 윤성태 총무사회국장 답변

계약금액 2,000만원 이상 시설 공사기준으로 총116건 63억 8,500만원임

■ 김수현 의원 질문

구청 도급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정기적인 하자검사 실시여부 및 조치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 조승수 구청장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일로부터 1~10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금액 2,000만원이상 공사에 대하여 하자 담보책임기간 중 연2회 이상 정기하자검사 및 검사조서를 작성 관리하고 있음.

■ 김수현 의원 질문

공사완료 후 준공검사 시 어떤 방법으로 검사하여 준공을 내어 주는 지?

만약 준공 후 부실공사로 판정될시 관계공무원 및 업체에 어떤 조치를 하는지?

■ 윤성태 총무사회국장 답변

해당업체에서 총무과로 준공계가 접수되면 해당 발주부서에서 준공검사공무원의 임명을 요청하고, 임명받은 공무원은 준공계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현장확인하여 준공검사를 실시하며, 준공검사이시 부실공사나 설계서 대로 시공이 되지 않았을 경우 즉시 보완 또는 재시공 명령하여 준공 예정일을 초과한 기간동안 지체 보상금을 부과하거나, 부실정도에 따라 계약사항 이행불가로 판단 될 시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조치 및 부적당업체로 통보하여 제재조치함.

■ 김수현 의원 질문

공사 시공사향과 하자발생 사항에 대하여 업체를 상대평가 할 수 있는 점검표를 작성 관리하여 차후 업체 선정 시 참고자료 및 주민불편 해소와 예산절감에 기여하고 업체 기술향상에도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한지

■ 윤성태 총무사회국장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1조 2항에 의거 3천만원이상인 공사는 하자보수 보증서 또는 하자보수이행보증증권을 받아두었기 때문에 하자보수 지시를 불이행하거나 업체도산으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하자보증금 직접사용 등의 방법으로 하자 불이행에 따른 주민불편 초래 또는 예산을 추가 투입하는 사례는 방지할 수 있음. 시설공사 수의계약에 있어서 자체의 계약 방법 개선방안을 마련 중에 있고, 이 개선방안에 품질 및 공정관리, 안전 및 기술인력관리, 공사마무리 및 외관상태, 시공열의도 및 하도급관리 등 배점항목을 정하여 시공평가표를 작성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일정한 점수에 미달하는 업체는 수의계약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방안을 계획 중에 있음.

■ 김수현 의원 질문

신설 상안교 개통이 지연되는 이유와 현재 신설 중인 상안교가 언제쯤 우회 임시개통 예정인지?

■ 조기수 산업건설국장 답변

보상협약이 이루어지지 못해 공사가 지연되고 있으며, 보상협약이 완료된 시점부터 6개월 정도면 완공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음.



■ 김수현 의원 질문

개통 지연되는 이유 중 “난” 집보상금은 지급되었는지, “난” 집 이전시 고사울에 의한 보상금은 얼마를 요구하고 있으며 보상추진 관계는 어느 정도인지?

■ 조기수 산업건설국장 답변

토지부분에 대해서는 보상금 2,453만원이 지급 완료되었고, 지장물 및 이전비는 감정가인 3,435만원에 대해 보상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지주가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난”에 관한 전문기관인 한국화훼협회에 재감정을 의뢰 중에 있다고 하며, 10월 중에 결과가 나올 예정으로 고사울을 감안해 볼때 당초 감정가액보다 훨씬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김수현 의원 질문

상안교 밑 우회도로(잠수교)를 당초에 있던 길보다 확장하게 된 이유와 시행주체가 어디였는지?

■ 조기수 산업건설국장 답변

잠수교는 1994년 4월 상안교에 대한 5.5t 이상 차량의 통행제한이 실시되면서 중 차량의 우회통행을 위해 울주군이 설치하였으며, 1997년 1월 6일 모든 차량 및 건설기계의 전면 통행금지 조치가 내려지면서 우회 차량들의 통행을 위해 울주군에서 확장하였음.

■ 김수현 의원 질문

상안교 밑 우회도로(잠수교)를 당초에 있던 길보다 확장하게 된 이유와 시행주체가 어디였는지?

■ 조기수 산업건설국장 답변

잠수교는 1994년 4월 상안교에 대한 5.5t 이상 차량의 통행제한이 실시되면서 중 차량의 우회통행을 위해 울주군이 설치 하였으며, 1997년 1월 6일 모든 차량 및 건설기계의 전면 통행금지 조치가 내려지면서 우회 차량들의 통행을 위해 울주군에서 확장하였음.

■ 김수현 의원 질문

확장된 잠수교 파손의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는지?

■ 조기수 산업건설국장 답변

잦은 강우로 인해 하상바닥이 세굴되고 중차량들의 통행이 늘어난 것이 주요원인인 것으로 판단됨.

■ 김수현 의원 질문

1997년 1월 6일부터 차량통행제한이 된 상안교의 교량노후위험 판정이 몇 등급인지?

■ 조기수 산업건설국장 답변

1994년 2월부터 울산대학교 기술연구소의 안전진단 결과 상안교의 위험등급을 C급으로 분류해서 시에서 관리해 왔으며, 관리가 구청으로 이관된 이후 금년도 7월에 교량 전산화시스템기초입력자료 목적으로 용역을 실시한바 D급으로 판정이 나와 있음.

■ 김수현 의원 질문

상안교를 일부 보수하면 경운기, 승용차 통행은 가능한지 여부와 만약 가능하다면 현재까지 방치한 이유는 무엇인지?



■ 조기수 산업건설국장 답변

울산대 안전진단결과에 따라 울주군에서 상안교의 보수방안을 검토하였으나 재가설하는 비용과 거의 차이가 없어 재가설을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음.

■ 김수현 의원 질문

향후 신 상안교가 개통되면 역전들 신답, 상안들의 농민들의 농기계, 경운기 등 안전운행과 교통체증 방지를 위하여 잠수교를 이용한 농로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떤지?

■ 조기수 산업건설국장 답변

집중호우의 경우 박스를 통해 강물이 유입되어 재해의 우려가 예상되는 등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며 기술적으로도 다른 방법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사. 낮은 공동주택의 재해 위험에 대한 대책 등에 관한 질문

◎질문 의원 : 진한걸 의원

◎2000년 4월 3일(제31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 진한걸 의원 질문

양정동 새마을아파트 재건축시 요구되는 적정부지 확보를 위하여 그린벨트 조정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며, 공단 인근지역 노동자들의 주택난 해소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각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의견은?

■ 김병규 도시개발국장 답변

주민이 희망하는 연리 3% 세대당 3,000만원의 용자는 건물의 심각한 노후와 단 면 손실이 발생하고 안전성에 위험이 있어 곧 붕괴가 예상되는 상태로서 정부가 인정하는 전문기관의 정밀안전진단 결과 재해위험 시설물 E등급에 해당하는 노후 위험주택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새마을아파트는 용자지원을 받기는 어려운 실정임. 재건축시 요구되는 적정부지 확보는 새마을아파트 주민의 민원내용을 광역시에 전달하여 G/B조정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음.

■ 진한걸 의원 질문

땀흘리는 자가 소외되지 않는 직렬간 승진 기회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행정자치부와 직렬조정협의 또는 기술직렬 사기진작을 위한 대책은?

■ 김종우 총무국장 답변

정원 감축시 기술직 공무원의 인원을 최소한으로 감축하였음. 현업부서는 충분한 실비 보상은 되지 않지만 다소나마 현실적인 여비를 2000년도에 계상하였고, 공무원 해외배낭여행의 기회를 행정직렬에 비해 많은 인원을 배려하였으며,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가능한 사기진작 방안을 강구할 방침임.

■ 진한걸 의원 질문

방어진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이 1차물리학적 처리, 2차 생물학적 처리시설과 고도처리시설 후 가동이 된다고 하지만, 향후 야기되는 울산만 수질 오염과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 조승수 구청장 답변

울산광역시에서는 울산만의 수질오염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우리 구는 염포동 및 인근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문제점을 울산광역시와 해당부서인 하수관리과에 건의하여 사업 시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음.



■ 진한걸 의원 질문

북구 경제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자동차 산업의 활성화를 저해하고, 북구지역 고용안정을 위협하는 대우차 해외매각반대공동대책위를 구성하여 12만 북구민뿐만 아니라, 100만 시민에게 매각의 방식에 따라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심각할 수 있음을 공유하여야 할 것임., 대우자동차 해외매각반대범시민대책위를 구성할 용의는 없는지?

■ 조승수 구청장 답변

대우자동차 해외매각에 대한 각계 각층의 여론을 적극 수렴하여 시와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다각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토록 하겠으며, 현재 이미 구성되어 있는 시민대책위에 개인적으로 참가의사를 밝혔음.

아. 환경미화원의 결원 대책등에 관한 질문

◎질문 의원 : 윤종오 의원

◎2000년 4월 3일(제31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 윤종오 의원 질문

어렵고 열악한 조건 속에서 근무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의 결원 대책은?

■ 강종철 경제사회국장 답변

정부의 시책이 청소관련 업무 등 민간위탁해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민간위탁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 구도 2001년부터 민간위탁 계획을 추진하고 있음. 기존 환경미화원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 구조조정은 최대한 억제하도록 하겠음.

■ 윤종오 의원 질문

현행 쓰레기 봉투 값은 업소, 아파트, 주택이 같은 8의 쓰레기를 수거하면서 각기 다르게 판매되고 있는데 쓰레기 봉투값의 단일화에 대한 대책과 구체적인 일정은?

■ 강종철 경제사회국장 답변

2005년 5월경 울산광역시 성암매립장 소각 시설이 준공예정인 데 있어 이후로는 현재의 쓰레기 배출체계를 변경하여 타는 쓰레기와 안타는 쓰레기로 분리 배출해야 함으로, 타는 쓰레기는 기존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고 안타는 쓰레기는 신규 제작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음. 검토결과에 따라 금년 하반기에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종량제 봉투 가격을 단일화 할 계획임.

■ 윤종오 의원 질문

현재 재활용품 상설판매장을 건설해도 민간위탁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할 때 각종 홍보와 재활용 교육을 통해 주민의식을 향상 시키고, 재활용품 상설판매장 건설 계획을 철회할 용의는 없는지?

■ 조승수 구청장 답변

재활용품에 대한 이용고객의 부정적 인식이 일부 잔존하고 있지만, 무상배출에 대한 이점에 호의적인 시각도 상존하고 있고, 운영 주체자의 의지나 운영방법에 따라서 사업 효과가 아주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판단함.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비영리단체를 대상으로 사업계획서를 공모토록 할 계획이며, 공모계획서를 엄정 심사할 뿐만 아니라 재활용품 수거·판매방법, 인쇄티브, 임대료 산정비율 등을 보완하여 사업목적 달성에 최선을 다할 것임.

자. 노래방 영업 실태 및 문제점에 대한 향후 대책에 관한 질문

◎질문 의원 : 김수현 의원

◎2000년 6월 27일(제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김수현 의원 질문

북구관내 현재 노래방 업소현황에 대한 동별 현황은 어떤지?

■ 김중우 총무국장 답변

북구관내에는 총80개소의 노래연습장이 있으며 농소1동 20개소, 농소2동 13개소, 농소3동 1개소, 강동동 11개소, 효문동 10개소, 송정동 6개소, 양정동 10개소, 염포동 9개소가 등록되어 있음.

■ 김수현 의원 질문

북구 신설후 현재까지 노래방에 대한 단속실적 및 불법행위 조치 내역은?

■ 김중우 총무국장 답변

중부경찰서와 동부경찰서로부터 총66개소의 노래연습장을 이관 받았으며 이관 전 위반 업소 행정처분은 1998년과 1999년 2년 동안 총64개소를 적발하여 영업정지 57개소, 시정·경고 7개소이며 업무이관 후 총21 개소 적발하여 영업정지 17개소, 시정명령은 4개소에 한 바 있음.

업무이관 전·후 전체를 동별로 보면 농소1동 24개소, 농소2동 5개소, 농소3동 1개소, 강동동 15개소, 효문동 9개소, 송정동 9개소, 양정동 14개소, 염포동 8개소로 총85개소가 적발되어 영업정지 74개소, 시정·경고 처분은 11개소에 한 바 있음.

■ 김수현 의원 질문

위법조치 받은 업소는 다른 업소에 대해 불만이 많은데 단속업무의 문제점은 없는지, 형평성에 맞게 전 업소를 지도 단속하고 있는지?

■ 김중우 총무국장 답변

단속의 문제점은 전업소가 협회구성을 통한 비상연락 체계망이 구축되어 있어 첫 업소 단속후 다음 업소의 단속 실효를 거두기가 어렵고 심야에 적은 인력으로 광범위한 관내를 일제 단속해야 하는 어려움과 사법권이 없는 행정공무원으로서 단속에 한계가 있고 손님과 업주로부터 잦은 시비와 협박에 시달리고 있음.

■ 김수현 의원 질문

법대로 정상영업시 적자가 나고 불법 영업을 해야만 경영수지가 맞다고 하는데 그 실태와 대책은?

■ 김중우 총무국장 답변

정부의 규제완화 차원에서 노래연습장에 대한 청소년 출입허용(18세미만은 22:00까지)및 1999년 3월 1일자로 심야영업 제한을 해제하는 등 노래연습장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으나 IMF이후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경영난이 악화되었고 유사업종 급증으로 경영난이 심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용객이 유흥주점으로 혼동하여 불법행위를 강요하는 실정임.

우리 구에서는 자율적 건전영업 유도를 위해 업주교육 연2회, 월1회 이상 수시 단속과 분기 1회 이상 사법기관과 합동 단속하는 등 지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음.

■ 김수현 의원 질문

일명 뽀뽀걸에 대한 현황과 최근 일어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점에 대한 파악 및 대책 방안은?

■ 김중우 총무국장 답변

일부 업주들이 돈만 벌면 된다는 그릇된 생각과 이용객도 유흥업소 접대부 이용경비보다 적게 든다는 이유로 소위 뽀뽀걸이 소개되는 등 불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업주들의 의식전환을 위한 교육강화로 수시 및 불시로 사법기관과 합동단속을 강화하여 불법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음.

■ 김수현 의원 질문

현실에 맞는 법개정으로 시민들이 법을 어기지 않고 노래연습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할 방법은 없는지 아니면 상급기관에 법개정을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 김중우 총무국장 답변

노래연습장을 국민의 건전한 문화생활과 정서함양에 기여토록 유흥주점과 분명히 구분하고 있는바 법 취지에 맞게 건전한 방향으로 업주가 노래연습장을 잘 운영해야 할 사항임. 현행 관련법규와 운영에 관한 제반 문제점 등을 면밀히 분석해서 법개정 내지는 운영의 개선점을 지속적으로 연구·검토해 나가겠음.

차. 지방자치제도 문제점 등 당면 업무 추진 상황

◎질문 의원 : 박춘환 의원

◎2001년 2월 8일(제4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박춘환 의원 질문

지방자치단체의 문제점과 초대 민선 자치 단체장의 역할?

■ 조승수 구청장 답변

• 임명직 단체장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눈을 의식하고 중앙정부의 눈치를 보지만 선출직 단체장은 유권자인 주민의 눈을 의식 할 수 밖에 없기 때문.

임명직 단체장은 임기보장이 없기 때문에 지역상황을 파악하고 뭔가 계획수립하려고 할때 떠나야 하고, 장기적인 발전의 비전제시와 책임행정이라는 말조차 어려운 실정임.

• 선출직 단체장은 주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임기보장으로 소신행정은 물론 자신의 임기동안 행정에 대한 책임회피를 할 수 없으며, 이를 부정할 시 곧 주민의 의사로 심판함.

• 국회의원 중심으로 기초자치단체장의 임명직 전환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지만 60%이상의 주민들이 지방자치 이후 일부 문제점은 있지만 행정이 바람직한 형태로 변화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므로 문제가 되는 사항은 보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함.

■ 박춘환 의원 질문

불합리한 자치구 구세에 관하여?

■ 정대경 총무국장 답변

- 지방세 17개 세목중 광역시는 13개 세목, 구세는 4개 세목으로 자체세입이 열악한 실정임.
- 어떤 방법으로든지 빠른 시일내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광역시와의 세목조정은 그 어느 정책보다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함.
- 1999년 10월 1일 : 세목조정 전국토론회 개최
- 2000년 6월 27일 : 지방세세목조정추진 협의회 구성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세목조정 용역 의뢰
- 2000년 11월 30일 : 지방세법개정법률안을 제출(자동차세 구세, 면허세 시세)
- 현재 : 법률소위원회에 계류중이며, 앞으로 자동차세 뿐만 아니라 다른 세목도 계속 구세로 전환되도록 노력하겠음.

■ 박춘환 의원 질문

현실을 무시한 20m이하 도로에 대한 광역시의 위임사무조례에 관하여?

■ 김병규 도시건설국장 답변

울산광역시 건설교통국소관 위임사무 조례 중 제2조의 20m미만 도로를 자치구가 공사와 유지 관리토록 한 사무위임조례에 대하여 1999행정사무감사시 의회의 요구에 따라 우리구에서 2000년 1월에 20m 미만 도시계획도로 시설관리 주체를 광역시장으로 변경함. 시설 또한 시에서 추진하여 줄 것을 요구한바 현재까지 시의 조치결과는 특별한 내용이 없으며 이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중임.

■ 박춘환 의원 질문

성과상여금 지급에 관해 답변해 달라?

■ 정대경 총무국장 답변

지방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 2규정에 의하면 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과 범위 및 방법 등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행정자치부의 성과상여금지급지침교육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지급사례 그리고 여러직원들의 의견 등을 참작하여 성과상여금 제도입취지에 부합되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합리적인 지급방안을 마련하여 성과 상여금을 지급 할 계획임.

■ 박춘환 의원 질문

과연 북구주민이 울산광역시민으로서 긍지를 갖고 살아가고 있는지.
또 북구청사 기공식을 제외하고 시장님이 북구를 공식적으로 몇 번이나 방문하였는지?

■ 정대경 총무국장 답변

- 북구가 신설됨에 따라 종전에 비하여 세금부담이 증가되고 다른 구·군에 비하여 재정과 복지시설이 열악, 피해의식을 지니게 된 주민들이 다수 있으나, 다른 한편 교통이 편리해졌고 재산 가치가 상승했으며,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 긍정적인 측면도 매우 많아졌음.
 - 구민의식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지역 정체성 확립과 생활영역별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의식 전환이 필요함. 주민의 만족도가 낮은 도로 교통시설과 문화복지시설 등의 확충에 노력을 하고 있음. 그것을 위해 두번째 맞이하는 강동해변 해맞이 축제와 무릉문화예술원의 운영을 확대, 의식전환의 장소로 활용하고 있음.
- 울산시장은 공식·비공식적으로 어느 구에 못지 않게 북구를 가장 많이 방문하고 있으며, 중요한 업무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과 수시로 만나서 협의하고 있음. 특히 열악한 도시기반 시설확충과 매곡지방 산업단지 및 자동차 오토밸리조성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음.

■ 박춘환 의원 질문

화장장유치 업무추진에 관해 답변 해 달라?

■ 조승수 구청장 답변

• 화장장 유치사업의 목적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매장 위주의 현행 장묘문화를 개선하자는데 있으며, 최첨단시설을 갖춘 초현대식으로 냄새와 연기가 전혀 발생하지 않아 주민들의 뇌리 속에 남아 있는 기존 화장장과는 차원이 다름.

• 현대식 장묘시설 유치를 주민들이 동의해 주고, 더불어 만족할 만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면 열악한 북구재정 여건으로 보아 북구 발전을 앞당기는데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여 화장장 유치를 희망하게 되었음.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구의회의 의견과 북구의 장 발전계획, 주민건의 등을 바탕으로 시와 협의를 거쳐 확정 할 것임.

카. 북구 문화예술회관 건립과 사후 운영관리 계획 및 구정 재정 운용의 문제점

◎질문 의원 : 박광식 부의장

◎2001년 3월 28일(제4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박광식 부의장 질문

문화예술회관 운용 관리에 따른 소요 인력 문제는?

■ 조승수 구청장 답변

타 자치단체 문예회관은 구청사와 원거리에 소재하고 있어 별도의 직제가 필요하나 북구의 경우 청사 부지 내에 건립함으로 써 최소의 전문인력만 확보하면 됨. 청사와 연계할 수 있는 통신, 전기, 냉·난방 시스템 시설운영 일부와 일반 행정분야는 부서간 정원조정을 통해 기존 문화관광담당부서에서 운영해도 될 것으로 판단됨.

■ 박광식 부의장 질문

소요 예산 및 재원 조달 문제는?

■ 조승수 구청장 답변

인건비가 연 2,000만원, 일반운영비 약 5,000만원을 포함해 연간 1억원 미만의 예산으로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대관료, 문화교양 강좌 수강료 등 20%정도는 자체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그 외 80%정도는 구의회의 협조를 통해 구비를 부담하여도 구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으로 판단됨.

■ 박광식 부의장 질문

시설 및 효율적 이용문제 및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개발문제는?

■ 조승수 구청장 답변

다기능 다목적 시설로 조성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교수, 건축사 등 각계각층의 주요 인사들과 시설의 효율적 이용문제와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현재 문예회관의 건립 및 운영추진 위원회를구성 중에 있으며, 추후 추진위원회 활성화를 통해 양질의 문화 예술을 접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 할 것임.

■ 박광식 부의장 질문

경영수지 예측내용에 관하여?(시설사용료 내지 대관료수입 : 운영·유지비)

■ 조승수 구청장 답변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운영경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이를 위해서는 향후 문예회관 의 재정자립도 및 제반 사항을 심도있게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민간 위탁 운영토록 함이 적절함.

■ 박광식 부의장 질문

대안제시에 관하여?

■ 조승수 구청장 답변

“울산북구문예회관 건립을 준비, 연구하는 위원회”구성문제는 의회의 공유재산취득 승인과 계속비 예산승인에 따라 현재 기본 설계 현상공모 계획중에 있으나, 의회와 협의를 통해 현재까지 추진해온 여러 제반사항 및 계속비 예산의 성격과 문화수준 향상을 기대하고 있는 구민정서 등을 감안할 때 현 시점에 서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됨.

타. 갈밭들 개발 계획 및 LPG충전소 허가 관련

◎질문 의원 : 김수현 의원

◎2001년 11월 9일(제4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김수현 의원 질문

갈밭들 개발계획 수립 전까지는 갈밭들이 우량농지라는 이유로 각종 건축허가를 반려하였는데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 이태식 도시건설국장 답변

LPG충전소 건립신청에 따라 신청지는 자연녹지지역으로 단기적으로는 농지로서 보존가치가 있고, 장기적으로는 개발을 염두에 두어야 할 농지임. 그러나 전용허가시 연접 농지의 추가 전용으로 인한 침수 대책 및 개발방향·대체시설(도로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난개발의 우려와 개발에서 소외된 지주들의 반발이나 기형적인 도시개발이 예상됨. 건축법령 등에는 위배사항이 없으나 농지법 제39조 제2항에 의거 경지정리 및 용수료가 정비된 우량 농지로 농지전용 허가가 불가하다는 사유로 건축허가를 반려 하였음.

■ 김수현 의원 질문

도시계획재정비시 갈밭들 횡단부분 도시계획 선형변경 요청사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도시계획 결정고시 된대로 도로가 건설될 시 타당성 문제점 등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알린 적은 있는지?

■ 이태식 도시건설국장 답변

갈밭들 횡단부분 도시계획 선형변경 요청사유는 구국도와 철도 및 7호국도의 지반고가 평지로서 단거리에서 적정 종단경사도가 되지 않으므로 1998년 5월 2일 완료된 농소 구국도 7호선 확장공사 실시설계용역에 따라(개설 가능한 구간으로) 1999년 6월 17일 선형 변경요청하였음. 도시계획 결정고시대로 도로가 건설될 시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토지 이용계획과의 상관관계, 교통발생 및 집중량과 분담상태, 인근 지역과 연계한 광역교통체계, 기설도로망에 대한 유기적 연결과 적절한 형성, 교통수요에 대한 체계적인



적용, 시설을 위한 자금조달 능력과 시행방법등 도시계획의 기술적 측면에 타당성이 있어 도로의 교통영역이 최대화 되도록 배치하는 사항과도시의 인구 및 발전전망을 감안하여 도시계획전문 용역업체의 전문가들과 울산광역시에서 계획“안”을 입안하였음. 이 안의 경우 도시계획을 입안, 주민 열람후 이의신청에 따른 타당성을 재검토한 후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되는 사항으로 북구에서 1999년 6월 17일 도로선형변경 이의신청을 통해 충분한 의사표명을 한만큼 광역 도시계획의 최종 결정은 광역 차원에서 결정하는 것임.

■ 김수현 의원 질문

도시계획도로의 갈밭들 횡단부분은 현재 현장여건으로 볼 때 고가도로 건설시 구배문제 등 도로구조상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구국도 7호선 확장공사시 갈밭들 횡단부분이 도시 계획도로대로 개설 될시 타당성은 있는지, 또한 문제점은 없는지?

■ 이태식 도시건설국장 답변

도시계획도로의 갈밭들 횡단부분의 현장 여건상 철도를 횡단하기 위해 고가도로를 개설 할 경우 구국도에서 철도까지의 연장이 50m이며, 철도보다 구국도의 지반고가 높아 적정구배 6%가 형성되고, 7호국도 측으로는 연장이 130m로 적정구배가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본 도로의 개설은 울산광역시 소관으로 광역시에서 사업시행 시 도로의 구조 등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에 따른 대응책(설계 변경 등)을 마련, 조치 할 것임.

■ 김수현 의원 질문

민원발생(수천명의 주민들이 LPG 충전소 건립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갈밭들 개발 계획이 행정심판위원회에 적기에 전달된 경위는 무엇인지?

■ 이태식 도시건설국장 답변

시 행정심판위원회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조사 할 때 북구 직원이 현장 안내 등 의견을 교환하였음. 이 과정에서 본건 갈밭들 개발계획수립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시 관계공무원이 관련 직원에게 사본을 요구하여 전달이 됨.

■ 김수현 의원 질문

갈밭들 LPG충전소 허가는 이미 지난 2000년 8월 8일자로 조건부 사업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음. 당시 허가조건에는 도시계획법, 도로법, 농지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및 기타 관련법에 따라 인·허가를 득하도록 하고 있는데, 당시 농지전용 불가 예상으로 건축허가를 2차례나 자진철회 하였고, 3차 신청에서도 같은 이유로 반려 된 바, 당시 사업 허가 자체를 불허했다면 오늘날처럼 사건이 복잡해지지는 않았을 것이 아닌가?

■ 박상우 지역경제과장 답변

LPG충전사업 허가건은 처리기간이 5일인 민원사무로서 개별 법령상의 인·허가를 별도로 득하도록 하여 조건부 허가를 하는 것이 법률 본래의 취지라고 할 수 있음.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할 것과 개발행위 허가, 도로점용허가, 농지전용허가, 건축허가및 소방법, 철도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등의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를 득하도록 조건부 허가하였음.

■ 김수현 의원 질문

G.B구역내에 LPG충전소 배치계획 수립을 검토한 적은 있는지, 또한 지금이라도 주민의 안전을 고려하여 관련 사업자와 협의 G.B지역 내로 변경 허가해 줄 용의는?

■ 이태식 도시건설국장 답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G.B배치계획 수립기준에 부합되면 LPG충전소를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배치계획 기준은 개발 제한구역의 훼손이 최소화될 수 있는 국도 지방도 등의 간선도로의 당해도로 동일 방향별로 연장 5Km이상으로 하고 도로의 신설, 확장 또는 교통량의 현저한 증가 등으로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추가적인 설치가 부득이한 경우에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원주민)에게 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2000년 7월 1일 G.B관련법 개정후 G.B내 LPG충전소 배치계획 수립을 검토한 바 국도 7호선은 동일방향별 연장 5Km(동 편4.0km, 서편 4.6km)에 미치지 못하고 국도 31호선, 구도 2호선, 4호선은 개발제한구역의 관리 측면이나 배치계획 검토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며, 갈밭들 LPG충전소 피허가자는 지정당시 G.B구역 거주자(원주민)에 해당하지 않음. 또한 최종 행정심판결과에 따라 허가서 교부시 이런 점을 감안하여 주민과 사업자간 협의하여 타지역으로 이전이 가능하다면 이전할 수 있도록 사업자 스스로 두달간 착공을 보류하고 주민과 협의토록 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이전은 불가능하며 앞으로도 불가능하다고 판단됨.

■ 김수현 의원 질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에 규정한 세부기준을 정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시행규칙 제8조 제1호의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별표 3과 같다고 규정하여 별표 3의 시설기준에서 용기충전시설의 (1)안전거리 (라)호와 관련하여 울산광역시장에게 갈밭들은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거리를 200m이상 지역으로 정하여 줄 것을 건의 할 용의는?

■ 박상우 지역경제과장 답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시행규칙별표3호제1호 가목(1)에 규정된 액화석유 가스충전시설중 저장설비, 충전설비 및 탱크로리 이입·충전 장소는 그 외면(탱크로리 이입·충전장소의 경우에는 지면에 표시된 정차 위치의 중심)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 50m이상의 안전거리 유지는 가스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주위의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규정한 기준임. 현재 갈밭들은 주변여건을 살펴볼 때 공공의 안전을 저해한다 하여 안전거리를 200m 이상으로 정하는 사항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이 개정 되어야 하므로 불가능함.

■ 김수현 의원 질문

북구청은 단순히 법에 의해 존재하는 단체인 것 같은데 지방자치 시대에 지방 정부의 역할이 무엇인지?

■ 조승수 구청장 답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특색에 맞는 지방자치 입법작용을 통하거나 상위 법령이 개정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일련의 행정행위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행해지도록 하여 주민들 어느 누구나 법에 의거 공정하게 보호받도록 하는 것이 지방정부의 역할임.

■ 김수현 의원 질문

도시계획재정비시 실시계획 선행 변경 이의신청 후 2차례 취소와 세 번째 우량농지로 허가 반려 등 끼워



맞추기로 판단, 우량농지로서 보존가치가 있는데 어떻게 갈밭들 개발계획을 세우는가에 대해 담당자와 과장님의 상반된 답변 이유는?

■ 김환조 허가과장 답변

- 속칭 갈밭들 개발계획 수립건은 건축담당인 박규영이 기안하고 허가과장이 검토한 사항임.
- 2001년 1월 6일 신천동 가스충전소 건립에 따 른 농지전용 내부방침의 기안으로 내용은 신청지가 농지법에 의한 농지로서 보존가치가 있는 우량농지로 전용불가하며 당시 시점으로는 농지전용 불가했으며, 갈밭들 개발계획은 앞의 LPG충전소 건립에 따른 농지전용의 대책인 장기적 도시계획 재정비후 처리함이 타당하다는 후속조치이며 법률적 구속은 없으나 지주들의 부담은 최소화하며 전체부지가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면서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 김수현 의원 질문

G.B지역내 LPG충전소 허가와 관련해서 서동은 G.B지역내 충전소 배치부분을 가능하다고 이야기 하고 있는데 북구 G.B지역내 배치여부는?

■ 이태식 도시건설국장 답변

서동에서 까르푸간 G.B구역 내에 우리구역은 약3.8km로 중구와 걸쳐 있는데 현재로서는 개발계획이 되어 있지 않고 준공된 도로가 아니고 개설중이며, G.B구역내 원주민이 거주해야 충전소 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음. 현재 농소2동 가스충전소 업자는 우리 구역에 G.B주민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갈 수 없는 사항임.

파. 강동 해맞이축제에 관한 질문 등 3개 분야

◎질문 의원 : 윤종오 의원

◎2001년 11월 27일(제4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 윤종오 의원 질문

▷강동 해맞이축제에 관한 질문

혈세를 낭비하는 것은 주민들에 대한 모독이라 생각하기에 2002년 해맞이축제를 제고할 용의는 없는지?

■ 정대경 총무국장 답변

- 강동해변은 청정해역과 수려한 자연경관을 자랑하고 있어, 매년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 우리구의 대표적인 관광지임. 불과 몇 년전 까지만 하더라도 강동해변을 찾는 대부분의 관광객들은 단순히 여가를 즐기고 인근지역 관광의 경유코스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미흡한 수준이었음.
- 울산광역시에서는 강동해변을 가장 경쟁력 있는 관광지로 보고 강동권종합개발계획을 포함하여 현대자동차의 산업관광과 연계한 세계적 수준의 체류형 해양·휴양지로 관광 개발할 계획에 있음.
- 금년도 강동해변 해맞이 축제를 보다 더 알차게 치루기 위하여 지난 11월 23일 해맞이축제 추진위원회 1차 총회를 가졌으며, 지난번 제2회 추경때 의결된 구비 3,000만원과 시비보조금, 주민부담 등 7,000만원의 예산으로 본 축제를 준비하고 있음.
- 귀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지난해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알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내실있는 축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 윤종오 의원 질문

북구도 강동지역의 미역, 젓갈, 생선회 등을 알리는 바다축제나 노동문화축제 개최나 농소 화훼단지의 특성을 살린 축제 개최의향은?



■ 정대경 총무국장 답변

앞으로 해맞이 축제의 규모를 축소하는 반면 강동해변의 자연경관과 지역특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여름바다축제와 농소화훼단지의 화훼 홍보를 위한 꽃축제 개최 등을 적극 검토하겠음.

■ 윤종오 의원 질문

▷공공도서관 건립에 관한 질문

북구 공공도서관의 권역별 소규모 추진 의향은?

■ 정대경 총무국장 답변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인구 10만 이상 30만 미만 인구는 건물면적 1,650㎡이상(499평), 열람석 350석 이상, 기본장서 3만권 이상 등의 설립기준을 갖춘 공공도서관을 설립·육성토록 규정하고 있음.

• 우리 구에서는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사업비 47억 3,000만원으로 건물연면적 3,308㎡(1,000평), 열람석 1,000석 규모의 공공도서관 건립을 위해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반영한 후 지난 해 및 금년도에 국고보조사업을 신청하였음.

• 건립규모는 타구 도서관 규모와 지역발전에 따른 인구증가, 1회 지원되는 사업비 60%의 국·시비 보조금 지원을 감안한 규모임.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우선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을 1개소 건립한 다음, 권역별 문고는 필요시 분관 또는 이동 도서관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됨.

• 공공도서관이 건립되기까지 지역 주민의 지식정보 제공과 문화공간 확대를 위하여 북구 공공도서관 운영은 물론 신축예정인 종합사회복지관에도 문고를 설치할 계획이며, 문고자료 구입 및 주민자치 문화공간 설치도 적극 지원할 계획임.

■ 윤종오 의원 질문

▷환경미화원의 인력운용에 관한 질문

환경미화원 정원의 인력의 증원에 대한사항을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는 하나 제도가 바뀌어 업무가 늘어나면 인력의 증원은 상식이라 판단되는데, 정원의 인력증원에 대한 업무 추진 상황은?

■ 노맹택 경제사회국장 답변

• 우리구의 환경미화원은 정원이 48명으로 효문·송정·양정·염포의 단독주택 문전수거와 전지역의 가로청소를 맡고 있고, 재료비로 사용하고 있는 일시사역 인부 8명은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수거와 단독주택의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시범실시하고 있음.

• 우리구의 현재 청소 실태는 농소·강동지역은 대행업체가 전지역을 담당하고 있음. 그 외 지역의 경우 단독주택은 구청직영으로, 공동주택은 민간 대행의 이원적인 체제로 상이하게 운영·관리됨으로써 원활한 청소 행정 및 효율적인 관리가 되지 않고있는 실정임.

• 내년 상반기부터 울산광역시에서는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단독 주택까지 확대하여 전면시행을 계획하고 있음. 이 경우 현재보다 각동에 2명씩 더 인력이 필요하며 최소 전체 16명의 인력이 소요 될 것으로 판단됨.

• 행자부 자체 12200-245(2001. 4. 3)호의 비정규 상근인력관리운영지침에 의거 사실상 환경미화원의 인력 증원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그런 가운데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환경미화원의 업무를 재조정하고, 민간청소업체의 유희장비를 최대한 활용함과 아울러 권역별 책임제를 실시, 업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자체 적으로 마련하였음.



- 우리구 환경미화원은 단독주택 음식물 쓰레기 수거와 가로청소 업무만을 전담하고, 민간 청소 업체는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수거와 전 구역 문전수거업무까지 확대시킴으로써 청소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함과 동시에 환경미화원의 근무환경도 개선하고자 계획 하였으나, 환경미화원과의 업무체계 변경에 따른 협의과정에서 일부 반대하는 의견이 있었고, 의원님과의 의견수렴 과정에서도 일부 의원님께서 문제점을 제기하여 당분간 현행대로 환경미화원 업무를 유지하기로 하였음.
- 향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의 구조조정 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인력증원은 어려우며 행자부와 계속 협의하는 등 심도 있는 재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하. 울산 미포국가산업단지 효문지구와 관련 질문

- 질문 의원 : 류재건 의원
- 2002년 1월 29일(제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류재건 의원 질문

• 효문공단은 지금 공장용지로 가격 경쟁력이 없어 입주희망 업체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존 입주업체도 기업활동에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고 특히 지역주민의 많은 불편사항 등에 대한 해소방안의 대책 및 추진 실적은?

■ 심두근 도시건설국장 답변

-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 및 울산광역시사 무위임조례에 의거 구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내의 행위허가 및 지도에 대한 업무만 위임되어 있음. 그러나 관리권자인 산업자원부와 관리기관인 울산광역시 및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에 건의하여 주민불편이 해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효문공단은 전체 면적의 87.6%가 공장 용지로 개발되어 188개 업체가 공장가동 중에 있으며, 국가 산업단지로 지정되어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자금지원 및 세제혜택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공장용지 개발시 도로로 개설 설치해야 하는 등 부담이 있으므로 입주를 기피하는 사실임.
- 또한 국가공단이기 때문에 농지전용부담금, 산림훼손부담금 등 각종 개발부담금 면제 및 개발절차 간소화 등으로 개발부담금을 줄일 수 있는 혜택이 있는 것도 사실임.
- 구에서는 공장용지 조성기반 시설의 조속한 확보를 위하여 효문국가공단안에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받고도 미착수 된 업체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내에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한바 있으며, 행정적인 지원사항이 필요할 경우 최대한 지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 류재건 의원 질문

구청장은 선거공약으로 효문공단을 자동차부품 전문단지로 육성하겠다고 하였으나, 이와 관련한 업무추진이 전무한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인 업무 추진 사항은?

■ 심두근 도시건설국장 답변

- 난 1995년 11월 15일 자동차부품 제조업 입주가 가능 여부에 대한 방향 검토를 요청한 결과 효문공단은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상 지원시설 구역으로 제조업의 신규입주는 불가능함을 통보 받았으나 재검토를 요청하여 산업단지관리 공단에서 2000년 10월 산업자원부에 건의하였음. 그 결과 2001년 4월 23일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개정하여 자동차 조선관련 업종중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4,5종 사업장도 입주가 가능토록 하였음.
- 앞으로 자동차 부품제조업의 입주가 가능할 경우 인근 현대자동차 협력업체의 입주도 기대됨에 따라 자동차부품사업의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류재건 의원 질문

• 효문공단은 지정된지 30여년이 지났으나 공단으로서 개발의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조상 대대로 뿌리내리고 살아온 주민불편은 갈수록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지방자치시대에 이와 같이 관내 주민이 받고 있는 불이익과 불편에 대한 해소 방안은?

■ 심두근 도시건설국장 답변

구에는 산업단지 내 행위허가 및 지도에 대한 업무 외에는 특별한 권한은 없음. 그러나 지역주민들의 꾸준한 노력과 구청의 도시기반 시설확보 요청에 힘입어 울산광역시에서는 2000년 7월 30일부터 2004년 7월 준공을 목표로 전체 예산 549억원이 투입되는 산업로 배면도로(울동~화봉택지) 개설공사를 국비 양여금을 지원받아 추진 중에 있음.

• 효문공단을 가로지르는 길이1.4km, 폭20m(4차로)의 효문공단 도로개설공사도 2001년 9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사업비 103억원을 투입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으므로, 주민불편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류재건 의원 질문

30여년간 효문공단 주민들은 매년 목적세인 도시계획세를 납부해 왔으나 그 혜택은 전무하여 이제는 납부거부 및 반환요구 여론이 팽배하고 있는 주민 요구사항에 대한 대처 방안은?

■ 심두근 도시건설국장 답변

구에서는 지속적인 도시기반시설 확보 및 도시계획분야에 대한 주민 건의사항을 울산광역시에 요청 및 건의해서 효문공단 내에 주민 불편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

3)서면질문 및 답변요지

■서면질문 현황

질문일시	답변일시	의 원	질 문 요 지
계			5건
2001. 7. 13	2001. 7. 18	김수현 의원	•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따른 질의
2001. 8. 8	2001. 8. 17	김수현 의원	• 미곡재고량 증가에 따른 대책
2001. 11. 15	2001. 11. 24	진한걸 의장	• 지역경제 활성화방안 • 울산광역시 조정교부금 제도 • 간이상수도 업무

가. 도시계획 시설 설치에 따른 질의(농소3동 부지)

질문 의원 : 김수현 의원

질문 일시 : 2001년 7월 13일

▶질문 요지

북구 상안동 380, 381번지의 2,163㎡에 농소3동 사무소 설치 가능 여부는?

▶답변 요지

신청지는 도시계획법 제24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완충녹지로서 이는 도시공원법 제12조의 2,



동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에 의거 녹지점용 허가를 받을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동사무소 설치가 불가함. 다만, 별도 공공청사로 도시계획변경 결정(완충녹지 해제)이 될 경우에는 가능함.

나. 농정 분야(미국재고량 증가)에 따른 대책

질문 의원 : 김수현 의원

질문 일시 : 2001년 8월 8일

▶질문 요지

- 울산전체와 북구지역의 연간 쌀생산량은?
- 울산전체와 북구지역의 연간 쌀소비량은?
- 연간 타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이 울산지역에 공급되는 양은?
- 현재 관련 업체 및 농가보유의 쌀재고량은?
- 현재 쌀 재고량이 줄어들지 않으면 관련 업계에서는 2001년도 추곡수매 불능사태가 올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답변 요지

- 울산 시 전체 4만 1,470톤, 북구 6,538톤.
- 울산시 전체 9만 4,019톤, 북구 1만 1,457톤.
- 5만 2,549톤.
- 농소 RPC쌀 재고량 : 2,362톤.(재고율52.9%)
농가보유 쌀 재고량 : 305톤.
- 수매물량 보관대책은 RPC저장실 2,900톤, 농협창고 1,200톤, 집하장 600톤, 수매증가 공량 1,000톤, RPC부지내 야적 1,100톤으로 다소의 어려움은 있으나 올해의 극심한 쌀판매 부진을 감안, 농소농협은 미질향상을 위하여 본격적인 수매계획 수립시 양질의 미국 중심수매를 계획하고 있으므로 수매량은 계획량보다 다소 줄어들 것으로 판단됨.

▶질문 요지

북구에서 생산되는 쌀이 울산 전체 또는 북구에서 소비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책은?

▶답변 요지

소비량의 확대를 위하여 관내기업체에 울산쌀을 이용토록 하는 협조공문을 발송하고, 구 홈페이지와 공무원들을 통해 1인 1포대 사주기 운동을 전개함. 언론 홍보 및 농협중앙회 울산지역본부 주관으로 관련 기관 단체가 참여한 쌀 소비캠페인을 울산현대백화점 등 주요지역에서 실시함. 2001년 8월 13일 농소 RPC와 현대자동차 울산공장간“울산쌀공급계약”체결로 64톤의 쌀을 공급토록 하였으며, 농협과 상호 쌀 판매를 협조, 쌀 소비량 증가에 따른 홍보에 최선을 다함.

▶질문 요지

쌀 시장 추가 개방을 앞두고 쌀 생산 농가의 보호를 위한 지원 대책은?

▶답변 요지

2001년부터 시행하는 논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에 지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벼 병해충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병해충방제 농약대 지원, 휴경 농지생산화를 위한 경운비 지원을 계획중임. 농로포장과 양수장 설치·관정개발 등에 투자하여 영농 불편 해소를 도모하고, 농소농협의 생산계획인 찰매쌀 혼합재배확대로 고품질의 쌀을 생산할 계획임. 도·농간 교류 확대 추진과 기업체·아파트 등 협조요청 및 농협인터넷 홈페이지에 쌀소비를 위한 홍보 안내문을 게재하는 동시에 향후 주요 농경지에 대한 농로포장 등 사업비를 지속적으로 투자, 농업인의 영농 활동 불편사항 해소는 물론 쌀 생산농가 보호 대책에 노력할 것임.

**다.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 외 2개 분야**

- 질문 의원 : 진한걸 의장
- 질문 일시 : 2001년 11월 15일

▶ 질문요지**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1998년 민선구청장 취임 이후 북구 관내의 중소기업 유치 추진 실적은?

▶ 답변 요지

달천농공단지 조성 용지에 중소기업체 입주 1999년 9월에 준공하고 83개업체가 정상 가동중이며 조기 분양 위해 저렴한 분양가, 오피스처리장, 사원후생복지 시설 등 조기 완비 등 지원강화를 추진하였음. 단 지내 (주)황성테크를 비롯한 10개업체가 유망 중소기업으로 선정돼 매출액 1,350억원 수출액 450만달러를 올렸으며, 첨단산업의 메카로서의 자리매김이 전망됨.

▶ 질문 요지

앞으로 관내 유망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 계획은?

▶ 답변 요지

「1인1기업체 담당공무원 서비스제」 실시 「중소기업제품안내」 책자를 발간하고, 2002년에는 우수 중소기업 제품사이버 전시관을 홍보계획 중임. 2,520억원기금을 확충하여 경영안정자금 및 시설자금 연리 4.5%~5.5% 저리 2년거치 일시 상환조건으로 지원할 계획임. 구정홍보지나 홈페이지 게재 등 홍보에 주력하여 안정적인 경영여건이 조성되도록 중간 역할에 최대한 노력하겠음.

▶ 질문 요지

기업유치를 위한 계획은?

▶ 답변 요지

미래형 전략산업인 오토밸리조성 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본격 추진계획중이며 북구공업발전을 위해 매곡지방산업 단지를 조성 중에 있음.

▶ 질문 요지

현대자동차의 미국 생산기지 건설과 관련한 구청장의 견해와 대책은?

▶ 답변 요지

산타페와 EF소나타가 큰 호응이 있어 증산 차원에서 현대자동차의 미국 현지공장 설립은공장을 설립할 계획이며, 현재로선 테러사태 이후 경기상황으로 상당히 유동적인 실정임.

현대자동차의 미현지 설립안이 수립되는 대로 북구관내 노동자의 실업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긴밀하게 노력하겠음.

▶ 질문 요지

울산광역시의 조정교부금 제도에 관하여

2001년 대비 2002년 보통교부금의 감소 원인은?

▶ 답변 요지

재원부족액 산정시 기본자료가 되는 기준 수요액이 다른 구에 비해 월등히 낮게 책정되어 있음. 그 이유는 27개 측정항목 가운데서 지방위원수, 선거구수, 공무원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80%정도로 우리구가 불리하기 때문임.



▶질문 요지

조정교부금 관련 조례가 우리 구에 불리하게 적용된 것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와 대책은?

▶답변 요지

시 조례상 기준 수요액 측정항목에 다소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며, 앞으로 타구와 재정사정 등을 고려하여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교부금이 배정될 수 있도록 시와 협의할 것임.

▶질문 요지

단위비용 산정에 따른 자료와 명확한 근거와 산정기준은?

▶답변 요지

기준은 울산광역시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단위 비용은 지방교부세법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질문 요지

불합리한 조례의 조정교부금제도에 대한 대처 방안 및 대책은?

▶답변 요지

앞으로도 타구와 상관관계 등을 고려하여 시와 유기적으로 협의하여 나갈 계획임.

▶질문 요지

간이상수도 업무에 관하여

간이상수도 업무이관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지원?

▶답변 요지

간이상수도 관리인원이 1명이 증원되고 예산지원은 2002년 월드컵 개최관계로 시 재정상 현재로써는 간이상수도 관리 예산지원은 불가하다는 입장으로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해결할 사안으로 생각됨.

▶질문 요지

간이상수도 실태 및 연간 소요 비용?

▶답변 요지

2002년에 우선 긴급한 사업은

- 당사 간이상수도 관로교체 2,100만원,
- 주립 간이상수도 지하수개발 4,000만원
- 수질검사수수료 400만원 합계 6,500만원이 필요함.





2. 4분 자유발언

1) 김수현 의원

○발언 일시 : 제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1998. 9. 1)

○건 명 : 의회 운영과 집행부의 자세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수현 의원입니다.

신설 구청의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도 구정업무수행에 차질 없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7월 14일부터 7월 21일까지 8일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과정에서 나타난 의문점에 관한 본 의원이나 동료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출석답변을 듣고 난 느낀 바와, 그 동안 지켜본 공직사회의 근무자세에 대한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고 몇 가지 실례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첫째, 청장의 의회에 대한 무관심, 둘째 업무보고 중 북구 기구현황에 의회사무국이 구청장 직속으로 편제된 사항, 셋째 출석답변 관계공무원의 자질문제, 넷째 불법 주·정차단속 과태료 수입과 관련한 과태료가 구세인지 시세인지에 대한 질문에 구청세입을 총괄하는 지방세과에서 구세가 아닌 주차장관리 공단에 들어가는 수입이라고 답변하는 년센스 사항, 다섯째 건축과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농소지역 아파트 상수도공급, 구청 의회에 허위보고"라고 '98년 7월 25일자 한울신문지상 보도 사항, 여섯째 "대통령 울산방문계획"과 관련하여 의회의장의 차량을 사전 협의 없이 사용키로 한 계획, 일곱째 7월 1일부로 취임한 구청장은 실·과·별 업무파악, 동 초도순시, 관계기관순회 등 두루 공무가 바쁘다 하더라도 구청 행정전반을 총괄하는 구청장은 8일간의 집행부 업무보고 장에 한번도 들른 적이 없었던 점,

일련의 이런 사항을 종합해 볼 때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의 의회에 대한 편향적인 곱지 않은 인식과 대충 얼버무려 버리면 된다는 식의 업무보고에 임하는 공무원의 자세는 물론 의회와 의원들을 보는 눈이 그다지 긍정적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업무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오자, 탈자는 물론 소관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거쳐 최종결재자의 결심을 얻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과의 관리자인 과장은 한 번 정도의 확인도 아니 하고, 보고서가 올라온 그대로 여과 과정 없이 통과하는 선례, 답습적인 행정을 하고 있는 감이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할 관계공무원은 보고서에 대한 한 번 정도는 사전 검토와 관계법규 등 업무연찬이라는 사전 준비없이 대충 넘어가겠다는 안일하고 구태의연한 자세가 역력히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업무보고와 관련한 내용이 신문에 지상보도 되었다면, 당시 신문과 답변을 들은 의원을 만나 진상내용을 설명해 주는 것이 공직자의 자세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항이 행정 전반을 책임지고 있는 구청장에게 보고가 되었는지도 의문시됩니다.

우리 북구는 21세기를 향한 미래지향적이고 창조적인 일을 해야 지역 경쟁력을 배양할 수 있고, 국가 발전과 더불어 복지북구를 건설할 수 있으므로 이를 위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맡은 바 책무를 충실히 하고 조화로운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에 잘못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하시고 북구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는 과감한 변화와 개혁 속에 조화 있고, 슬기로운 집행부의 역할을 간곡히 바랍니다.

끝으로 의회의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저의 입장에서만 보고 느낀 점을 일방적으로 발언하여 열심히 그리고 묵묵히 노력하는 많은 구청 직원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박광식 의원

◎발언 일시 : 제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1998. 9. 1)

◎건 명 : 집행부의 예산 확보 노력 및 자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강동선거구 출신의 박광식 의원입니다.

작년 7월15일부로 울산광역시 북구가 새로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금년 7월1일부로 최초로 민선구청장과 사실상의 초대의원들이 민의에 의해서 선출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다가오는 '98년도 제2회추경예산편성과 '99년도당초예산 편성에 앞서 집행부의 예산확보 노력을 촉구하기 위하여 4분 발언대에 섰습니다.

아시다시피, 작년말 우리나라를 엄습한 이른바, IMF 사태에 우리나라 국민 전부의 일상생활과 사고방식 마저도 근본적으로 변화하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유례없는 불경기와 대량실업 및 도산이 민간부문 즉 기업과 가계를 강타하여 국가경제 및 지역경제를 붕괴위기로 몰아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간부문의 위기가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라는 공공부문의 위기로 발전하여 세수의 격감과 그에 따른 재정 및 예산의 위기에 봉착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급박한 시대상황하에서 신생 북구가 처한 입장은 더더욱 어렵고도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변변한 청사하나 마련하지 못하고 셋방살이하는 형편은 말할 것도 없고, 다른 구·군에 비해서 턱없이 열악한 사회기반시설 내지 사회간접 자본에 대한 폭주하는 행정수요는 북구의 행정을 담당하는 최고 위급공무원들에게 집행부의 예산확보를 위하여 배전의 노력을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업대책과 기타 사회복지에 대한 행정수요도 IMF 주름살이 깊어갈수록 더더욱 폭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예산확보를 위한 투쟁은 아무리 강조하더라도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금번 임시회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보았을 때 금년도 예산세입중 사업소세의 10억원 가까운 감소와 조정교부금 45억원 감소가 두드러지게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앞으로 수년동안 IMF 사태가 완화·호전될 때까지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인은 북구자체 재원으로서 지방세 수입의 감소는 당분간 불가피할지라도 신규 세외수입의 발굴로 부족한 세입의 일부를 보충하고, 의존재원으로서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 그리고 조정교부금의 적극적 확보를 위한 구청장님을 비롯한 고위직공무원들이 적극적 노력과 자세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신규사업 또는 계속사업 추진을 위한 필요하고도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들은 기획예산위원회(중전의 경제기획원 예산실)에 대한 피나는 로비와 읍소를 하여왔고, 또한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역구국회의원과 단체장들이 직접 기획예산위원회 담당공무원들을 찾아다니며 부탁과 로비를 하는가 하면, 개인적 연줄을 동원하여 읍소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한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 그리고 조정교부금의 적극적 확보를 위하여 우리 구청공무원들은 중앙의 기획예산위원회와 시본청 및 시의회에 대하여 과연 어떠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지 무척 궁금합니다. 혹시나 관료주의의 타성에 젖어 안이하게 탁상공론으로 부지세월로 시간만 때운다거나, 과거의 관례대로 당연히 국고에서, 시에서 내려보내겠지 하는 무사안일의 근무자세로 임하지 아니할까하여 본인은 심히 우려의 감을 금할 수 없습니다.

북구의 발전과 북구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예산확보, 재원조달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각성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영명한 우리 조승수 구청장님께서 구의회, 시의회 차원에서 예산 확보를 위한 도움의 필요성이 있으실 때, 3선의 오랜 의정경력과 그 동안 쌓아온 경륜과 시의회에 대한 인맥관계가 돈독한, 존경하는 우리 윤두환 북구의장님과 더불어 예산확보에 임한다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크게 기여 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끝으로 저는 지방자치행정에서 의회와 집행부는 수레의 두 바퀴와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북구의회는 수장인 윤두환 의장님과 집행부의 수장인 조승수 구청장님께서 상호이해와 협력관계를 굳건히 하여 예산확보를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북구의 발전을 선도한다면 저를 포함한 북구의원 모두가 전심전력을 다하여 힘과 능력이 미치는데 까지 최선을 다하여 헌신할 각오가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3)강혁진 의원

◎발언 일시 : 제1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1998. 10. 26)

◎건 명 : 개혁을 바란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님, 본인은 농소2동의원 강혁진입니다.

의원이 된 지도 벌써 100여 일이 지난 지금 의욕이 앞서 이런 발언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본의원의 생각은 개혁을 진심으로 바라는 심정입니다. 지금 국민들은 정치의불신을 지나 정치인이 하는 말은 어느 누구도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닌 의원 스스로 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현실입니다. 올 9월 KBS에서 국민 여론을 실시한 결과 국민의 83%가 정치인을 불신임을 하고 공무원 68%를 불신한다는 결과를 보고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북구에서는 어려운 여건과 실업난으로 구민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충정어린 마음으로 개혁을 바라는 본의원으로서 올 추가경정예산 때 의회 위상을 높인다고 의장 단상과 무궁화 마크를 수정하는데 금액을 상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보기에는 의원 위상은 단상을 높이고, 의회 마크를 바꾼다고 의원 위상이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구민 스스로가 인정할 때 위상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지금 북구 제정은 아시다시피 열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의원들이 앞서 단 한푼이라도 아껴 구민들이 필요한 곳에 사용되어야 하며 새로운 구청이 만들어질 때 그때 제 모습을 갖추면 된다고 판단됩니다. 개혁은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지 지적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회는 의원을 위한 의회가 아닌 구민을 위한 진정한 의회가 되어야 정치에 대한 불신이 해소된다고 생각합니다. 개혁을 하는데 북구의회가 앞장서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4)윤종오 의원

◎발언 일시 : 제4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01. 3. 28)

◎건 명 : 형평성 있는 예산 편성과 환경미화원 처우 관련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윤종오 의원입니다.

많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정발전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조승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방자치의 근본적 모순으로 자체 재원의 턱없는 부족과 신설 구청으로서 도시기반시설의 취약 등으로 예산의 균형적 배분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저희 의원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예산의 효율적 활용과 관련한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어서 진행될 박광식 부의장의 구민회관에 대해 질의하실 내용과 제반 예측되는 문제점을 지적할 내용은 내년만 되면 구민회관 건립이 예산의 건전성과 효율성측면에서 우리가 바로 현실로 나타날 것이 너무나 명백할 것입니다.

예산승인 당시 충분한 검토 부족으로 의회에서 승인되었다고 하나 잘못된 정책입안으로 이후 구민들에게



큰 부담으로 계속 이어질 정책이라면 입안부터 과감히 시정하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곧이어 박광식 부의장님의 구정질문 내용에 대해 대다수 의원과 주민들이 공감하는 부분이라 판단합니다.

그리고 지난 당초예산 편성시 구청 사격팀의 예산을 50% 삭감한 적이 있습니다.

이는 광역시와 5개 구·군이 다같이 하는 사업이라고는 하나 구청의 재정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울며 겨자먹기로 따라가는 사업에 대해 의회의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현명한 결정을 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6개월의 예산때문에 선수들의 진로문제에 심각한 지장이 발생한다면 본의원 개인적 소신으로는 내년도 사격팀의 해체를 전제로 금년 말까지의 예산에 대해서는 편성하여 승인해 주는 것이 선수들의 사기문제나 구청의 이미지를 생각할 때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의 처우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환경미화원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2년여에 걸쳐 구정질문을 하고 업무보고 때마다 인원 충원 등 문제점을 지적한 것에 대해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정책의 방향을 정해 해결점을 찾은 것에 대해서는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3D업종으로 분류되는 환경미화원들의 근무여건을 볼 때 새벽 3시, 4시경에 업무가 시작되고, 과속차량 틈에서 생명을 담보로 가로 청소를 하고 있는 열악한 현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청소전방지회소와 재활용 선별장의 시설도 대부분 가건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냉난방시설 또한 충분치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더욱이 환경미화원 사기양양차원의 예산은 구청직원들과 비교해 볼 때 미약하기 짝이 없기에 지난 당초 예산 편성시 문제점을 다수 의원들이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 회 추경예산에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통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청직원들의 경우 사기양양을 위하여는 정원가산금으로 편성하게 되어 있고,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편성지침서를 광의로 해석하여 체육대회, 등반대회, 동호회활동비, 콘도구입 등을 편성하였으나, 환경미화원은 노동절, 노동창립기념일 두 행사를 합하여 고작 51만원만 편성하였으며, 퇴직자 위로와 관련해서도 환경미화원은 표창장 1개가 고작이고, 구청직원은 표창패는 물론이고 배우자 표창패, 상품권, 위로여행, 기념배지, 공로연수 등 환경미화원과는 너무나도 형평에 맞지 않게 예산이 편성되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의 발언이 구청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예산편성 자체를 질타하는 것이 아니므로 오해 없으시길 바라며, 이러한 예산편성에 대해 의회는 형평성 있는 예산 편성이 되도록 꾸준히 견제해 나갈 것입니다. 금일 저의 4분 자유발언은 구정질문이 아님니다만, 가능하다면 오늘 회기 중에 책임있는 관계공무원의 입장을 밝혀 줄 것을 바라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결의안

1)현대자동차 대량해고 사태와 관련한 결의안

가. 심의 경과

- 발의 일자 및 발의자 : 1998년 7월 8일 김수현 의원 외 2명
- 심의일자 : 1998년 7월 14일(제1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나. 제안 설명 요지

① 제안 이유

- 현대자동차의 대량해고사태가 울산경제는 물론 우리 나라 경제에 끼치는 절대적 파급력을 감안하여 회사는 정리해고 신고를 철회하고, 노동조합은 파업을 철회하고 원만한 합의로 문제를 해결할 것을 현대자동차주식회사,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노동부, 울산지 방노동부사무소,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북구청과 관계부처에 촉구하는 결의문을 11만 구민을 대표하여 채택하고자 함.

② 주요 골자

- 정부는 현대자동차 대량사태의 심각성을 직시하여 정부차원에 중재단을 긴급구성하여 사태해결에 나설 것.
- 노·사 양측은 고용안전을 위한 현실적 대안제시로 협상에 임할 것.
- 노·사 양측은 실업인원 및 향후 실업대책 등 재원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것.
- 노·사 양측이 추천하는 전문기관에 경영전반에 대한 진단팀을 구성할 것을 권고.
- 회사는 구체적 내용으로 노조를 설득하고 감원을 최소화 할 것을 권고.
- 노조는 과격한 단체행동을 자제하고 전향적 양보로 성실한 교섭에 임할 것.

다. 심의 결과 : 원안 가결

2) 울산광역시 북구 관내 단위(회원)농협 합병 촉구 결의안

가. 심의 경과

- 발의 일자 및 발의자 : 1998년 11월 3일 강혁진 의원 외 5명
- 심의 일자 : 1998년 11월 4일(제15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나. 제안 설명 요지

① 제안 이유

- 외국금융기관에 대한 국내금융시장의 개방으로 국내금융 기관들이 존립의 위기에 처해 있는 국가적 현실에서 IMF 위기극복을 위해 영세한 지역단위(회원)농협간 합병으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농민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활성화하여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환원함과 동시에 다가오는 21세기 국제경쟁시대에 대비하여 자체경쟁력을 강화하도록 청와대, 국회, 농림부, 농협협동조합중앙회, 울산광역시 농협지부, 농소단위농협, 강동단위농협에 합병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11만 구민을 대표하여 채택하고자 함.

② 주요 골자

- 북구관내 단위농협 조합장은 단위농협을 하나로 합병하는 절차를 조속히 개시하여 단일·대형농협으로 탈바꿈하고, 경영합리화를 도모하여 농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활성화할 것을 권고함.
- 중앙 관계부처에서는 인근지역 단위농협 상호간 합병을 신속하고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특별법제정 또는 기존법률의 개정 및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줄 것을 촉구함.

다. 심의 결과 : 원안 가결

3) 원자력발전소 유치 반대 결의안

가. 심의 경과

- 발의 일자 및 발의자 : 1999년 2월 22일 윤종오 의원 외 2명
- 심의일자 : 1999년 2월 23일(제1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나. 제안 설명 요지

① 제안 이유

- 울산지역의 현안사항인 핵발전소 유치계획과 관련하여 의회의 반대입장을 본회의에서 제출하여 의결을 받고자 함.

② 주요 골자

반대 사유

- 울산지역 원전유치에 대해 울산시민 66%가 반대하고 있으며 울주군민도 65% 이상 반대함.
- 산업자원부의 지역주민 의사를 무시한 일방적 추진과 울주군의 독단적 원전유치결정은 정책결정에 신중치 못함에 대해 유감임.



-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 이후 세계적으로 원전을 폐쇄하거나 사양화되어 가고 있으며, 핵폐기물 처리문제로 기존 시설물에 대한 대책없이 추가 건설은 세계적 흐름에 역행함.
- 우리구는 천혜의 경관을 자랑하는 강동해안을 끼고 있으며, 한국 최대의 공업도시로 현재 자동차 단지가 있어 핵 방사능 누출등 만약의 사고가 발생하면 지역공산품 이미지 저하와 어패류, 해조류의 생산격감으로 지역경제의 심각한 타격은 물론 대형 참사의 우려가 상존함.
- 12만 구민을 대표하여 산업자원부, 한전, 울주군, 경주시에 핵발전소 유치계획을 전면 철회할 것을 촉구 결의함.

다. 심의 결과 : 원안 가결

4)자동차산업 해외매각 반대를 위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특별 결의안

(1)심의 경과

- 발의 일자 및 발의자 : 2000년 4월 3일 윤종오 의원 외 2명
- 심의 일자 : 2000년 4월 3일(제31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2)제안 설명 요지

가. 제안 이유

- 대우자동차 해외매각이 눈앞으로 다가오고 한국 자동차산업 전체에 심각한 악영향이 예고되며 자동차 산업 자체의 붕괴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이때, 21세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자동차 산업 해외매각 반대를 분명히 표명하고자 함.
- ㉠국가의 기간산업을 해외에 매각하는 일은 국가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의 장래를 심각히 위협하는 행위이므로 재고되어야 하며,
- ㉡지역경제와 지역민의 생존권에 심대한 타격을 안겨줄 것이 예상되는 자동차산업 해외매각 정책의 철회와 대우자동차 공기업을 강력히 촉구하며,
- ㉢정부는 국민경제와 국익을 우선에 놓고 정책을 입안해야 하며, 이러한 방향이 국익과 국민경제를 살리는 애국적 행위임을 확신하고 이를 관철키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하며,
- ㉣정부는 국가경제 주권을 지키고 국민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산업 해외매각 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공기업을 위한 올바른 해결대안을 즉각 수용할 것을 촉구 결의하여 기획 예산처, 산자부, 국회산자위, 대통령비서실, 울산광역시, 북구청에 이송하고자 함.

(3)심의 결과 : 원안 가결

5)약수초등학교앞 시내버스 차고지 설치반대 결의안

(1)심의 경과

- 발의 일자 및 발의자 : 2000년 10월 12일 강혁진 의원
- 심의 일자 : 2000년 10월 12일(제3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제안 설명 요지

가. 제안 이유

- 북구 신천동 625-1 약수초등학교 앞 자연녹지 지역에 (주)남진여객이 시내버스 차고지를 설치코자 하는데, 이 지역은 약수초등학교학생 2,700여명이 등·하교하는 유일한 통로로서 학생들의 보행 안전 문제가 심각하게 우려되고, 그 주변이 수만평의 비옥한 농업진흥지역으로 차고지가 들어설 경우 각종 소음과 오·폐수 등으로 농지가 황폐화할것이 극히 우려되며, 이곳과 연결되는 국도 7호선은 평시에도 상습교통체증 지역으로 차고지 설치 후에는 교통사고 위험이 배가 될 것이며, 약수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진입로 확장도 반대할 만큼 심각한 지역주민들의 설치반대 정서를 감안하여 북구의회에서는 부당함을 지적하고자 함.

나. 주요 골자

- (주)남진여객은 이 지역의 시내버스 차고지 설치 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함.

- 울산광역시 등 행정당국은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의 편익만 생각 하려 말고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신중하게 처리하여 줄 것을 촉구함.

(3)심의 결과 : 원안 가결

6)공직사회 개혁을 위한 공무원노동조합 합법화 촉구 결의안

(1)심의 경과

- 발의 일자 및 발의자 : 2002년 4월 16일 윤종오 의원 외 2명
- 심의 일자 : 2002년 4월 19일(제52회 시회 제8차 본회의)

(2)제안 설명 요지

가. 제안 이유

- 지난 3월 23일 공직사회의 개혁과 공무원의 노동 기본권보장을 위한 전국공무원 노동조합이 공식 출범을 선언함으로써 공직사회의 대변혁을 예고하고 있음. 그러나 당초 노사정위원회 대 타협 당시 합의사항을 어기고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법규 정비가 미비하여 공무원노동조합은 법외노조로 출범할 수밖에 없게 되었음. 이에 따라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변화를 촉구하고 공무원노동조합을 적극 지지하며 합법적 노조 인정을 관계부처에 건의하기 위한 북구의회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함.

나. 주요 골자

- 공무원노동자의 기본권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기에 ILO 권고와 OECD 가입국 기준에 맞게 공무원 노동조합의 합법화를 촉구함.
- 정부는 최근 공무원노동조합과 관련된 구속, 수배, 징계 등의 탄압을 즉각 중단하기를 촉구함.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일동은 공무원노동조합이 공직사회 개혁으로 제대로 안착되어 지방자치가 활짝 꽃피우도록 노력할 것을 결의함.

(3)심의 결과 : 원안 가결

(4)조치 사항 : 국회, 행정자치부, 울산광역시에 결의문 이송.

7)군사시설 보호구역 설정 반대 결의안

(1)심의 경과

- 발의 일자 및 발의자 : 2002년 4월 16일 류재건 의원 외 2명
- 심의 일자 : 2002년 4월 19일 (제52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

(2)제안 설명 요지

가. 제안 이유

- 최근 공군 8991부대 5부대에서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 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양정동 산1번지 일원에 대하여 군사시설의 최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500m까지 보호구역을 설정하고자 함으로 지역 주민을 대표하여 반대를 표명하고 관계부처에 군사시설보호구역설정 업무추진에 대하여 즉각 철회 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하기 위함.

나. 주요 현황

- 위치
 - 북구 양정동 산1번지 일원(효문동, 어물동 포함)
- 군사시설 보호구역 설정 사유
 - 공군 8991부대는 울산공단지역을 사수하는 공군 포대로서 3개 중대가 주둔하고 있고 통제구역인 병영은 약 2만평 가량 되며 본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군사시설 최외곽으로부터 500m까지 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자 하고 있음.
- 대상 면적
 - 기존면적은 양정동 산1-2번지일원 약 2만평 정도임
 - 금번 설정코자 하는 면적은 양정동 산1번지 외 49필지 총 307만 280㎡중 약 105만 2,440㎡(약 31만 7,837평)

• 북구의 종합의견

- 해당실과 및 효문 · 양정 · 강동동주민 의견수렴결과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시 지역개발 저해요인이 되고 특히 본 구역은 개발제한구역으로서 이중 규제가 되므로 절대적인 반대를 하고 있으며, 향후 지역주민의 집단 반대민원 발생이 예상되고 있어 군사시설 보호구역설정은 불가한 것으로 사료됨.

(3)심의 결과 : 원안 가결

(4)조치 사항 : 국방부, 울산광역시에 결의문 이송

(5)조치 결과 : 우리의 의견이 반영되어 군부대에서 보호구역 확장을 철회하였음.

4. 의회 민원상담실 운영

1)의회 민원상담실 운영

주민들의 불편 사항 및 애로 사항과 여론을 청취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제공하고 지방자치의 활성화와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임.

가. 운영 개요

- 운영일시 : 1998년 10월 12일부터 연중 계속 실시

나. 운영 방법

- 기간 : 년 중(월~금 매일 실시)
- 장소 : 의원실 내(의회 민원상담실)
- 일일근무조 편성 운영
- 일일근무조 편성 운영(의장단 매일 출근, 의원 1명 윤번제 근무)
- 근무 시간 : 하절기 - 10:00~17:00, 동절기 - 10:00~16:00
- 상담보좌 : 전문위원 1명

※민원접수 방법 : TEL(052-289-8111), FAX(052-219-7549)

- 상담 내용 : 각종 민원 불편 및 애로 사항 상담 · 처리, 여론 수렴
- 홍보안내판 설치 : 청사 현관, 승강기 내, 의사당 복도에 홍보 안내판 설치

다. 운영 실적

구 분	운영 기간	접수 건수	처리 건수	기 타	비고
계		593	575	18	
1998년도	1998.10.12 ~ 12.31	46	42	4	
1999년도	1999. 1. 1 ~ 12.31	115	110	5	
2000년도	2000. 1. 1 ~ 12.31	60	59	1	
2001년도	2001. 1. 1 ~ 12.31	100	97	3	
2002년도	2002. 1. 1 ~ 12.31	18	18		
2003년도	2003. 1. 1 ~ 12.31	89	88	1(불가)	
2004년도	2004. 1. 1 ~ 12.31	40	40		
2005년도	2005. 1. 1 ~ 12.31	30	29	1(불가)	
2006년도	2006. 1. 1 ~ 12.31	17	16	1(불가)	
2007년도	2007. 1. 1 ~ 7.14	27	25	2(불가)	



- 운영 반응 : 주민들의 고충을 상담·처리함으로써 대의기관의 기능수행을 충실히하여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이며, 특히 개소 1주년('99.10.12)을 맞아 지방언론사로부터 호평을 받았음.

라. 기대 효과

- 의회 민원상담실을 운영함으로써 주민생활 편익제공 및 주민복지증진 기여
→ 친근감 있는 의회 분위기 조성
- 집행부와 관련된 각종 민원처리 불편사항을 의회에서 중재역할을 함으로써 민원 조기해결 도모

5.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 국외연수 평가자문위원회 조례 제정

가. 발의자 및 일자 : 윤종오 의원 외 7명, 2000년 11월 14일

나. 의결일시 : 2000년 11월 18일(제37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다. 제안 이유

-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의원이 공무로 국외연수를 실시함에 있어 보다 투명하고 내실 있는 국외연수를 실시하기 위해 연수 전 사전평가를 거쳐
- 효율적인 의정활동과 내실 있는 자료를 수집하고 호화관광이라는 여론을 불식하기 위함.

라. 주요 골자

- 적용 범위 : 의원 임기 중 국외 연수
- 위원회 구성 :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의장이 추천한 의원 1명, 위원은 시민사회단체 및 학계에서 추천하는 5명으로 구성
- 기능 : 연수의 목적 및 필요성, 연수목적지의 적합성, 연수기간 및 시기의 타당성, 연수경비의 적절성 등 평가 및 자문

마. 관련 법규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정활동비·회기 수당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

바. 제정 효과

- 투명성 있는 공무 국외연수 실시를 위한 조례제정에 대해 언론사등으로부터 호평을 받았으며, 행정자치부에서 수범사례로 선정되어 전국에 전파되었음.

6. 북구청사 건립 추진 행정사무 처리 상황 보고

1)청사 건립 개요

- 위 치 : 연암동 1081-1번지 일원
- 대지면적 : 3만 6,410.00㎡(1만 1,014.03평)
- 건물면적 : 3,819.33㎡(1,155.34평)
- 연 면 적 : 1만 3,735.27㎡(4,154평)
- 건물규모 : 지하 1층, 지상 6층
- 주차 대수 : 옥외 주차 268대
- 공사 기간 : 21개월(1999.8.23 ~ 2001.5.22)
- 사 업 비 : 299억 9,800만원(부지매입비 97억 7,300만원, 공사비 185억 1,200만원, 기타 17억 1,300만원)
- 설 계 자 : (주)성림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무소
- 감 리 사 : (주)대흥종합엔지니어링, (주)신화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무소
- 시 공 사 : 대림산업(주)외 2개사

2)추진 현황

일 시	건 명	내 용	비고
1999년 1월 26일 (제18회임시회 제2차본회의)	북구청사신축 사업행정사무 처리상황보고	• 보고자 : 총무사회국장, 총무과장 • 보고 내용 - 사업 개요 · 위치 : 연암동 1081-1번지 일원 · 사업 기간 : 1997.9~2000.12 · 부지면적 : 44,288㎡(13,397평) - 청사부지 : 32,809㎡(9,925평) (구청+보건소) - 도로부지 : 7,308㎡(2,211평) - 완충녹지 : 4,171㎡(1,261평) · 건축규모 : 지하1층, 지상5층 · 연 면 적 : 11,887㎡(3,595평) · 사 업 비 : 29,998백만원 (부지매입비9,773, 공사비18,512, 기타1,713) · 부지3차매입비 42필지 13,405㎡(4,055평) 3,297백만원이 시지 원이 안되어 부지이용 계획 전면 수정변경되어야 함. ◆사업기간 : 1997.9 ~ 2000.12 ◆착공예정 : 1999.5월중	

일 시	건 명	내 용	비고
1999년 2월 1일 (간담회)	북구청사 신축사업 관련대책협의	• 참석자 · 의회 : 의원 8, 의회사무과장 외2 · 집행부 : 구청장, 총무과장 외3 • 협의 내용 · 청사 신축사업 추진 개요 설명 - 구청장 - 현재까지 계획된 13,397평에 대해 추진 가능한 것으로 인지 ※시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3차 매입분이 누락되었음. - 1998.7.31 시장에게 업무보고 내용 배부 설명 · 주요 협의 사항 - 북구청사 신축사업은 의회와 집행부가 역할분담하여 공동 으로 대처하기로 함. • 의원 시장방문 협의 사항(14:10 ~ 15:00) · 전의원이 시장실을 방문하여 시장 및 관 계공무원과 면담 · 청사 신축부지 3차 매입토지 약 4,000평에 대하여 “시장 임기전까지 지원 할 수 있다”는 구두약속 받음. · 예산편성 하더라도 시의회에 의결을 받지 못함을 시사함. • 차후대책방안(15:00~15:30) · 광역의원들과 간담회를 통하여 의원 역할분담 추가 · 집행부 결과 통보, 업무추진 강행조치 ◆사업기간 : 1997.9 ~ 2000.12 ◆착공예정 : 1999.6월 중	

일 시	건 명	내 용	비고
1999년 3월 4일 (간담회)	북구청사 신축사업 기본계획 변경안보고	• 설명장소 : 의회 소회의실 • 개최배경 · 당초 기본설계가 외관이 너무 단조롭고 직원의 근무환 경이 열악하며, 민원인의 동선이 부적절하여 기본 계획 을 개선하는 중간단계에서 의회의 의견을 수렴 설계에 반영 • 개선된 기본계획안 설명 • 의회자문사항 및 지적사항 중간보고 후 조치 · 의회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기본 설계에 반영 • 의회 최종계획안 보고 · '99.3.19경 최종 확정안 보고 예정	



일 시	건 명	내 용	비고
1999년 3월 25일 (간담회)	청사기본 계획 안최종설명회	• 설명장소 : 북구청 8층 회의실 • 개최배경 · 기본계획 기술심의회의시 의원의 지적 사항 시정 - '99.3.4 의회에 기본계획 개선 중간 설명회 의회동 · 별동으로 하는 대안제시에 대한 분석 결과를 설명후 · 최종적으로 설계계획안을 확정 - 2가지 대안에 대한 집행부, 의회 협의를 하여 최적의 · 대안으로 결정되는 안을 신청사 설계안으로 확정 - 실시설계 완료 후 발주전 최종 설명회 실시	
일 시	건 명	내 용	비고
1999년 5월 4일 (간담회)	청사신축 부지내 문화재 조사결과보고	• 현장확인 : '99.5.4 10:00 • 시굴조사 현황 · 위치 : 연암동 1081-1번지 일원 · 조사면적 : 30,883㎡(9,342평) · 조사단체 : 부경대학교 박물관 · 조 사 단 : 부경대학교 책임조사원 이원균외 5명 · 시굴조사기간 : '99.4.7 ~ 4.26 • 시굴조사결과 · 청사 신축부지내 유적 시굴조사 결과 전체 조사면적 9,342평 중 청사부지 남쪽 철길옆 약 1,300여평에 청동기 · 시대의 주거지로 추측되는 유구가 발견되어 정밀검토 · 결과에 따른 발굴여부 결정 · 이 지구는 청사설계도상 공원 등 조경부지에 해당하므 · 로 당초 계획대로 청사 신축공사에 착수하여도 무방 · 문화재관리국의 판단결과에 따라 필요시에는 신축공사 · 와 병행하여 발굴조사가 실시될 가능성도 있음.	
일 시	건 명	내 용	비고
1999년 7월 7일 (간담회)	북구청사 신축사업 추진상황보고	• 당초 일정 변경사유 설명 · '99.5.21 실시설계도서 납품완료후 추진 기획단에서 설 · 계상의 물량 과대, 과소 요인을 검토하여 '99.6.7 공사 · 입찰 공고계획을 세웠으나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전문 · 용역업체를 조기에 선정 재검토작업을 19일간 실시함으 · 로써 당초 일정이 변경 · 신청사 신축사업비는 시 '99 제2회 추경예산 편성요청 (3,297백만원)	
일 시	건 명	내 용	비고
1999년 7월 7일 (간담회)	북구청사 신축사업 추진상황보고	• 의원 지적·요구사항 · 청사 착공시기가 자주 변경이 없도록 정확한 보고가 되 · 도록 할 것 · 관급공사대금 지급시 원청업체, 1차 하도급업체 등을 막 · 론하고 현금을 지급토록 촉구 (원청업체 현금지급시 1차 하도급 업체에 어음지급이 · 되는 것을 막고 공사부실 사전방지) · 1,2차 하도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계약서 명시하는 · 방법 검토 · 공사부실을 막기 위하여 공사실명제 실시 (담당자로부터 · 구청장, 책임자 명시) · 북구청사 신축부지내 매장문화재 시굴조사된 시굴한 구 · 덩이 안전사고에 대한 사전 예방 촉구	

일 시	건 명	내 용	비고
1999년 11월 12일 (제28회 임사회)	북구청사 건립추진 상황보고	• 북구청사 건립추진현황(공사현장 점검) • 현재 주요 진행사항 · 본관동 건물기초 터파기 - 실시 : 60% · 대강당(식당) 건물기초 터파기 - 실시 : 95% · 매입부지에 대한 도로 1,2호선 노체, 노상다짐공사 - 실시 40% • 예상문제점 · 매입부지에 따른 토공량 적지공간 협소로 작업능률 저하 · 기초 굴토시 지하수 처리 · 문화재 발굴 조사지역과 본관 터파기 접촉부분 공간부족 • 향후 추진계획 · 1999년 : 공정누계 5.22% - 11월 ~ 12월 : 본동 기초공사 완료, 매입부지내 주변 도로 보조기층 조성 · 2000년 : 공정누계 74.5% · 2001년 5월 : 공정누계 100%	

일 시	건 명	내 용	비고
2000년 5월 22일 (간담회)	북구청사 인테리어 설명(보고)회	• 주요내용 · 민원실, 회관동, 대회의실, 의회의사당 등 인테리어 방향에 대한 설명(보고) · 장 소 : 8층 대회의실 · 보고자 : 서울소재 대해건축 송근호 설계실장 • 조치사항 · 민원실(1층)휴게실 설치할 경우 민원 업무 공간이 협소하므로 넓은 공간 확보 · 지역특산물 전시공간 마련 · 본회의장내 의원석과 집행부석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집행부 공무원석 일자형으로 조정 등 향후 재조정 · 의사당 방청객석 - 20석 50석정도 자리확보	

일 시	건 명	내 용	비고
2000년 6월 28일 (제33회임사회 제2차본회의)	건물증축승인	• 당초 : 지하1층, 지상5층 12,983.15㎡(3,927평) • 변경 : 지하1층, 지상6층 13,735.27㎡(4,154평) • 증축내용 : 옥상층(증축) 752.12㎡	



제4장

제3대 북구의회 의정활동 2002. 7.1~ 2006. 6.30

- 제1절 원구성 현황
- 제2절 집회 현황
- 제3절 행정사무 감사
- 제4절 행정사무 조사
- 제5절 기타 의정활동





CULTURE & BUSINESS



문화가 있는
의회



제3대 북구의회 임기는 2002년 7월1일부터 2006년 6월30일까지이다.

제1절 원구성 현황

1. 원구성

1)집회 공고

최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자치단체장이 소집하도록 되어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 7월 2일에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집회 공고하였다. 집회 일시는 2002년 7월 9일 10시00분으로 공고하였다.

2)의장단 선거(제1차 본회의)

2002년 7월 9일 10시 00분에 개최된 제5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재적의원 8명 중 5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자치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자인 김재근 의원의 사회로 먼저 의장 선거를 실시하여 김진영 의원을 선출하였다. 당선된 김진영 의장의 사회로 김재근 의원을 부의장으로 선출하였다.

3)개원식

개원식은 2002년 7월 9일 오후 2시에 북구의회 의사당 본회의장에서 북구의회 의원 8명과 이상범북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공무원과 이선규 울산광역시 강북교육청 교육장, 조승수 전 북구청장, 김성보 초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 되었다.

4)제3대<후반기>의회 원구성

2004년 6월 30일 10시에 개최된 제7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는 재적 의원 8명 중 5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전반기 의장인 김진영 의장의 사회로 먼저 의장 선거를 실시하고 계속해서 부의장을 선출하였다. 의장에 하인규 의원, 부의장에 이재경 의원이 선출되었다.

2. 제3대 의원 현황

1)의장 명단

선 거 구	성 명	생년월일	재임기간	비 고
송 정 동	김 진 영	1964. 10. 11	2002. 7. 1 ~ 2006. 6. 30	전반기 의장
염 포 동	하 인 규	1959. 9. 17	2002. 7. 1 ~ 2006. 6. 30	후반기 의장

2)부의장 명단

선 거 구	성 명	생년월일	재임기간	비 고
농소2동	김 재 근	1958. 9. 11	2002. 7. 1 ~ 2006. 6. 30	전반기 부의장
농소1동	이 재 경	1956. 4. 25	2002. 7. 1 ~ 2006. 6. 30	후반기 부의장

3)의원 명단

선 거 구	성 명	생년월일	재임기간	비 고
농소3동	김 대 영	1960. 2. 2	2002. 7. 1 ~ 2006. 6. 30	후반기운영위원장
강 동 동	윤 임 지	1952. 10. 15	2002. 7. 1 ~ 2006. 6. 30	
효 문 동	류 재 건	1961. 2. 5	2002. 7. 1 ~ 2006. 6. 30	
양 정 동	류 인 목	1961. 12. 30	2002. 7. 1 ~ 2006. 6. 30	전반기운영위원장

4)의원 사진

▣ 의장단



▣ 의 원



3. 제3대 북구의회 총평

- ◎2002년 6. 13 지방선거를 통하여 의원 8명이 당선되어 2002년 7월 9일 제53회 임시회에서 재적 의원 8명중 5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장단 선거를 실시하여 의장에 김진영 의원, 부의장에 김재근 의원을 선출하였다.
- ◎제5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02. 12. 3)에서 중산동 지역에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및 자원화 사업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친환경적인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하였으며, 아울러 양정동사무소 건물이 노후화 되고 부지면적 협소로 인한 주차장 확보가 곤란하여 민원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동사무소 이전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하였다.
- ◎제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03. 6. 17)에서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정원제를 실시함에 따라 광역시 이후 자치구 중 가장 적은 인력으로 행정업무를 수행해 온 북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질을 한층 강화시키는 차원에서 「울산광역시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가결하였다.
- ◎제6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03. 10. 17)에서 문화예술회관 계약직 공무원 선정과정, 비정규직노동자

지원센터 수탁자 선정 과정, 종합사회 복지관 수탁자 선정과정, 음식물자원화시설 업체선정 과정에 대한 진상조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2003년 11월 3일~11월 14일까지 12일간 서류검정과 현장 확인을 통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총 21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조사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처리 하도록 조치하여 많은 문제점이 개선되도록 하였다.

- ◎ 제7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04. 6. 30)에서는 중국 길림성 장춘시 녹원구 손아명 구장이 우리구를 방문하여 자매결연 의지를 표명하여 교류협력에 합의하고 녹원구가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경제구조와 도·농복합의 지역특성이 우리구와 비슷하여 상호 정책수립의 노하우와 정보를 상호 교류함으로써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우리구에서도 울산-장춘시 10주년 기념행사와 맞추어 자매결연을 체결할 수 있도록 자매 결연 체결안을 의결하였다.
- ◎ 제7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04. 11. 26)에서 차상위 계층에 대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지원사항은 자활근로사업 참여에 한정하고 있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공공부조서비스를 상대적으로 받지 못하고 있는 차상위 계층에게 동절기 난방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울산광역시북구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급 조례안」을 의결하였으며,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수하는 노인(90세이상)에게 장수수당(2만원)을 지급하기 위한 「울산광역시북구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을 의결하였다.
- ◎ 제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05. 5. 20)에서 구예산편성에 있어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주민의 입장에서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예산과정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한 주민참여예산제 실시를 위한 「울산광역시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의결하였다.
- ◎ 2005년 3월 31일 경주시의회가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지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4월 2일 『중·저준위방사성 폐기물처분시설 원전유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역주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한 본격적인 유치활동에 들어 갔다. 이에따라 울산시민의 생존권 보호 차원에서 경주에 방폐장이 들어서는 것을 막기 위한 방폐장 유치 철회 결의문을 채택하고 경주시와 경주시의회에 전달하였다. 6월 22일 강동주민과 더불어 경주방폐장 유치반대 쟁기 대회 참석 등 경주 방폐장 유치반대에 모든 노력을 집중하였다.
- ◎ 제83회 1차 정례회 제10차 본회의(2005. 7. 14)에서 음식물자원화시설 건립에 따른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북구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였다.
- ◎ 제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06. 5. 3)에서 16대 대통령 선거시 지방의회의 생산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유급제 공약으로 2005년 8월 4일 월정수당 및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신설내용으로 하는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 관련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2006년 2월 8일 지방의원 유급화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되었다. 이에따라 우리구에서도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구성 3월 23일 1차 회의에 이어 4월 24일 2차회의에 월 240만원 연봉 2,880만원으로 결정되어 울산광역시 5개 기초 자치단체 평균 2,953만원보다 73만원이 하향 조정되었으나 우리구 재정과 심의위원회 결정사항을 존중하여 의결 하였다.
- ◎ 2006년 6월 7일 제89회 북구의회 임시회를 마지막으로 제3대 의회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게 되었으며, 제3대 의회는 울산국립대 유치를 위해 집행부와 주민들의 힘을 합쳐 유치활동을 전개하였다. 신설구로서의 한계도 있었으나 집행부와 의원들의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권역별 운동장과 도서관이 건립되어 문화와 체육이 함께 어우러진 구가 되었다. 주민생활에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조례 제정으로 지역 주민들을 참여시키는 참여예산제나 우리 자녀들에게 질 좋은 먹거리 제공을 위해 우리농산물 학교 급식 지원, 산업도시 울산에서 소외받는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 등 소외받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아끼지 않았다.

제2절 집회 현황

1. 집회 현황

구 분	연 도	정 령 회		임 시 회		합 계	
		회수	회기	회수	회기	회수	회기
제3대	계	8	152	29	168	37	320
	2002	2	35	5	27	7	62
	2003	2	35	8	45	10	80
	2004	2	34	8	46	10	80
	2005	2	48	5	29	7	77
	2006			3	21	3	21

2. 회기별 안건 처리 현황

회수	기간	일수	계	예산안	결산	조례안	통의안 (승인)	건의안	결의안	청원	보고	질문	기타
합계	-	320	349	16	4	130	30	0	8	0	22	2	137
소계	2002년도	62	51	3	1	15	7	0	2	0	2	0	21
제53회	02. 7. 9 ~ 7. 9	1	3										3
제54회	02. 7.22 ~ 7.26	5	6			1					1		4
제55회	02. 9. 6 ~ 9. 14	9	9		1	4	1		1				2
제56회	02.10.15 ~ 10.25	11	7	1		2	1		1				2
제57회	02.11.12 ~ 11.14	3	5										5
제58회	02.11.25 ~ 12.20	26	16	1		6	5				1		3
제59회	02.12.21 ~ 12.27	7	5	1		2							2
소계	2003년도	80	89	4	1	28	9	0	2	0	4	1	40
제60회	03. 2.12 ~ 2.20	9	8			3					1		
제61회	03. 3.31 ~ 4. 3	4	14			7	2		1			1	3
제62회	03. 5.19 ~ 5.19	1	3										3
제63회	03. 6.16 ~ 6.25	10	9	1		4	1						3
제64회	03. 7. 7 ~ 7.16	10	8		1	1	1		1		1		3
제65회	03. 7.23 ~ 7.23	1	3			1							2
제66회	03. 9. 5 ~ 9.27	3	8			5							3
제67회	03.10. 9 ~ 10.18	10	15	1			3						11
제68회	03.11.25 ~ 12.19	25	17	1		7	2				2		5
제69회	03.12.20 ~ 12.26	7	4	1									3
소계	2004년도	80	92	4	1	28	8	0	2	0	11	1	37
제70회	04. 2.12 ~ 2.21	10	9			5					1		3
제71회	04. 5.10 ~ 5.14	5	19			6	1				8		4
제72회	04. 6.10 ~ 6.19	10	11	1		5	1					1	3
제73회	04. 6.30 ~ 6.30	1	7			1	1						5
제74회	04. 7. 7 ~ 7.16	10	8		1	2	1				1		3



회수	기간	일수	계	예산안	결산	조례안	통의안 (총의안)	건의안	결의안	청원	보고	질문	기타
제75회	04. 9. 1 ~ 9. 1	1	4								1		3
제76회	04. 10. 15 ~ 10. 26	12	9	1		2	1		1				4
제77회	04. 11. 23 ~ 11. 24	2	7			2							5
제78회	04. 11. 25 ~ 12. 18	24	10	1		3	2						4
제79회	04. 12. 20 ~ 12. 24	5	8	1		2	1		1				3
소계	2005년도	77	86	4	1	44	3	0	2	0	3	0	29
제80회	05. 2. 18 ~ 2. 28	11	11			7					1		3
제81회	05. 3. 30 ~ 3. 31	2	8			4							4
제82회	05. 5. 19 ~ 5. 27	9	19	1		12			1				5
제83회	05. 7. 1 ~ 7. 15	15	14		1	7	2				1		3
제84회	05. 9. 5 ~ 9. 6	2	10			7							3
제85회	05. 10. 24 ~ 10. 28	5	11			5							6
제86회	05. 11. 25 ~ 12. 27	33	13	3		2	1		1		1		5
소계	2006년도	21	31	1	0	15	3	0	0	0	2	0	10
제87회	06. 2. 10 ~ 2. 22	13	7			1	1				2		13
제88회	06. 5. 2 ~ 5. 8	7	16	1		10	1						4
제89회	06. 6. 7 ~ 6. 7	1	8			4	1						3

제3절 행정사무감사

1.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1)감사 목적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구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상태 파악과 2003년도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주민 위주의 행정 수행을 도모하고 구정 발전에 기여하자는데 있다.

(감사기간 : 2002. 11. 26 ~ 12. 2)

2)감사자료 제출 요구 현황

계	공 통	기획감사실	총무국	경제사회국	도시건설국	보건소	의회사무과
214(건)	17	22	58	45	55	14	3

2.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1)증인 출석 및 감사 실시 현황

감사대상 부서	감사자료 제출건수	증인출석 인원	참고인 출석인원	주요감사실시 건수
계	214	31	1	214
공 통 사 항	17			17
기획감사실	22	1		22
총 무 국	58	14		58
경제사회국	45	7	1	45
도시건설국	55	7		55
보 건 소	14	1		14
의회사무과	3	1		3

2)현지 확인 감사

기 간

2002년 12월 1일 ~ 12월 2일(2일간)

현지 확인 감사 내용

① 농소3동사무소, 매곡천

- 일시 : 2002년 12월 1일 14:00
- 내용 : 동사무소 신축 현장 및 매곡천 정비 현장 확인
- 참석 : 의회(전 의원, 사무직원), 담당부서(총무과, 건설과-시방서 및 설계도서 등 준비)

② 보건소 및 문예회관

- 일시 : 2002년 12월 2일 10:00
- 내용 : 보건소 및 문예회관 신축 현장 확인
- 참석 : 의회(전 의원, 사무직원), 담당부서(총무과, 문화공보과)

3)감사 결과 모범 사례, 시정 요구 및 건의 사항 현황

감사대상 부서	계	모범 사례	시정요구 사항	건의 사항
계	41	1	17	23
공통사항	1		1	
기획감사실	2			2
총 무 국	15	1	7	7
경제사회국	10		4	6
도시건설국	12		5	7
보 건 소	1			1

3.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 평가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원활한 의정활동과 2003년도 예산안 심의 등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데 있다. 또한 사무처리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당한 사항이나 미비점에 대하여 이를 시정 또는 개선 방안을 강구, 새로운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효율적인 구정은



영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지역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다.

- ◎2002년 11월 26일~12월 2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2002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감사 기간이 너무 짧은데다 특히 상임위원회가 없어 본회의에서 구정의 전 업무를 정확하고 효율적인 감사를 할 수 없는 현실적인 한계점이 있었다.
-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를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통보하였으나 정확한 감사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작성·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매년 감사 지적 사항인 감사 자료 작성이 소홀하였다. 각종 자료의 내용 및 수치 특히 같은 사항인데도 자료마다 숫자가 틀린 경우가 다수 있었으며, 의원들의 질의에 증인으로 출석한 각 실·과 관계공무원의 경우 업무파악 미흡으로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못하는 경우 등이 많았다.
- ◎따라서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사 또는 각종 안전 심사시 구체적이며 정확하고 설득력 있는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담당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
- ◎지방세과의 항공기 정치장 유치로 연간 약 5,000여만원의 세수를 증대시킨 사례는 지방자치시대에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 수행 모범사례로서 널리 귀감이 되는 일이다. 급변하는 지방자치 환경 속에서 행정 수요 및 주민 욕구는 날로 급증하고 있고 도시기반시설이나 행정 여건이 타구에 비해 몹시 열악한 어려운 속에서도 맡은바 업무에 충실하며 최선을 다하는 대다수 공무원 여러분에게 주민을 대표하여 감사를 드린다.
- ◎각종 문제점에 따른 감사 지적사항으로는 감사 자료 작성 소홀 과 예산 집행 부적절 등 시정 요구 17건과 건의 사항 23건으로 총 40건의 시정 및 건의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에 이송하고 2003년 1월 31일까지 결과 보고하기 바란다.

4.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

1)시정·건의 요구 사항 총괄

구 분		계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계	완결	추진중	처리불가	계	완결	추진중	처리불가	계	완결	추진중	처리불가
총 계		40	36	4		17	15	2		23	21	2	
공통 사항		1	1			1	1						
기획감사실		2	2							2	2		
총 무 과	소 계	14	13	1		7	7			7	6	1	
	총 무 과	6	5	1		3	3			3	2	1	
	자치행정과	2	2			2	2						
	문화공보과	3	3			1	1			2	2		
	지방세과	1	1							1	1		
	민원봉사과	2	2			1	1			1	1		
경 제 사 회 국	소 계	10	10			4	4			6	6		
	지역경제과	2	2							2	2		
	사회복지과	2	2			1	1			1	1		
	환경위생과	3	3			1	1			2	2		
	환경미화과	3	3			2	2			1	1		

구 분		계				시정요구 사항				건의 사항			
		계	완결	추진중	처리불가	계	완결	추진중	처리불가	계	완결	추진중	처리불가
도 시 건 설 국	소 계	12	9	3		5	3	2		7	6	1	
	도시교통과	4	2	2		2		2		2	2		
	건설과	3	3			2	2			1	1		
	농림수산과	2	1	1		1	1			1		1	
	허가과	3	3							3	3		
보건소		1	1							1	1		

2)시정 요구 사항 주요 처리 결과

기획감사실

▶시정 요구 사항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비는 목적이 소규모이면서 시급한 주민의 숙원 사업 등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구청장의 탄력적인 예산운용비임으로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예산을 투입하기 바람. 농림수산과의 공중 화장실 주변 조정공사와 같이 시급한 주민 생활 민원이 아닌 것은 앞으로 예산에 편성하여 계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기 바람.

▶처리 내역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비 집행은 추경예산 편성 기간 동안 기다릴 수 없는 시급한 사항이나 주민 불편 사항 중 소규모 사업에 대하여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로 집행할 것임.

◎집행 과정에 있어서는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게 집행하여 신뢰받는 예산 운영이 되도록 하겠음.

▶비 고 : 완결

총무과(건의)

▶시정 요구 사항

◎청사내 주차선 외에 주차를 함으로서 차량 통행이나 보행에 많은 불편이 있으므로 주차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람. 현재 청사내에 주차장이 부족하여 공무원이나 민원인 모두가 불편을 겪고 있으며, 앞으로 보건소와 문예회관이 준공되면 주차 문제는 더욱 심각해 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주차장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 주기 바람.

▶처리 내역

◎현재 설치되어 있는 청사 뒤 주차장 중 직각으로 되어 있는 주차선을 60도 경사지게 설치하고 청사 뒤쪽 건물벽과의 사이에는 평행주차선을 그어 주차면 추가 확보 계획 중임.(11면 증가)

▶비 고 : 추진중

자치행정과(시정)

▶시정 요구 사항

민방위 급수시설의 일반가정집 급수 시정

◎민방위 급수시설은 비상시 급수를 위한 공공시설임. 그러나 신천동 633-1번지에 위치한 민방위 급수 시설은 평상시 인근 주민 48세대에 식수를 공급함. 이는 공공시설인 민방위 급수시설을 특정 지역 주민에게 사용토록한 것이므로 시정 요구함.

▶처리 내역

◎2002년 11월 20일부로 수도 관리를 이용한 급수는 중단하였으며,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상수도 설치를 건의.



◎아파트내 지하수 1개소를 추가 개발하여 생활용수 해결함.

▶비 고 : 완결

문화공보과(건의)

▶시정 요구 사항

생활체육 각 종목별 대회 일원화

◎생활체육의 종목별 대회를 매년 2회이상 분산 개최함으로써 보조금 등 행정지원의 이중 등 부작용이 크므로 이를 일원화하여 통합 개최 등의 방법을 개선 바람

▶처리 내역

◎구 생활체육협의회와 협의하여 봄·가을 중 적절한 날짜를 선정하여 1일 3~4개 종목을 통합 개최토록 함으로써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할 계획임.

▶비 고 : 완결

지역경제과(건의)

▶시정 요구 사항

외국인 근로자 지원

◎우리 북구 관내에도 상당수의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보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권 침해 사례 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음. 설사 불법체류를 한다고 하더라도 인권 침해나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행정에서 지원 대책 등을 마련하여 주기 바람.

▶처리 내역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행정지원책(처우개선책)으로 무료 진료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 대상 : 관내 중소기업체 내 외국인 근로자 전원

· 사업 내용

– 관내 중소기업체내 외국인 근로자에게 무료 진료증을 발행하여 북구보건소 무료 진료

· 추진 실적 : 27개업체 120매 (명)배부

※진료 : 61명 (내과 25, 치과 36)

▶비 고 : 완결

환경위생과(시정)

▶시정 요구 사항

간이상수도 시설 보완

◎송정동 화산마을 간이상수도 시설은 탱크에 물이 가득 차면 계속 물이 넘쳐 낭비되고 있으므로 자동 잠금 장치 설치 등 시정 요구함.

▶처리 내역

◎ 대리 간이상수도 수위 조절 장치 설치 계획

– 설치시기 : 2003년 3월경

– 소요예산 : 약 100만원

– 시설물 : 부력 정수위 밸브

▶비 고 : 완결

도시교통과(시정)

▶시정 요구 사항

화물자동차 주·정차 단속 강화

◎영업용 화물자동차는 허가시 반드시 차고지를 두어 차고지에 주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야간 주택가나 도로변에 주차, 차량 통행 및 교통 사고 위험 등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영업용 화물자동차의 주·정차 단속을 철저히 하여 주기 바람.

▶처리 내역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할 때 승용, 화물 구별 없이 모든 위반 차량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있음. 특히 야간 단속시 불법 주차한 화물 차량에 대해 단속을 철저히 할 것임.

◎주택가 이면도로, 공터에 주차한 대형화물차량은 단속 법규가 없어 단속이 불가하며 차고지에 주차하도록 화물차등록기관인 울산시에 건의하였음.

▶비 고 : 완결

건설과(건의)

▶시정 요구 사항

각종 공사 설계 변경 지양

◎설계 변경은 반드시 공사비가 증액되는 만큼 각종 사업 추진시 처음부터 충분한 자료 검토와 현실, 현장 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계하고 사업을 시행하기 바람에 가능한 설계 변경은 지양하고 부득불 설계 변경시는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기 바람.

▶처리 내역

◎공사설계시 현장 조사 측량을 보다 면밀히 하여 현장 여건에 맞는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향후 설계시 공사 감독 철저히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수시 직무교육 실시(담당공무원 수시 교육 실시)

▶비 고 : 완결

5.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1)감사 목적

2003년도 자치구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2004년도 예산안 심사 및 각종 의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주민의 대의기관으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투명하고 주민 위주의 행정 수행을 도모하자는데 있다.

(감사 기간 : 2003. 11. 26 ~ 12. 2)

2)감사 자료 제출 요구 현황

계	공 통	기 획감사실	총무국	경 제사회국	도 시건설국	보건소	의회사무과
203(건)	14	20	58	47	50	11	3

6.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1)증인 출석 및 감사 실시 현황



감사대상 부서	감사자료제출 건수	증인출석 인원	참고인출석 인원	주요감사실시 건수
계	203	28	1	203
공 통 사 항	14			14
기획감사실	20	1		20
총 무 국	58	15		58
경제사회국	47	5	1	47
도시건설국	50	5		50
보 건 소	11	1		11
의회사무과	3	1		3

2)현지 확인 감사

2003년 11월 29일(1일간)

현지 확인 감사 내용

① 하수구 뚜껑 교체공사 현장 확인

- 일시 : 2003년 11월 29일 14:00
- 장소 : 양정동 및 염포동 일원
- 내용 : 하수구 뚜껑 공사시 설계도면대로 시공되었는가에 대한 일치 여부 확인
- 참석 : 의회(전의원, 사무직원), 담당부서 (건설과 - 지방서 및 설계도서 등 준비)

3)감사 결과 모범 사례, 시정 요구 및 건의 사항 현황

감사대상 부서	계	모범 사례	시정요구 사항	건의 사항
계	52	1	32	19
공 통 사 항	4		2	2
기획감사실	6		3	3
총 무 국	12	1	6	5
경제사회국	13		10	3
도시건설국	14		9	5
보 건 소	3		2	1

7.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 평가

- ◎집행부 전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2003년 11월 26일 ~ 12월 2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였다. 그동안 전 부서에서의 공통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무성의하게 작성되어 업무보고 자료와 감사 자료가 일치하지 않는 것은 물론 전혀 엉뚱한 자료가 제출된 점에 대해서는 매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 사항으로 이송하고 추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 요구하였다. 그러나 이번 감사때도 과거와 똑같은 사례가 발생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 집행부에 대한 의회의 통제 기능 및 감시 감독의 권한에 한계가 있음을 느꼈고, 집행부 공무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시간 떼우기 식의 감사로 생각하는 사고와 태도에 대단히 실망하였다.
- ◎감사 결과 전 부서별 각종 민간 위탁업무가 행정기관이 주체가 되어 사업 목표와 운영 방법을 수립하고 수탁업체와 접목하여 본래 취지와 부합되게 운영하여야 함에도, 모든 위탁사무를 수탁업체에 위임하고 주관부서에서는 추진 과정에 대한 업무파악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지도 감독의



책임마저 다하지 않은 점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계기로 전 부서의 민간위탁 업무에 대해 총체적인 점검을 통하여 업무체계를 명확히 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 추후 의회의 거듭되는 지적에도 위탁 업무에 대한 추진 방식이 개선되지 않고 방만하게 운영될 경우에는『집행부의 민간위탁 업무 분야』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구성하여서라도 바로 잡을 것임을 명백히 밝힌다.

- ◎『호계시장 진입로 개설공사』및『북구 재활용선별장』등 동일한 업무에 관련 부서가 2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부서간 업무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 지연은 물론 무분별한 예산지원 및 지도 감독 소홀 등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다. 앞으로는 단체장의 책임하에 부서간 유기적인 업무협조체제가 구축되도록 전 직원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더불어 사는 희망의 공동체 조성에 노력하기 바란다.
- ◎자치행정과의『120만원기동대』는 편성된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둔 좋은 시책이다. 추가 예산 확보의 부담이 따르더라도 좋은 시책은 활성화 시키고 유명무실한 시책은 과감히 정리하는 등 업무 추진의 탄력성을 발휘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바란다.
- ◎감사 결과 감사 자료 부실 및 위탁업무 지도 감독 소홀 등 시정 요구 사항 32건과 건의 사항 19건 등 총 51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에 이송하니 조속하게 처리하고 결과를 2004년 1월 31일까지 보고 바란다.

8.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

1)시정·건의 요구 사항 총괄

구 분	계				시정요구 사항				건의 사항			
	계	완결	추진중	처리불가	계	완결	추진중	처리불가	계	완결	추진중	처리불가
총 계	51	36	14	1	32	21	10	1	19	14	5	
공통사항	4	4			2	2			2	2		
기획감사실	6	3	3		3	1	2		3	2	1	
총 무 과	소 계	11	6	5	6	4	2		5	2	3	
	총 무 과	3	3		1	1			2	2		
	자치행정과	2		2	1		1		1		1	
	문화공보과	4	2	2	3	2	1		1		1	
	지방세과	1	1		1	1						
	민원봉사과	1		1					1		1	
경 제 사 회 국	소 계	13	8	4	1	10	5	4	1	3	2	1
	지역경제과	4	3	1		3	1	2		1	1	
	사회복지과	3	1	1	1	3	1	1	1			
	환경위생과	1	1			1	1					
	환경미화과	5	3	2		3	2	1		2	1	1
도 시 건 설 국	소 계	14	12	2		9	7	2		5	5	
	도시교통과	4	4			2	2			2	2	
	건 설 과	3	1	2		3	1	2				
	농림수산과	5	5			3	3			2	2	
	허 가 과	2	2			1	1			1	1	
보 건 소	3	3			2	2			1	1		

2)시정·건의 요구 사항 주요 처리 결과

공통 사항(건의)

▶시정·건의 요구 사항

사업 계획 변경시 사전 통지 협조

◎집행부에서 시행하는 사업 계획이 당초 예산 심의나 의회 업무 보고 사항과는 다르게 변경되어 추진하면서 지역 의원이나 의회에 전혀 보고가 되지 않고 있음.

사후 모든 사업에 대해 당초 계획과 다르게 추진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 통보 체계를 갖추어 의회와 집행부는 물론 주민간의 불신이 생기지 않도록 업무 협조를 당부함

▶처리 내역

◎각종 사업 계획과 예산 심의 등의 내용이 당초와는 달리 변경 추진될 시의회와의 원만한 협조 체계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사전 보고 등을 실시하여 의회와 집행부간의 갈등 해소에 주력.

▶비 고 : 완결

총무과(시정)

▶시정·건의 요구 사항

국공유재산 임대 방법 개선 및 관리 철저

◎국공유재산 임대 방법에 있어 특정 개인과의 임대 기간이 만료되고도 관행적으로 기존 점유자와 계속 수의계약 형태로 특혜를 주고 있음.

◎임대 방법을 공개입찰 방법 등을 통한 형평성에 맞게 기회를 제공토록 업무 처리 방식 개선 요망.

◎국공유재산 현황 자료가 의회 제출시마다 상이함,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데이터를 작성 관리 바람.

▶처리 내역

◎국공유재산 대부 기간 만료자에 대하여 특정인에게 관행적 수의계약하는 것이 아니며, 이는 국유재산법 제36조제2항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에 의거 수의계약 하는 것임.

◎국공유재산 관리에 있어 연 2회 정기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비 고 : 완결

지역경제과(시정)

▶시정·건의 요구 사항

『비정규직 지원센터』운영의 내실화 방안 적극 강구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가 개소한지 5개월이 지났는데 복구관내 비정규직에 대한 기초자료 조사가 없고 사업의 주된 방향도 제시되지 않은 등 향후 비정규직센터 운영에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기 바람.

▶처리 내역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조사는 전국에서 조사된 바가 없는 사항으로 복구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울산지역 전체에 대하여 조사되어야 된다고 봄. 또한 구청 또는 센터에서 직접 조사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자료 활용 가치가 떨어지므로 전문용역기관에 조사의뢰하는 방법 과 대학연구프로젝트로 활용하는 방법이 있음.

◎관내 비정규직 실태조사는 조사 방법 등에 따른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하겠음.

▶비 고 : 추진중

도시교통과(건의)

▶시정·건의 요구 사항

택시승강장 설치 건의

◎택시승강장 설치 장소가 한군데도 없어 콜밴이나 택시 등이 일반 차선을 차지하여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사례가 있음.



◎대형마트 등 주민 왕래가 많은 곳은 택시승강장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전 구역에 대하여 전체적인 사업 계획을 검토 하여 설치 방안을 강구 바람.

▶처리 내역

◎택시정류소는 5개소가 있음. 연암동 벽산아파트앞, 농소3동 쌍용아진3차앞, 매곡동 매곡농협앞 등 3개소는 표지판이 설치 되어 있으며, 화봉동 동아청구사거리 경남은행앞, 아람마트 앞 등 2개소는 2003년 1회추경에 예산 확보하여 2003년 11월 사업비 450만원으로 승강장 설치 완료하였음.

◎메가마트 앞에는 자체에서 승강장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2004년에 쌍용아진3차앞에 당초 예산 500만원 확보하여 설치 계획에 있음.

▶비 고 : 완결

농림수산물(건의)

▶시정 · 건의 요구 사항

『농 · 축산물 불법 유통 단속』의 탄력적 운용

◎농축산물 불법 유통 단속 결과에 의하면 국내산 및 중국산의 구분없이“원산지 미표시”에 대한 위반 처분이 일률적이므로 국산 및 중국산에 대하여 우리 농축산물의 판로 확대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단속의 탄력적 운용을 바람.

▶처리 내역

◎2004년도부터는 농 · 축 · 수산물의 불법 유통 단속 시 대형유통업체와 수산물 판매장 등에 대하여 철저한 원산지 단속을 실시하겠으며, 불법 유통 적발시 적용 가능한 법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이 되도록 하겠음.

▶비 고 : 완결

보건소(시정)

▶시정 · 건의 요구 사항

행정사무감사 준비 부족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의료장비 구입 및 실태」 자료를 요구했으나 의료장비 및 수량에 관한 자료가 있을 뿐 구입 내역이 전혀 작성되어 있지 않음. 또한 감사 과정에서약품구입 현황 중 수익계약의 건수 및 금액에 대한 질의를 했으나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전반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 및 업무 파악이 미진하였으므로 시정하기 바람.

▶처리 내역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와 업무 파악이 미진한 부분이 없도록 정확한 자료 작성과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보건소장 책임하에 전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과 업무연찬을 실시하였음.

◎향후 지속적인 업무연찬을 통하여 행정사무감사 자료 등 각종 보고서 작성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음.

▶비 고 : 완결

9.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1)감사 목적

2004년 자치구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2005년도 예산안 심사 및 각종 의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주민의 대의기관으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 시정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투명하고 주민 위주의 행정 수행을 도모하자는 데에 있다.(감사 기간 : 2004. 11. 26 ~ 12. 4)

**2)감사 자료 제출 요구 현황**

계	공 통	기 획감사실	총무국	경 제사회국	도 시건설국	보건소	의회사무과
199(건)	15	20	57	45	48	11	3

10.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1)증인 출석 및 감사 실시 현황**

감사대상 부서	감사자료제출 건수	증인출석 인원	참고인출석 인원	주요감사실시 건수
계	207	27		207
공 통 사 항	14			14
기획감사실	13	1		13
총 무 국	58	14		58
경제사회국	52	5		52
도시건설국	51	5		51
보 건 소	16	1		16
의회사무과	3	1		3

2)현지 확인 감사

2004년 12월 5일(1일간)

현지 확인 감사 내용

- ① 동천 및 마동천 수해 복구 공사 현장
 - 일시 : 2004년 12월 5일 11:00
 - 내용 : 호안정비 공사 및 복구 현장 확인
 - 참석
 - 의 회 : 전 의원, 사무직원
 - 담당부서 : 건설과(시방서 및 설계도서 등 준비)
- ② 매곡마을 진입로 포장공사 현장
 - 일시 : 2004년 12월 5일 12:00
 - 내용 : 인근 하천 정비 후 진입로 개설 현장 확인
 - 참석
 - 의 회 : 전 의원, 사무직원
 - 담당부서 : 건설과(시방서 및 설계도서 등 준비)

3)감사 결과 모범 사례, 시정 요구 및 건의 사항 현황

감사대상 부서	계	모범 사례	시정요구 사항	건의 사항
계	72		53	19
공 통 사 항	5		5	0
기획감사실	4		3	1
총 무 국	26		22	4
경제사회국	21		17	4
도시건설국	15		5	10
보 건 소	1		1	0

11.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 평가

-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제36조와「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데 있다. 또한 원활한 의정활동과 2005년도 예산안 심의 등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사무처리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당한 사항이나 미비점에 대하여 이를 시정 또는 개선 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효율적인 구정 운영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다.
- 2004년 11월 29일 ~ 12월 5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2004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다. 주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의 감사기간이 너무 짧을 뿐만 아니라 특히 상임위원회가 없어 본회의에서 구정 전 업무를 감사함으로써 정확하고 효율적인 감사를 할 수 없는 현실적인 한계점이 있었다.
- 「지방자치법」제36조 제4항 및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를 본회의에서 의결하였다. 그동안 정확한 감사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작성·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예년에 비해 상당히 개선 되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매년 감사지적 사항인 감사자료 작성에 일부 소홀함이 있었으며, 의원들의 질의에 증인으로 출석한 각 실·과 관계 공무원의 업무파악 미흡으로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못하는 경우 등도 많았다.
- 따라서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사 또는 각종 안건 심사 시 구체적이며 정확하고 설득력 있는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담당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 각종 문제점에 따른 감사 지적 사항으로는 감사 시 지적 사항 반복 발생과 예산 집행 부적절 등 시정 요구 53건, 건의 사항 19건으로서 총 72건의 시정 및 건의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에 이송하니 그 처리 결과를 2005년 1월 31일까지 보고하기 바란다.

12.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

1)시정·건의 요구 사항 총괄

구 분	계				시정요구 사항				건의 사항			
	계	완결	추진중	처리불가	계	완결	추진중	처리불가	계	완결	추진중	처리불가
총 계	72	53	19		53	39	14		19	14	5	
공통사항	5	5			5	5						
기획감사실	4	3	1		3	3			1		1	
총 무 국	소 계	26	19	7	22	17	5		4	2	2	
	총 무 과	6	5	1	6	5	1					
	자치행정과	6	5	1	6	5	1					
	문화공보과	7	6	1	6	5	1		1	1		
	지방세과	2	1	1	2	1	1					
	민원봉사과	5	2	3	2	1	1		3	1	2	
경 제 사 회 국	소 계	21	12	9	17	9	8		4	3	1	
	지역경제과	5	3	2	4	2	2		1	1		
	사회복지과	1	1		1	1						
	환경위생과	6	3	3	5	3	2		1		1	
	환경미화과	9	5	4	7	3	4		2	2		



구 분		계				시정요구 사항				건의 사항			
		계	완결	추진중	처리불가	계	완결	추진중	처리불가	계	완결	추진중	처리불가
도 시 건 설 국	소 계	15	13	2		5	4	1		10	9	1	
	도시교통과	4	4							4	4		
	건설과	4	2	2		2	1	1		2	1	1	
	농림수산과	2	2			1	1			1	1		
	허가과	5	5			2	2			3	3		
보건소		1	1			1	1						

2)시정·건의 요구 사항 주요 처리 결과

《공통 사항 시정 요구 및 건의 사항에 대한 직무교육 실시》

●일시 : 2005년 1월 31일 14:00 •장소 : 구민대화의 방

●대상 : 실·과·소 주무담당 차석(15명)

●교육 내용

-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중 공통 지적 사항(시정·건의)에 대한 직무교육 실시

공통 사항(시정)

▶시정·건의 요구 사항

각종 대형공사 성실 시공

◎호계동 262-번지에 신축하고 있는 보훈회관의 경우 당초 연약지반인데도 지질조사 등 사전 철저한 준비도 없이 공사를 발주하여 설계변경을 통한 예산 낭비를 초래한바, 향후 사전 준비과정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또한 각종 대형공사 현장의 내설 있는 관리감독을 통해 부실공사로 인한 사후관리에 또 다시 추가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처리 내역

◎각종 공산시 사전 철저한 현장점검 준비 등으로 설계변경의 최대 억제와 각종 대형공사 현장의 내설 있는 관리 및 감독에 철저.

▶비 고 : 완 결

기획감사실(건의)

▶▶시정·건의 요구 사항

시 홈페이지 공유 대책 강구

◎주민들은 시, 구소관 등 해당기관별 업 무에 대하여 잘 모르고 있음. 따라서 우리구 홈페이지를 방문 했을 때, 우리구 소관업무가 아닐지라도 관련서식, 처리절차 등 최소한의 정보라도 얻을 수 있도록 울산광역시와 협조하여 구민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건의함.

▶처리 내역

◎주요시정정보를 알리기 위해 팝업창과 공지사항 게시판을 적극 활용하여 구민의 알권리를 제공하고 지속적으로 알려야 할 정보는 사이트 링크를 통해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음.

예)교통정보, 시정통계 등

▶비 고 : 추진중

총무과(시정)

▶시정·건의 요구 사항

청사내 유휴 공간 주차 공간 확보 대책 강구



- ◎주차공간 이외의 여유공간에 민원인들이 주차하여 차량통행 및 보행에 불편 초래
- ◎유희공간 활용하여 주차공간 확보 조치
- ◎무단방치 및 장기 주차차량 조사하여 주차공간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 ▶처리 내역
- ◎장기주차 및 방치차량 조사
 - 일시 : 2004년 12월 15일 ~ 12월 30일(2주간)
 - 방법 : 구역별 지정 주차공간에 주차중인 차량파악
 - 결과 및 조치 : 3대(차량소유자 연락 이동조치)
- ◎장기주차 및 방치차량 조사를 수시로 실시하여 이동 조치토록 하고, 안전지대 등 유희공간 주차 문제는 신중히 검토하겠음.
- ▶비 고 : 추진중

문화공보과(건의)

- ▶시정 · 건의 요구 사항
- 각종 공사 등 시설사업 시행시 계획전 추진**
- ◎생활체육에 대한 주민의 욕구가 증대되면서 각종 생활체육 기반조성을 위하여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초기 계획 수립시부터 사전에 시행대상지조사 및 지주 협의보상 타진, 예상문제점 등 사전 조사를 철저히 하여 추진하기 바람. 기존 사업 계획이 사업변경 또는 중단 되어 당초 계획보다 사업기간이 많이 연장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만큼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준공시기를 지연 할 경우 주민홍보를 철저히 해 주길 바람.
- ▶처리 내역
- ◎생활체육시설 조성을 위한 계획수립시 사전 대상지 조사 및 소유자 보상 협의 타진, 기타 예상되는 문제점을 철저히 조사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음.
- ◎부득이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지연될 시 홈페이지 게시 등 주민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음.
- ▶비 고 : 완결

지역경제과(시정)

- ▶시정 · 건의 요구 사항
- 공공근로사업 내실 추진**
- ◎청소 · 환경정비, 공공서비스 분야 등 매년 공공근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나 사업시행 시기의 계절적 요인 및 타 부서와의 사업중복 등으로 인하여 그 효과가 미미함으로 세부 사업을 발굴하여 실질적으로 효과가 거양될 수 있도록 시정 요구함.
- ▶처리 내역
-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중복되는 청소 업무 등에 배정되는 인원을 필수인원으로 최소화하고, 각 동별 일괄사업으로 배정되는 인원도 동별 다른 상황을 고려, 사업내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부여하겠음. 또한 새로운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 시행하여 사업 성과를 높이도록 하겠음.
- ▶비 고 : 추진중

환경미화과(시정)

- ▶시정 · 건의 요구 사항
- 재활용선별장내 감시카메라 이동 설치**
- ◎재활용선별장내 설치된 무단투기 감시카메라에 대하여 선별장 작업인부에 대한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감시카메라 본래의 목적에 맞게 적절한 장소를 선정하여 이동 설치할 것을 시정 요구함.



▶처리 내역

- ◎감시카메라 이전 재활용선별 장내에 설치된 감시카메라를 2004년 12월 2일 연암동 441-3번지(건영빌라 입구)에 이전 설치 완료하였으며, 기 설치·운영 중인 감시카메라도 투기행위 근절시 이전 설치할 계획임.

▶비 고 : 완 결

도시교통과(건의)

▶시정·건의 요구 사항

버스베이 설치 신중

- ◎자전거 전용 도로가 일부 구간에 대하여 준공에 이르고 있으며, 신규 개설중인 구간도 있으므로 신규개설 구간에 대하여 정확한 수요예측으로 버스베이 설치시 주민 및 자전거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신중히 추진 할 것을 건의함.

▶처리 내역

- ◎버스베이 설치에 있어 주민 및 자전거 통행이 지장이 없도록 신중히 추진토록 하겠음.

▶비 고 : 완결

건설과(시정)

▶시정·건의 요구 사항

정자 해안도로 완벽 보완

- ◎정자 해안도로 옹벽이 해안 특성상 파도와 해일로 인하여 잦은 균열과 도로 침하가 발생되고 있어 지역 주민 및 보행자들의 안전에 상당한 위험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전반적이고 종합적인 보완 계획을 수립 하여 주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시정 요구 함.

▶처리 내역

- ◎2004년 12월 긴급도로 복구비를 투입 공사중

- 공사착공 : 2005년 1월 1일

- 공사준공 : 2005년 3월 1일

- 사 업 비 : 4,300만원

▶비 고 : 추진중

건축과(건의)

▶시정·건의 요구 사항

저소득 영세민 전세 자금 대출 홍보 철저

- ◎매년 저소득층을 위하여 전세자금 지원되고 있으나 대출 실적이 목표액 대비 14% 정도로 저조함. 저소득층의 특성상 우리구 홈페이지를 접속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으로 각종 행사시 홍보를 널리하여 전세자금을 필요로 하는 많은 세대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건의함.

▶처리 내역

- ◎전세자금 대출 관련 홍보를 영세민이 접근하기 쉽도록 동민게시판 게시와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에 직접 우편으로 발송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것임.

- ◎영세민 전세자금 세부지원 기준이 영세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광역시에 지침 변경을 요청 하였음.(2004. 12. 7)

▶비 고 : 완 결

13.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1)감사 목적

2005년 자치구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2006년도 예산안 심사 및 각종 의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주민의 대의기관으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투명하고 주민 위주의 행정 수행을 도모하자는데 있다.
(감사기간 : 2005. 11. 28 ~ 12. 4)

2)감사자료 제출 요구 현황

계	공 통	기 획감사실	총무국	경 제사회국	도 시건설국	보건소	의회사무과
225(건)	14	14	54	58	65	17	3

14.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1)증인 출석 및 감사 실시 현황

감사대상 부서	감사자료제출 건수	증인출석 인원	참고인출석 인원	주요감사실시 건수
계	225	28		225
공 통 사 항	14			14
기획감사실	13	1		13
총 무 국	54	14		54
경제사회국	59	5		59
도시건설국	65	6		65
보 건 소	17	1		17
의회사무과	3	1		3

2)현지 확인 감사

기간	현지확인 감사 내용			비고
	현장확인 대상지	참석 대상	감사 내용	
2005. 12.3~ 12.4 (2일간)	• 효문운동장 조성공사 • 원지 노인요양시설 • 예정부, • 원지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현장	• 의 회 : 전 의원, 사무직원 • 담당부서 : 문화공보과(건축과), 사회복지과, 건설과	• 효문운동장 조성공사 • 원지 노인요양시설 • 원지 자전거전용도로 현장 확인 및 추진 상황 보고	

3)감사 결과 모범 사례, 시정 요구 및 건의 사항 현황

감사대상 부서	계	모범 사례	시정요구 사항	건의 사항
계	69		48	21
공 통 사 항	3		3	
기획감사실	4		3	1
총 무 국	21		12	9
경제사회국	17		11	6
도시건설국	23		18	5
보 건 소	1		1	



15.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 평가

-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제36조와「울산광역시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 자치구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2006년도 예산안 심사 및 각종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주민의 대의기관으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투명하고 주민위주의 행정수행을 도모하고자 실시하는데 있다.
- ◎2005년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225건의 감사 자료를 제출받아 각종 정보와 자료를 폭넓게 활용하여 행정사무감사 본래의 목적인 집행기관에 대한 통제와 견제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하였다.
- ◎감사의 중점 방향으로 구정 전반에 대하여 그동안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거론되었거나 문제점이 도출된 각종 사안들에 대한 적법성과 주민의 요구가 집행과정에서 적극 반영되었는지에 대하여 검토하여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 ◎감사 실시 결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할 수 있었다. 그러나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되었던 사항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때 아직도 주민을 위한 소신있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 ◎따라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되고 대안이 제시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개선책을 강구하는 등 행정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한다.
- ◎각종 사항별 감사지적 사항으로는 총 69건이며 시정요구사항 48건, 건의사항 21건으로서 지적사항은 타업무에 우선하여 조치하기 바람, 그 처리결과를 2006년 1월 31일까지 보고하기 바란다.

16.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

1)시정·건의 요구 사항 총괄

구 분	계				시정요구 사항				건의 사항			
	계	완결	추진중	처리불가	계	완결	추진중	처리불가	계	완결	추진중	처리불가
총 계	69	49	20		48	39	9		21	10	11	
공통사항	3	3			3	3						
기획감사실	4	1	3		3	1	2		1		1	
총 무 국	소 계	21	19	2		12	12		9	7	2	
	총 무 과	6	4	2		3	3		3	1	2	
	문화공보과	7	7			4	4		3	3		
	지방세과	2	2			1	1		1	1		
	민원지적과	2	2			1	1		1	1		
	자치지원단	4	4			3	3		1	1		
경 제 사 회 국	소 계	17	9	8		11	8	3	6	1	5	
	지역경제과	5	4	1		4	3	1	1	1		
	사회복지과	6	2	4		3	2	1	3		3	
	환경위생과	2	2			2	2					
	환경미화과	4	1	3		2	1	1	2		2	

구 분	계				시정요구 사항				건의 사항			
	계	완결	추진중	처리불가	계	완결	추진중	처리불가	계	완결	추진중	처리불가
소 계	23	16	7		18	14	4		5	2	3	
도시교통과	4		4		2		2		2		2	
건설과	3	2	1		2	1	1		1	1		
농림수산과	8	6	2		7	6	1		1		1	
건축과	4	4			3	3			1	1		
재난관리과	4	4			4	4						
보건소	1	1			1	1						

2)시정·건의 요구 사항 주요 처리결과

《공통 사항 시정 요구 및 건의 사항에 대한 직무 교육 실시》

- 일시 : 2006년 1월 23일 16:00
- 장소 : 구민대화의 방
- 대상 : 실·과·소 주무담당 차석(16명)
- 교육 내용
-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공통 지적사항(시정·건의)에 대한 직무교육 실시

공통 사항(시정)

▶시정·건의 요구 사항

민원처리 방법 개선

- ◎집단민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행정대처능력이 대체적으로 미흡하다고 봄. 민원 발생시 법적용에만 한정지어 해결하려고 하는 자세에서 벗어나 주민의 입장에서 해당 사안을 이해시켜 나간다면 집단민원 발생은 사전에 예방 할 수도 있다고 판단됨. 앞으로 한층 효율적인 민원처리 시스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시정 요구함.

▶처리 내역

- ◎공무원이 대민봉사 행정에 있어 관련법 규정을 정확하게 숙지하여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를 근절하고,
- ◎주민의 입장에 선 선진행정 제공으로 각종 민원이 해결 되도록 직무교육 실시.

▶비 고 : 완결

기획감사실(시정)

▶시정·건의 요구 사항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 운영

- ◎시민위원 구성시 단순 인지도 등에 따라 위촉되는 경향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시민위원 위촉에 있어 자질을 면밀히 검토하여 위촉하기 바람.

▶처리 내역

- ◎시민위원회 구성은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준하여 선정하고 있음.
- ◎향후 시민위원 위촉시 규칙 범위내에서 선정기준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제외대상자, 우선 선정대상자, 동별 배정 등 합리적 선정을 위한 기준을 강화하겠음. 강도 높은 예산교육을 통해 능력과 인품을 두루 갖춘 분들이 시민위원회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하겠음.

▶비 고 : 추진중

**총무과(시정)**

▶시정·건의 요구 사항

신중한 국제교류 협력 추진

- ◎중국 장춘시 녹원구와 자매결연 체결 및 소요 예산 승인후 추진 사항이 지지부진함.
- ◎향후 미국 아팍카시와 교류 추진시 신중한 교류협력을 추진할 것을 요구함.
- ▶처리 내역
- ◎미국 아팍카시와 국제교류 협력 추진시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등 관련기관과의 사전정보 요청 등 신중을 기하고 있으며, 향후 의회와 지속적인 협의 후 국제교류를 추진하겠음.
- ▶비 고 : 완결

문화공보과(시정)

▶시정·건의 요구 사항

종합적인 문화행사 추진 검토

- ◎문화행사가 일부 중복적이며 예산 낭비의 요인이 많음
- ◎성격이 비슷한 행사를 통합하여 종합적 문화행사로 추진.
- ▶처리 내역
- ◎제2회 울산쇠부리 문화축제 개최시 사전에 축제의 효율성등을 고려하여 타부서 축제와 통합개최 등을 협의하여 종합적인 문화행사가 될 수 있도록 추진 하겠음.
- ▶비 고 : 완결

지역경제과(건의)

▶시정·건의 요구 사항

효율적인 에너지 절약 사업 추진

- ◎지난 임시회시 에너지절약 전열기구 전시회를 추진한다고 보고 했는데 그 추진 상황이 전무함. 향후 사업 추진에 있어 실천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 사업추진하기 바라며, 공동 주택내 공공시설에 대한 절연 전열기구사업 등을 적극 검토 추진하기 바람.
- ▶처리 내역
- ◎에너지 절약전시회를 구독자적 추진보다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절약 이동 전시회」를 검토하여 우리 구의 축제·행사와 병행 실시로 홍보 효과성 극대화 추진.
- ◎고효율 조명기기, 인버터, 펌프 등 고효율기기 교체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에너지 고효율 기기 장려금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협조와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음.
- ▶비 고 : 추진중

사회복지과(시정)

▶시정·건의 요구 사항

장애인보호 작업장 운영 내실화

- ◎기능보강사업에 대한 분석 및 조치
- ◎고용촉진 장려금 관리 감독 철저
- ◎시설장과 지장협의 관계 개선
- ◎고용창출을 위한 생산방식 개선 모색



▶처리 내역

- ◎칫솔포장작업은 현재 진행중이며 2006. 4월경 칫솔 식모기 설치 예정.
- ◎2005년 12월 보호작업장운영 위원회 개최를 통하여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였으며,
- ◎고용촉진장려금 정상지급토록 조치함.
- ◎유통관련 전문성을 갖춘 협력사업자를 통하여 판로 확보에 노력하고 있으며, 신규 아이템 개발을 통하여 고용 창출에 노력.

▶비 고 : 완결

건설과(건의)

▶시정 · 건의 요구 사항

각종 공사 시행시 주민의 감시감독 역할 유도

- ◎각종공사 시행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사장의 경우 관리 감독이 잘되지 않는 사례가 있어 동별 공사시행시 해당지역 구의원이나 통장 등 지역주민들에게 공사내역을 상세히 알려 감시 감독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바람.

▶처리 내역

- ◎각종 공사시 해당지역의 동으로 공사내용을 통보하고 동을 통한 지역주민들의 공사참여를 유도하여 공사시행시 관리감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음.

▶비 고 : 완결

농림수산물(시정)

▶시정 · 건의 요구 사항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 · 단속 철저

- ◎축산물과 수산물 원산지표시 단속실적은 있으나, 농산물의 경우 단속실적이 전무함. 농산물 원산지표시 이행이 잘되고 있는지 아니면 단속을 하지 않는 것인지 의문이 감. 중국산 농산물 유통의 보편화, 수입 쌀개방의 본격화 등 우리농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원산지 표시 지도 및 단속에 철저를 기해 주기 바람.

▶처리 내역

- ◎현재 수입농산물 식별 능력부족으로 원산지 표시 단속이 미흡하나 지속적으로 원산지 식별 능력 연찬 및 기관합동 단속 실시로 단속의 효율성을 높여 원산지 표시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인 단속실시
 - 원산지 단속 계획
 - 시기 : 분기별, 명절 전 · 후
 - 단속반 편성 : 농산물 품질관리원과 합동 단속으로 효율성 제고

▶비 고 : 완결

재난관리과(시정)

▶시정 · 건의 요구 사항

◎산업로 및 효문공단 침수에 따른 대책 강구

▶처리 내역

- ◎효문동 일원 산업로(국도7호선)및 효문공단지역 관할 행정기관 및 부지 조성사업 중에 있는 한국토지공사에 침수에 따른 대책 요구 공문 발송.
 - 재난관리과-85호, 2006년 1월 4일
 - 재난관리과-92호, 2006년 1월 4일

▶비 고 : 완결



제4절 행정사무조사

1. 음식물자원화시설 업체선정 외 3건의 진상 조사

1) 조사 개요

가. 조사의 목적

민선 3기 울산광역시 북구 출범 이후 최근의 언론 보도 및 주민들로부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각종 사안들에 대해 그 진상을 파악,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또한 음식물자원화시설, 종합사회복지관,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수탁자 선정 및 문화예술회관 계약직공무원 채용과정에서 나타난 의혹 및 진상을 파악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나. 조사의 기간 : 2003년 11월 3일 ~ 11월 14일 (12일간)

다. 조사대상 기간 : 울산광역시 북구

라.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특별위원회 명칭	위원장	간사	위원	전문위원	사무직원
음식물자원화시설 업체선정외 3건의 진상조사특별위원회	이재경	김대영	김재근	이상찬	정미옥

마. 조사 범위

- 음식물자원화시설 업체선정 과정
- 종합사회복지관 수탁자선정 과정
- 비정규직노동자 지원센터 수탁자선정 과정
- 문화예술회관 계약직공무원 채용 과정

2) 조사 실시 기관(부서) 및 출석 요구 공무원

조사대상 기관	조사대상 부서	출석요구 공무원		조사대상 사무
		직	성명	
울산광역시 북구		구 청 장	이상범	요구자료 참고
		부구청장	이상수	
		총 무 국 장	김종기	
	총무국	총 무 과 장	성낙화	
	경제사회국	경제사회국장	안강원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사회복지과장	이동훈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3) 조사자료 제출 요구 현황

◎ 조사자료 제출 현황 : 별첨

◎ 제출 부수 : 8부

◎ 제출 기한 : 2003년 10월 27일 한

4)조사 일정

일 시	장 소	조사대상 부서	비 고
2003. 11. 3 ~ 11. 4(2일)	북구의회 소회의실	증인선서(국장·과장)총무국 총무과	
2003. 11. 5 ~ 11. 6(2일)	"	경제사회국 지역경제과	현장확인
2003. 11. 7 ~ 11.10(4일)	"	경제사회국 사회복지과	"
2003. 11. 11 ~11.14(4일)	"	경제사회국 환경미화과	"

5)조사 방법

- ◎서류 확인 및 현장 확인
- ◎관계공무원 질의·답변
- ◎기타 실증적 조사 등

【별 첨】

소관부서	세부요구 자료내용	비 고
총 무 과	〈문화예술회관 계약직 공무원 선정 과정〉 1.계약직 공무원 응시현황 2.선정 기준 3.선정 과정(심사자 포함) 4.선정 결과	
지역경제과	〈비정규직노동자 지원센터 수탁자 선정 과정〉 1.수탁자 신청 현황 2.선정 기준 3.선정 과정(심사위원 포함) 4.선정 결과 5.비정규직노동자 지원센터 운영 실적 6.비정규직노동자 지원센터 지도·감독 실적 7.예산지원 현황	
사회복지과	〈종합사회복지관 수탁자 선정 과정〉 1.종합사회복지관 기본현황 및 운영계획 2.수탁자 신청 현황 3.선정 기준 4.선정 과정(위원회 개최 내용 및 심사위원 현황 등) 5.선정 결과 6.수탁자 선정관련 민원제기 현황 및 처리결과	
환경미화과	〈음식물자원화시설 업체선정 과정〉 1.음식물자원화시설 기본현황 및 운영계획 2.신청 업체 현황 3.선정 기준 4.선정 과정(심사위원 포함) 5.선정 결과 6.수탁자 선정관련 민원제기 현황 및 처리결과	



2. 음식물자원화시설 업체선정 외 3건의 진상 조사 경과

1)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가. 목적

민선 3기 울산광역시 북구 출범 이후 최근의 언론보도 및 주민들로부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각종 사안들에 대해 그 진상을 파악,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또한 음식물자원화시설, 종합사회복지관,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수탁자 선정 및 문화예술회관 계약직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나타난 의혹 및 진상을 파악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나. 특별위원회 구성 현황

- 일 시 : 2003년 10월 17일(제67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
- 명 칭 : 음식물자원화시설 업체선정 외 3건의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 위원장 : 이재경
- 위 원 : 김대영(간사), 김재근

2) 조사 실시 경과

가. 조사 개요

- 조사 기간 : 2003년 11월 3일 ~ 11월 14일(12일간)
- 조사대상 기관 : 울산광역시 북구
- 조사 범위
 - 음식물자원화시설 업체선정 과정
 - 종합사회복지관 수탁자선정 과정
 - 비정규직노동자 지원센터 수탁자선정 과정
 - 문화예술회관 계약직공무원 채용 과정

나. 조사 일시 및 장소

일 시	장 소	조사대상 부서	비 고
2003. 11. 3 ~ 11. 5	대상사무현장확인	현장확인 및 참고인 면담	
2003. 11. 6 ~ 11. 7	북구의회소회의실	증인선서(국장·과장) 총무국 총무과	
2003. 11. 8	"	경제사회국 지역경제과	
2003. 11. 10 ~ 11. 11	"	경제사회국 사회복지과	
2003. 11. 12	"	경제사회국 환경미화과	
2003. 11. 13	"	조사대상 전 부서	
2003. 11. 14	"	조사결과 종합보고서 작성	

다. 현장조사 실시

- 2003년 11월 3일 : 문화예술회관 계약직공무원 채용응시자 면담
- 2003년 11월 4일 : 종합사회복지관 수탁 신청 법인 2개소
- 2003년 11월 4일 ~ 5일 : 음식물자원화시설업체 신청업체 (주)해창 (경기도 이천시 소재)

라. 조사 방법

- 조사 선언(위원장)
- 서류 검증 또는 현지 확인
- 증인 선서

- 업무보고(청취) : 국장
- 업무전반에 대한 질의·답변
- 조사 결과 강평 및 조사 종료

마. 증인 출석 및 조사실시 내용

- 증인 출석 : 10명
(구청장, 총무국장, 경제사회국장, 총무과장, 문화공보과장, 지역경제과장, 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담당, 환경미화과장, 음식물처리담당)
- 조사실시 내용

소관부서	세부요구자료 내용	비 고
총 무 과	<문화예술회관 계약직 공무원 선정 과정> 1.계약직 공무원 응시현황 2.선정 기준 3.선정 과정(심사자 포함) 4.선정 결과	
지역경제과	<비정규직노동자 지원센터 수탁자 선정 과정> 1.수탁자 신청 현황 2.선정 기준 3.선정 과정(심사위원 포함) 4.선정 결과 5.비정규직노동자 지원센터 운영 실적 6.비정규직노동자 지원센터 지도·감독 실적 7.예산지원 현황	
사회복지과	<종합사회복지관 수탁자 선정 과정> 1.종합사회복지관 기본현황 및 운영계획 2.수탁자 신청 현황 3.선정 기준 4.선정 과정(위원회 개최 내용 및 심사위원 구성 등) 5.선정 결과 6.수탁자 선정관련 민원제기 현황 및 처리결과	
환경미화과	<음식물자원화시설 업체선정 과정> 1.음식물자원화시설 기본현황 및 운영계획 2.신청 업체 현황 3.선정 기준 4.선정 과정(위원회 개최 내용 및 심사위원 현황 등) 5.선정 업체 6.수탁자 변경 사유 7.수탁자 선정관련 민원제기 현황 및 처리결과	

행정사무조사 활동



〈행정사무조사 실시〉



〈현장 확인 활동〉

3. 음식물자원화시설 업체선정 외 3건의 진상조사 결과

1) 지적사항 및 건의·시정 요구 사항(총괄)

조사대상 부서	지적 사항	건의 사항	시정요구 사항
계	21	3	14
공 통 사 항	3	-	2
총무국 총무과	4	2	2
지역경제과	3	-	3
사회복지과	7	1	5
환경미화과	4	-	2

2) 조치 사항

가. 공통 지적 사항 및 시정 요구 내용

▶ 지적 사항

- 행정기관에서 인력을 채용하고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성에 중점을 둔 반면 음식물처리업체 선정과 계약직공무원 채용에 있어서는 지역적인 제한을 두지 않았다. 이렇듯 객관적인 기준과 원칙을 무시한 채 일괄적이지 못한 행정을 집행하여 주민들과 신청업체에 큰 혼란을 초래하였다.
- 행정기관 내부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이 과별·국별 각각 별개로 이루어지는 등 부서간 업무협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업무추진 과정의 절차와 내용에 대해서도 최종 결재권자에게 보고 체계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었다.
- 공무원들이 위탁 업체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신청업체가 제출한 서류에 대해 첨부해야 할 서류가 누락 된 것은 없는지, 불필요한 서류가 요구되지는 않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검토 절차도 없었다. 심사위원의 심의를 돕기 위해 작성된 요약서가 잘못 작성되어 심사위원의 심사에 지대한 혼선을 주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의 업무능력에 대해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음은 물론 자질에 대해서도 실망스러움을 느꼈다.

▶ 시정 요구 사항

- 북구 행정기관에서 인력을 채용하고 위탁업체를 선정하는데 있어 기본적인 대원칙을 정하여 일관성 있게 행정업무를 추진하여 주기 바람.
- 북구청 내부에서 부서간의 업무협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점과 직원들의 업무처리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은 최고 책임자가 직원들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되니 이를 즉시 시정하고 직원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기 바람.

나. 분야별 지적 사항 및 건의·시정 요구 내용

【문화예술회관 계약직공무원 채용 과정】

▶ 지적 사항

- 문화예술회관 계약직공무원 모집 공고가 행자부 및 북구 홈페이지, 그리고 북구 게시판 3개로 한정된 것은 다양한 홍보를 통해 많은 인력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우수한 인력이 채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전문인력 채용에 대한 고민과 노력이 부족하였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 심사위원 총4명 중 2명이 집행부 간부공무원이고 나머지 2명이 외부인사로 구성된 점 역시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 모집기간 중 응시한 ○○○는 당시 울산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재의부장으로 울산시와 복직 투쟁 중이었던 시기임에도 북구 계약직공무원 모집에 응시하여 합격한 것은 도덕적으로도 개연치 않은 것으로 생각 된다.



◎특히 기획·전시·공연 분야에 채용된 계약직공무원이 기획에 대한 이력서 상의 경력이 전혀 없는 상 태임에도 불구하고 최종 합격되었다.

▶시정요구 사항

◎문화의 불모지인 북구에서 처음 문화예술회관을 개관하고 북구 구민의 문화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필 요한 인력을 모집하고 있는만큼 다양한 경로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로 우수한 많은 인력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주시기 바란다.

◎심사위원 구성면에서도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충분한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가에 의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객관적인 심사 및 채용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바란다.

▶건의 사항

◎기획·전시·공연 분야에 채용된 계약직공무원은 기획에 대한 이력서상 경력이 전혀 없는데도 최종 합격이 되었으니 나름대로의 전문성을 최대한 보완하여 문화예술회관의 기획·공연을 무리없이 추진 해 나갈수 있도록 하고, 많은 구민들이 문화적인 수혜를 다양하게 누릴 수 있도록 내실 있는 문화예술 회관을 운영하여 주기 바람.

◎공무원의 신분으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업무로 알게된 정보를 제공했다고 민원이 제기되었으니 공무를 집행함에 있어서는 법과 원칙을 준수 하여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 주길 바람.

【비정규직노동자 지원센터 수탁자 선정 과정】

▶지적 사항

◎전국 최초로 비정규직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센터를 개소하여 2003년 5월 19일 위탁 운영을 승인하고, 2003년 5월 23일 위탁운영계약체결이 이루어졌다. 이 시점은 지정위탁업체인 민주노 총의 대표자가 공석이었고 업무대행자도 지정되지 않아 정상적인 업무를 담당할 수 없는 시기였다. 또한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민주노총의 대표자, 즉 최소한의 책임이 수반되는 자와 계약이 체결되어야 함에도 대표자의 권한(또는 업무대행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계약이 체결되었다.

◎위탁계약이 체결되고 위탁에 대한 사업운영 방향과 총괄적인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탁기관인 민주노총 소속 직원과 업무를 이행 하지 않고 타 기관의 직원과 업무를 진행한 점과

◎행정기관과 수탁단체간 체결한 계약서 작성에 사용된 수탁단체의 직인이 대외적인 효력을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절차도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업무처리 기준을 어디에 두는지 도저히 납득하기 힘들었다.

▶시정요구 사항

◎행정기관에서 외부 단체간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계약서가 공적인 서류로 효력이 있는지, 업무협 의를 하는 직원이 그 단체에서 어떠한 직위가 있는지에 대한 절차는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하는 것은 의회의 지적사항이 아니라 공적인 일을 집행하는 공무원으로서 최소한의 책임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실무자는 물론 간부공무원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사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람.

◎구청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지원하면서 구청 나름대로의 사업목적과 운영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접목시켜서 조례제정 본래의 목적인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익신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최선의 성과를 거두도록 최선을 다해야 함에도 모든 업무를 위탁단체에서 전적으로 처리되고 있고 담 당공무원은 업무파악 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업무를 태만히 한 것은 즉시 시정되어야 할 것임.

◎전국 최초로 비정규직에 대한 권익신장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제정되어 위탁업무를 시작한 본질적인 목적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해당 과에서 전체적인 사업계획과 방향에 대해 수탁단체와 원활한 업무 협조와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하여 내실있게 운영하기 바람.

**【종합사회복지관 수탁자 선정 과정】****▶ 지적 사항**

- ◎ 종합사회복지관 수탁법인 신청시 건물과표확인서는 공식적으로 발급할 수 없는 서류임에도 신청서상의 첨부서류로 표기되어 신청인에게 혼란을 초래하였다.
어울림복지재단의 경우 꼭 구비되어야 할 서류인 2001년도 결산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실무 부서에는 추가로 요구하지도 않는 등 신청서류에 대한 제출서류를 확인하는 절차를 소홀히 하였다.
- ◎ 신청접수 마감일이 7월 28일이었고 심사위원들에게 각 법인의 신청서류가 7월 29일날 배부되었으나 배부된 신청서류의 방대함을 감안할 때 심사위원들이 2일 동안 4개 신청법인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할 시간적인 여유가 부족 하였다. 이에따라 담당공무원이 심사당일 심사위원들에게 배부한 요약서가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된 바 허위 기재 된 요약서에 의한 심사결과는 공정성과 객관성이 심각히 결여되었다고 보아진다.
- ◎ 요약서의 잘못된 부분을 열거하면,
 - 수련복지재단의 경우 「법인의 설립일자」를 1995년 12월 6일로 기재해야 하나 허가증 갱신일자인 2003년 7월 22일로 허위 기재하였음.
 - 「법인기구및복지관운영부서」에 대해서도 신청서류에 기재되어 있음에도 페이지 부여가 되어 있지 않아 요약서상에 아무런 부가 설명도 없이 표기를 생략하여 타법인과 의 형평성을 상실하였음.
 - 「프로그램 운영계획」에 대해서도 신청자료에 수련복지재단은 43개 프로그램을 하고 있음에도 8개사업 대단위 사업만 표기하고 일부 법인은 소 단위 사업까지 표기하는 등 요약서 작성이 주먹구구식으로 작성되어 있었음.
 - 「운영체현황의 자체운영체」부분의 표기에도 어울림복지재단은 2개소 6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6개소를 운영하는 것으로 잘못 표기하였음.
 - 「연간자부담계획의 연간 자부담계획금액」의 경우 타 3개 법인은 경비부담 사용승낙서 상의 금액을 정확히 기재하였으나, 어울림복지재단은 후원금과 출연금이 포함된 연간 수입액을 기재하여 실제보다 더 많이 자부담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였음. 이는 공무원이 정확한 개념과 수치를 확인하지 않았거나 특정업체에 유리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음.
- ◎ 어울림 복지재단이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의 후원으로 설립된 법인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심사위원을 선정하면서 심사위원 중 4명이 참여연대 및 어울림복지재단과 산학협약이 체결된 울산대 사회학부 교수임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실무부서에서 답변을 했는데, 본 특위에서 이런 연관성을 밝힌데 대하여 결과적으로 심사위원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 ◎ 심사위원들이 각 법인이 제출한 신청서와 담당 부서에서 배부한 요약서를 참고하여 심사한 결과를 살펴볼 때 정말 객관적으로 이루어졌는가에 대해 심사위원들의 도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평가 기준과 다르게 '지역성'에 배점기준상 가중치를 두었다면 지역업체 순으로 결과가 나타나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여 순위결과가 일관성을 상실하고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 ◎ 조사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의 개인별 채점표와 평가심의회의록 열람을 요청했으나 집행기관에서 ① 개인별 채점표는 비공개 사항이며, 의회에서 법적 요구기한 및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점과 ② 회의록 미작성 등을 이유로 서류 열람에 응하지 않은 것은 의회의 열람 요구에 응해야 할 의무를 거부하는 행태이다. 특히 행정의 객관성 투명성 확보를 위해 회의진행사항을 기록하여 기록물로 보존하는 것은 행정의 기본사항임에도 집행부가 회의록 작성을 하지 않은 것은 선정과정의 의혹을 부추길 수 있는 여지를 만들었다고 판단된다.
- ◎ 위탁사업설명회 자료중 「울산광역시북구종합사회복지관및노인복지회관 위탁운영협약서(안)」의 내용이 장애인복지증진으로 표기된 것에 대해 직원이 타 기관들의 운영사례를 바탕으로 협약서를 다운받아서 복합적으로 편집하던 과정 중 발생한 오타라고 하였다. 그러나 담당 공무원이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운영협약서를 작성하면서 장애인 복지사업관련 자료를 활용한 점과 37억 2천여 만원의 대단위 사업 인종합사회복지관을 신축하고 운영하는 위탁업체사업설명회 자료를 작성하면서 전체적인 내용검토와 오타도 확인하지 않은 것은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한 의도적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

▶ 건의 사항

- ◎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울산광역시 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근거로 발의되어 북구의회 제6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하기로 결정을 했고 제8차 본회의에서 조사범위와 조사기간, 출석요구 공무원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서를 승인 받아 집행기관에 통보하였으나, 조사기간 중 의회에 사전 통보나 동의도 없이 출석요구된 공무원이 교육 출장으로 조사에 불출석하여 조사진행을 어렵게 하는 것은 행정 사무조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들의 자세가 불성실할 뿐 아니라 견제 기관이자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임.
- 또한, 매번 지적되는 사안이지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불명확하고 불충분하여 원활한 조사가 진행되지 못하였으므로 앞으로 의회에 출석요구된 공무원은 성실한 자세와 정확한 업무파악으로 임해 주기 바람.

▶ 시정요구 사항

- ◎ 위탁업체에 대한 신청서를 접수받을 때 구비할 수 없는 서류를 요구하여 민원에게 불편을 끼쳐서는 안 되며 또한 신청서류로서 꼭 필요한 서류가 누락된 것이 없는지를 확인한 후 평가심의회를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충실을 기해주시기 바람.
- ◎ 종합사회복지관 수탁법인 심사에 심의를 돕기 위한 요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각 법인이 애써 노력하여 만든 실적이나 현황을 정확하고 객관성있게 작성 해야 하는 것이 공무원의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일부는 잘못 기재되고 일부는 누락이 된 것은 특정 법인에 대한 특혜 의혹이 충분히 제기될 원인을 제공한 것이며 도저히 공무원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므로 적절한 문책이 있어야 할 것임.
- ◎ 앞으로는 중요한 사안을 결정짓는 심의회를 개최할 경우에는 회의 진행상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회의록은 반드시 기록하여 보존하도록 시정을 요구함.
- ◎ 심사위원은 위탁법인을 선정하는데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므로 심사위원구성에는 무엇보다 투명하고 객관성 있는 전문가로 구성되어져야 하는데 이번 사례에서는 사전 심사위원과 신청법인과 이해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확인 절차도 없이 구성한 것 또한 적절한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임.
- ◎ 위탁업체 선정심사에서 탈락된 업체에서 공개토론회 요구를 한데 대해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공개토론회를 조속히 개최하기 바람.

【음식물자원화시설 업체선정 과정】

▶ 지적 사항

- ◎ 음식물자원화시설 기술공모 심의결과 (주)해창이 1순위로 선정되었으나 「기술공모서상의 채택한 지령이 사육 및 운영방식이 적절치 않고, 특히 지령이 사육관련 운영실적이 허위로 판명됨에 따라 건설기술응모평가기준 (Ⅲ. 평가기준및방법 제5호)에 따라 사업자선정 대상에서 제외된 사실이 있다.
- 지령이 사육 및 운영방식이 적절치 않다면 당시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 평가위원들의 자문을 구하거나 또 다른 전문가 집단의 검토를 충분히 거쳐 최종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판단된다.
- ◎ 허위 실적증명서의 경우 당초 신청구비서류에 꼭 포함되어야 할 서류도 아니었고, 신청업체에서 심사 평가시 가점을 받기 위한 참고서류에 제출된 허위실적증명서 하나만으로 심사위원들의 심사결과를 배제하고 순위를 발주 기관에서 임의로 바꾼 사실 또한 납득하기 어렵다.
- ◎ 당초에 주관부서에서 신청서류를 접수받으면서 미비되거나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있는지를 처음부터 적격심사 단계에서 검토를 하고 심사위원에 의한 심사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공무원의 책무인데도 불구하고 심사평가를 진행한 것은 명백히 공무원의 책임이 크다고 볼 수 밖에 없다.



- 「실적증명서의 실적」을 실제 운영한 (주)청강이 확인을 해 준 것은 (주)해창과 청강이 나름대로의 협약을 체결한 것임을 알 수 있는데도 공무원이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순위를 바꾼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곤란하다.

만약 위 복구청에서 허위실적증명서만으로 선정 업체를 변경할 만큼 중요한 요소로 작용이 되었다면 당연히 행정기관에서 부정당업체에 대한 입찰자격 제한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제재를 이행하는 것이 적법한 절차였다. 그럼에도 허위실적 증명서를 확인하고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행정에서 아무런 제재도 가하지 않고 있는 것은 업무를 태만히 했거나 복구청과 (주)해창 간의 상방의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시정요구 사항

- 복구청에서 업체선정결과 변경된 사유가 적절한 조치인지 전문가로 구성된 공식적인 회의를 거쳐 자문을 구하도록 하고,
- 「허위실적증명서」가 기술공모제안서상 평가에 영향을 미칠만한 중대한 과오인지를 먼저 판단하고 이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고 업무를 추진한 담당공무원에 대한 적절한 문책을 요구함.

【조사결과 종합 의견】

-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울산광역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에 의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언론이나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된 사안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해 2003년 11월 3일부터 11월 14일까지 12일간 실시한 결과
- 행정기관에서 아무리 좋은 목적의 사업을 시행하더라도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해 내지 못하면 그에 따른 민원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만큼 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의 경우 공정성과 객관성 및 형평성이 담보될 수 있는 노력이 무엇보다 요구됨.
- 주민참여를 근간으로 하는 지방자치시대에 행정기관에서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민원이 제기된 부분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회신도 없이 행정을 일방적으로 집행한다는 점, 그리고 조사과정에서 드러난 복구청 공무원들의 업무능력과 마인드에 대해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또한 행정기관을 견제하고 감시감독하는 기관인 의회의 입장에서 대단히 실망스러움을 느낌.
- 국민의 혈세로 공익사업을 실시하는데 있어 '참가자격에 대한 공정성과 형평성을 무시하고 정치적 결탁이나 외압으로 행정이 이루어진다'는 민원이 제기되는 것은 조사과정에서 공무원들의 잘못된 업무 처리로 인해 충분한 원인제공을 한 것으로 판명되었음.
- 집행부에서는 앞으로도 많은 위탁업무나 공무원 채용업무를 추진 해야할 것인데 조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다시 한번 되짚어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공무원으로서 업무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데 대해서는 그에 합당한 조치가 따라야 할 것임.
-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항상 법과 원칙에 입각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행정업무를 처리함은 물론 업무에 대한 전문성 확보로 소신있는 업무추진에 전력을 다해 주기 바람.
-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집행기관의 흠집내기식의 조사가 아니라 어떤 경로 든 주민들에게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대로를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고, 단순히 의혹만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진실 그대로를 주민들에게 알려 투명하고 진보적인 복구로 거듭나기 위한데 있음. 따라서 조사결과 지적 사항 및 시정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서 공정하게 처리하여 결과를 2004년 1월 31일한 통보하여 주기 바람.
- 이번 행정사무조사 특위가 지방자치법의 조사권의 한계로 인해 더 치밀하고 적극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아쉬움이 남음.



4. 음식물자원화시설 업체선정 외 3건의 진상 조사 결과 처리 내역

1) 공통 지적 사항 처리 내역

가. 음식물자원화시설 업체선정외 3건의 진상 조사 시정요구 사항에 따른 담당자 교육 실시

- 일 시 : 2004년 1월 26일
- 대 상 : 실 · 과 · 소별 주무담당 차석(15명)
- 장 소 : 소회의실
- 교육 내용
 - 우리구의 인력 채용시는 객관적인 기준과 원칙을 수립한 후 법과 원칙을 준수하여 공정한 채용이 되도록 조치.
 - 업무처리과정상 국 · 과간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협조를 받도록 하고 최종결재권자 결재를 득하여 시행함으로써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지시.
 - 향후 이와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실과소장 책임하에 직무교육 실시하고 소속직원의 직무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시.

나. 분야별 지적사항 처리 내역

【문화예술회관 계약직공무원채용 과정】

- ◎문화예술회관 계약직공무원 채용과정에 대하여, 행정자치부홈페이지 지방계약직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공고와 북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2003. 7. 25)한바 있다. 본 과정에서 우수인력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함에도 시간적 · 재정적 부족으로 이러한 결과가 발생 된 것으로 앞으로 계약직 채용시 보다 다양하고 많은 홍보가 되도록 조치하겠음.
- ◎계약직 채용 면접 심사위원 구성시 전문성이 부족한 것은 채용기관이 우리구로 한정됨에 따라 다소 비 전문가들로 심사위원을 구성 하였음. 추후 심사위원 구성시 전문적인 기술인, 대학교수 등을 확보하여 심사위원이 객관적이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여 위촉될 수 있도록 구성 과정에 있어 만전을 기하겠음.
- ◎관련실과와 협의하여 현재 채용된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우리구가 문화불모지가 아닌 앞서가는 문화예술 발전과 구민들이 문화적인 수혜를 다양하게 누릴 수 있도록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음. 향후 계약직 채용뿐만 아니라 모든 인력 채용 시에도 법과 원칙을 준수하여 공정한 채용이 되도록 하겠음.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수탁자 선정 과정】

- ◎2003년 5월 23일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와 계약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위탁운영체결건에 대하여는 민주노총울산지역 본부에서는 내부적으로 담당업무가 전(현 비정규직지원센터 사무국장)으로 지정 되어 추진되고 있었으며, 전화확인 결과 비정규직지원센터 업무 위임자임을 확인하였음. 향후 업무담당자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문서 확인으로 업무를 처리 하겠음.
- ◎2003년 3월 3일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설립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직영 또는 위탁운영하도록 되어있 으며, 직영운영하기에는 노동분야 전문 지식이 부족하여 동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민주노총을 위탁 운영자로 지정계약체결하였음., 전국에서 처음으로 조례를 제정하여 실시하는 관계로 업무체계가 미흡 하나, 향후 자료수집을 통하여 센터운영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음.
- ◎매월 운영위원회 및 수시 출장시 운영상황 및 예산집행상황을 지도하였으며, 또한 지도 방문시 내실 있는 운영계획수립 및 현금출납장부 비치 등 회계처리를 철저히 정리하도록 지도하였음.

**【종합사회복지관 수탁자 선정 과정】**

- 복지관 위탁에 대한 보건복지부 차원의 지침서가 없음으로 인해 다른 시·구의 사례를 참조해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음을 인정하며, 향후 복지기관 또는 시설 위탁시 정확한 업무 지침이 시달 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토록 하겠음.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 등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음.
- 향후 각종 보고서 등 작성에 유의하도록 지도하겠으며, 우리구 감사 부서의 문책이나 향후 있을 각종 감사시 담당자의 업무 실수에 대한 부분은 적절한 조치가 있을 것임.
- 향후 유사 업무에 대해서는 반드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실천하겠음.
- 담당부서에서는 심사위원의 전문성에만 초점을 두고 심사위원을 선정하다 보니 그들의 성향 내지 신청 법인과와의 관계 등에 대한 파악에 소홀한 점이 있으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하겠음.
- 사이버상에서의 공개토론 필요성을 제기하신 분은 있었지만 복지관위탁을 신청한 4곳(위탁선정법인 포함)중 정식으로 공개토론회를 요청한 곳은 없었으며, 언제라도 정식으로 요청을 하면 절차를 밟아 즉시 토론회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음.

【음식물자원화시설 업체선정 과정】

- 우리 구에서는 「남은 음식물 자원화시설」을 전국에서 가장 환경 친화적인 시설로 만들기 위해 그동안 최선을 다하여 왔음. 앞으로도 「잘 짓고 잘 운영」하는데 행정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임.
-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시공업체를 얼마나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하느냐”하는 문제는 사업의 성과와 직결된 만큼 중요한 사안임. 이를 위해 우리 구에서는 기술을 공모기로 결정하는 한편, 객관적인 절차를 거쳐 평가위원회도 구성했으며 우선협상대상 업체에 대해 현장실사까지 하는 등 면밀한 선정과정을 거쳤음.
- 우선협상대상업체에 하자가 있어 후 순위 업체를 시공업체로 선정한 것은, 기술공모 기준에 따른 당연한 조치일 뿐 아니라 발주기관의 고유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이를 두고“이미 선정된 업체를 변경한 행위”라고 할 수는 없음.
- 우선협상대상 업체 선정대상에서 제외한 사유는, 기술공모제안시 운영하지도 않은 실적을 있는 것처럼 허위로 운영실적증명서를 제출했을 뿐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제안서 상에도 버젓이 실적이 있는 것처럼 기재함으로써 평가심의과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임.
- 이 같은 결정을 하기까지에는 충분한 법적 검토는 물론 고문변호사(2명), 행정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았고 또한, 2003년 10월 7일 개최한 실시설계 중간 보고회시 공모제안서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전문가 5명을 초청해 시공업체 변경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하는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였음.
- 이와 함께 2003년 9월 30일 ~ 10월 11일 실시한 행정자치부 환경기초시설 감사와 2003. 11. 26 실시한 울산시의 사무감사를 각각 수감한 결과 조속히 공사를 추진하라는 촉구가 있었을 뿐 업체 선정에 대한 지적은 없었음.
- 우리 구는 음식물 자원화 사업과 관련해 그 동안 북구의회가 보내준 관심과 질책을 겸허히 수용해서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할 것이며, 자원화 시설을 전국 최고의 친환경시설로 만들어 나가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임.

제5절 기타 의정활동

1. 구정 질문

1)구정 질문 현황

일 시	회 순	의 원	질 문 요 지
계	2회		7건
2003.3.31	제61회임사회	류재건 의원	• 효문공단도로 개설에 따른 안전대책에 관한 질문
			• 공단도로 개설로 인한 우수기시 침수 대책에 관한 질문
			• 덕양산업연 연암삼거리앞 교통 신호체계 대책에 관한 질문
			• 명촌주공, 평창리비에르 APT 입주전 주민편의시설 설치 대안에 관한 질문
2004.6.10	제72회임사회	윤임지 의원	•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상 선거구 기준에 대한 구청장의 대책
			• 강동동의 교육·문화·복지시설 투자에 대한 대책
			• 도시계획 및 개발제한구역완화와 지역 개발에 대한 대책

2)구정 질문 및 답변 요지

가.효문공단 도로 개설에 따른 안전 대책에 관한 질문

질문 의원 : 류재건 의원

2003년 3월 31일(제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류재건 의원 질문

효문공단 도로 개설에 따른 안전 대책은?

■ 심두근 도시건설국장 답변

- 일부 개통된 덕양산업~연암삼거리까지 L=610m 구간은 지형고가 전반적으로 높음. 따라서 도로부분 낮게 시공시 기존 입주공장 진입도로에 문제가 있어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점에 공감. 또한 인접하고 있는 주택에 대한 이주 보상 등에 대하여는 광역시에서 검토 계획중임.
- 앞으로 교통사고 대비를 위하여 도로관리청과 협의하여 충분한 안전 시설(차선 및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 설치되도록 건의하겠음.

■ 류재건 의원 질문

공단 도로 개설로 인한 우수기의 침수 대책은?

■ 심두근 도시건설국장 답변

- 산업로(연암사거리, 효문사거리)는 우수기 집중 호우시 상습적인 침수 현상이 발생하는 곳으로 노면수 배제를 위한 침수 해소대책이 필요하여 2002년 11월 울산광역시에 건의하여 시가지 상습 침수지역 해소를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2002. 12~2003. 1)완료하였다. 그 결과에 따라 자연재해 대책법 제25조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고자 도로관리청인 울산광역시종합건설 본부에 관리책임자 지정을 요청하였음.

- 향후 울산광역시에서도 재해대책기금을 이용한 산업로변 도로측구정비(L=1.8km) 및 저류지 확보를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에 있으며 우리구에서 조기에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임.

■ 류재건 의원 질문

덕양산업 옆 연암삼거리 앞 교통신호 체계를 실시하면 교통 대란은 불보듯이 뻔한 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 심두근 도시건설국장 답변

- 덕양산업 앞과 연암삼거리는 교차로가 현지 지형적인 형태로 볼 때 불균형적으로 접속되어 있고 정자방향 31호 국도가 편도1차선 밖에 되지 않아 교통량을 수요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임. 따라서 차량으로 많은 정체가 예상되고 있음.
- 근본적인 해결책은 교차로 접속도로의 개선이지만 단기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며 지금 건설중인 배면도로가 2004년 완공되면 어느 정도 차량통행으로 인한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단기적으로는 출퇴근시간대 신호기를 변동운영하고 교통경찰의 상주를 울산중부경찰서에 협조 요청하도록 하겠음. 아울러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경찰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 류재건 의원 질문

명촌주공, 평창리비에르 APT 입주전 주민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대안은?

■ 심두근 도시건설국장 답변

- 올해 2월에 각종 기반시설과 주민편의시설 설치등 승인조건 이행여부를 관련부서 담당자들과 직접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음. 그 결과 미비한 점에 대해 구획정리지구조합장, 평창건설관계자, 관련부서 과장과 구청 도시건설국장실에서 「평창2차아파트 사전점검결과에 따른 대책회의」를 개최하였음. 메가마트 입구에서 진입하는 도로의 조기 개설과 조정시설 완비, 교통영향평가사항 이행 등 5월초까지 승인조건을 이행하여 입주지연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 하는 데 합의를 하였음. 또한, 오는 4월 중순경 최종적인 사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임.
- 2003년 3월 12일 평창1차 아파트 입주자 대표로부터 가로등 설치요청이 있는 이후 가로등 설치요청을 수차례 하였음. 그런데 가로등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평창2차아파트 2,100여 세대가 금년 6월초에 입주 예정으로 있음. 평창 2차 입주민의 입주를 위한 아파트 사용이 승인됨은 추가민원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우리구에서는 도시기반 시설 (가로등) 미 설치시에는 아파트 사용 승인의 보류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구획 정리조합과 평창건설에 가로등 설치 촉구와 시에 협조요청을 해놓고 있음.
- 학생 수용 문제는 현재 건립중인 명촌초등학교가 9월에 개교 예정이어서 주공아파트와 평창리비에르 2차 입주학생들을 인근 학성초등학교에 당분간 수용하는 것으로 하여 학생수송버스를 운행할 예정임.
- 평창2차 사용검사시에는 입주예정자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음.

나. 감소하고 있는 강동동 인구의 증가 및 유입을 위한 방안 및 대책

질문 의원 : 윤임지 의원

2004년 6월 10일(제7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윤임지 의원 질문

현행 공직선거법 및 선거부정방지법상 선거구 기준에 대한 구청장의 대책은?



■ 이상범 구청장 답변

- 도·농 통합지역으로서 동일한 여건을 갖추고 있는데도 지방자치법에 의한 행정구역 명칭이 동이나, 면이나에 따라 선거구 인구하한선을 달리 적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음. 특히 6:1편차를 둔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음. 따라서 동 지역이라도 지역여건이 농·어촌으로 형성된 지역은 면 지역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도록 공선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판단됨.
- 윤임지 의원을 비롯한 강동동 주민들이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호소하기 위하여 주민서명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진정서가 우리 구에 접수되면 주민들의 서명서에 구청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도·농 통합형태의 자치구인 우리 구의 특수성이 공선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에 건의함과 아울러 지역 국회의원과도 함께 공동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음.

■ 윤임지 의원 질문

강동동의 교육·문화·복지 시설 투자에 대한 견해와 계획은?

■ 이상범 구청장 답변

- 교육행정의 직접적인 해결 당사자는 교육청이지만 우리 구청차원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부분은 적극적인 협력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음.
말씀하신 내용 중 강동동에 살면서 주민등록을 하지 않고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우리 구청에서 파악한 결과 대략 200여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음.
- 이들은 자녀교육, 월성 원전지역 혜택 등의 문제로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고 있는 주민들로서 이들에 대해선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을 일치시키도록 주민등록지 기관과 공조해 나가는 한편 주민홍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음.

■ 윤임지 의원 질문

도시계획 및 개발제한구역 완화와 지역개발에 대한 견해와 방안은?

■ 이상범 구청장 답변

- 강동지역에는 2~3개의 가칭 개발조합이 구성되어 환지 방식의 주민개발이 추진되어온 것이 사실임. 현재 토지공사에서는 건설교통부에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절차를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
- 가칭 강동산하지구도시개발조합에서도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서를 2004년 5월 17일 우리 구에 접수하여 현재 행정의견 수렴 등 검토절차를 진행 중에 있음.
- 따라서 향후 개발방식이 선정되어 개발이 완료되면 강동지역은 상당한 정도의 인구 유입이 예상되며, 수려한 자연경관과 어우러져 위락·휴양·주거기능을 함께 갖춘 복합 전원도시로 다시 태어날 것임. 우리구에서는 이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

2. 5분 자유발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8조 개정(2005. 2. 28)에 의해 4분 자유발언이 5분 자유발언으로 개정되었다.

**1) 류재건 의원**

◎발언 일시 : 제55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2002. 9. 14)

◎건 명 : 의회에 대한 집행부의 자세 등에 관하여

◎발언 내용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류재건 의원입니다.

열악한 재정과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정 발전을 위해 혼신을 다하시는 이상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4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최근 의회와 집행부간의 몇 가지 이해 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어 발언하고자 합니다.

이미 지방의회가 생긴지 11년이 된 마당에 새삼스럽게 지방자치에 대하여 논하고 싶지는 않지만, 아직도 일부 공직사회에서는 지방자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결여되어 있는 것 같아 답답하고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현재 우리의 지방자치제도는 기관대립형으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의회의 주 역할이지만 때로는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를 위하여 협력하는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와 의회를 촉자는 양 수레바퀴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 의회의 분위기도 견제하고 감시할 것은 하되 협력할 것은 적극적으로 협력하자는 분위기였습니다.

이상범 구청장님께서 취임하시면서 말씀하신 취임사에서 지방자치시대에 의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견제와 감시를 충실히 해주시되 집행부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협력자로서의 역할도 부탁하셨습니다.

3대의회 개원축사에서 주요정책과 업무에 있어서 항상 의원님의 의견을 겸허히 수용하고 의회와 긴밀히 협조해서 지역현안들을 해결해 나갈 것을 천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일련의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실망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 3대 의회는 8명의 의원 중 6명이 초선의원입니다. 그래서 좀더 알찬 의정활동을 위하여 공부하겠다고 지난 9월3일에서 5일까지 국회까지 가서 연수를 받고 왔습니다.

이 계획은 이미 지난 8월 초에 확정이 되어 실시한 것입니다. 확인해 본 바 집행부에서도 사전에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 몇 개의 위원회가 열린 사실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를 않습니다.

물가위원회 9월 3일, 도시계획위원회 9월 5일, 보상심의위원회 9월 5일에 열려 해당의원보고 참석하라면 참석할 수가 있었습니까?

해당 의원님들은 나름대로 관심이 있어 각종 위원회에 위원위촉을 받아들였는데, 혹시나 의원이 참석하면 골치 아프니까 의원이 참석할 수 없을 때 열지는 않았는지 참으로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정례회 기간 중 공식회의석상에서 기획감사실장에게 개선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회기 중인 지난 9월 10일에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를 개최하였는데, 그것도 하루 전에 개최한다는 공문만 해당의원 책상에 두고 가 도저히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협력이란 것이 의회만 해야 하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동반자이며 협력관계를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번 정례회를 보면서 저는 우리 공직사회에도 뭔가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지난해 행위가 다 이루어진 결산안 심의라지만 의원질문에 정확한 답변이 안되어 서면제출로 대신하는가 하면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되어 답변준비로 정회소동이 벌어지는 등 의사일정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이 비일비재했습니다.



또한 결산서류 곳곳에 오류가 발견되는 등 너무도 준비가 소홀하고 성의가 없다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의회가 그리도 만만해 보이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는 집행부의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 의회차원에서 강력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의장단에게 엄중히 건의합니다.

그리고 이상범 구청장님께서도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잘 파악하여 이후 같은 사례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의회와 집행부간 원만한 관계유지로 지역발전에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류재건 의원

◎발언 일시 : 제5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2002. 11. 25)

◎건 명 : 북구지역 화장장 유치 계획에 관하여

◎발언 내용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효문동 출신 류재건 의원입니다.

금일 지역 언론을 통해 보도된 북구지역 화장장 유치와 관련하여 착잡하고 허탈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북구지역에 화장장을 유치하겠다고 전임 구청장이 발표하였을 때 북구주민 대다수는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치러진 주민투표에서 86% 라는 압도적인 반대의사로 인해 당시 구청장은 주민들의 뜻을 겸허하게 수렴하겠다고 화장장유치 포기의사를 분명히 발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다시 신임 구청장이 화장장을 유치하겠다고 하는 것은 13만 북구 민들을 철저히 외면하고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북구지역에 대학을 유치하겠다는 빌미로 화장장을 유치한다는 것은 행정능력의 부재를 입증하는 것이며, 안하무인한 명분으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북구에는 구청장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과 광역의원, 그리고 주민의 대변자인 구의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언반구 한마디도 없이 독자적으로 구정을 이끌어 간다면 머지않아 주민들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경고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단체장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범 구청장은 지금까지 화장장 유치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주민들의 뜻을 받들어 행정을 이끌어 가주시길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3) 이재경 의원

◎발언 일시 : 제64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2003. 7. 7)

◎건 명 : 지방자치시대 집행부의 역할

◎발언 내용

평소 존경하는 김진영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농소1동출신 이재경 의원입니다.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가진 울산 북구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과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상범 구청장님과 여러 공무원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한경쟁의 글로벌 시대에 지방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2003년 올해도 새로운 대통령 취임과 함께 최대의 화두 또한 '지방분권'일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지 10여 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제도적으로나 우리들 의식 속에 자율과 자치의 개념이 자리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중앙정부 차원에서 또 각 지방의회나 시민단체 차원에서 지방정부의 권한강화 및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이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주민의 봉사자이자 최고의 행정서비스 제공자인 공무원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4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것은 변화하는 작금의 현실 속에서 집행부가 아직까지 기존 행정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향후 주민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서비스와 계획성 있는 행정을 펼칠 것을 주문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특히 이번 200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집행부의 안일한 준비자세와 무계획적이고 소극적인 행정태도에 대해 주민 대표자의 한사람으로서 심히 걱정과 우려스러움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주민에게 신뢰를 주는 행정을 펼쳐 주십시오.

작년 말 2003년도 당초예산 심의시 2003년 소방도로개설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승인하였는데, 본 의원도 집행부의 추진계획을 믿고 동주민들에게 홍보를 한 상태입니다만, 이번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니 이에 대한 추가 소요되어야 할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분명 집행부와 의회 그리고 주민과의 신뢰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은 집행부와 해당 동 의원의 말을 믿고 계획대로 추진되리라 생각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한 사전 충분한 설명도 없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이 한심하기만 합니다.

진정한 지방자치는 모든 공직자가 주민을 우선 생각하는 마음가짐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권위주의 행정의 틀에서 벗어나 직접 발로 뛰며 주민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사전 설명을 통해 양해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한 행정방향이라 생각합니다.

둘째, 앞에서 언급한 사항과 같은 맥락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달라는 것입니다.

일본의 이즈모시 이와쿠니시장은 '행정은 최고의 서비스산업이다'라는 모토하에 주민을 고객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이고 감동을 주는 서비스로서의 행정을 주창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면 당초예산에 이미 반영되었던 상연암천과 마동천 정비공사 관련 예산이 집행부의 안일한 대처로 시비보조금을 확보하지 못해 당초예산 편성액 전부가 삭감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위에 언급된 사업들은 사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울산시의 관련부서 및 광역의원들에게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여 확보되어야 할 예산이었습니다.

만약 집중호우시 그 지역에서 안전사고라도 나면 누가 책임진단 말입니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의 행정은 이제 사라져야 합니다.

의회에서 힘들게 승인 해준 예산을 추경에서 삭감시킨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설사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사전에 이에 대한 해명과 사업추진이 불가함을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함에도 너무 안일한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셋째, 의회 답변시 사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준비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번 제1회추경에서 보듯이 예산안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준비 부족과 불성실한 답변으로 심의과정에 의원들의 혼란을 초래하였고, 이로 인해 예산이 삭감되는 사례가 여럿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립전예산의 사용 용도에 대한 신중성이 부족했다든지, 경상적경비가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못하고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집행부의 철저한 준비 부족을 증명하는 예라 하겠습니다.

공무원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13만 구민이 우리 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믿고 따를 것 아닙니까? 의안 심의시 준비 부족과 성실하지 못한 답변은 결국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자 주민을 무시위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더욱 철저한 준비와 연구하는 자세로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 가지를 언급하면서, 오늘 저의 발언이 북구 발전을 위해 그리고 지역주민을 위해 좀더 노력해 달라는 충정으로 이해해 주시고, 한편으로 북구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상범 구청장님과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묵묵히 열심히 일하시는 북구청 전 공무원에게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4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4)김재근 의원

◎발언 일시 : 제6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03. 9. 25)

◎건 명 : 집행기관 의혹 진상규명위원회 설치 요구건

◎발언 내용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본회의장에 참석해 주신 간부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농소2동 출신 김재근 의원입니다.

14호 태풍 '매미'가 전국을 강타해 온 국민을 고통속으로 몰아넣고 수많은 이재민들을 돕기 위한 국민적 힘을 모아가고 있는 지금 오늘 이 발언대에 서기까지 많은 시간 고민속에서 다소 선택에 문제가 있다하더라도 집행부의 비상식적인 운영과 의회와의 신의를 무시하고, 의회 위상을 실추시키는 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와 보다 철저하고 완벽한 조사를 통하여 13만 북구주민과 타 단체들이 가지는 의혹들을 하나하나 해소함으로써 '희망공동체 북구'를 건설하는 토대의 밑거름으로 삼고저 합니다.

늦은감이 있지만 바쁜 업무속에서도 '건강 지킴이'라는 도서출판 기념회를 가져 다른 동료 공무원들의 근무의욕 활성화와 북구청의 이미지 향상효과를 안겨 준 우한곤 민방위계장과, 이번 태풍에도 다른 공무원들 역시 주민의 재산과 안전을 위해 노력하였지만, 추석휴가 마저 반납하고 강동 해안 어민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공을 세운 손성익 수산계장에게 진심으로 격려를 보냅니다.

동료의원 그리고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97년 지방자치라는 주민참여 정치가 실시된 이후 혼란과 발전을 거듭해 오면서도 아직도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무사안일의 공무자세와 민주적 절차를 과장한 행정집행에 있어 우려를 넘어 불신과 탄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지난 임시회 때도 동료 이재경의원이 지적했던 것처럼 당초예산 집행이 주민들의 의견과 의회와의 약속과는 전혀 다르게 공무원들의 자기 편의적 계획과 발상으로 계획만 무성할 뿐, 실제 집행 결과로 나타나는 것은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비정규직지원센터설치지원조례안 심의과정에서 구청장이 의회와 한 약속마저 지키지 못하는가 하면, 공무원 증원 과정에서도 공무원 노조와 마찰을 빚는가 하면, 승진·전보발령 등 인사에 있어서도 바람직한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등 구청장의 권한 행사에 문제점을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혼란을 막기 위한 의회의 고민은 마치 간섭으로 치부하고 종합사회복지관, 문화예술회관 계약직 채용과정, 중산동자원화시설 업체선정 과정에서 일어난 의혹은 상식을 가진 주민이라면 이해하기 힘든 작태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면서 의회의 본래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다시 한 번 되새기게 합니다.

의장,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일련의 사안에 대한 사실 규명을 위해 조사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더 이상 열거하지 않겠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집행부가 의회의 견제와 합리적 협력의 동반자로서의 균형유지를 거부한다면 이로 인해 일어나는 차후 모든 책임은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의 몫임을 경고하는 바입니다.

늦게나마 집행부가 새로운 의회와 집행부의 균형을 원한다면 구청장은 과거 짧은 기간이나마 얻은 의정활동의 경험을 깨끗이 잊고,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집행의 동반자로서 인식하고 이후로는 의회를 터부시하는 행위를 삼가 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끝으로 새롭게 실천하는 집행부, 확실하게 주민에게 다가가는 의회가 태어나길 기대하며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5)김진영 의원

●발언 일시 : 제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06. 5. 2)

●건 명 : 효자 송도선생 정려비 이전에 관하여

●발언 내용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본회의장에 참석해 주신 간부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김진영 의원입니다.

열악한 재정과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북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구청장 권한대행 김광오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것은 우리 북구뿐 아니라 울산, 더 나아가 우리나라 역사상 효자로서 가장 이름이 높으신 효자 송도선생 정려비 이전과 관련하여 당초 세워졌던 우리 관내로 이전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의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효자 송도선생은 조선 세종 때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에 살았던 효자이자 울산지역 최초의 생원입니다. 병든 부모를 10여년 동안이나 정성껏 간호했으며, 1년 사이에 부모가 잇달아 돌아가시자 몸소 흙과 돌을 저다 무덤을 만들고 유교식으로 6년간 시묘살이를 하면서 정성껏 받들어, 이 사실이 나라에 알려져 표창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선생의 효성은 중국에까지 알려져서 명나라 신종으로부터 어제시와 홍문을 하사 받았으며, 효문(孝門)동이라는 마을이름도 이러한 사실에서 유래 한다고 합니다.

정려비는 본래 효문동에 있었으나, 임진왜란 때에 파손되었기 때문에, 영조13년에 다시 만들어 지금의 우정동에 세워진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 고장의 효자로서 이름을 드높인 송도 선생의 정려비가 당초 세워진 효문동이 아닌 중구 동현으로 이전 된다는 것이 저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사실입니다.

마땅히 지역문화재의 보존차원에서 당초 세워진 장소로 고증을 통하여 이전되든지, 효문동이라는 동명에 맞게 그 지역의 적당한 장소에 문화재가 이전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랑스러운 북구의 인물로 익히 알려진 송도선생의 정려비를 북구 지역에 이전한다면 문화복지 북구로써 주민의 자긍심 또한 한층 고조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집행부에서는 정려비가 중구 동현으로 이전되는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우리 지역 문화재는 우리가 손수 가꾼다는 마음으로 정려비 이전 문제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고심하여 정려비가 북구 지역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는 문화의 시대라고 합니다.

개발도 중요하지만 이제 우리 지역의 문화는 우리가 앞장서서 지키고 보존해야 합니다.

그러한 작은 노력이 북구 주민을 하나로 뭉치게 하고, 우리 지역에 대한 애향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봅니다.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라는 말도 있듯이 문화는 후손대대에 본보기와 교훈이 되어 우리 지역의 정신적 지주로써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문화북구로써 손색이 없고 북구 이미지 제고를 위해 송도선생 정려비는 당연히 북구 지역에 이전되어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그 넋을 기리고 우리 부모, 형제, 이웃과 나라에 대해 효 사상을 한층 발전·계승시키는 자리에 마땅히 우리 지역이 주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북구의회 의원이기 이전에 북구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랑스러운 북구의 역사 인물로 널리 알려진 송도선생 정려비가 북구 지역에 이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의 발언이 북구 발전을 위해 그리고 지역주민을 위해 노력해 달라는 충정으로 이해해 주시고, 한편으로 북구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구청장 권한대행 김광오 부구청장님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열심히 일하시는 북구청 전 공무원에게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3. 결의안

1)미군장갑차에 치인 두 여중생에 대한 결의안

가. 심의 경과

- 발의 일자 및 발의자 : 2002년 9월 11일(류인목 의원 외 4명)
- 심의일자 : 2002년 9월 14일(제55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

나. 제안 설명 요지

①제안 이유

- 미군 장갑차에 치여 숨진 두 여중생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및 공개사과 등 미국 정부의 성의 있는 사건 해결과 재발 방지를 촉구하기 위함

②주요 골자

- 주한 미군 통수권자 부시 미국 대통령은 이번 신호순, 심미선 양의 억울한 죽음에 대하여 그 유족과 한국 국민에게 공개 사과 요구
- 미2사단 측은 두 여중생의 유족, 산회단체 대표, 한국 수사기관 등과 공동진상조사단을 구성하여 정확한 진상을 밝힐 것
- 주한미군은 이번 사건의 공평한 재판을 위하여 미군범죄에 대한 형사재판 권한권 포기, 재발방지, 유족에게 신속한 배상, 불평등한 한·미 SOFA 전면개정 등을 신속히 실행할 것.

다. 심의 결과 : 원안 가결

라. 조치 사항 : 주한미국대사관 및 외교통상부에 결의문 이송

**2)이라크 전쟁 중단 요구 및 한국군 파병 반대 결의안****가. 심의 경과**

- 발의 일자 및 발의자 : 2003년 3월 28일(하인규 의원 외 2명)
- 심의 일자 : 2003년 3월 31일(제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나. 제안 설명 요지

- ① 제안 이유
 - 전쟁의 종식과 소중한 생명 보호를 위하여 미국의 이라크 전쟁 중지 요구 및 한국군 파병 반대를 촉구하기 위함
- ② 주요 골자
 - 미국의 이라크 침략 지원 및 한국군 파병 계획 즉각 철회 요구
 - 미국의 이라크 전쟁 복구비용 요구 단호히 거부
 - 국회의 한국군 미국의 이라크 전쟁복구 비용 요구 단호히 거부

다. 심의 결과 : 원안 가결**라. 조치 사항** : 청와대, 국회, 국방부 결의문 이송**3)NEIS(교육행정 정보시스템) 파동에 따른 결의안****가. 심의 경과**

- 발의 일자 및 발의자 : 2003년 7월 3일(김대영 의원 외 2명)
- 심의 일자 : 2003년 7월 7일(제6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나. 제안 설명 요지

- ① 제안 이유
 - 지금 교육부에서 당사자인 학생들의 인권을 무시한 채 법령에 근거도 없는 행정 편의를 위한 NEIS 시행을 강요하고 있음.
 - 이러한 무책임한 정책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사회적·정치적 약자인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NEIS 파동에 따른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함
- ② 주요 골자
 - 교육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즉각 수용하고 NEIS에서 교무/학사, 보건, 진(입)학의 3개 영역을 폐기, 분리하여 시행토록 촉구
 - 교육부는 현재 추진중인 교육정보화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있어서 교육의 목적과 학생 인권 옹호를 최우선 과제로하여 시행토록 촉구
 - 교육부는 단위 학교의 교무학사 업무추진 방식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구하기 전까지 일선 학교의 NEIS 시행 강요를 즉각 중지 촉구
 - 울산광역시 교육청은 시스템 결정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구하기 전까지 모든 학교의 NEIS 강행 기도를 즉각 중지하고, NEIS 이외의 업무에 대한 지원을 즉각 실시 촉구

다. 심의 결과 : 원안 가결**라. 조치 사항** : 국회, 교육인적자원부, 울산광역시교육청에 결의문 이송**4)공무원노동조합 노동3권 보장 입법 촉구 결의안****가. 심의 경과**

- 발의 일자 및 발의자 : 2004년 10월 25일(류인목 의원 외 2명)
- 심의 일자 : 2004년 10월 26일(제76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

나. 제안 설명요지

- ① 제안 이유
 - 복구의회는 노동자 주권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 전국 90만 공무원 노동자들의 적합한 노동3권 보장 요구, 공무원노동조합의 기능 활성화가 가질 공직사회의 개혁을 위하여 결의안 채택하고자 함.



② 주요 골자

- 정부는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법안의 제정을 둘러싸고 강경 일변도의 대응을 모색하고 있는바 어떠한 경우에도 대화로써 문제를 풀어 갈 것을 촉구함.
- 정부는 특별법 형태의 “공무원조합법” 입법발의를 취소하고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개정함으로써 공무원 노동자들의 자주적 단결과 단체행동, 단체교섭 등 노동3권 보장을 촉구함.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일동은 위의 결의가 우리 북구주민은 물론 전국 90만 공무원노동자와 양식있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으로 확신하는 것으로 판단하며 정부측에 성실한 대응을 촉구함.

다. 심의 결과 : 원안 가결

라. 조치 사항 : 국회, 행정자치부, 울산광역시 북구청,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울산지역본부 북구지부에 결의문 이송

5)수산자원보호령 개정촉구 결의안

가. 심의 경과

- 발의 일자 및 발의자 : 2004년 12월 15일(윤임지 의원 외 2명)
- 심의 일자 : 2004년 12월 20일(제7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나. 제안 설명 요지

① 제안 이유

- 수산자원보호령 제4조(특정어업의 금지 구역) 제4조 기선선인망 [기선권현망]어업금지구역의 별표4 제10호가 ‘울산 동구 방어동 울기등대에서 110도 2,000미터의 점’의 규정이 수십년간 그대로 유지돼 옴으로써
- 울산시의 광역시 승격, 어업활동의 제약 등 시대적, 환경적으로 큰 변화가 있어 왔지만 동령은 작금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우리구 어업인들의 경제적 손실과 어구훼손은 물론 자원 남획으로 지역어업인들과 기선권현망어업인들과의 잦은 마찰은 초래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북구의회는 지역별 형평성 및 어업환경변화에 따른 수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북구 지역 연안해상도 기선권현망어업의 조업금지구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수산자원 보호령 제4조의 개정을 촉구하고자 본 결의안을 채택함.

② 주요 골자

- 해양수산부는 입법당시 어업여건과 현재의 여건이 변화한 만큼 현실성 있게 수산자원보호령을 개정하여 영세한 우리구 연안어업인을 보호할 것을 촉구함.
- 2002년 11월 우리 구에서 동령 제4조 제4호의 별표4 제10호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연안에 대하여도 조업금지 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하여 「해양수산부 개정 시안」에 반영되었으나, 경남지역 지방 자치단체와 기선권현망수협과의 반발로 개정안에서 제외되었던 내용이 당초 요구안대로 개정되도록 촉구함.

다. 심의 결과 : 원안 가결

라. 조치 사항 : 국회, 해양수산부, 울산광역시 북구청에 결의문 이송

6)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 철회 촉구 결의안

가. 심의 경과

- 발의 일자 및 발의자 : 2005년 5월 26일(윤임지 의원 외 2명)
- 심의 일자 : 2005년 5월 27일(제82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

나. 제안 설명 요지

① 제안 이유

- 지난 3월 2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의결됨에 따라 기피대상이던 방사성폐기물처분 시설을 유치하려는 지방자치단체들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

- 급기야 지난 4월 2일 경주시의회에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및 원전유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주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한 본격적인 유치활동에 들어감으로 인해 울산시민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주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 철회 촉구에 따른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함

②주요 골자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동해안에 핵발전소 및 핵폐기장 단지화의 즉각적인 철회 촉구
- 핵폐기장과 핵발전소는 따로 뗄 수 없는 같은 사안임으로 편의에 따라 여부를 결정하지 말고 주민들의 의견을 가장 민주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주민투표 실시
- 정부는 지역주민과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간 경쟁을 부추겨 지역공동체를 파괴하고, 주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를 즉각 중단
- 한 세대의 잘못된 선택으로 우리 후손들이 대대로 핵 쓰레기장에서 두려움과 고통을 받으며 살아 가게 될까 심히 우려되므로 핵폐기물 관리·처분에 관한 장기로드맵을 작성하고 지역여론을 제대로 반영하는 열린 자세를 가져 줄 것을 강력 촉구.

다. **심의 결과** : 원안 가결

라. **조치 사항** : 국회, 행정자치부, 산업자원부,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의회, 경북 경주시, 경북 경주시의회에 결의문 이송

7)울산광역시 공무원노조 파업 징계 최소화 촉구 결의안

가. 심의 경과

- 발의 일자 및 발의자 : 2005년 12월 26일(김대영 의원 외 2명)
- 심의 일자 : 2005년 12월 27일(제86회 제2차 정례회 제18차 본회의)

나. 제안 설명 요지

①제안 이유

- 울산광역시북구의회는 지난 2004년 10월 26일 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과 노동조합과 정부의 대화에 의한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공무원노동조합 노동3권 보장 입법촉구 결의안」을 의결한 바 있음
- 공무원의 파업은 현실적인 법 아래에서 분명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도 인정하지만 수많은 하위직 공무원들이 엄청난 신분상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파업에 동참하여 그들이 무엇을 주장하려 했는지를 우리 모두가 곰곰이 생각해봐야 할 것임
- 따라서, 이번 사태에 대해 또 다른 문제의 불씨를 만들기보다 시와 구·군간 새로운 출발점이 되고, 공직사회의 화합과 갈등 해소를 위해 파업참가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를 최소화 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함.

②주요 골자

-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이 올바르게 보장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인식하고 이를 징계의 중요한 잣대로 삼길 바람.
- 울산시는 대승적 차원에서 파업참가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최소화하고, 울산시민을 위해 더욱 더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주길 바람
- 특히, 지도부에 대하여서도 그들이 사익이 아닌 공직사회의 개혁이라는 공익에 희생되지 않도록 징계를 최소화하길 바람.

다. **심의 결과** : 원안 가결

라. **조치 사항** :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의회, 울산광역시 북구청에 결의문 이송



4. 경주시 방폐장 유치 철회를 위한 의정 활동

- 2005년 5월 27일 : 제82회 임시회,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유치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윤임지 의원 외 2명 발의)
- 2005년 6월 13일 : 경주시와 경주시의회에 방폐장 유치 철회 촉구 결의문 전달
- 2005년 6월 29일 : 강동주민, 경주 방폐장 유치반대 쉼터 대회 참석
- 2005년 9월 5일 : 윤임지 의원 경주시 방폐장 유치 관련 울산 mbc와 인터뷰
- 2005년 9월 15일 : 경주시청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신청 관련 울산광역시 북구 선출직 공직자 기자회견(경주역)
- 2005년 11월 1일 : 방폐장 주민투표 중단을 촉구하는 울산지역 기자회견
- 2005년 11월 3일 : 방폐장설치의 원칙적 반대와 북구의 주민투표 무효·주민투표법 16조의 부당성을 주장 하는 기자 간담회 개최
- 2005년 11월 10일 : 경주 방폐장 유치 철회를 위한 울산대책위(준) 1차회의 개최
- 2005년 11월 11일 : 경주 방폐장 유치 철회를 위한 울산대책위 기자회견 및 간담회
- 2005년 11월 25일 : 경주 방폐장 유치관련 헌법소원 접수 전체 집행위원 회의 참석
- 2005년 11월 28일 : 울산대책위 경주 방폐장 유치 관련 헌법소원 접수 기자회견
- 2005년 12월 6일 : 윤임지 의원 방폐장 문제 관련 ubc와 인터뷰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 철회 촉구 결의문

정부는 울산근교에 이미 8기의 핵발전소가 가동되고 있음에도 추가로 6기를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6기를 계획하고 있어 만약 계획대로 밀어붙인다면 총 20기의 핵발전소가 들어서게 된다.

이것도 모자라 경주시의회에서 유치하고자하는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이 동해안 해안선으로 울산광역시와 인접해 있고 세계 수출의 전진기지이자 산업수도로서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도 우리 울산은 지난 30여 년간 공해도시의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이제 핵도시의 이미지 까지 덮어쓰게 될까 심히 우려됨으로 경주시의회는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지역여론을 제대로 반영하는 열린 자세를 가져 줄 것을 강력 촉구하는 바이다.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중·저준위 영구처분장과 사용 후 핵연료 중간저장시설물을 분리해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우선 추진하겠다는 발상은 과거부터 분리와 통합을 반복했던 정부추진 정책의 일환일 뿐이며, 본질적인 문제 해결과는 거리가 멀다. 핵폐기물 관리·처분에 관한 관리, 감독주체, 관련 법규, 재원, 연구기술이 미비한 상황에서 핵폐기장 부지만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다.

중앙정부가 고준위와 중·저준위를 분리, 건설기로 한 데다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유치에 따른 3,000억원의 정부지원과 한국수력원자력(주) 이전이라는 달콤한 인센티브로 지방자치단체간 갈등 조장으로 지역공동체를 파괴하려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과거 여러 가지 국책사업에 있어서 국민적 합의 없이 정부의 일방적 강행으로 빚어졌던 사회경제적인 혼란과 국력의 낭비 사례가 되풀이 되지 않기를 바라며, 지역공동체를 파괴하고 전국을 갈등과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는 현 정부의 정책을 강력히 규탄함과 동시에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미명으로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 활동중단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우리의 요구와 결의 〉

1.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동해안에 핵발전소 및 핵폐기장 단지화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2. 핵폐기장과 핵발전소는 따로 뗄 수 없는 같은 사안임으로 편의에 따라 여부를 결정하지 말고 주민들의 의견을 가장 민주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주민투표를 즉각 실시하라.
3. 정부는 지역주민과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간 경쟁을 부추겨 지역공동체를 파괴하고, 주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4. 한 세대의 잘못된 선택으로 우리 후손들이 대대로 핵 쓰레기장에서 두려움과 고통을 받으며 살아가게 할 수 없다. 정부는 돈으로 핵폐기장을 해결하려는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사업설명회를 즉각 중단하라.
5. 정부는 핵폐기물 관리·처분에 관한 장기 로드맵을 작성하고 지역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된 사회적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6.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일동은 14만 구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구민의 뜻을 받들어 후손들에게 가장 건강한 자연유산을 물려주기 위해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활동에 대한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하며,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유치를 막아내기 위해 가능한 방법을 모두 동원해 저지활동을 펼칠 것을 결의한다.

2005년 5월 27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5. 울산국립대학교 북구 유치를 위한 의정 활동

울산국립대학교 북구 유치를 위한 의정활동은 다음과 같다.

- 2005년 12월 13일 : 국립대학교 북구 유치 추진단 창립총회 개최
- 2005년 12월 15일 : 국립대학교 북구 유치 추진단 임원 회의
- 2005년 12월 15일 : 울산국립대학교 북구 유치 추진단 기자 회견
- 2006년 1월 4일 : 국립대학교 북구유치 기자 회견 및 결의 대회

『울산국립대학교』 북구 유치 기자 회견문

우리 북구는 시가 추진하고 있는 「혁신도시」 및 「국립대부지 선정」에 대한 시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공정한 심사를 기대해 왔으나, 「혁신도시」가 중구로 확정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고 선정상의 문제점이 지적되는 등 평가의 공정성에 많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110만 울산시민이 염원해 왔던 「고속철도 울산역」을 “울주군”에 유치하여 역세권개발이 가시화되고 있고, 「혁신도시」의 경우 “중구”로 확정지어 명실상부한 중심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된 만큼 「울산국립대학교」는 “북구”에 건설하여 시가 추진하는 오토밸리, 모듈화단지 등을 연계한 산·학·연 클러스터(cluster) 집적화를 통하여 울산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극대화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국립대부지 선정」이 미래 울산 발전을 위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로 선정될 수 있기를 희망하며, 「왜, 북구인가?」라는 질문에 답하면서 북구가 최적지임을 울산시민들에게 알리고자 한다.



우리 북구는 먼저, 많은 가용 토지를 보유하고 있고 경제성이 뛰어나다

- 우리구에서 적극 추진되고 있는 농소1동의 창평지역과 농소3동의 상안, 달천지역은 많은 가용 토지와 함께 시가지와 인접하고 있으면서도 토지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 특히, 후보지 구비요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필수요건 뿐만 아니라 진입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거나 개설이 용이하여 현재 거론되고 있는 타 구·군 후보지보다 훨씬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둘째, 접근성이 뛰어나다

- 도시간선도로인 국도 7호선, 국도31호선과 산업로 배면도로, 동서외곽 순환도로 등 울산전역과 30분 이내에 연결되어 사통팔달의 도로망을 갖추고 있으며, 부산~울산~포항간 고속도로와 산업도시고속도로가 통과하여 주변도시와의 접근성이 용이하다.
- 그리고 유일하게 울산공항이 입지하고 있고, 동해남부선(부산~포항)복선전철화가 진행 중이며, 고속철도 울산역 ~ 북구 효문역까지 경철역 개통이 예정되어 있어 시민들의 접근성이 우수하다. 이와 같이 북구는 항공과 도로, 철도, 경전철 등 광역교통망을 두루 갖추고 있으며, 다양한 교통수단을 이용한 접근성이 매우 뛰어난 지역으로 대학 유치의 최적지이다.

셋째, 무한한 발전가능성이다.

- 북구 전역은 각종 개발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기반시설의 확충 및 설치여건이 용이하며 부대비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고 대학설립과 동시에 대학 배후도시의 성장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장점을 갖추고 있다.
-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오토밸리조성사업과 모듈화단지 등이 조성되어 있어 21세기 대학이 추구하는 산·학·연 협동체제가 이루어지기 쉽고, 대학의 연구와 산업현장에서 축적된 기술 그리고 혁신도시의 연구기관이 상호 연계하여 울산의 잠재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넷째, 낙후된 지역의 균형발전이 필요하다

-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에 반하여 울산에 「국립대 신설」이 가능했던 것은 지역의 균형발전 때문이다. 그런 관점에서 국립대가 우리 북구에 선정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가진다.
- 넓은 면적에 비해 저개발에 따른 주민생활의 불편, 낮은 재정자립도 등은 지역균형발전과 형평성 차원에서 반드시 북구에 건설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울산시 전역의 상호보완적 균형발전을 기대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우리 북구는 많은 가용부지와 경제성, 우수한 접근성, 발전 가능성, 울산의 균형발전 등으로 「울산국립대학교설립후보지선정위원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후보지 구비요건’을 두루 갖춘 대학설립의 최적지임을 울산시민들에게 밝힌다.

그리고 북구주민의 입장을 대변하고자 「울산국립대 북구유치 추진단」을 구성하여 울산시민들에게 이를 적극 홍보하고 그 당위성을 알릴 것이며, 마지막으로 「국립대부지 선정」이 울산시민들에게 공개된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결정되기를 당부하고자 한다.

2005년 12월 1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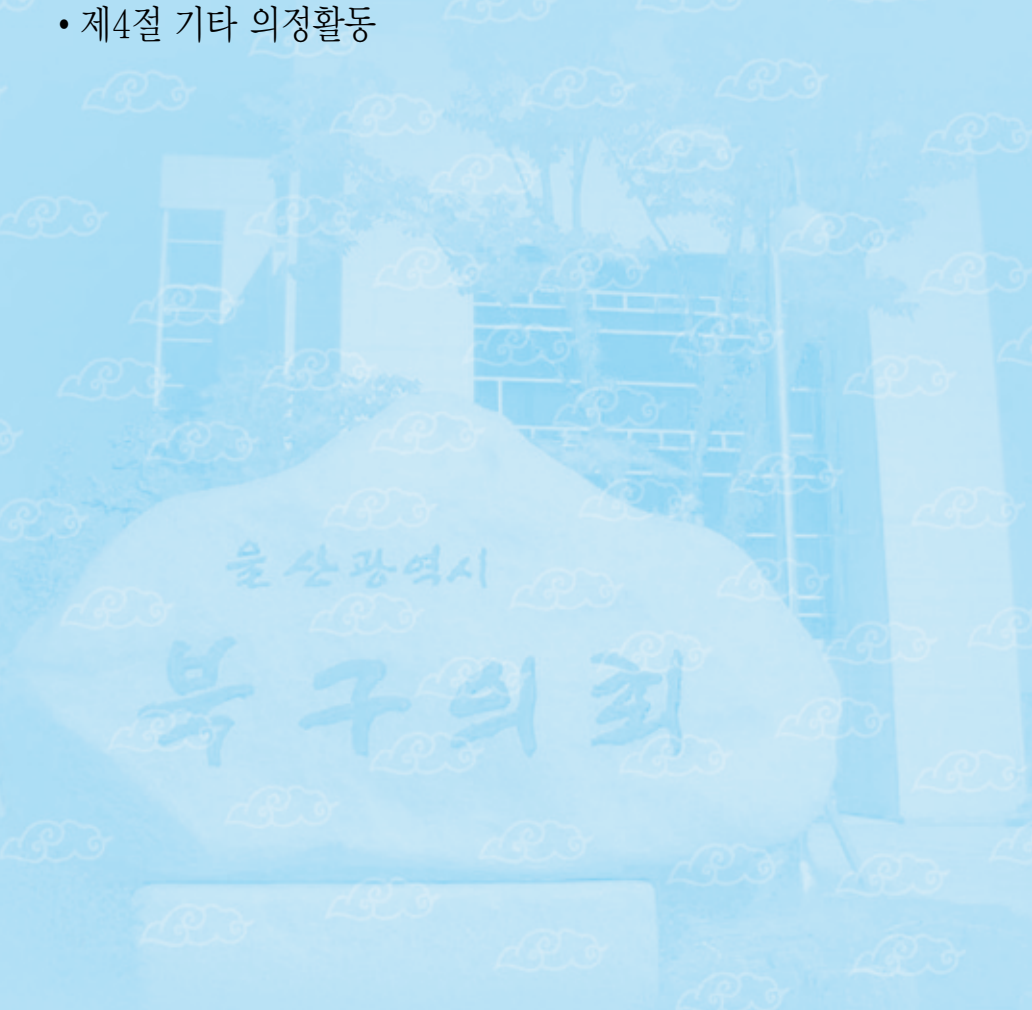
울산국립대학교 북구 유치 추진단 일동
공동대표 이병우 북구문화원장
하인규 북구의회 의장
강석구 시의회 내무위원장

제5장

제4대 북구의회 의정활동

2006. 7.1~2010. 6.30

- 제1절 원구성 현황
- 제2절 집회현황
- 제3절 행정사무감사
- 제4절 기타 의정활동



初心 成石 留石

본회의장
Plenary Session Hall



초심으로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는 의회





제4대 북구의회 임기는 2006년 7월 1일 ~2010년 6월 30일까지이다.

제1절 원구성 현황

1. 원구성

1)집회 공고

최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과장이 소집하도록 되어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 6월 27일에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과장이 집회 공고 하였다. 집회 일시는 2006년 7월 3일 10시로 공고하였다.

2)의장단 선거(제1차 본회의)

2006년 7월 3일 10시에 개최된 제9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재적 의원 7명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지방자치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자인 윤임지 의원의 사회로 먼저 의장 선거를 실시하고 당선된 류재건의장의 사회로 부의장을 선출하였다. 의장에 류재건 의원, 부의장에 윤임지 의원이 선출되었다.

3)개원식

개원식은 2006년 7월 3일 오후 2시에 북구의회 의사당 본회의장에서 북구의회 의원 7명과 강석구 북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공무원과 이상범 전 북구청장, 김성보 초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을 비롯한 전 북구의회 의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2. 제4대 의원 현황

1)의장 명단

선 거 구	성 명	생년월일	재임 기간	비 고
효문동, 양정동, 염포동	류 재 건	1961. 2. 5	2006. 7. 1 ~2010. 6. 30	전반기 의장

■부의장 명단

선 거 구	성 명	생년월일	재임 기간	비 고
농소1동, 강동동, 송정동	윤 임 지	1952. 10. 15	2006. 7. 1 ~2010. 6. 30	전반기 부의장

■의원 명단

선 거 구	성 명	생년월일	재임 기간	비 고
농소2동, 농소3동	문 석 주	1962. 8. 27	2006. 7. 1 ~2010. 6. 30	전반기 운영위원장
농소1동, 강동동, 송정동	박 병 석	1966. 9. 25	2006. 7. 1 ~2010. 6. 30	
농소2동, 농소3동	이 은 영	1966. 10. 16	2006. 7. 1 ~2010. 6. 30	
효문동, 양정동, 염포동	류 인 목	1961. 12. 30	2006. 7. 1 ~2010. 6. 30	
비례대표	이 영 희	1963. 7. 22	2006. 7. 1 ~2010. 6. 30	

▣ 의장단

효문동, 양정동, 염포동



의장 류재건

농소1동, 강동동, 송정동



부의장 윤임지

▣ 의 원

농소2동, 농소3동



문석주

농소1동, 강동동, 송정동



박병석

농소2동, 농소3동



이은영

효문동, 양정동, 염포동



류인목

비례대표



이영희

3. 제4대 북구의회 총평

- ◎2006년 5. 31 지방선거를 통하여 의원 7명이 당선되어 2006년 7월 3일 제90회 임시회에서 재적 의원 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의장단 선거를 실시하여 의장에 류재건 의원, 부의장에 윤임지 의원을 선출하였다.
- ◎제9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2006. 9. 11)에서 박병석 의원이 "연구하고 토론하는 북구의회로 거듭났으면"이라는 주제로 우리 의회가 우리 지역의 발전을 걱정하고 주민들을 위해 연구하고 토론하는 의회로 거듭나기를 건의하였으며, 집행부에 대해서도 공무원노조 사무실 폐쇄와 관련해서 노조와 발전적인 관계 모색을 주문하였다.
- ◎제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06. 10. 24)에서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구비를 재원으로하여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소요되는 교육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울산광역시 북구 교육 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하였다. 우리 구는 전체 아파트의 20% 정도가 임대아파트로써 임차인과 임대사업자간 주택관리규약 · 관리비 및 분양전환 가격 등에 대한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원만한 분쟁 조정으로 임대 주택을 효율적으로 관리 · 운영하기 위한 「울산광역시 북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의결하였다.
- ◎제9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06. 11. 28)에서는, 신개발지구인 명촌동에 향후 인구 증가에 대비한 주민의 접근이 용이한 문화센터를 건립하여 주민 정서 함양 및 여가 선용 등 다목적 공간 마련을 위한 「진장 · 명촌동 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의결하였다. 행정기관과 원거리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에게 문화 및 여가 활동 등 다목적 공간을 제공하여 주민편의 증진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다목적 미니구장 시설과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과 이용 주민 편의 제공을 위한 「중산동 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의결하였다.
- ◎제9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2006. 11. 29)에서는, 근로자와 사용자 및 행정과 구민 모두가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상생의 신노사 협력체제를 정착시켜 산업 평화와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울산광역시 북구 노사정구민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의결하였다. 우리 구의 경우 60%이상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거 형태임에도 공동주택단지가 사유지라는 이유로 행정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입주민들은 단독주택과 동일하게 공동주택의 시설공용물(도로, 하수도, 경로당 등)유지 보수에 대하여 지자체의 비용 부담을 요구하고 있고, 「주택법」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아파트 관리 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 관리 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여, 20세대 이상으로써 사용 검사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제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07. 2. 5)에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의결하여 매년 제2차 정례회시 실시하던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시 실시하여 집행부의 당초예산 편성 및 주요업무 계획 등에 감사 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 제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07. 4. 27)에서는, 주민생활 및 행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을 수립할 때 외부 전문가의 의견 수렴과 자문으로 시행착오를 예방하고 정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울산광역시 북구 21세기 구정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의결하였다.
- 제9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07. 5. 29)에서는 「평생교육법」제9조에 의하여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필요한 것을 배울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에게 평생학습 기회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과 지역사회의 경쟁력을 높이고 평생교육도시 조성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였으며, 제5차 본회의(2007. 6. 4)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중소 자영업자보호 대책의 일환으로써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를 해소하기 위해 「여신전문금융업법」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부과체계의 실질적 개정을 위한 입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여 관련 기관에 협조를 요청하였다.
- 2006년 11월 2일 "방폐장" 주민 찬반투표가 실시되어 경북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가 확정되어 우리 북구의회는 울산주민대책위(공동의장 김진영 의원, 윤임지 의원) 명의로 주민투표 평등권 위배, 환경권 침해, 재산권 침해 등의 사유로 1,134명의 청구인단의 서명을 받아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 2006년 11월 17일부터 본격적으로 의회 차원에서 방폐장 유치지원금 요구를 위한 "서명 운동"을 전개하여 전 동 동장과 통정회장의 협조를 받아 2만 1,059명의 서명을 받았으며, 2007년 1월 11일과 1월 18일 농소농협앞과 쌍용아진아파트 목요장터에서 의회의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홍보와 서명 운동을 전개하여 586명의 서명을 받았다. 또한 2007년 4월 7일 울산광역시 구·군의회 전의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롯데백화점 광장에서 대시민 홍보 활동과 서명 운동을 전개하여 총 1,417명의 서명을 받아 7월 15일 현재 2만 4,534명의 서명을 받은 상태이며, 향후 헌법소원 결과에 따라 서명 운동 결과를 정부 및 한국수력원자력(주)에 전달할 계획이다.
- 제4대 의회는 비록 1여년 남짓 의정활동을 수행해 왔으나, 여러 분야에서 주민들의 입장에서 의정활동을 전개해 왔으며 앞으로도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주민들의 성원에 보답할 것이다.

제2절 집회 현황

1. 집회 현황

구분	연도	정례회		임시회		합계	
		회수	회기일	회수	회기일	회수	회기일
제4대	계	3	62	6	31	9	93
	2006	2	40	3	12	5	52
	2007	1	22	3	19	4	41

2. 회기별 안건 처리 현황

회수	기간	일수	계	예산안	결산	조례안	통의안 (승인)	건의안	결의안	청원	보고	질문	기타
합계	-	93	104	4	2	46	10	0	1	0	5	1	35
소계	2006년도	52	59	3	1	25	7	0	0	0	3	0	20
제90회	06. 7. 3 ~ 7. 3	1	4										4
제91회	06. 7. 20 ~ 7. 28	9	6	1							1		4
제92회	06. 9. 11 ~ 9. 19	9	15		1	8	1				1		4
제93회	06. 10. 23 ~ 10. 24	2	9			5	1						3
제94회	06. 11. 27 ~ 12. 27	31	25	2		12	5				1		5
소계	2007년도	41	45	1	1	21	3	0	1	0	2	1	15
제95회	07. 2. 5 ~ 2. 14	10	12			6	1				1		4
제96회	07. 4. 26 ~ 4. 27	2	8			5							3
제97회	07. 5. 29 ~ 6. 4	7	10	1		3	1		1				4
제98회	07. 7. 2 ~ 7. 23	22	15		1	7	1				1	1	4

제3절 행정사무감사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1)감사 목적

2006년 자치구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2007년도 예산안 심사 및 각종 의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주민의 대의기관으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투명하고 주민 위주의 행정 수행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다.
(감사기간: 2006. 11. 30 ~ 12. 6(7일간))

2)감사 자료 제출 요구 현황

계	공 통	기 획홍보실	총무국	주민생활지원국	도 시경제국	보건소	의회사무과
258(건)	18	18	55	68	76	20	3

2.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1)증인 출석 및 감사 실시 현황

감사대상 부서	감사자료제출 건수	증인출석 인원	참고인출석 인원	주요감사실시 건수
계	258	29		258
공 통 사 항	18			18
기 획감사실	18	1		18
총 무 국	55	6		55
주민생활지원국	68	13(동장 8)		68
도 시경제국	76	7		76
보 건 소	20	1		20
의회사무과	3	1		3



2)현지 확인 감사

기간	현지 확인 감사 내용			비고
	현장확인 대상지	참석 대상	감사 내용	
2006. 12.2 ~ 12.3 (2일간)	•음식물자원화시설, 동천강 제전보, 장애인 보호작업장, 농소1동 도서관, 강동 해안가꾸 기 사업 현장, 불무천	• 의 회 : 전 의원, 사무직원 • 담당부서 : 환경미화과, 건설과, 복지서비스과, 문화 체육과, 생명산업과, 도시녹지과	• 대상 현장에 대한 현지 확인	

3)감사 결과 모범 사례, 시정 요구 및 건의 사항 현황

감사대상 부서	계	모범 사례	시정요구 사항	건의 사항
계	72		44	28
공 통 사 항	3		3	-
기획홍보실	8		7	1
총 무 국	22		9	13
주민생활지원국	14		9	5
도시경제국	21		14	7
보 건 소	3		2	1
의회사무과	1		-	1

3.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 평가

-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제36조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2007년도 예산안 심사 및 각종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주민의 대의기관으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투명한 주민 위주의 행정 수행을 도모 하고자 하는데 있다.
- 2006년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258건의 감사 자료를 제출받아 각종 정보와 자료를 폭넓게 활용하여 행정사무감사 본래의 목적인 집행부에 대한 통제와 견제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하였다.
- 감사의 방향은 구정 전반에 대하여 그동안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거론되었거나 문제점이 도출된 각종 사안들에 대한 적법성과 주민의 요구가 집행 과정에서 적극 반영되었는지에 대하여 검토,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 감사 실시 결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발전과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되었던 사항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채 반복되고 있었고, 주민을 위한 소신 있고 적극적인 업무 추진도 미흡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행정은 무엇보다 구민들에 대한 신뢰성이 우선되어야 하므로 예산 집행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되고 대안이 제시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개선책을 강구하는 등 행정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각종 사항별 감사 지적 사항으로는 총 72건이며 시정요구 사항 44건, 건의 사항 28건으로써 지적 사항은 타 업무에 우선하여 조치하기 바라며, 그 처리 결과를 2007년 1월 31일까지 보고하기 바란다.

4.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

1)시정·건의 요구 사항 총괄

구 분		계				시정요구 사항				건의 사항			
		계	완결	추진중	처리불가	계	완결	추진중	처리불가	계	완결	추진중	처리불가
총 계		72	27	41	4	44	16	26	2	28	11	15	2
공통사항		3		3		3		3					
기획감사실		8	2	6		7	2	5		1		1	
총 무 국	소 계	24	11	10	3	10	5	4	1	14	6	6	2
	총 무 과	6	3	3		2	1	1		4	2	2	
	회계정보과	7	2	4	1	2		2		5	2	2	1
	지방세과	3	2	1		2	2			1		1	
	민원지적과	4	2		2	2	1		1	2	1		1
	환경위생과	4	2	2		2	1	1		2	1	1	
주 민 생 활 지 원 국	소 계	13	4	9		8	2	6		5	2	3	
	주민생활지원과	2	2							2	2		
	복지서비스과	3	2	1		2	2			1		1	
	문화체육과	4		4		3		3		1		1	
	환경미화과	4		4		3		3		1		1	
도 시 경 제 국	소 계	21	8	12	1	14	6	7	1	7	2	5	
	도시녹지과	3	2	1		2	2			1		1	
	경제교통과	3		3		2		2		1		1	
	건설과과	7	3	3	1	5	3	1	1	2		2	
	건축주택과	3	1	2		2		2		1	1		
	생명산업과	3		3		2		2		1		1	
	재난관리과	2	2			1	1			1	1		
보 건 소		3	2	1		2	1	1		1	1		

2)시정·건의 요구 사항 주요 처리 결과

《공통사항 시정 요구 및 건의 사항에 대한 직무교육 실시》

◎일시 : 2007년 1월 24일 15:00 ◎장소 : 구민대화의 방

◎대상 : 실·과·소 주무담당 차석(17명)

◎교육 내용

-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중 공통 지적 사항에 대한 직무교육 실시

**공통 사항(시정)**

▶시정·건의 요구 사항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사후 처리 철저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 처리 결과가 미흡한 실정임. 실제 개선되거나 처리되지 않은 사항이 완결로 처리된 경우가 많으므로 감사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 결과를 명확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전 실·과·소에서는 감사결과 지적 사항에 대해 다른 어떤 것보다 우선적으로 조치하여야 하며 계속 반복적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꾸준한 관리가 요망됨.

▶처리 내역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철저

- 실·과별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하여 연중 지속 사업은 “추진중” 사업으로 분류.
- 추진중 지적 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리 후 완벽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사후 관리 철저.

▶비 고 : 추진중

기획홍보실(시정 요구)

▶시정·건의 요구 사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내실화

◎주민참여예산제의 경우 각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 통정회 등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시급하고 꼭 필요한 사업을 선정하여 올리게 되는데 그 반영률이 저조함. 비록 우리 구 재정 형편상 모두 반영하기는 어려우나 구민들의 의견 수렴을 거친 사업이 우선 순위에서 뒤쪽에 있고 반영되지 않아야 할 것이 반영되는 등 문제가 있으므로 제대로 관리하여 운영에 내실을 기해주시기 바람.

▶처리 내역

◎의회 시정·건의 요구뿐만 아니라, 예산제도 변경에(항목별예산제도 사업예산제도) 따라 운영 방법의 개선이 요구됨.

◎2006년도 주민참여예산 운영 결과 보고를 위한 시민위원회 개최시 설문 조사 등을 통하여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 연구회를 통하여 새로운 예산 제도에 맞는 운영 계획 및 개선 방안을 마련.

◎2007년 2월 ~ 3월

- 결과 보고를 위한 시민위원회 개최 : 설문 조사 등 의견 수렴
- 주민참여예산연구회 개최 : 운영 방법에 대한 세부개선 방안 마련

◎2007년 4월

- 운영 계획 수립 및 필요시 조례개정안 수립 및 의회 제출

▶비 고 : 추진중

총무과(시정 요구)

▶시정·건의 요구 사항

주민자치센터 설치 목적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은 주민자치, 문화 여가, 주민 편의, 시민 교육 등 다양한 기능이 있으나 현재 문화 여가 기능의 역할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요구.

▶처리 내역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여 에어로빅, 요가, 헬스 등 일부 종목으로 한정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주민들이 다양하게 참여 할 수 있는 종목으로 확대 전환하겠음.

◎특히 1동 1특화사업 추진과 야간이나 주말, 일요일에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직장인, 학생, 주부, 노인 등 다양한 계층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강구하겠음.

▶비 고 : 추진중



회계정보과(건의 사항)

▶시정 · 건의 요구 사항

수의계약시 관내업체 계약 확대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총99건으로 이중에 관내 사업 계약 건수는 9건으로 극히 저조한 실정임. 관내 사업장에 대해서는 동종의 업종일 경우 우선적으로 계약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

▶처리 내역

◎소액 수의견적 입찰을 제외한 수의 계약은 추정 가격 1,000만원 이하의 공사로 대부분 전문건설업에 해당함. 전문건설업 분포 현황은 울산 전체 894개 등록업체중 북구소재 업체는 35개로 등록업체가 타 구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으나 지속적으로 북구업체와 우선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음.

2006년 10월 ~ 2007년 1월 25일 : 총50건중 14건, 북구업체 계약율이 28%임

▶비 고 : 추진중

환경위생과(건의 사항)

▶시정 · 건의 요구 사항

학교 앞 유해환경 단속을 위한 제도 개선

◎학교 인근 유해환경 단속 요망.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식품 첨가물 관련법 개정 요구

▶처리내역

◎2006년 12월 14일 ~ 15일 양일간 학교 앞 문구점, 슈퍼 등 어린이 기호식품 취급업소 33개소 지도 점검

◎7개소에 대하여 현지 시정 조치(불법게임기 철거)

◎법령개정안에 대한 의견 조희시 개정 요구 건의

▶비 고 : 추진중

복지서비스과(건의 사항)

▶시정 · 건의 요구 사항

장수수당 지급 대상자 확대 방안 강구

◎“노인이 살기 좋은 북구” 건설을 위하여 전국에서 두 번째로 장수수당 지급을 도입하였으나, 지금은 다른 지자체에 비하여 수혜폭이 적음. 현행 90세 이상의 지급 연령을 확대하는 등 수혜자 확대 방안을 강구 바람.

▶처리 내역

◎우리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한 지급 대상자, 지급 금액 등 수혜자 확대 방안을 강구하여 2007년 상반기 중 장수수당 지급 조례를 개정 · 시행하고자 함.

▶비 고 : 추진중

문화체육과(시정 요구)

▶시정 · 건의 요구 사항

청소년 체육활동장 관리 철저

◎청소년 체육활동장의 이용자가 대부분 일반인인 것을, 당초 취지대로 청소년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일반 이용자의 고성방가 등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에 대한 불편 사항을 해소 바람.

▶처리 내역

◎청소년활동장 사용을 일반인보다 청소년이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접수에 철저를 기하고 있음.

◎인근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신청서에 명기하도록 하고, 접수 시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 금지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음.

▶비 고 : 추진중

환경미화과(시정 요구)

▶시정·건의 요구 사항

불법 쓰레기 투기 단속카메라 운영 방법 개선

-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위한 감시카메라 운영과 관련, 카메라를 한 방향으로만 감시하도록 하여 단속 효과가 떨어지고 있는 만큼 수시로 방향을 바꾸어 실질적인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예방적 효과도 중요하지만 일정한 시점이 지나면 쓰레기 불법투기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 조치를 취하는 것이 오히려 생활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므로 시정 요구함.

▶처리 내역

- ◎감시카메라를 통한 불법투기자의 인적 사항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과태료 부과에 앞서 증거물 확보에 어려움이 많음.
- ◎감시카메라를 통해서 투기자를 적발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중에 있으며 주·야간 경고 방송이나 안내 방송을 통해 불법투기 근절에 만전을 기하겠음.
- ◎수시로 방향을 바꾸는 등 감시카메라의 탄력적 운영에도 최선을 다하겠음.

▶비 고 : 추진중

경제교통과(시정 요구)

▶시정·건의 요구 사항

석유 판매업소 단속 강화

- ◎석유판매업소에서 정량 미달이 되는 말통으로 양을 속여 판매하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으므로, 판매 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을 강화하여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 바람.

▶처리 내역

- ◎비법정 계량 단위 및 용기 사용 지도 단속 계획 통보
 - 주유소 : 30개소
 - 일반판매소 : 5개소
- ◎계량기 수리(수시)검정 시 비법정 용기 사용 여부 지도 단속 추가 실시
 - 판매업소에 대해 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4항에 의거 고발 조치
- ◎석유판매업소 시료 채취 및 가격 표시 단속시 비법정 용기 사용 여부 단속 실시 (연중)
 - 관계 규정에 의거 고발등 조치
- ◎1년 2회 비법정 계량단위 용기(말통) 배달업소 일제단속 실시

▶비 고 : 추진중

건설과(시정 요구)

▶시정·건의 요구 사항

- ◎공사 완료 후 현장을 보면 공사장 자재 방치, 철근 콘크리트 노출, 청소 등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임. 도로 굴착공사 후 굴착된 부분과 기존 도로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최소화 할 것이며, 도로굴착에 대한 실명제 운영에 있어서도 공사명, 공사 기간, 시공자 등을 명확히 표시, 구민 불편을 최소화 할 것을 시정 요구함.

▶처리 내역

- ◎건설공사 현장 뒷마무리 미흡에 대하여 관계기관(상수도 북부사업소, 경동도시가스, 한국전력 등)에 시공 철저 및 보수를 지시하였음.

- ◎2007년 1월 15일 ~ 1월 19일(5일간)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미비된 사항에 대하여 재보수할 것을 지시함.
- ◎향후 지속적인 관리로 도로굴착과 관련한 구민 불편 사항이 없도록 하겠음.
- ▶비 고 : 완결

생명산업과(시정 요구)

- ▶시정 · 건의 요구 사항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활동 강화

- ◎우리 구 관내 67농가에서 4만 500마리의 닭과 오리를 사육하고 있음. 대규모 사육농장의 경우 자체적으로 방제를 하고 있으나 소규모 농장은 그렇지 못한 형편으로 가축방제단을 적극 활용하여 방제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 ▶처리 내역
- ◎공동방제단 5개반 11개팀을 편성하여 동별 소규모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소독 방역을 실시하고 있음.
- ◎9월~12월까지 8회 소독 방역 실시 하였으며, 농가에 소독 약품을 배부하여 자가 방역 활동도 병행중임.
- ◎2월말까지 지속적인 방역과 예찰 활동을 실시하겠음.
- ▶비 고 : 추진중

보건소(건의 사항)

- ▶시정 · 건의 요구 사항

보건소 장애인 편의시설 점검

- ◎보건소 장애인 화장실의 경우 1, 2, 3층 모두 점등이 되지 않고 있으며, 층별 비상키는 갑작스런 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처리내역
- ◎장애인 화장실 점등시설 교체 완료
- ◎층별 비상키는 사무실 열쇠 보관함에 보관
- ▶비 고 : 완결

5.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1)감사 목적

2007년 자치구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각종 예산안 심사 및 의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주민의 대의기관으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 시정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투명한 주민 위주의 행정 수행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다.

감사 기간 : 2007년 7월 11일 ~ 7월 20일, (실제감사기간 - 7일간)

2)감사 자료 제출 요구 현황

계	공 통	기획홍보실	총무국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경제국	보건소	의회사무과
344(건)	17	21	66	95	120	22	3



6.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1)증인 출석 및 감사 실시 현황

감사대상 부서	감사자료제출 건수	증인출석 인원	참고인출석 인원	주요감사실시 건수
계	344	29		344
공통사항	17			17
기획홍보실	21	1		21
총무국	66	14(동장 8)		66
주민생활지원국	95	5		95
도시경제국	120	7		120
보건소	22	1		22
의회사무과	3	1		3

2)현지 확인 감사

기간	현지 확인 감사 내용			비고
	현장확인 대상지	참석 대상	감사 내용	
2007. 7.13 (1일간)	• 공공도서관, 보리수 어린이집, 7765부대 2대대, 숲속 어린이집, 명춘천	• 의 회 : 전 의원, 사무직원 • 담당부서 : 건축주택과, 문화체육 과, 복지서비스과, 총무과, 건설과	• 대상 현장에 대한 현지 확인	

3)감사 결과 모범 사례, 시정 요구 및 건의 사항 현황

감사대상 부서	계	모범 사례	시정요구 사항	건의 사항
계	110		77	33
공 통 사 항	5		4	1
기획홍보실	6		6	-
총 무 국	27		17	10
주민생활지원국	27		20	7
도시경제국	41		27	14
보 건 소	3		3	-
의회사무과	1		-	1

7.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 평가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각종 예산안 심사 및 각종 의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주민의 대의기관으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투명한 주민 위주의 행정 수행을 도모 하자는데 있다.

- ◎2007년 7월 11일부터 7월 20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344건의 감사 자료를 제출 받아 각종 정보와 자료를 폭넓게 활용하여 행정사무감사 본래의 목적인 집행부에 대한 통제와 견제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하였다.
- ◎감사의 중점 방향으로 구정 전반에 대하여 그동안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거론되었거나 문제점이 도출된 각종 사안들에 대한 적법성과 주민의 요구가 집행 과정에서 적극 반영되었는지에 대하여 검토하여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 ◎감사를 실시한 결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발전과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되었던 사항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때 아직도 주민을 위한 소신 있고 적극적인 업무 추진이 미흡한 것으로 짐작된다. 행정은 무엇보다 구민들에 대한 신뢰성이 우선되어야 하므로 예산 집행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 된다.
-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 되고 대안이 제시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개선책을 강구하는 등 행정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각종 사항별 감사 지적 사항으로는 총 110건이며 시정 요구 사항 77건, 건의 사항 33건으로서 지적 사항은 타 업무에 우선하여 조치하기 바라며, 그 처리 결과를 2007년 8월 31일까지 보고하기 바란다.

8.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

1)시정 · 건의 요구 사항 총괄

구 분		계				시정요구 사항				건의 사항			
		계	완결	추진중	처리불가	계	완결	추진중	처리불가	계	완결	추진중	처리불가
총 계		110	51	57	2	77	33	44	0	33	18	13	2
공통사항		5	0	5	0	4	-	4		1	0	1	0
기획감사실		6	1	5	0	6	1	5					
총 무 국	소 계	26	13	13	0	17	6	11	0	9	7	2	0
	총 무 과	4	1	3	0	3	1	2		1		1	
	회계정보과	9	7	2	0	4	2	2		5	5		
	지방세과	2	0	2	0	2		2					
	민원지적과	4	2	2	0	2		2		2	2		
	환경위생과	7	3	4	0	6	3	3		1		1	
주민생활지원국	소 계	28	16	11	1	20	11	9		8	5	2	1
	주민생활지원과	6	5	1	0	4	3	1		2	2		
	복지서비스과	9	5	4	0	7	3	4		2	2		
	문화체육과	9	4	4	1	7	4	3		2		1	1
	환경미화과	4	2	2	0	2	1	1		2	1	1	
도시경제국	소 계	41	18	22	1	27	12	15	0	14	6	7	1
	도시녹지과	8	1	7	0	6	1	5		2		2	
	경제교통과	9	3	6	0	4	2	2		5	1	4	
	건설과	10	3	6	1	8	3	5		2		1	1



구 분	계				시정요구 사항				건의 사항			
	계	완결	추진중	처리불가	계	완결	추진중	처리불가	계	완결	추진중	처리불가
도시경제국	건축주택과	8	6	2	0	4	2	2		4	4	
	생명산업과	4	4	0	0	3	3			1	1	
	재난관리과	2	1	1	0	2	1	1				
보 건 소	3	3			3	3						
의회사무과	1		1						1		1	

2)시정·건의 요구 사항 주요 처리 결과

《공통 사항 시정 요구 및 건의 사항에 대한 직무교육 실시》

- 일시 : 2007년 8월 30일 15:00
- 장소 : 구민대화의 방
- 대상 : 실·과·소 주무담당 차석(17명)
- 교육 내용
-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중 공통 지적 사항에 대한 직무교육 실시

공통 사항(시정)

▶시정·건의 요구 사항

체납 정보 공유를 통한 체납세 확보 노력

- ◎체납 정보가 각 부서별로 관리되고 있어 체납자에게 인·허가를 해주는 사례, 토지보상금 지급 등 불합리한 점이 있음. 금융기관처럼 정보온라인을 구축한다면 인·허가 시 고질적 체납자를 조회하여 인·허가 등을 제한할 수 있고 체납세 징수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처리 내역

- ◎시스템 구축은 신규 시책의 일환으로 추진중임(회계정보과)
 - 사업기간 : 2008년 1월~3월
 - 주요 내용 : 지방세와 세외 수입 체납 내역 통합 조회 의뢰
 - 체납 확인시 담당자 PC에서 즉시 납부고지서 출력 등
 - 활용 대상 : 민원업무 (인·허가, 신고, 제증명)
- ◎인·허가시 체납세 조회를 통하여 관허 사업 제한을 실시하고 있음.
 - 지방세법 제40조 관허 사업의 정지·취소

▶비 고 : 추진중

기획홍보실(시정 요구)

▶시정·건의 요구 사항

내실 있는 대형공사 구민감시관제 운영

- ◎5억 이상의 대형공사의 경우 구민감시관을 임명하여 공사를 감시하고 있는데 이들이 실질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감시관들에 대하여 매뉴얼을 만들어 교육하면 감시관제가 본래의 기능대로 운영될 수 있을 것임.

▶처리 내역

- ◎전 실·과·소·동에 「대형공사 구민감시관제도 시행 철저」공문을 발송하여 구민감시관 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당부(2007. 7. 12)
- ◎대형공사 구민감시관 위촉 통지시 구민감시관제도 안내문을 활용하여 감시관의 역할과 처리 절차 및 활동 사례 등을 교육(2007. 7. 23)

▶비고 : 추진중



총무과(시정 요구)

▶시정 · 건의 요구 사항

주민자치위원회 여성 참여 비율 확대

◎각종 주민자치위원회 남 · 여 구성 비율을 보면 여성 비율이 저조한 실정임. 여성 참여 비율이 적은 4개동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참여 비율을 높여나가야 할 것임.

▶처리 내역

◎여성 참여 비율 확대에 따른 조치 계획 시달 : 2007년 8월 2일

- 지속적으로 여성위원 위촉 확대(남성위원 해촉시, 임기만료시, 적임자 발굴시)
- 해당동 : 농소3동, 강동동, 송정동, 양정동

▶비고 : 완결

회계정보과(건의 사항)

▶시정 · 건의 요구 사항

수의계약시 관내업체 계약 확대

◎수의계약 공사의 경우 우선적으로 우리 구 소재 업체에 맡기는 것이 지역업체의 경쟁력 향상과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지역업체와 우선적으로 수의계약을 하기 바람

▶처리 내역

◎수의계약은 추정가격 1,000만원 이하의 공사로 대부분 전문건설업에 해당되며, 울산 전체 940개 등록 업체 중 북구 소재 업체는 27개로 등록업체가 타 구 · 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실정이지만, 수의계약이 가능한 우리 구 소재 업체와 우선 계약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우선적으로 계약토록 하겠음.

▶비고 : 완결

지방세과(시정 요구)

▶시정 · 건의 요구 사항

고액 납세액 고지 방법 다양화

◎30만원 이상의 고액 고지서의 경우 등기로 발송하고 있으나 납세자가 등기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본인의 납부 의지와는 상관 없이 납부 기한을 넘겨 증가산금을 납부하게 되므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처리 내역

◎고지서는 일반 또는 등기우편으로 송달하고 있으며,

◎최근 맞벌이부부 증가 등으로 주간 등기우편물 전달에 애로가 많고 부전지 부착 및 2회 전달시도 후 반송될시 주소이전 확인 재 송달.

◎납기한 전 미송달 건에 대해 거소 유무, 연락처 등 소재 파악을 보다 철저히 하여 재차 전달후, 공시 송달 절차 이행.

▶비고 : 추진중

민원지적과(시정 요구)

▶시정 · 건의 요구 사항

건물번호판 관리 철저

◎건물번호판의 경우 아크릴판으로 제작되는데 본 사업이 시작된지 오래되어 탈색된 곳과 훼손된 곳이 많아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시 · 공고 후에는 건물주가 교체해야 하므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교체 되도록 조치 바람. 또 부착시에는 떨어지지 않도록 반영구적으로 부착 바람.



▶처리 내역

◎탈색, 훼손, 착오 부착 등 일제 조사 결과에 따라 연내 조치 계획

- 구 홈페이지 게재 안내
- 각종 회의시 주민신고, 또는 전화 접수시 일괄 조치 계획(연내)

▶비고 : 추진중

환경위생과(시정 요구)

▶시정 · 건의 요구 사항

마을상수도 내 지방상수도 인입을 위한 방안 강구

◎마을상수도 44개소 중 15 개소에 상수도 설치되었으나 인입 기피로 관리 예산과 인력 낭비 요인이 있으므로 지원 중단 필요.

▶처리 내역

◎지방상수도 인입 지역내 급수 신청을 기피하는 이유는 100만원 내외의 급수 신청 비용과 수도 사용료 부담, 또한 주로 연령이 높은 독거가정이 대부분인데서 찾을 수 있음. 따라서 수질이 양호한 이상 일방적인 폐쇄조치는 불편을 가중 시킬 수 있으며 현재 상수도 인입 지역의 지원은 없는 상태임. 향후 급수 신청토록 지속적으로 지도 및 홍보할 것임.

▶비고 : 완결

주민생활지원과(시정 요구)

▶시정 · 건의 요구 사항

소외 계층에 대한 대민 서비스 활동 강화

◎2006년 7월 1일자 8대 서비스 강화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조직개편이 이루어짐으로써 사회복지직이 4명 증원되었음. 동사무소 사회복지직의 경우 직원 혼자서 동 전체의 사회복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대민서비스에 앞서 행정업무만도 벅찬 실정임. 행정업무를 줄이고 대민서비스에 주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 바람.

▶처리 내역

◎동 사회복지직 대민서비스 주력

- 2006년 7월 1일 조직개편 이후 8대서비스 강화로 사회복지직이 4명 증원되었고, 동사무소의 경우 종전에는 사회복지직 1명이 복지업무를 담당하였으나 2006년 7월 1일 직제 개편 이후 동사무소의 복지업무 담당자를 2명(사회복지1, 행정1)으로 증원,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음.

▶비고 : 완결

복지서비스과(시정 요구)

▶시정 · 건의 요구 사항

보육시설 지도 · 점검 강화

◎농소3동에 위치한 H어린이집 원아 사망 사건과 잇따른 어린이집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 지도 점검을 강화하되 한번에 모든 시설을 점검하기보다 나누어 꾸준히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되풀이 되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중과 처분하여 앞으로는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할 것임

▶처리 내역

◎2007년 7월 12일 ~ 7월 23일까지 10일간 20개 시설에 하절기 급식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2007년 7월 13일 지도 · 점검 강화 계획을 수립하여 정기 및 상시 지도 · 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음.



○학부모 모니터링단 구성을 추진하는 등 향후 이러한 사건·사고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강화하고 있음.

비고 : 추진중

문화체육과(시정 요구)

▶시정·건의 요구 사항

공공도서관 건립에 따른 보완 대책 강구

○건립 현장의 안내표지판 (조감도)등이 잘보이도록 조치 바람

○3층 성인열람실이 체육공원과 접해 있어 소음 최소화 대책 마련.

○주차 대수 14면으로 부족한 바 확보 방안 마련.

▶처리 내역

○공사장 안내표지판 설치 : 2개소

- 주출입구 좌측 : 1개소(조감도 포함)

- 게이트볼장 주변 : 1개소

○도서관 전체 유리는 22mm 복층 유리(커튼월)로 시공하여 방음 효과 및 기밀성이 확보됨.

향후 기존 조정수 이식때 열람실 부근에 수벽으로 밀식 식재 예정임.

○현행 법령상 시설이 공원 면적의 20%를 초과할 수 없어 도서관 부지내 추가 설치 불가능.

○도서관 주변 무료주차장이 73면이 있음. 향후 주변 지역 공한지 등을 조사하여 주차장 조성 방안 강구.

▶비고 : 추진중

환경미화과(건의 사항)

▶시정·건의 요구 사항

재활용 위탁업체 계약 방법 개선

○상반기 재활용 분리 문제는 시에서 받아주지 않아 발생하였음. 정책의 변화로 재활용이 40%이상 늘어났음에도 당초 계약된 금액으로 지급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으므로, 만일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이 없다면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여 도와줄 수 있도록 조치 바람.

▶처리 내역

○재활용 위탁업체 계약 방법 개선

- 「북구 재활용품선별 위탁관리계약서」제5조(위탁 대행료), 제16조(의무 및 준수 사항)에 의하여 당초 계약된 금액은 변경될 수 없고, 2008년도 위탁계약시 물가 상승률 등 사정 변경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금액으로 계약토록 하겠음.

단, 수탁업체에서 행정적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에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음.

▶비고 : 완결

도시녹지과(시정 요구)

▶시정·건의 요구 사항

양정동 송전철탑 복구 공사 하자 보수 실시

○송전철탑 복구 공사 관련하여 규격 미달, 고사, 목책쌓기 미 실시 및 설계 내역과 불일치하는 등 하자·관리 감독이 허술한 상황에서 준공 처리.

○하자 발생 부분에 대해 관계 기관에 조속한 보수 요청 및 완전복구 조치.

▶처리 내역

○2007년 3월 6일~4월 23일까지 한국전력공사 신울산전력소에서 복구 공사를 실시하여 복구 준공 검사를 신청하였으나, 현장 확인결과 복구가 미진하여 5월 15일자 보완 통지하였음.



◎2007년 5월 28일 보완 사항 완료 신청에 따른 현장 확인을 통해 6월 1일자 준공 검사 필증을 교부 하였으나, 7월 19일 하자발생이 발견되어 한국전력공사 신울산전력소에 보완을 통지하였음.

◎8월 17일 하자 복구 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 9월중 하자 복구 공사 실시.

▶비고 : 추진중

경제교통과(시정 요구)

▶시정 · 건의 요구 사항

유사석유제품 판매 행위 단속 철저

◎유사석유제품 판매로 인한 단속 실적을 보면 극히 저조한 실정임. 현실태를 보면 차량을 이용하여 이동 식으로 유사휘발유를 판매하는 행위가 목격되고 있고 고정식으로도 판매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요구됨.

▶처리 내역

◎유사석유제품 합동 및 자체 단속 실시

- 일 시 : 2007년 8월 3일, 8월 10일, 8월 17일
- 단속반 : 구청1, 중부경찰서1, 동울산세무서2, 한국석유품질관리원2
- 단속 결과
 - 판매 · 사용자 각 2명 적발
 - 유사석유제품 압수 : 52캔
 - 불법 입간판 1기 철거
- 조치 : 합동단속반인 중부경찰서에서 직접 처리

▶비고 : 완결

건설과(시정 요구)

▶시정 · 건의 요구 사항

◎철저한 공사 마무리 추진

▶처리 내역

음식물자원화시설 진입로 우수관로공사

- ◎음식물자원화시설 진입로 우수관로 공사후 마무리 공사는 배수로 측벽 마무리작업을 완료.
- ◎신상안교 하부 자전거 도로 훼손 부분은 호안 블럭 기초 콘크리트 타설작업 후 2007년 8월 30일까지 복구완료할 계획임.
- ◎호계 수동마을 우수 맨홀은 2007년 7월 18일 시행청인 울산광역시에 승고를 요청하였음.
- ◎대안마을 수해복구 요청 구간은 제방 안쪽에 돌망태가 기 시공되어 있어 공사구간에서 제외된 사항임.

▶비고 : 추진중

건축주택과(시정 요구)

▶시정 · 건의 요구 사항

◎목욕탕 굴뚝 안전 관리 철저

▶처리 내역

- ◎개인 시설물과 건축물등의 안전 점검과 안전 관리 등은 소유자의 책임이므로
- ◎구청은 목욕탕 굴뚝에 대하여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안전 조치 등을 실시하도록 행정 지도 계획.

▶비고 : 완결



생명산업과(건의 사항)

▶시정 · 건의 요구 사항

봄꽃전시회 활성화 방안 강구

◎봄꽃전시회의 경우 행사가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행정보다는 작목반이 위주가 되어야 하는데 쇠부리축제와 같이 행사를 함으로써 쇠부리에 묻혀 본 행사의 홍보나 작목반원들의 불만으로 참여가 저조하였음.

향후 쇠부리축제와 봄꽃축제가 공동으로 개최를 하더라도 행사 추진 주체들이 협의하여 원활한 행사 준비로 두 행사 모두 실익을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행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처리 내역

◎봄꽃축제만의 최대 효과를 위해서는 기간을 달리하여 봄꽃전시회를 7일전에 개최하고 마지막 3일간 쇠부리축제와 함께 종료하는 것으로 일정을 조정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향후 행사시 해당 부서와 적극 검토하겠음.

◎동시 개최시에는 봄꽃전시회 행사도 함께 홍보가 요구되며 분갈이 체험행사에 소요되는 화분 · 꽃 구입비가 동시 개최 기간 중에는 5배 정도 추가 소요되어 화분 · 꽃 구입비 일부 지원이 요구됨.

▶비고 : 완결

재난관리과(시정 요구)

▶시정 · 건의 요구 사항

봄장마철 대비 재해 예방 활동 강화

◎태풍 “에위니아”로 인한 구비 확보 지연 문제로 복구 공사가 늦어지고 있음.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응급 조치 및 재해 예방 활동을 강화해 주기 바람.

▶처리 내역

◎수해 복구사업 소관 부서인 건설과, 도시녹지과의 사업 추진이 우수기 전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독려하여 현재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음.(29건 중 24건 완료, 5건 공사중)

◎여름철 풍수해를 대비하여 현재 미완공 사업장을 대상으로 수시 집중 관리 및 예찰 활동을 실시하고 있음

▶비고 : 추진중

보건소(시정 요구)

▶시정 · 건의 요구 사항

방역 활동 강화

◎올해의 경우 모기가 더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으므로 최적의 모기 퇴치 방법을 강구하여 효과적인 방역이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처리 내역

◎동별 방역 담당자 및 방역 인부 간담회 개최(2007. 8. 10) 등

◎효과적인 방역을 위하여 취약지역(풀숲, 축사 주변, 하수구 등)의 방역 활동을 강화하고 민원발생 지역을 우선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동별 방역 담당자 및 방역 인부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방제 효과를 높이도록 조치하였음.

▶비고 : 완결





제4절 기타 의정활동

1. 구정 질문

1)구정 질문 현황

일 시	회 순	의 원	질 문 요 지
계	1회		1건
2007.7.23	제98회 제1차 정례회	류인목 의원	총무국 총무과 업무추진비 집행 관련

2)구정 질문 및 답변 요지

가. 총무국 총무과 업무추진비 집행 관련

- 질문 의원 : 류인목 의원
- 2007년 7월 23일(제98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

■ 류인목 의원 질문

- 대주민 신뢰회복을 위해서라도 북구청의 거듭나는 노력을 바라면서 다음의 자료를 요구하고 구청장님의 의견과 실천 의지를 묻고자 함.
북구청의 업무추진비(기관운영업무추진비 및 시책업무추진비) 내역 지급 일자/지출액/지출처/지출 목적 /대상 인원 전체 명단의 형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 강석구 구청장 답변

- 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각종 행사와 주요 시책 추진, 주요 투자 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출하는 제반 경비와 지방자치단체장이 실·과·소 직원들과 통상적인 업무 추진 및 조직 운영, 주요시책홍보, 대민활동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로 지출됨. 또한 구의회, 경찰서, 교육청, 소방서 등 유관기관은 물론 타 자치단체와의 업무 협조, 유대강화 등 구청장의 직무수행에 따른 경비로 사용되고 있음.
-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매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편성하고, 구 의회의 승인을 얻어 관계법령과 규정에 맞게 사용하고 있음.
- 업무추진비 사용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지난번 감사원과 행정자치부, 국가청렴 위원회, 그리고 울산 광역시로부터 이미 감사 및 조사를 받았으며, 감사결과 관계법령과 사용목적에 맞게 투명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검증 받은바 있음.
- 공공기관의 정보관계에 관한 법률에도 개인의 사생활 및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로 하도록 규정돼 있어, 금년도 의회행정사 무감사 자료제출시 업무추진비 내역을 주단 위로 묶어 제출하게 되었음.
- 우리 북구는 금년으로 구신설 10주년과 아울러 인구 15만을 넘어 급속도로 발전해 가는 신흥개발 지역으로 할 일이 정말 태산 같이 산적해 있음. 이러한 중차대한 시기에 업무추진비 문제로 행정력을 낭비해서는 안 될 것이며, 이것은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함.
-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구가 전국 어느 타 자치단체보다 앞장서서 가장 모범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와 계약심사제 시행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 만큼 구정에 대한 신뢰를 보내 주셨으면 함.
- 우리 북구는 국제외국어고 유치, 음식물쓰레기 30% 줄이기, 평생학습도시 유치 등 당면한 구정 주요 시책추진이 시급하고 또한 매우 중요함.
- 이러한 구정주요 시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15만 구민이 다함께 잘 살 수 있는 행복 북구가 되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 드림.



2. 5분 자유 발언

1) 박병석 의원

◎발언 일시 : 제9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2006. 9. 11)

◎건 명 : 우리 북구의회가 연구하고 토론하는 의회로 거듭났으면,
북구 행정의 축을 맡고 있는 공무원들에 관하여

◎발언 내용

- 우리 북구의회가 연구하고 토론하는 의회로 거듭났으면 -

존경하는 류재건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과 동료 의원들이 의원선서를 하면서 첫 마음을 가다듬었던 날이 벌써 두 달이 지났습니다.

"초심을 잃지 마라." 이 말은 정치를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 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초심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초심은 주민들에게 판단의 대상이 되었던 우리의 공약 이고, 당선인사이고, 두 달여 전에 본회의장에서 했던 선서일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우리 북구의회가 연구하고 토론하는 의회로 거듭났으면 하는 것입니다.

요즘 사회적 이슈 중 가장 우리 생활과 밀접한 것이 한미 FTA라는 것을 부정하실 분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자동차와 자동차관련 산업, 그리고 농수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우리 북구 주민에게는 더더욱 중요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IMF가 뭘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 서민들은 차가운 현실로 내몰아 졌던 것이 불과 몇 년 전이었습니다. 한미 FTA에 대해 찬반을 따지기 이전에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해 연구하고 알려낼 의무가 우리 의원들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과 뜻을 같이하는 의원님들과 함께 전문가들을 모시고 FTA포럼을 개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북구의회로부터는 차가운 반응뿐이었습니다. 제90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장 선거후 본회의장에서 류재건 의장님께서 일성으로 하신 말씀 중에도 "우리 지역의 발전을 걱정하고 토론하는 의회를 만들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토론회 등 의원들이 나서서 지역의 발전을 연구하고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드는, 주민들을 위해 연구하는 북구의회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 북구 행정의 축을 맡고 있는 공무원들에 관하여 -

둘째, 북구 행정의 축을 맡고 있는 공무원들에 관한 것입니다.

요즘 공무원노조에 관한 기사가 자주 등장합니다. 특히 공무원노조사무실 폐쇄와 관련된 정치적 기사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접하는 대한민국을 수식하는 말 중에는 올림픽, 월드컵개최국, OECD가입국, 무역교역 세계 12위국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발전의 뒤편에 있는 노동관련 수치를 보면 1991년 국제노동기구 가입 이래 비준대상 협약 100개 가운데 20개만을 체결했습니다.

노동기구 회원국(177개국)의 협약체결 평균 41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72개에 크게 못 미치는 저조한 수치입니다. 얼마 전 이웃도시 부산에서 개최되었던 국제노동기구(ILO) 아시아태평양총회에 서도 국제노동기구는 우리 정부에 대해 공무원 단결권 보장(5급 이상과 소방관 결사의 자유 보장)을 비롯해 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 제3자 지원 처벌 규정 삭제 노조활동에 대한 형법상 업무방해죄 적용 중단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렇게 세계적 행사가 열리고 있는 특히, 노동기구의 총회가 열리고 있는 와중에 행정자치부는 공무원노조를 불법단체로 규정하고 모든 사무실을 폐쇄하라는 지침을 내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북구청에서도 공무원노조사무실 폐쇄와 관련해 15일까지 자진철수와 그 이후에는 행정대집행을 예고하는 계고장을 보냈습니다. 모든 관계의 기본은 상대방의 인정, 그리고 대화와 신뢰입니다.



구청에 있는 한 식구끼리 "행정대집행"등 무서운 글귀가 담긴 서류를 주고 받는 모습을 보면서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열심히 구청에 힘을 쏟고 있는 강석구 북구청장님의 첫 맹세, 즉 공약 중에 "신노사문화건설"이 있습니다. 그 공약에는 노와 사의 대립적 관계를 해결 할 실마리를 내놓겠다는 구청장님의 복안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구청 집행부가 공무원노조에게 보인 신뢰의 수준은 아쉽게도 30분간의 만남과 무서운 계고장이 전부인 것으로 압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집행부가 상생 없이 파국으로만 치닫는 행자부의 지침에 휩쓸리지 말고 엄연한 실체인 공무원노조와 열려진 관계 속에서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는 "신노사문화건설"의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끝으로 북구청 안에도 비정규직으로서 하루하루의 생존권에 위협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직원들이 있다는 것과, 이들의 안정된 지위보장을 위해 집행부와 관련 부서에서 보다 높은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이은영 의원

◎발언 일시 : 제94회 제2차 정례회 제13차 본회의 (2006. 12. 20)

◎건 명 : 북구청이 여성 정책을 확대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발언 내용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류재건 의장님! 이은영입니다.

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구청이 여성정책을 확대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5분 발언을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5·31지방선거에서 여성후보였습니다. 지역구 후보이기도 했습니다.

아직도 기억합니다.

마이크를 잡고 연설을 시작하면 지나가던 여성들이 가던 길을 멈추고 귀담아 듣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왜이겠습니까! 수많은 남성후보들 사이에 여성후보라는 것이 신기했을 수도 있겠지만 여성과 관련된 정책이 바뀌려나하는 희망입니다. 자신들의 삶을 대변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 희망과 마음을 안고 저는 당선이 되어 여성의원으로서 활동을 6개월 가까이하고 있습니다.

이은영 개인에 대한 지지도 있겠지만 제도 덕분이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 덕분에 울산도 여성 시의원이 3명에서 5명으로 늘어났고, 구의회도 1명에서 1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선거제도는 여성정치 참여의 비율을 높여놓았습니다. 그래서 제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법과 제도를 집행하는 구청이 법과 제도를 기반으로 정책을 집행함에 있어 여성정책을 확대하라는 기본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치구로 보면 정책 결정의 최고라고 하는 북구의회에서 여성이어도 비켜갈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여성으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2007년 예산심의를 준비하면서 밤늦게까지 준비하는 선배동료 의원들의 모습이 정말로 좋았습니다. 저도 그러고자 노력하였으나 육아를 책임지는 역할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쫓기듯 준비하고 누군가에게 아이들을 맡기고 개인의 노력으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여성이기 때문입니다. 의원이라는 제가 이런 실정인데 뜻을 가지고 사회참여와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들 그리고 전업주부는 오죽 하겠습니까? 일을 하고자 하는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유는 다양합니다.

아이들 사교육비라도 벌고자, 어려운 경제에 남편의 월급으로는 안 되기에 경제활동을 하는 이유도 있고, 자신의 자아실현을 위해 경제활동을 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아울러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 여성 가장도 있습니다.

현실은 어떻습니까?

노동환경은 열악하기 짝이 없고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저임금과 비정규직, 파트타임에 있습니다.

일하는 동안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이 학원에서 저 학원으로 보내고, 야간보육시설이 부족해 이 집으로 저 집으로 아이를 맡기는 실정입니다.

여성공무원도 사정은 똑같습니다.

여성공무원도 사정은 똑같습니다.

직장내 보육시설이 없다면 여기 저기 누군가에게 맡기고 출근을 했고,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구청이 여성정책을 확대할 것을 요구합니다.

여성정책을 하자면 기본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첫 번째로 성별분리 통계입니다.

두 번째로 성인지적 여성정책을 확대하여야 합니다.

세 번째로 모든 영역, 모든 국, 과, 소에서 여성정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성평등이 여성정책의 주류화를 이야기합니다.

이 세 가지 요구는 1975년 유엔에서 세계여성의 해를 선포하면서 각 나라마다 정부가 남녀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가시화하였고, 1995년9월 제4차 세계여성회의 북경행동강령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하여 여성기본시책을 정하여 매년 실시하고 있음에도 울산광역시 여성정책 시행계획에 북구는 15개 여성기본시책을 보고하고 집행함에 있어 법과 정신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2006년 행정사무감사와 2006년 실적을 취합해 보았더니 여성정책 시행계획이라 할 수 없었습니다.

첫 번째로 여성들이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경제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여기에 대한 기초통계 조사가 기본적으로 없습니다.

두 번째로 방과 후 시설과 야간보육 시설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세 번째로 지자체 자체 보육예산이 0%에 가깝습니다.

네 번째로 여성노인을 위한 사업에서 노인을 위한 사업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여성장애인을 위한 특수사업에서 남성장애인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여성한부모사업 등 매년 여성정책 사업을 줄이고 있습니다.

너무 많아서 열거하기도 어렵습니다.구체적으로 요구합니다.

첫 번째, 여성정책을 담당할 과나 계 신설을 요구하고 싶지만, 실정이 있으므로 여성정책 총괄부서를 두어 모든 국, 과, 실, 소에서 여성정책 집행을 관장 할 것을 요구합니다. 여성정책 시행계획을 취합하고, 실적을 평가하여 반영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별분리 통계를 하여 여성정책에 반영하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국·공립보육 시설을 확대하여 안전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을 늘려가길 바랍니다. 연장보육과 직장내 보육시설을 확대할 것을 요구합니다.

네 번째, 여성일자리 창출과 여성노동환경에 대한 기초통계 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다섯 번째, 복지서비스와 여성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여성정책을 확대할 것을 요구합니다.

끝으로 세상의 절반이 여성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시대 아닙니까?

아무리 평등을 목소리 높여 외쳐도 여성들이 평등하지 않습니다.

법과 제도로 정책으로 평등하게 만들어도 여성은 육아와 가사노동을 안고 똑같은 출발선에 서있다면 평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성정책이 필요합니다.

여성의 특수성을 고려한 여성정책이 필요합니다.

북구청장님의 시정연설 2007년 정책계획에서도 여성정책은 없습니다.

2007년 예산에서도 여성정책은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북구는 여성정책을 확대할 것을 요구합니다.

고맙습니다.

3) 류인목 의원

◎발언 일시 : 제94회 제2차 정례회 제17차 본회의 (2006. 12. 27)

◎건 명 : 북구청의 노사관계에 대하여

◎발언 내용

존경하는 류재건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류인목 의원입니다.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치르는 등 다사다난했던 2006년 한 해도 저물고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 주민의 선택을 받으신 분들은 어느 해보다 기억에 남는 한 해였을 것입니다. 당선이후 6개월여 동안의 공직생활에 얼마나 만족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또 주민들은 본인들의 선택에 얼마나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계실지 궁금합니다.

언제부턴가 본 의원의 출근길은 무거운 발걸음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은 좋은 일만 생길 것이라고 자기 암시를 하면서 힘차게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입니다. 하지만 가을을 지나 겨울에 이르는 100여 일 동안 로비에 앉아 공무원노조 탄압에 항의하는 공무원 노조 조합원들을 보면서 의회로 출근하는 본 의원의 가슴은 아픕니다.

비단 본 의원뿐만 아니라 동고동락을 했던 동료직원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1890년 12월 27일 오늘은 영국의 우정성 하급직원들이 우정성 장관으로부터 조합승인을 얻어내고 교섭에 성공한 날입니다. 116년 전의 일로써 공무원들의 단결권을 처음으로 인정받은 날이기도 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우리의 현실 앞에 서면 가슴이 답답합니다.

첫째, 1세기 전 남의 나라를 부러워할 만큼 우리에게 2006년 9월 22일은 참담한 하루였습니다.

공무원노조 사무실에 대해서 행정대집행이 이루어진 날입니다. 부정부패추방, 공무원사회 개혁을 외치던 공무원노조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은 아닙니다. 직장협의회로 시작할 때부터 꾸준히 외쳐왔던 구호였고 행동이었습니다. 그들을 불법단체로 각색해 버리고 노조사무실에서 처참하게 끌어냈습니다.

공무원노조가 이루려고 하는 "부정부패 추방, 공직사회개혁"을 우리 사회에 해악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둘째, 6개월도 지속하지 못하는 정책의 문제입니다. 바로 불법주·정차 단속원들입니다.

12월 말일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집행부의 재계약의 의지도 없습니다.

북구청을 믿고 푸른 꿈을 가졌던 13명의 주부들에게 2006년은 짧았고 2007년은 암울할 것입니다.

셋째, 문화는 막힘없이 강물처럼 흘러야 마침내 대양에 이르러 찬란한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북구청 문화예술회관 사용에 관한 건입니다.

산업의 메카, 대한민국 산업 수도, 바로 울산을 일컫는 말들입니다. 이 말들을 피땀 흘려 일궈놓은 노동자들에게 행정은 어떤 것을 했습니까! 백보 양보 하더라도 노동자이기 이전에 우리의 가족이고 이웃입니다. 구태여 문화예술회관의 사용에 차별성을 뒤야 했는지 안타깝습니다.

넷째, 북구자원봉사센터의 문제입니다.

구청장과 자치노조간 기관 대 기관으로써 맺었던 단체협약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상근직 전환과 변동사항의 통지의무 위반건 및 문제의 해결을 위한 구청장 면담이 무시되고 있는 점입니다. 총체적으로 봤을 때 북구청의 행정에는 반 노동자적 행위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노사문화를 만들겠다고 추진하는 노사정구민협의회가 잘 운영이 되겠습니까?

노사정구민협의회에 노동자 없이 운영할 생각인지 재차 묻고 싶습니다.

2006년을 마무리 하면서 굴절된 노동자 정책에 대해 수정을 집행부에 요구하고 2007년에는 구민 모두가 행복한 정해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4)박병석 의원

◎발언 일시 : 제98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 (2007. 7. 23)

◎건 명 : 북구청의 복지 정책에 관하여

◎발언 내용

존경하는 류재건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15만 북구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노력하시는 강석구 구청장님 및 관계공무원여러분!

농소1동, 송정, 강동 지역구 박병석 의원입니다.

2007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며 현재 북구청 행정의 구태와 정책의 부재를

비판하고 진정한 15만 북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최고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발전하는 북구를 함께 만들어가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북구청 건물을 드나들 때 본의원의 시선을 머물게 하고 더불어 북구청의 현재를 되돌아보게끔 하는 것이 있습니다. 현관 승강기 입구에 부착된 행정혁신을 홍보하는 포스터가 그것입니다.

지난주 게시물의 내용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부분적인 것에 매몰되며 핵심을 꿰뚫지 못하고 주변만 맴도는 조직사회를 경계하기 위한 메시지가 담긴 혁신포스터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480여명의 북구청 공무원들과 15만 구민이 서로 부대끼며 믿음과 신뢰로 만들어가는 것이 북구의 미래이며 희망이지, 기자 브리핑 룸에서 북구의 미래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도, 15만 북구 주민들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본의원이 제4대 북구의회 의원으로 일한지 만 1년이 지난 오늘, 지난해 12월에 이어 두 번째 맞이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15만 북구주민의 복지를 책임지는 북구청의 복지정책에 대하여 실망을 넘어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습니다.

지는 북구청의 복지정책에 대하여 실망을 넘어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습니다.

첫째,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아동놀이시설 관련 건을 말씀드립니다.

구청장님의 취임사 중 첫째가, 행복한 환경·복지 북구를 만들겠다는 것이었고 그 내용 중 장애인과 어르신, 여성 등 '사회적 소수자'가 소외 받지 않는 복지 북구를 다져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그 첫 맹세에도 불구하고 지난2월 장애아동 놀이시설의 사업비 반납을 지켜보면서본의원 뿐만 아니라 장애아동을 키우는 부모님들도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시설의 수혜자는 구청장도 복지관도 아닌 지역에 있는 장애아동들이기에 이번 사건의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구청이 꼭 사업권자가 되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민과 수혜자를 중요시하는 사고로 접근했다면 이미 지금쯤 장애아동과 비장애 아이들이 서로 어울리며 환하게 웃고 있을 생활놀이 시설이 준공식을 맞이하였을 것입니다.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주민의 이익보다 구청의 생색내기에 혈안이 되어 대기업이 지역사회에 공한한 예산을 고스란히 반납하는 사례는 앞으로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것이며, 기대에 부풀어 있던 지역 주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이후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올해부터 직영에서 위탁으로 넘어간 자원봉사센터의 건입니다.

사회복지의 절대적 재원은 정부의 몫이지만 그 부족한 부분을 민간영역의 봉사활동으로 보충 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지자체에서는 드물게 직영으로 운영해 오던 자원봉사센터를 위탁으로 넘긴 것에 대해 많은 아쉬움이 남는 것을 접는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수년 동안 자리매김한 자원봉사자의 인력 및 지역의



많은 재가보호세대의 푸드뱅크 서비스 공급 네트워크 망이 무너졌다는 것과 구청의 관리 감독 또한 전무하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물론, 위탁운영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평가하기엔 너무 일찍 다는 생각도 했습니다만, 결론은 사업초기에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함으로써 제대로된 복지서비스가 구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확신 때문입니다.

더불어 자원봉사센터의 인력은 다른 영역의 일에 신경 쓰기보다 복구의 소외계층과 행정의 손길이 미처 닿지 않는 곳을 향해 본연의 임무에 집중 할 수 있도록 지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노인복지예산의 지원에 관한 건입니다.

앞에서도 말씀 드렸듯이 북구 어르신들의 복지정책 또한 강석구 구청장님의 1년 전 취임사에서 약속한 굳은 맹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은 북구 어르신복지회관의 예산지원에 있어서 보건복지부 노인보건 복지사업지침에도 나와 있는 '다'형 복지관 예산기준 2억5천만원이상 지원하라는 지침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06년도 보다 오히려 5천만원이나 예산을 깎는 어처구니없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강석구 구청장님의 취임사가가 한낱 구호에 그치는 말장난은 아닐 것인데 누구의 잘못인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후 사업에 있어서 지침 또는 일반적 기준의 준수 또는 상향을 위해 노력해주시기를 15만 구민의 이름으로 요구하는 바입니다

넷째, 각종위탁시설의 예산지원과 관내 노동현안에 한 것입니다.

당초예산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반영되어야 할 예산이 빠트리지면서 위탁기관의 운영 또한 어려워지고 더불어 사업이 지연되는 악순환을 가져오고 있는 것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나타났습니다.

자원봉사센터와 비정규직지원센터 등 위탁기관에 대한 좀더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분들께 부탁드립니다.

그 외에도 국비지원이 되는 여러 복지시설에 대한 예산도 제때 집행하여 계획된 사업과 시설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관내 홈에버 사업장에서 비정규직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지키기 위한 파업투쟁이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노동자 측의 홈에버 분회장과 면담한번 없이 사용자 측에 의한 정보만 파악한 채 개최한 북구노사정 구민협의회의 절차적 모순과 호소문채택의 보도까지 접하면서 자랑스런 우리 북구주민이며 홈에버사업장 비정규직노동자들에게 실망감을 가져다 준 것에 대해 구청은 고개숙여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구청 홈페이지의 구청장님 인사말에도 나와 있듯이 "풍요롭고 행복한 북구"가 되기 위해서는 고용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이 증폭되고 사용자측의 부당노동행위가 판을 치고 있는데도 북구청의 역할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구청이 어느 한 쪽 편에 기울지 않은 객관적 사실과 넓은 통찰력을 가지고 구정을 이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풍요롭고 행복한 복지 북구는 허울 좋은 구호 몇 마디와 언론브리핑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15만 구민 전체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존경하는 강석구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여러분의 복지정책 마인드와 모든 정책 결정에 앞서 항상 구민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행정서비스 혁신을 강도 높게 추진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북구청의 행정이 내실없는 겉포장 꾸미기에만 급급하여 주민을 소홀히 하고, 사회적 약자를 내팽개치고, 구청장과 공무원이 주인이 되는 잘못된 지방자치의 길로 가지 않기를 진심으로 말씀드리며 본의원 또한 15만 북구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혼신을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류재건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존경하는 강석구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3. 결의안

1)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한 입법 촉구 결의안

가. 심의 경과

- 발의 일자 및 발의자 : 2007년 5월 29일(류인목 의원 외 6명)
- 심의 일자 : 2007년 6월 4일(제97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나. 제안 설명 요지

① 제안 이유

- 현재 우리나라 자영업자 10명 중 4명이 월 100만원 이하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등 자영업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사회적 약자로서 중소 자영업자들이 처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할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 신용카드 사용 확대에 따라 중소 자영업자들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신용카드사들의 불투명하고 차별적인 가맹점 수수료율 부과 체계는 개선되지 않고 있음.
- 이런 상황에서 중소 자영업자 대책의 일환으로 부당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를 해소하기 위해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부과 체계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입법 촉구의 입장을 표명하는 것임.

② 주요 골자

- 신용카드사들의 불투명하고 차별적인 가맹점 수수료율 부과 체계로 인해 자영업의 양극화가 심화 되고 중소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바, 부당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부과 체계의 개선을 통해 중소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해야 한다.
-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를 공정하고, 투명하며, 합리적으로 법제화 하여야 한다. 국회에 발의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은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가맹점간 수수료 차별 해소, 원가 내역 공개 및 산정 기준 법제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상한제 도입, 신용카드 수수료 심의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으로 지급결제시스템 전반을 규제, 감독 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상인을 살리고 소비자 물가를 낮추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다. 심의 결과 : 원안 가결

라. 조치 사항 : 국회재정경제위원장, 국회법제사법위원장, 재정경제부장관(보험제도와장),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비은행감독과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송무팀장), 국세청장(법무과장), 울산광역시 북구청장(기획홍보실장)에게 결의문 송부

4. 경주 방폐장 피해 대책 서명 운동

1) 시장님과 북구의회 의원간 간담회

- 일시 · 장소 : 2006년 11월 17일 강동소재 횃집
- 참석자 : 시장, 구청장, 구의원 7명, 시 자치행정국장 및 기획관
- 주요 내용
 - 경주방폐장 설치 관련, 시 차원의 협조 요청
 - 기타 지역 현안 협조 요청

2) 경주방폐장 관련 서명 운동을 위한 의원과 동장 및 통정회장과의 간담회 개최

- 일시 · 장소 : 2006년 11월 17일, 정우복집



- 참 석 자 : 구의원 7명, 동장 8, 통정회장 등 8명
- 주요내용
 - 경주방폐장 설치 관련 추진 상황 설명
 - 경주방폐장 설치에 따른 피해 대책 강구
 - 피해대책 서명 운동 적극 협조 요청

3)북구의회 차원의 "서명 운동" 전개 (2회)

- 일시 · 장소 : 2007년 1월 11일 - 호계시장, 1월 18일 - 쌍용아진아파트
- 참 석 자 : 시의원, 구의원, 전 동장, 각동 통정회장 등
- 주요 내용
 - 팸플렛 등을 활용하여 홍보 활동 전개와 동시에 서명 운동 실시
 - 방송사, 신문사 등 언론을 통한 홍보 활동 병행 실시
 - 서명 운동 결과 : 586명 참가

4)울산시 구·군의회 의장협의회 합동 서명 운동을 위한 구·군 의장단 간담회 개최 : (2회)

5)울산시 구·군의회 의장협의회 합동 서명 운동 전개

- 일 시 : 2007년 4월 7일 15:00~17:00
- 장 소 : 롯데백화점 광장 일원
- 주 최 : 울산광역시 구·군의회 의장협의회
- 주 관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 참 여 : 김철욱 시의회 의장, 강석구 북구청장, 5개구·군 의장, 자생단체장 등 300여명
 - 울산광역시 구·군의회 의원 : 50명
 - 북구 자생단체회원 : 200여명
 - 구·군의회 직원 : 50명
- 서명 운동 참가자수 : 1,417명(전단지 배부수 : 2,500매)

주요 내용

- 풍물패 공연 : 15명 (농소2동 풍물패)
- 사진 전시 : 체르노빌사고 현장 사진 25점
- 피켓 5매, 전단지, 어깨띠 활용 홍보
- 서명 운동 : 구·군의원, 자생단체 회원, 시민, 직원 등

6)유치지원금 요구를 위한 "서명 운동" 추진 현황 : 붙임

- 2007년 8월 현재 서명 인원수 : 2만 4,534명
 - 북구 동별(8개동) 서명 운동 결과 : 2만 1,059명
 - 북구 소재 농협 협조 서명 운동 결과 : 601명
 - 북구의회 차원의 서명 운동 실시 : (2회), 586명
 - 울산시 구·군의회 의장협의회 합동 서명 운동 실시 : 1,417명

※동구의회 협조 : 871명

경 제100회 임시회 기념 축
2007. 10. 16(화) 울산광역시북구의회



부록

1. 역대의장단 명단
2. 초대의원 명단
3. 제2대의원 명단
4. 제3대의원 명단
5. 제4대의원 명단
6. 북구지역 전직 의원 명단(1997.7.15 이전)
7. 역대 사무(국)과장 명단
8. 역대 전문위원 명단



역대 의장단 명단

▣ 의장 명단

구 분	선 거 구	성 명	생년월일	재임기간	비 고
초 대	강 동 동	김 성 보	1937. 4. 4	1997. 7. 15 ~ 1998. 6. 30	
제2대 전반기	송 정 동	윤 두 환	1955. 3. 5	1998. 7. 7 ~ 2000. 2. 21	
제2대 전반기	농소3동	박 춘 환	1952. 1. 11	2000. 2. 22 ~ 2000. 7. 6	
제2대 후반기	양 정 동	진 한 걸	1953. 11. 15	2000. 7. 7 ~ 2002. 6. 30	
제3대 전반기	송 정 동	김 진 영	1964. 10. 11	2002. 7. 9 ~ 2004. 7. 6	
제3대 후반기	염 포 동	하 인 규	1959. 9. 17	2004. 7. 7 ~ 2006. 6. 30	
제4대 전반기	효문 · 양정 · 염포동	류 재 건	1961. 2. 5	2006. 7. 3 ~ 2008. 7. 2	

▣ 부의장 명단

구 분	선 거 구	성 명	생년월일	재임기간	비 고
초 대	송 정 동	윤 두 환	1955. 3. 5	1997. 7. 15 ~ 1998. 6. 30	
제2대 전반기	농소3동	박 춘 환	1952. 1. 11	1998. 7. 7 ~ 2000. 2. 21	
제2대 전반기	양 정 동	진 한 걸	1953. 11. 15	2000. 2. 22 ~ 2000. 7. 6	
제2대 후반기	강 동 동	박 광 식	1955. 11. 15	2000. 7. 7 ~ 2002. 6. 30	
제3대 전반기	농소2동	김 재 근	1958. 9. 11	2002. 7. 9 ~ 2004. 7. 6	
제3대 후반기	농소1동	이 재 경	1956. 4. 25	2004. 7. 7 ~ 2006. 6. 30	
제4대 전반기	농소1 · 강동 · 송정	윤 임 지	1952. 10. 15	2006. 7. 3 ~ 2008. 7. 2	

▣ 초대 의원 명단

연번	직 위	선거구	성 명	생년월일	재임기간	비 고
1	의 장	강동동	김 성 보	1937. 4. 4	1997. 7. 15 ~ 1998. 6. 30	환경수도
2	부의장	송정동	윤 두 환	1955. 3. 5	1997. 7. 15 ~ 1998. 6. 30	교육사회
3	의 원	진장동	정 석 수	1937. 4. 15	1997. 7. 15 ~ 1998. 6. 30	운영 · 건설
4	의 원	농소동	한 성 두	1941. 3. 31	1997. 7. 15 ~ 1998. 6. 30	도시경제
5	의 원	농소 · 강동(제10선거구)	이 상 원	1941. 8. 29	1997. 7. 15 ~ 1998. 6. 30	운영 · 내무
6	의 원	효문동	이 병 우	1942. 2. 8	1997. 7. 15 ~ 1998. 6. 30	내무위원장
7	의 원	양정동	진 한 걸	1953. 11. 15	1997. 7. 15 ~ 1998. 6. 30	도시경제 (간사) · 운영
8	의 원	염포동	조 승 수	1963. 3. 2	1998. 3. 2 ~ 1998. 6. 30	환경수도 (간사) · 운영

※초대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겸직

■ 제2대 의원 명단

연번	직 위	선거구	성 명	생년월일	재임기간	비 고
1	의 장	송정동	윤 두 환	1955. 3. 5	1998. 7. 1 ~ 2000. 2. 21	전반기 의장
2	의 장	농소3동	박 춘 환	1952. 1. 11	1998. 7. 1 ~ 2002. 6. 30	전반기 부의장 및 의정보궐
3	의 장	양정동	진 한 걸	1953. 11. 15	1998. 7. 1 ~ 2002. 6. 30	전반기 부의장보궐 및 후반기 의장
4	부의장	강동동	박 광 식	1955. 11. 15	1998. 7. 1 ~ 2002. 6. 30	후반기 부의장
5	의 원	농소1동	김 수 헌	1957. 11. 15	1998. 7. 1 ~ 2002. 6. 30	전반기운영위원장
6	의 원	농소2동	강 혁 진	1961. 10. 1	1998. 7. 1 ~ 2002. 6. 30	
7	의 원	효문동	류 재 건	1961. 2. 5	1998. 7. 1 ~ 2002. 6. 30	
8	의 원	송정동	김 진 영	1964. 10. 11	2000. 6. 8 ~ 2002. 6. 30	보궐선거 당선
9	의 원	염포동	윤 종 오	1963. 8. 14	1998. 7. 1 ~ 2002. 6. 30	후반기운영위원장

■ 제3대 의원 명단

연번	직 위	선거구	성 명	생년월일	재임기간	비 고
1	의 장	송정동	김 진 영	1964. 10. 11	2002. 7. 1 ~ 2006. 6. 30	전반기 의장
2	의 장	염 포 동	하 인 규	1959. 9. 17	2002. 7. 1 ~ 2006. 6. 30	후반기 의장
3	부의장	농소2동	김 재 근	1958. 9. 11	2002. 7. 1 ~ 2006. 6. 30	전반기 부의장
4	부의장	농소1동	이 재 경	1956. 4. 25	2002. 7. 1 ~ 2006. 6. 30	후반기 부의장
5	의 원	농소3동	김 대 영	1960. 2. 2	2002. 7. 1 ~ 2006. 6. 30	후반기 운영위원장
6	의 원	강동동	윤 임 지	1952. 10. 15	2002. 7. 1 ~ 2006. 6. 30	
7	의 원	효문동	류 재 건	1961. 2. 5	2002. 7. 1 ~ 2006. 6. 30	
8	의 원	양정동	류 인 목	1961. 12. 30	2002. 7. 1 ~ 2006. 6. 30	전반기운영위원장

■ 제4대 의원 명단

연번	직 위	선거구	성 명	생년월일	재임기간	비 고
1	의 장	효문·양정·염포동	류 재 건	1961. 2. 5	2006. 7. 1 ~ 2010. 6. 30	전반기 의장
2	부의장	농소1·강동·송정동	윤 임 지	1952. 10. 15	2006. 7. 1 ~ 2010. 6. 30	전반기 부의장
3	의 원	농소2·농소3동	문 석 주	1962. 8. 27	2006. 7. 1 ~ 2010. 6. 30	전반기운영위원장
4	의 원	농소1·강동·송정동	박 병 석	1966. 9. 25	2006. 7. 1 ~ 2010. 6. 30	
5	의 원	농소2·농소3동	이 은 영	1966. 10. 16	2006. 7. 1 ~ 2010. 6. 30	
6	의 원	효문·양정·염포동	류 인 목	1961. 12. 30	2006. 7. 1 ~ 2010. 6. 30	
7	의 원	비례대표	이 영 희	1963. 7. 22	2006. 7. 1 ~ 2010. 6. 30	

■ 북구지역 전직 의원 명단(1997.7.15 이전)

연번	직위	선거구	성명	생년월일	재임기간	비고
1	의원	울산시 제10선거구	이상원	1941. 8. 29	1995. 7. 1 ~ 1997. 7. 14	제5대 경남도회의의원 운영·내무위원
2	의장	울주군 농소읍	한성두	1941. 3. 31	1991. 4. 15 ~ 1997. 7. 14	초대 울산군회의의원 통합·제2대 울산시의회의의원 울주군회의의장 통합시의회 부의장
3	의원	울주군 강동면	김성보	1937. 4. 4	1991. 4. 15 ~ 1997. 7. 14	초대 울산군회의의원 통합·제2대 울산시의회의의원 환경수도위원
4	의원	중 구 송정동	윤두환	1955. 3. 5	1991. 4. 15 ~ 1997. 7. 14	초대 울산시의회의의원 통합·제2대 울산시의회의의원 도시경제위간사·교육사회위원
5	의원	중 구 진장동	김두현	1936. 4. 15	1991. 4. 15 ~ 1995. 6. 30	초대 울산시의회의의원 도시경제위원
6	의원	중 구 효문동	한기찬	1938. 4. 3	1991. 4. 15 ~ 1995. 6. 30	초대 울산시의회의의원 건설위원
7	운영위원장	중 구 양정동	류재락	1945. 8. 15	1991. 4. 15 ~ 1995. 6. 30	초대 울산시의회의의원 운영위원장
8	의원	중 구 염포동	김춘길	1942. 10. 10	1991. 4. 15 ~ 1995. 6. 30	초대 울산시의회의의원 내무위원
9	의원	중 구 진장동	정석수	1937. 4. 15	1995. 7. 1 ~ 1997. 7. 14	제2대 울산시의회의의원 운영·건설위원
10	내무위원장	중 구 효문동	이병우	1942. 2. 8	1995. 7. 1 ~ 1997. 7. 14	제2대 울산시의회의의원 내무위원장
11	의원	중 구 양정동	진한걸	1953. 11. 15	1995. 7. 1 ~ 1997. 7. 14	제2대 울산시의회의의원 도시경제위간사·운영위원
12	의원	중 구 염포동	조승수	1963. 1. 22	1995. 7. 1 ~ 1997. 7. 14	제2대 울산시의회의의원 환경수도위간사·운영위원

■ 역대 사무(국)과장 명단

연번	직위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근무기간	비 고
1	사무국장	지 방 서기관	이종영	1937. 9. 27	1997. 7. 15 ~ 1998. 9. 30	1998.10.1 구조조정으로 직제개편
2	사무과장	지방행정 사무관	백용한	1946. 12. 30	1998. 10. 1 ~ 2001. 1. 15	1998.10.1 구조조정으로 직제개편
3	사무과장	지방행정 사무관	최종식	1952. 10. 20	2001. 1. 16 ~ 2004. 3. 5	
4	사무과장	지방행정 사무관	송태호	1955. 1. 10	2004. 3. 6 ~ 2006. 1. 11	
5	사무과장	지방행정 사무관	이상헌	1955. 2. 6	2006. 1. 12 ~ 2007. 7. 26	
6	사무과장	지방행정 사무관	홍장희	1956. 7. 22	2007. 7. 27 ~ 현재	

■ 역대 전문위원 명단

연번	직위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근무기간	비 고
1	전문위원	지방행정 사무관	백용한	1946. 12. 30	1997. 7. 15 ~ 1998. 9. 30	
2	전문위원	지방행정 사무관	이차호	1960. 10. 26	1998. 10. 1 ~ 1999. 9. 30	
3	전문위원	지방행정 사무관	성낙화	1952. 5. 5	1999. 10. 1 ~ 2001. 1. 15	
4	전문위원	지방행정 사무관	김찬수	1955. 9. 28	2001. 1. 16 ~ 2003. 1. 27	
5	전문위원	지방행정 사무관	이상찬	1971. 12. 25	2003. 1. 28 ~ 2006. 1. 8	
6	전문위원	지방행정 사무관	박민수	1957. 4. 27	2006. 1. 12 ~ 현재	

蔚山廣域市 北區新設十年史

◁ 議 · 會 · 篇 ▷

1997 ~ 2007

발행일	2008년 8월
발행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류재건
발행처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http://council.bukgu.ulsan.kr
집 필	경상일보 논설위원실장 신춘희
감 수	전) 울산대 국어국문학과교수 양명학
인 쇄	애드-쑈(052-267-1900)

「본 출판물의 저작권 및 판권은 울산광역시북구에 있으므로 허락없이 전재나
발췌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Global
Ulsan Bukgu

